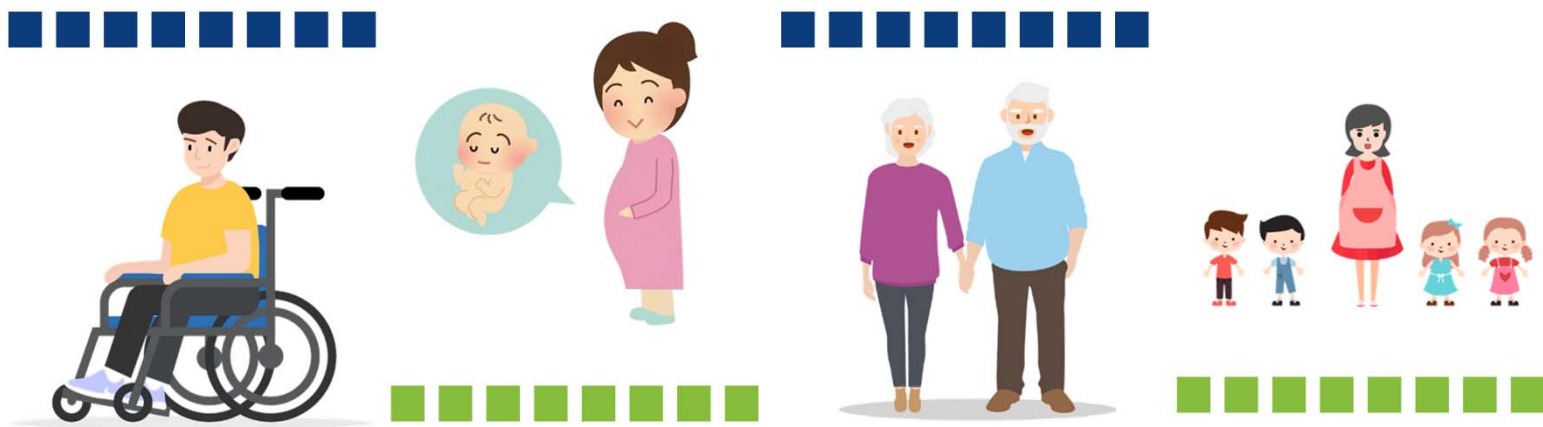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022~2026

- 최종보고서 -



2024. 7

전북특별자치도

제 출 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

본 보고서를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유]이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진영



제목 차례

- 제 1 장 과업의 개요 3**
 -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 1.1.1 과업 수립의 배경 3
 - 1.1.2 과업수립의 목적 3
 - 1.2 과업의 범위 4
 - 1.2.1 시간적 범위 및 공간적범위 4
 - 1.2.2 공간적 범위 4
 - 1.2.3 내용적 범위 4
 - 1.3 과업의 법적근거 5
 - 1.4 과업수행 추진체계 6
 - 1.4.1 수행절차 6
 - 1.4.2 추진체계 7

- 제 2 장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11**
 - 2.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11
 - 2.1.1 인구현황 11
 - 2.1.2 교통약자 현황 13
 - 2.1.3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통계 15
 - 2.1.4 전국 교통약자 이동실태 23
 - 2.2 교통약자 교통수단 및 시설 27
 - 2.2.1 교통약자 교통수단(버스) 27
 - 2.2.2 저상버스 현황 29

2.2.3 특별교통수단	32
2.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현황	35
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36
2.3.1 조사개요	36
2.3.2 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실태	36
2.3.3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 실태조사	39
2.3.4 편의시설 실태조사	40
2.4 상위계획 검토	73
2.4.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 10, 국토교통부)	73
2.4.2 상위계획 검토에 따른 교통수단 도입률 및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정리	89

제 3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성과 분석 93

3.1 전국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	93
3.1.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93
3.1.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율	94
3.1.3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94
3.2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추진실적	95
3.2.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95
3.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	106
3.3.1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추진실적	106
3.3.2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성과분석	108
3.4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과 분석	109
3.4.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109
3.4.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10
3.4.3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111

제 4 장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117

4.1	관련법령 검토	117
4.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17
4.1.2	시·군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118
4.1.3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119
4.1.4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119
4.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22
4.2	계획의 비전과 목표	124
4.2.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124
4.2.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장래예측	125
4.2.3	기본방향	126
4.2.4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성격	129
4.2.5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129
4.2.6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130
4.3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131
4.3.1	저상버스 도입 확대	131
4.3.2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138
4.3.3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필요성	142
4.4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144
4.4.1	물리적 장애 없는 환경 조성	144
4.4.2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163
4.5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174
4.5.1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관리 강화	174
4.5.2	광역이동지원콜센터 상담원들의 인식개선 교육	176
4.5.3	포용적 교통복지 문화 조성	177
4.6	연구 개발 및 제도개선	180
4.6.1	이동지원센터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국가계획)	180

4.6.2 타 지자체 광역이동센터 운영현황	181
4.6.3 광역이동센터 운영의 효율화 방안	187
4.6.4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지원패스카드	194
4.6.5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	195
4.6.6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지원 및 조례 제정 확립	196

제 5 장 예산 및 투자계획 201

5.1 소요사업비 산정의 전제	201
5.1.1 소요사업비 산정	201
5.2 부문별 소요사업비 검토	202
5.2.1 교통수단	202
5.2.2 여객시설	203
5.2.3 보행환경	203
5.2.4 기타사업	204
5.3 연차별 투자계획	205
5.4 투자재원 분담방안	207
5.4.1 도비 및 시·군비 분담 관련 규정	207

제 6 장 부록 213

6.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13
6.1.1 설문조사지	213
6.1.2 설문조사 결과	218
6.2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236
6.3 최종보고회 자료	265
6.4 최종보고회 의견 내용	299

표 차례

<표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법적근거	5
<표 2-1> 전국 인구현황(2023년)	11
<표 2-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현황 인구현황(2023년)	12
<표 2-3> 교통약자 기준	13
<표 2-4> 전국 인구현황(2023년)	14
<표 2-5>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15
<표 2-6>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2023년)	16
<표 2-7>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17
<표 2-8> 시·군별 장애인 정도별 등록현황	18
<표 2-9>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인구추이	19
<표 2-10>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인구추이	20
<표 2-11>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인구추이	21
<표 2-12>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인구추이	22
<표 2-13> 전국 지역 내 동일 지역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3
<표 2-14> 전국 지역 간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24
<표 2-15>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외출빈도	25
<표 2-1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외출 빈도	25
<표 2-17>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6
<표 2-18> 전국 버스 차량대수 현황분석(2021년 기준)	27
<표 2-19> 전북특별자치도 버스현황(2023년 기준)	28
<표 2-20> 전국 저상버스 보급현황(2021년 기준)	29
<표 2-21> 전북특별자치도 버스현황(2023년 기준)	30
<표 2-22> 도내 지역별 저상버스 운영현황	31
<표 2-23> 전국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도입현황(2021년 기준)	33
<표 2-24>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	34
<표 2-25> 대체수단의 종류	34
<표 2-26>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현황	35
<표 2-27>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현황	35

<표 2-28>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버스현황(2021년 기준)	36
<표 2-29>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비교(2021년)	37
<표 2-3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37
<표 2-31> 시·군별 운행대수 및 운전원수	38
<표 2-32> 저상버스 노선 운행 비율 분석	39
<표 2-33>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40
<표 2-34> 전국 9개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42
<표 2-35> 8개도 지역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48
<표 2-36> 전국 9개도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49
<표 2-37> 8개도 지역별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55
<표 2-38> 전국 공행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56
<표 2-39> 공행여객터미널의 공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61
<표 2-40> 전국 9개도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63
<표 2-41> 지역별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69
<표 2-42> 9개도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70
<표 2-43>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70
<표 2-44> 전국 9개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71
<표 2-45> 전북특별자치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72
<표 2-46> 교통수단 도입률	89
<표 2-47>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89
<표 3-1> 전국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93
<표 3-2> 전국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94
<표 3-3> 전국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현황	94
<표 3-4>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차량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95
<표 3-5> 전국9개도 평균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96
<표 3-6> 버스차량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97
<표 3-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98
<표 3-8> 지방해양수산청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99
<표 3-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의 항목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99
<표 3-10> 9개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100
<표 3-11> 철도역사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100
<표 3-12> 공행여객터미널의 공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101

<표 3-13> 전국 여객선 터미널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102
<표 3-14> 여객선터미널의 터미널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102
<표 3-15> 버스정류장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103
<표 3-16> 보행환경의 9개도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104
<표 3-17> 보행환경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104
<표 3-18>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105
<표 3-19>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106
<표 3-20>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조사 방안	108
<표 3-21>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109
<표 3-22>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110
<표 3-23> 도지역 대비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10
<표 3-24> 전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및 기준적합 설치율	111
<표 3-25> 전북특별자치도 기준적합 설치율 대비 이용자 만족도	112
<표 3-26>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성과 분석	112
<표 3-2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만족도 평가(2023년)	113
<표 3-28>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만족도 평가(2023년)	114
<표 4-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관련 규정	117
<표 4-2>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내용 및 확정 절차	118
<표 4-3>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119
<표 4-4>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대수	120
<표 4-5>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대수	120
<표 4-6> 이동지원센터 설치	121
<표 4-7>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122
<표 4-8>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대수	122
<표 4-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시설	123
<표 4-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시설	123
<표 4-1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124
<표 4-1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전망	125
<표 4-13> 전북특별자치도 장래 교통약자 예측	125
<표 4-1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저상버스 현황	131
<표 4-15>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현행 대비 국가계획 비교	133
<표 4-16>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제4차 국가계획 충족 연간 대수	133

<표 4-17> 전북특별자치도 목표연도 저상버스 비율	133
<표 4-18> 저상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설문조사(전국)	134
<표 4-19> 배차간격 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134
<표 4-20> 저상버스 구조 비교	135
<표 4-21> 휠체어 승강설비	135
<표 4-22> 전북특별자치도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방안	137
<표 4-23>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급률 세부 현황	138
<표 4-2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 ..	139
<표 4-2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부족분	140
<표 4-26>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계획(2022~2026)	141
<표 4-27>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비교	142
<표 4-28>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추진방안	143
<표 4-29>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144
<표 4-30> 전북특별자치도 보행환경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145
<표 4-31> 보행환경의 지역(도)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146
<표 4-32>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 결과	153
<표 4-33>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 결과	153
<표 4-34>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 결과	156
<표 4-35> 전북특별자치도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161
<표 4-36> 전국 8개도 BF인증 현황	169
<표 4-37>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	170
<표 4-38> 이동지원센터 설치	171
<표 4-39> 추진계획	180
<표 4-40> 9개 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181
<표 4-41> 강원도 이동지원센터 이용실적	182
<표 4-42>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182
<표 4-43>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특이사항	183
<표 4-44>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185
<표 4-45>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186
<표 4-46> 광역이동지원센터 주요 사업내용	187
<표 4-47>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운영비 현황	188
<표 4-48>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콜수	188
<표 4-49> 광역이동지원센터 각 연도별 실적	189

<표 4-50> 시·군별 운행대수 및 운전원수	190
<표 4-51> 관내 및 관외 이용건수	190
<표 4-5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 유형별 이용현황	190
<표 4-53> 특별교통수단 차량근무 현황	191
<표 4-54> 4차 계획간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운행대수 계획	192
<표 4-55> 타 지자체 운전원 비율	193
<표 4-56>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현황	193
<표 4-57>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계획	193
<표 4-58> 전북특별자치도 우대용 교통카드 방안 제시	194
<표 4-59>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델별 비교	195
<표 4-60>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조례 현황	196
<표 5-1> 저상버스 확충 및 운영 사업비용	202
<표 5-2>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운영 사업비용	202
<표 5-3> 바우처 택시도입 및 운영 사업비용	202
<표 5-4>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 및 운영 사업비용	202
<표 5-5>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사업비용	203
<표 5-6>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비용	203
<표 5-7>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등) 사업비용	203
<표 5-8> 도로·보행 이동편의시설 개선 사업비용	203
<표 5-9>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용	204
<표 5-10>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권장 사업비용	204
<표 5-11>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및 매뉴얼 배포 사업비용	204
<표 5-12> 포용적 복지문화 조성 사업비용	204
<표 5-13> 연차별 투자계획	205
<표 5-14> 연차별 투자계획	206
<표 5-1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재정 자립도 현황	208
<표 5-16>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 비교	209
<표 6-1> 설문응답자 연령	218
<표 6-2> 설문응답자 성별	218
<표 6-3> 설문응답자 연령	219
<표 6-4> 교통약자 외출 시간대	219

<표 6-5> 교통약자 이용교통수단 (복수응답)	220
<표 6-6> 교통약자 외출 목적 (복수응답)	220
<표 6-7> 교통약자 외출시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221
<표 6-8> 교통약자 일주일 외출 빈도	221
<표 6-9> 교통수단 이용시 신체적 어려움	222
<표 6-10> 외출시 가장 큰 불편사항	223
<표 6-11> 보도(인도) 만족도	224
<표 6-12> 보도 이용시 불편사항	224
<표 6-13> 육교 만족도	225
<표 6-14> 횡단보도 만족도	227
<표 6-15> 횡단보도 이용시 불편사항	227
<표 6-16> 버스정류장 만족도	228
<표 6-17> 버스정류장 이용시 불편사항	229
<표 6-18>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만족도	230
<표 6-19>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용시 불편사항	230
<표 6-20> 여객터미널 이용 만족도	231
<표 6-21> 여객선 터미널 이용시 불편사항	232
<표 6-22>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	233
<표 6-23> 개선이 시급한 보행시설	233
<표 6-24>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	234
<표 6-25> 개선이 시급한 교통시설	234
<표 6-26> 교통약자 추진정책	235

그림 차례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4
<그림 1-2> 과업수행 절차	6
<그림 2-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15
<그림 2-2>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현황	19
<그림 2-3>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현황	20
<그림 2-4>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현황	21
<그림 2-5>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동반자 현황	22
<그림 2-6> 전국 지역 내 동일지역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3
<그림 2-7> 전국 지역 내 동일지역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4
<그림 2-8> 전국 도 지역 내 및 지역 간 교통약자 외출빈도	25
<그림 2-9> 전국 교통약자의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6
<그림 2-10>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비전 및 목표	73
<그림 2-1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1	74
<그림 2-12>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2	75
<그림 4-1>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	126
<그림 4-2>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130
<그림 4-3> 최적 배차 시스템 개념	134
<그림 4-4>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 사례 (국내 및 해외)	137
<그림 4-5> 전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142
<그림 4-6> 보행환경의 지역(도)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146
<그림 4-7> 전라북도 보행환경 문제점(사례)	147
<그림 4-8> 차량 진출입로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148
<그림 4-9> 보행섬 점자블럭 설치유형	149
<그림 4-10> 횡단보도 점형/선형 블럭 설치(예)	150
<그림 4-11> 점자블럭 및 음향신호기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150
<그림 4-12>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예시)	151
<그림 4-1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예시	152
<그림 4-14> 압구정 ICT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	152
<그림 4-15> 전자안내판 개선 사례	154
<그림 4-16> 교통약자 좌석 개선 사례	155

<그림 4-17>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전국 시도 설치율 비교	156
<그림 4-18> 무장애 버스정류장 개념	157
<그림 4-19> 무장애 버스정류장 승강장 길이	158
<그림 4-20> 휠체어승강장(대기장소)	158
<그림 4-21> 승강장과 차량간격 최소화 방안	159
<그림 4-22> 버스승강장 점자블럭 설치	159
<그림 4-23> 독립형 버스안내단말기(BIT)설치위치	160
<그림 4-2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160
<그림 4-25>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사례	162
<그림 4-26>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예시	164
<그림 4-27> 지방 교통약자 증진계획 수립 절차	164
<그림 4-28> 각 국가의 보행로	166
<그림 4-29> 각 국가의 안내시설	166
<그림 4-30> 각 국가의 횡단시설	167
<그림 4-31> 각 국가의 매개시설 접근로(①②일본, ③④독일, ⑤⑥한국)	168
<그림 4-32> 장애인이 참여한 BF인증 사례	172
<그림 4-33> 전라남도 도서지역 교통약자 콜택시	173
<그림 4-34> 인천 중구 소무의도 교통약자 이동 보조차량	173
<그림 4-35> 전북특별자치도 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175
<그림 4-3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교육 계획	176
<그림 4-37> 서울교통공사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예시	178
<그림 4-38>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테스트	179
<그림 4-39>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연계에 따른 이용편의성 개선	180
<그림 4-40> 광역이동지원센터 간 정보연계를 통한 환승편의성 개선	180
<그림 4-41> 카드종류 예시	194
<그림 4-42> 이용안내 예시	194
<그림 4-43>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계획(안)	195
<그림 4-44> 설치기준 정비 지원 방향	196
<그림 6-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1	213
<그림 6-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2	214
<그림 6-3>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3	215
<그림 6-4>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4	216
<그림 6-5>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5	217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과업의 범위

1.3 과업의 법적근거

1.4 과업수행 추진체계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 수립의 배경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및 수단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장래의 교통약자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은 교통약자 및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라북민의 수단,시설,보행환경 등을 이용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계획임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2019~2023)에 대해 제시된 교통약자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국토교통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서 수립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1.1.2 과업수립의 목적

- 본 계획에서는 국가계획 및 시·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과 도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과 전북특별자치도내 설치되어있는 보행환경,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실태자료를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관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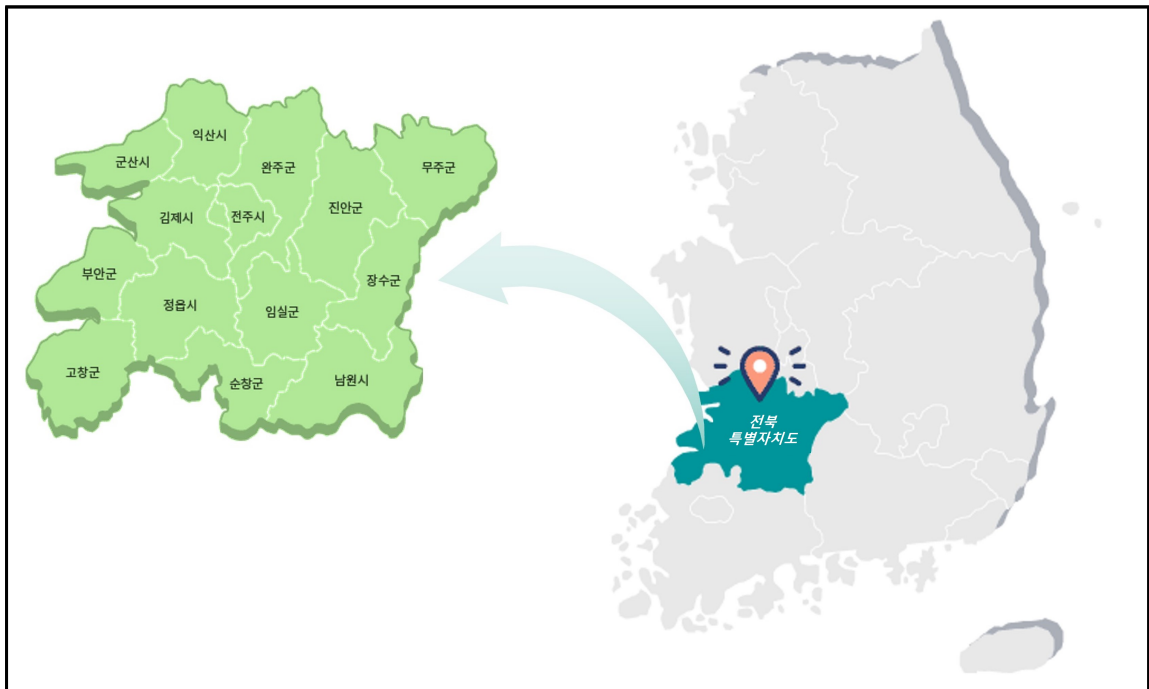
1.2 과업의 범위

1.2.1 시간적 범위 및 공간적범위

- 기준년도 : 2022년
- 목표연도 : 2026년
- 계획기간 : 2022년 ~ 2026년(5개년)

1.2.2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전지역(14개 시·군)으로 설정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1.2.3 내용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분석
-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수용
- 시·군별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분석과 시·군 지원
-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동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도입·운영 지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및 개선사항
- 소요자원 및 자원조달방안

1.3 과업의 법적근거

가.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4. 2. 17.』 제7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 2항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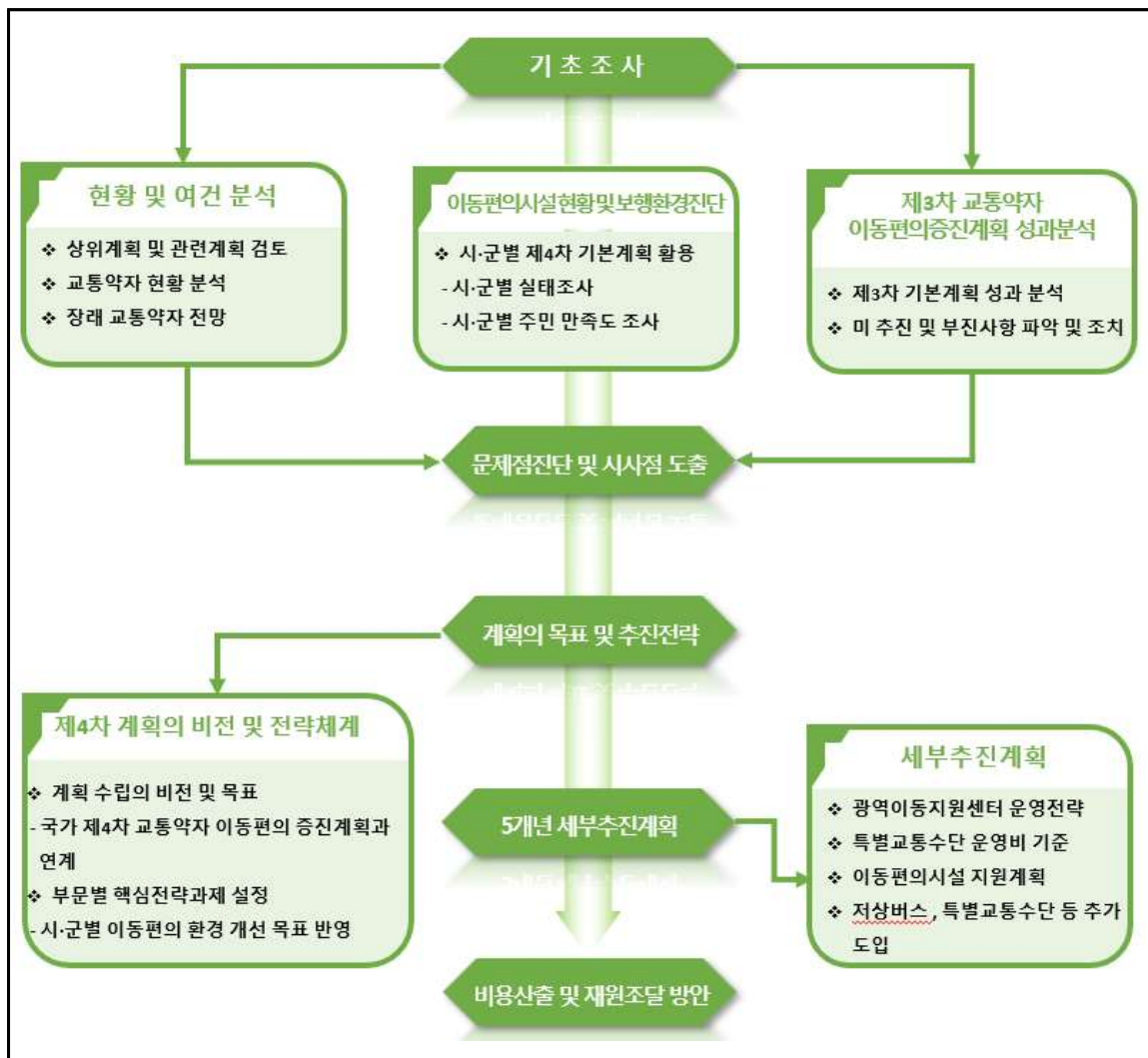
<표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법적근거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u> 2. <u>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u> 3. <u>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u>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1.4 과업수행 추진체계

1.4.1 수행절차

-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수립하였음
- 기초조사
- 문제점진단 및 시사점 도출
-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5개년 세부추진계획
- 비용산출 및 자원조달 방안



<그림 1-2> 과업수행 절차

1.4.2 추진체계

- 본 계획의 추진체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국비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연계, 고유, 관리, 협력을 추진
 - 연계 :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추진
 - 고유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체 추진
 - 관리 : 시·군·민간에 도비를 지원 및 관리하여 추진
 - 협력 :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제 2 장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2.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2.2 교통약자 교통수단 및 시설

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4 상위계획 검토

제 2 장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2.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2.1.1 인구현황

가. 전국 인구 현황

- 2023년 기준 전국 인구는 51,325,329명으로 경기도가 13,630,821명으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386,52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 전국 인구현황(2023년)

(단위 : 명)

구분	인구(명)			세대수	세대당인구(명)
	합계	남자	여자		
서울특별시	9,386,034	4,540,031	4,846,003	4,469,417	2.15
부산광역시	3,293,362	1,605,431	1,687,931	1,564,588	2.10
대구광역시	2,374,960	1,166,803	1,208,157	1,094,148	2.10
인천광역시	2,997,410	1,499,016	1,498,394	1,350,912	2.17
광주광역시	1,419,237	700,896	718,341	655,433	2.22
대전광역시	1,442,216	719,292	722,924	680,261	2.17
울산광역시	1,103,661	567,153	536,508	490,690	2.12
세종특별자치시	386,525	192,524	194,001	160,835	2.25
경기도	13,630,821	6,855,895	6,774,926	5,978,724	2.40
강원특별자치도	1,527,807	768,449	759,358	760,635	2.28
충청북도	1,593,469	810,448	783,021	779,967	2.01
충청남도	2,130,119	1,091,570	1,038,549	1,035,449	2.04
전북특별자치도	1,754,757	873,419	881,338	861,193	2.06
전라남도	1,804,217	909,548	894,669	911,442	2.04
경상북도	2,554,324	1,290,298	1,264,026	1,282,500	1.98
경상남도	3,251,158	1,636,987	1,614,171	1,525,502	1.99
제주특별자치도	675,252	337,976	337,276	313,155	2.13
계	51,325,329	25,565,736	25,759,593	23,914,851	2.16

출처 : 전국 인구통계(kosis.kr) 2023년 12월 기준

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현황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754,757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전주시가 642,727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고 장수군이 20,983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현황 인구현황(2023년)

(단위 : 명, %)

구분	인구(명)			세대수	세대당인구(명)
	합계	남자	여자		
전주시	642,727	315,709	327,018	296,394	2.17
군산시	259,980	131,719	128,261	123,996	2.10
익산시	270,036	134,381	135,655	130,197	2.07
정읍시	103,620	51,624	51,996	54,734	1.89
남원시	76,781	37,674	39,107	39,839	1.93
김제시	81,430	40,631	40,799	43,625	1.87
완주군	97,827	50,192	47,635	48,652	2.01
진안군	24,465	12,497	11,968	13,593	1.80
무주군	23,251	11,629	11,622	13,008	1.79
장수군	20,983	10,535	10,448	11,542	1.82
임실군	25,956	13,354	12,602	14,916	1.74
순창군	26,764	13,161	13,603	14,332	1.87
고창군	51,750	25,817	25,933	28,733	1.80
부안군	49,187	24,496	24,691	27,632	1.78
계	1,754,757	873,419	881,338	861,193	2.04

출처 : 전국 인구통계(kosis.kr) 2023년 12월 기준

2.1.2 교통약자 현황

가. 교통약자 구분 기준

-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2조 1항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상위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 2022.09)」의 교통약자 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2-3> 교통약자 기준

(단위 : 명, %)

구분	내용
교통약자	•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영유아동반자로 구성
장애인	• 장애 정도별 심하지 않은 경와우 심한 경우로 구분
고령자	• 65세 이상
임산부	• 출생 인구에 대한 통계가 없는 시·군의 경우 해당연도 출생아 인구 또는 당해연도 0세 인구로 추정
어린이	• 6~12세인구
영유아를 동반한자	• 0~5세(영유아) 인구로 추정

주 :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으로 정의되나, 통계적 추출이 어려워 이듬해 출생아수 또는 '0세' 인구로 추정

나. 전국 교통약자 현황

- 2023년 기준 전국 교통약자는 15,860천명으로 총인구의 30.9%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36.0%로 확인되었음

<표 2-4> 전국 교통약자 현황(2023년)

(단위 : 천명, %)

구분	총인구	교통약자 인구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명)	(%)					
서울특별시	9,386	2,665	28.4	167	1,734	38	463	263
부산광역시	3,293	1,108	33.6	73	745	13	182	95
대구광역시	2,375	748	31.5	57	466	9	142	73
인천광역시	2,997	866	28.9	69	497	14	182	103
광주광역시	1,419	418	29.4	34	234	6	95	49
대전광역시	1,442	424	29.4	35	245	7	88	49
울산광역시	1,104	319	28.9	25	176	5	75	38
세종특별자치시	387	112	29.0	6	43	3	39	22
경기도	13,631	3,863	28.3	278	2,123	68	894	501
강원특별자치도	1,528	543	35.6	41	367	7	81	47
충청북도	1,593	530	33.3	44	332	7	95	52
충청남도	2,130	726	34.1	57	455	9	134	72
전북특별자치도	1,755	632	36.0	52	423	6	101	49
전라남도	1,804	687	38.1	53	471	8	101	54
경상북도	2,554	929	36.4	70	630	10	143	75
경상남도	3,251	1,075	33.1	84	670	13	209	100
제주특별자치도	675	215	31.8	17	121	3	49	25
계	51,325	15,860	30.9	1,162	9,730	226	3,073	1,668

출처 : 전국 인구통계(kosis.kr) 2023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2023년 기준)
 주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중 0~12세와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제외, 2023년 기준

2.1.3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통계

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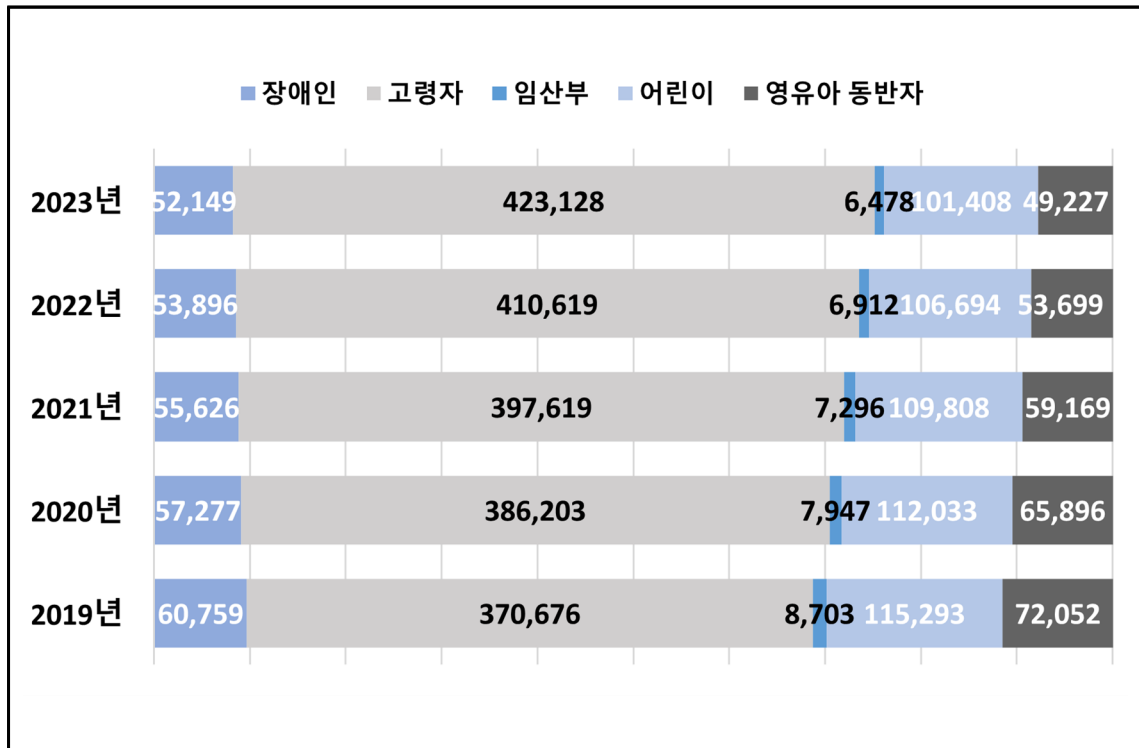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인구는 '23년 기준 725,836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36.0%로 나타났음

<표 2-5>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북특별 자치도 인구 ¹⁾	교통약자		장애인 ²⁾	고령자 ³⁾	임산부 ⁴⁾	어린이 ⁵⁾	영유아 동반자 ⁶⁾
		소계	구성비					
2019년	1,818,917	627,483	34.5	60,759	370,676	8,703	115,293	72,052
2020년	1,804,104	629,356	34.9	57,277	386,203	7,947	112,033	65,896
2021년	1,786,855	629,518	35.2	55,626	397,619	7,296	109,808	59,169
2022년	1,769,607	631,820	35.7	53,896	410,619	6,912	106,694	53,699
2023년	1,754,757	632,390	36.0	52,149	423,128	6,478	101,408	49,227

주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 12
 주2)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중 0~12세와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제외, 2023. 12
 주3)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65세 이상인구현황 2023. 12
 주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0세 인구, 2023. 12
 주5)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만6세~12세 미만 인구현황, (어린이정의 : 만13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 2023. 12
 주6)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영유아 정의 :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영유아 보육법」제2조 1항)으로 대체, 2023. 12
 출처 : 전국 인구통계(kosis.kr) 2023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2023년 기준)



<그림 2-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나.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전주시, 군산시 및 익산시 등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구가 밀집한 시·군 외 지역에 교통약자 비율이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2023년)

(단위 : 명, %)

구 분	인구 수	교통약자						
		인구수	비율	장애인 (중복제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전주시	642,727	194,259	30.2	15,796	111,617	20,794	43,419	2,633
군산시	259,980	89,646	34.5	7,353	57,042	7,700	16,590	961
익산시	270,036	93,258	34.5	8,388	62,046	6,905	15,050	869
정읍시	103,620	43,362	41.8	3,711	31,905	2,413	5,010	323
남원시	76,781	32,750	42.7	2,786	24,126	1,903	3,692	243
김제시	81,430	36,609	45.0	2,994	27,950	1,926	3,333	406
완주군	97,827	36,894	37.7	3,383	24,192	3,059	5,836	424
진안군	24,465	11,758	48.1	903	9,433	559	774	89
무주군	23,251	10,751	46.2	836	8,554	380	937	44
장수군	20,983	10,074	48.0	710	8,030	426	845	63
임실군	25,956	12,927	49.8	972	10,357	643	859	96
순창군	26,764	12,322	46.0	869	9,779	582	1016	76
고창군	51,750	24,826	48.0	1,765	19,839	1,008	2,085	129
부안군	49,187	22,954	46.7	1,683	18,258	929	1,962	122
합계	1,754,757	632,390	36.0	52,149	423,128	49,227	101,408	6,478

주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 12
 주2)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중 0~12세와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제외, 2023. 12
 주3)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65세 이상인구현황 2023. 12
 주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출생아수로 대체, 2023. 12
 주5)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만6세~12세 미만 인구현황, (어린이정의 : 만13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 2023. 12
 주6)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영유아 정의 :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영유아 보육법」제2조 1항)으로 대체, 2023. 12
 출처 : 전국 인구통계(kosis.kr) 2023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2023년 기준)

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등록현황

- 2023년 말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 중 장애인수는 130,18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체장애인이 60,33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9~2023년 장애인 등록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0.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0.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전 라 북 도	지체	65,113	63,940	62,913	62,014	60,330	-1.89
	시각	11,422	11,256	11,188	11,058	10,844	-1.29
	청각·언어	20,033	20,969	21,612	22,352	22,542	2.99
	지적	12,344	12,482	12,642	12,823	12,848	1.01
	뇌병변	12,015	11,814	11,617	11,338	10,947	-2.30
	자폐성	785	841	933	1,060	1,210	11.4
	정신	5,458	5,477	5,477	5,469	5,458	-
	신장	3,101	3,319	3,486	3,661	3,797	5.19
	심장	158	154	155	159	146	-1.96
	호흡기	355	358	354	348	330	-1.81
	간	442	466	488	509	521	4.20
	안면	111	115	122	124	124	2.81
	장루·요루	597	592	644	682	683	3.42
	간질	430	424	426	417	409	-1.24
	소계	132,364	132,207	132,057	132,014	130,189	-0.41
전 국	지체	1,223,135	1,207,368	1,191,462	1,176,291	1,153,501	-1.45
	시각	253,055	252,324	251,620	250,767	248,360	-0.47
	청각·언어	398,579	418,180	434,813	448,573	455,684	3.40
	지적	212,936	217,108	221,557	225,708	229,780	1.92
	뇌병변	252,188	250,407	248,308	245,477	240,546	-1.17
	자폐성	28,678	30,802	33,650	37,603	42,744	10.49
	정신	102,980	103,525	104,214	104,424	104,197	0.29
	신장	92,408	97,530	102,135	105,842	108,623	4.12
	심장	5,266	5,233	5,166	5,078	4,933	-1.62
	호흡기	11,522	11,544	11,541	11,451	11,029	-1.09
	간	13,154	13,808	14,433	15,066	15,634	4.41
	안면	2,673	2,677	2,712	2,725	2,757	0.78
	장루·요루	15,290	15,427	16,012	16,779	17,117	2.86
	간질	7,054	7,093	7,077	7,076	6,991	-0.22
	소계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2,641,896	0.22

출처 :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유형별등록현황(보건복지부), 2023. 12

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장애인 정도별 등록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별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심한장애는 연평균 2.15%~4.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 또한 2.30%~6.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 시·군별 장애인 정도별 등록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심한장애	전주시	8,238	7,792	7,685	7,578	7,553	-2.15
	군산시	3,972	3,690	3,600	3,538	3,454	-3.43
	익산시	5,170	4,841	4,754	4,632	4,503	-3.39
	정읍시	2,314	2,179	2,127	2,090	2,056	-2.91
	남원시	1,782	1,678	1,608	1,573	1,512	-4.02
	김제시	1,900	1,765	1,729	1,695	1,641	-3.60
	완주군	1,939	1,810	1,792	1,780	1,777	-2.16
	진안군	572	539	521	523	497	-3.45
	무주군	460	437	431	412	403	-3.25
	장수군	402	383	373	369	352	-3.27
	임실군	604	579	564	567	551	-2.27
	순창군	544	521	511	494	479	-3.13
	고창군	1,119	1,062	1,035	1,012	970	-3.51
	부안군	1,056	1,006	968	934	919	-3.41
	소계	30,072	28,282	27,698	27,197	26,667	-2.96
심하지 않은장애	전주시	9,627	13,698	8,959	8,636	8,388	-3.39
	군산시	4,779	4,499	4,314	4,092	3,899	-4.96
	익산시	4,769	4,497	4,310	4,096	3,885	-5.00
	정읍시	2,030	1,924	1,845	1,760	1,655	-4.98
	남원시	1,543	1,468	1,399	1,316	1,265	-4.85
	김제시	1,703	1,606	1,488	1,409	1,353	-5.59
	완주군	1,763	1,672	1,619	1,595	1,606	-2.30
	진안군	477	444	439	426	406	-3.95
	무주군	515	488	489	475	433	-4.24
	장수군	467	429	414	393	358	-6.43
	임실군	528	489	469	451	421	-5.50
	순창군	518	459	440	411	390	-6.85
	고창군	995	930	887	835	795	-5.46
	부안군	973	891	856	804	764	-5.87
	소계	30,687	28,995	27,928	26,699	25,618	-4.41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중 0~12세와 65세 이상의 인구수 제외, 2023. 12

마.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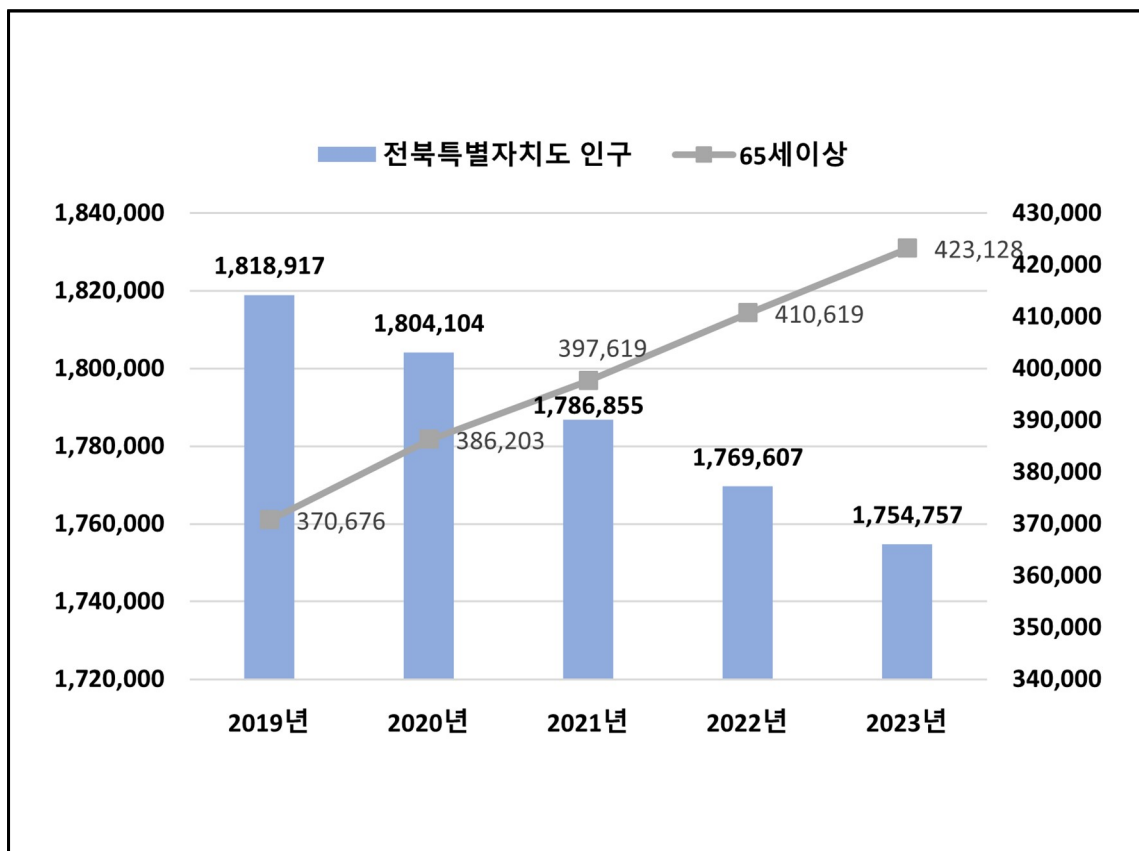
-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는 '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의 24.11%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자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9>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인구추이

(단위 : 명, %)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65세이상	비중
2019년	1,818,917	370,676	20.38
2020년	1,804,104	386,203	21.41
2021년	1,786,855	397,619	22.25
2022년	1,769,607	410,619	23.20
2023년	1,754,757	423,128	24.11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65세 이상인구현황 2023. 12



<그림 2-2>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현황

바. 전북특별자치도 임신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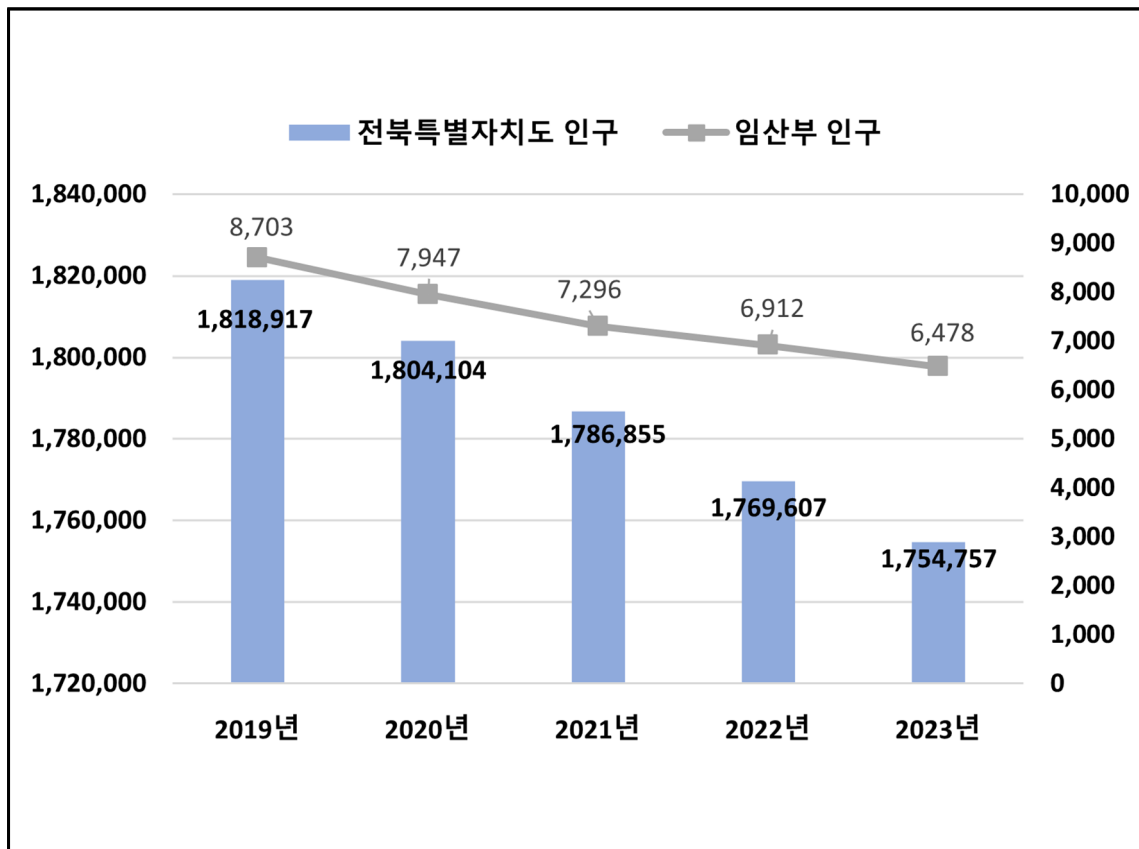
- 임신부 인구는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의 0.37%로 출산율 저하로 향후에도 임신부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전북특별자치도 임신부 인구추이

(단위 : 명, %)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임산부 인구	비중
2019년	1,818,917	8,703	0.48
2020년	1,804,104	7,947	0.44
2021년	1,786,855	7,296	0.41
2022년	1,769,607	6,912	0.39
2023년	1,754,757	6,478	0.37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0세인구로 대체, 2023. 12



<그림 2-3> 전북특별자치도 임신부 현황

사.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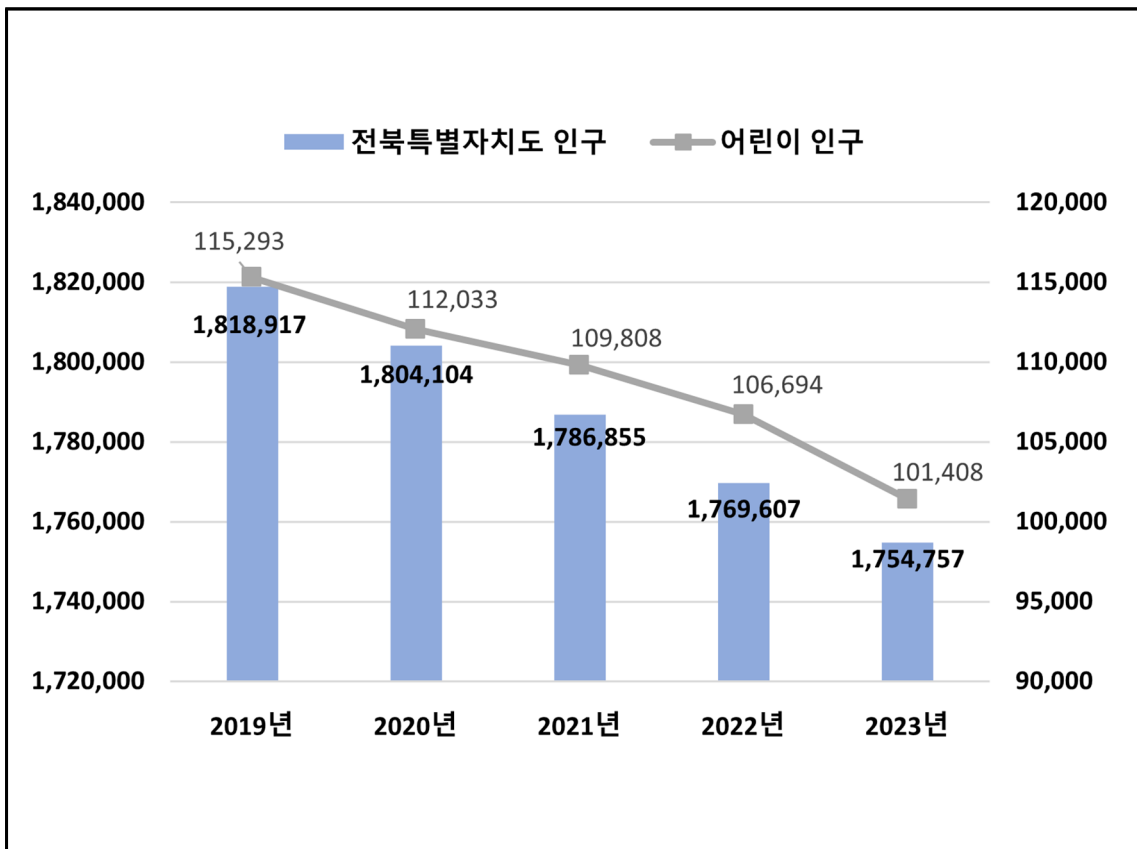
- 6~12세의 어린이 인구는 '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의 5.78%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인구는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1>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인구추이

(단위 : 명, %)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어린이 인구	비중
2019년	1,818,917	115,293	6.34
2020년	1,804,104	112,033	6.21
2021년	1,786,855	109,808	6.15
2022년	1,769,607	106,694	6.03
2023년	1,754,757	101,408	5.78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만6세~12세 미만 인구현황



<그림 2-4>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현황

아.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동반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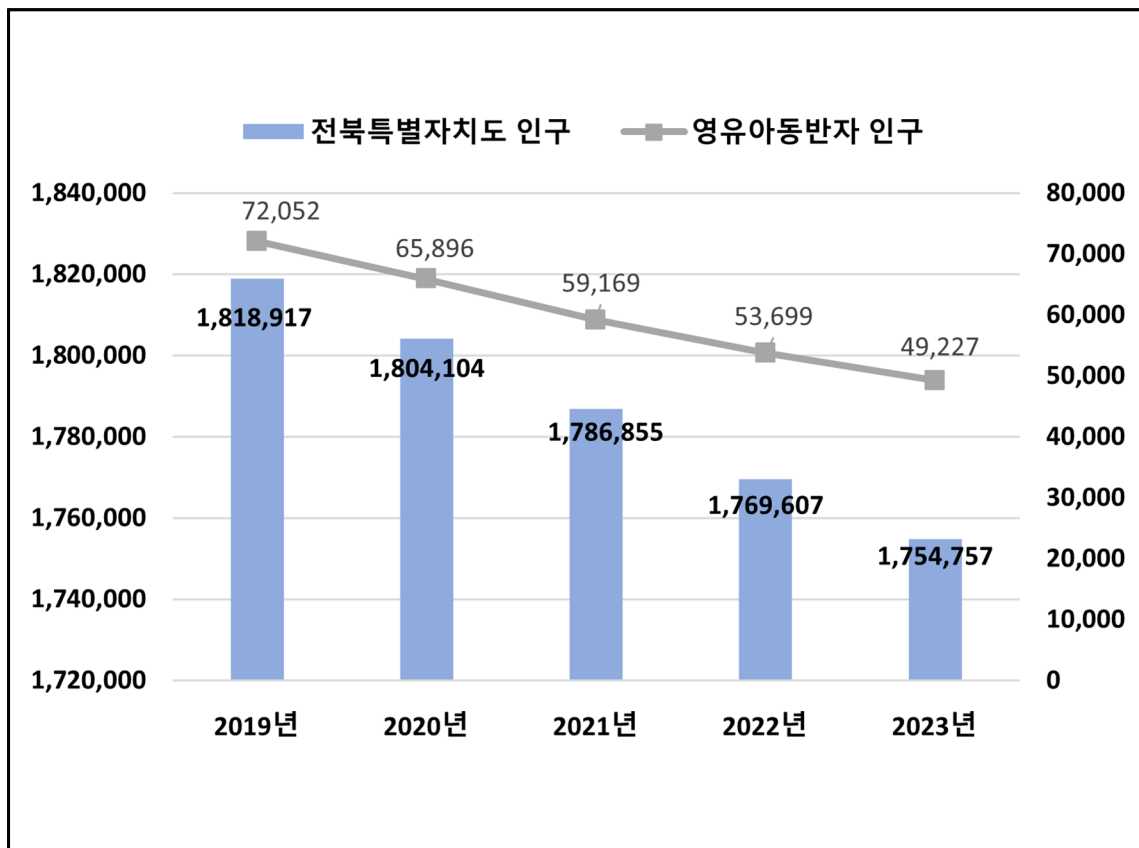
- 영유아 동반자 인구는 '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의 2.81%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2>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인구추이

(단위 : 명, %)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영유아동반자 인구	비중
2019년	1,818,917	72,052	3.96
2020년	1,804,104	65,896	3.65
2021년	1,786,855	59,169	3.31
2022년	1,769,607	53,699	3.03
2023년	1,754,757	49,227	2.81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영유아 정의 : 만 7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영유아 보육법」제2조 1항)으로 대체, 2023. 12



<그림 2-5>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동반자 현황

2.1.4 전국 교통약자 이동실태

가. 전국 교통약자 이동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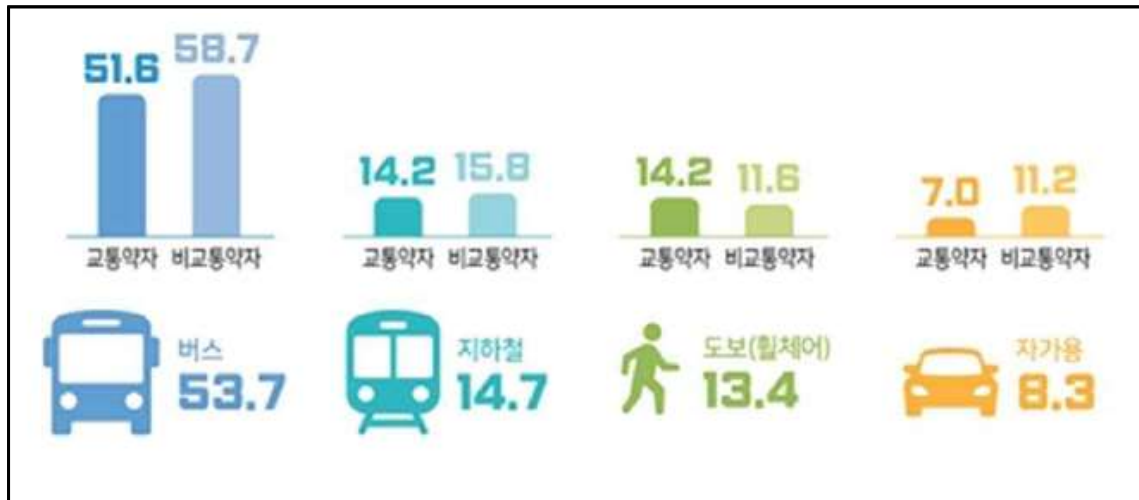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지역 내 이동의 경우, 교통약자 및 비교통약자 모두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자 및 임산부 대부분은 버스를 이용하나, 시각·지체장애인의 이용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3> 전국 지역 내 동일 지역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

구 분	버스	지하철	걸어서 휠체어	자가용	장애인 택시	특별 교통수단	무료 셔틀버스	택시	기타
전체	53.7	14.7	13.4	8.3	3.1	2.1	2.5	2.0	0.2
일반인	58.7	15.8	11.6	11.2	0.1	0.3	1.8	0.2	0.3
교통약자	51.6	14.2	14.2	7.0	4.4	2.9	2.8	2.7	0.1
지체장애인	38.9	15.4	12.3	7.0	8.1	11.9	0.9	5.5	-
시각장애인	34.6	7.2	13.5	4.3	20.2	2.4	5.3	12.5	-
청각장애인	50.8	14.1	18.6	5.1	6.2	0.6	1.7	2.8	-
장애인	40.4	13.1	13.9	6.0	10.7	7.1	2.1	6.7	-
임산부	60.7	13.3	8.6	12.9	-	-	4.5	-	-
고령자	58.2	15.8	17.3	5.1	0.4	0.1	2.6	0.1	0.4

주 : 특별교통수단 일반인 탑승 수치는 장애인 동승자임
출처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 10」



<그림 2-6> 전국 지역 내 동일지역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지역 간 이동의 경우, 교통약자 및 비교통약자 모두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고속·시외버스 순으로 조사되었음
 -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간 고속·시외버스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24.7%), 장애인(10.7%), 임산부(7.4%)로 장애인과 임산부의 고속·시외버스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전국 지역 간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단위 : %)

구 분	승용차	고속 / 시외버스	기차	장애인 택시	비행기	특별 교통수단	택시	여객선	기타
전체	65.7	16.5	9.3	2.4	1.6	1.5	0.8	0.3	1.9
일반인	64.7	18.9	10.7	0.3	2.2	0.0	0.7	0.5	2.1
교통약자	66.2	15.5	8.7	3.3	1.4	2.1	0.8	0.2	1.8
지체장애인	59.8	10.6	8.7	5.7	0.7	8.7	0.5	-	5.2
시각장애인	67.7	7.1	5.6	14.1	1.0	2.0	1.5	-	1.0
청각장애인	65.5	14.9	9.2	6.9	0.6	0.6	1.1	-	1.1
장애인	63.0	10.7	8.1	8.1	0.8	5.3	0.9	-	3.3
임산부	87.9	7.4	3.2	-	0.7	-	-	0.2	0.5
고령자	57.9	24.7	12.3	0.1	2.4	-	1.2	0.4	1.0

주 : 특별교통수단 일반인 탑승 수치는 장애인 동승자임
출처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 10」



<그림 2-7> 전국 지역 내 동일지역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나.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실태

-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내, 또는 타지역 간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다음과 같음

<표 2-15>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외출빈도

(단위 : %)

구분	매일	주간				비고
		5~6회	3~4회	1~2회	거의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4.0	78.5	12.1	4.7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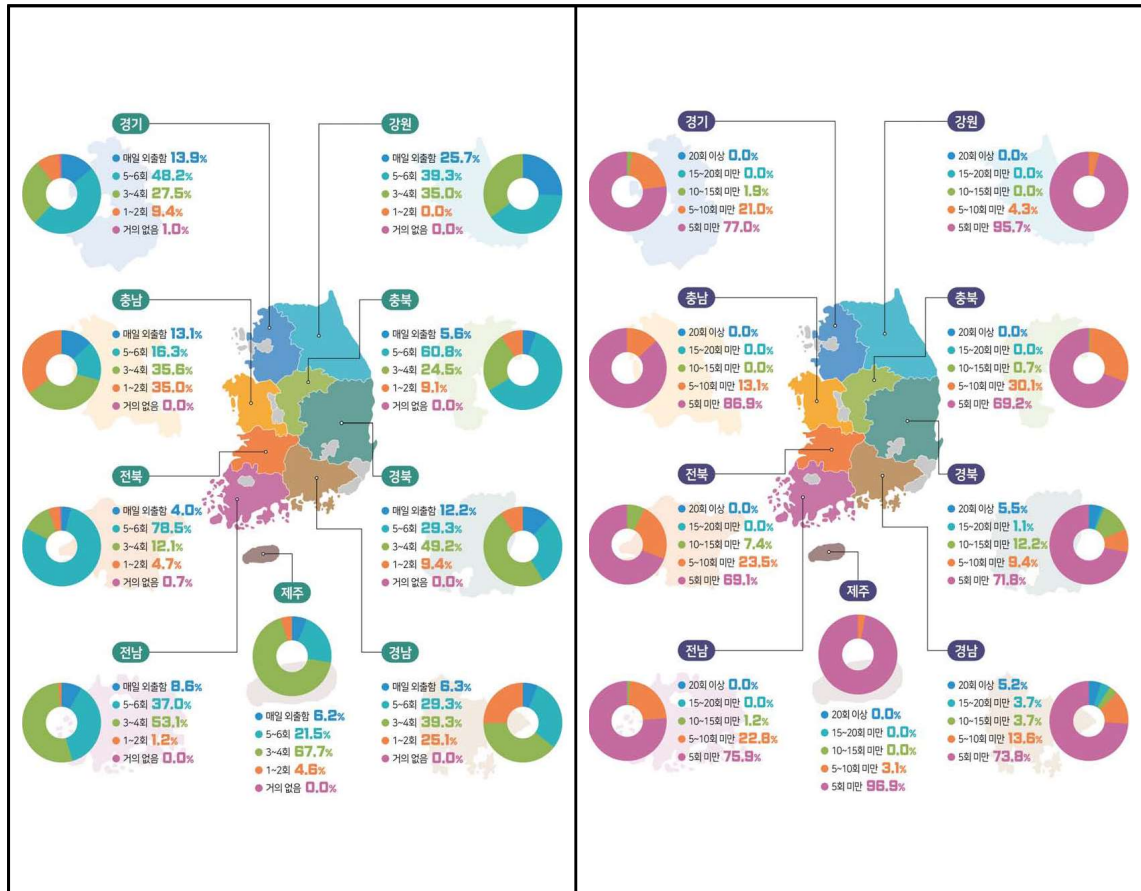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표 2-1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외출 빈도

(단위 : %)

구분	월간				비고
	20회이상	15~20회미만	5~10회미만	5회미만	
도외 타지역 이동시	5.2	3.7	3.7	73.8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그림 2-8> 전국 도 지역 내 및 지역 간 교통약자 외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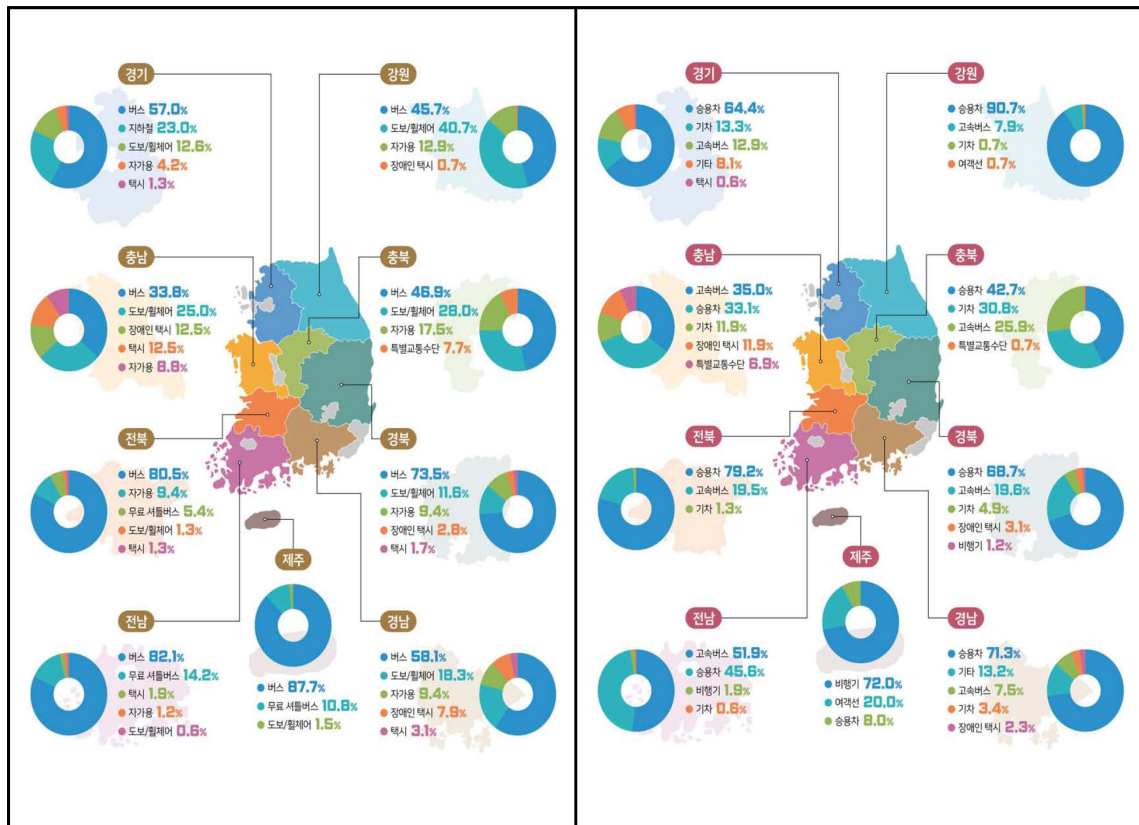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내, 또는 타지역 간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음

<표 2-17>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

구분	버스	자가용/승용차	무료셔틀버스	도보/휠체어	택시	고속버스	기차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80.5	9.4	5.4	1.3	1.3	-	-	-
도외 타지역 이동시	-	79.2	-	-	-	19.5	1.3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 전북특별자치도내 이동시 교통약자는 버스로 이용하는 빈도가 80.5%로 가장 많으며, 도외 타지역 이동시에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7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9> 전국 교통약자의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2 교통약자 교통수단 및 시설

2.2.1 교통약자 교통수단(버스)

가. 전국 버스현황

- 전국의 버스차량 현황은 2021년 기준 총 50,430대가 운행중이며, 이중 시내버스가 35,355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내버스 818대, 농어촌버스 152대, 마을버스 37대로 나타났으며, 시외버스가 434대, 고속버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8> 전국 버스 차량대수 현황분석(2021년 기준)

(단위 : 대)

구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계
합계	35,335	2,067	5,592	5,669	1,767	50,430
서울특별시	7,395	-	1,576	-	-	8,971
부산광역시	2,517	-	571	-	-	3,088
대구광역시	1,623	-	-	-	-	1,623
인천광역시	2,204	-	18	-	-	2,222
광주광역시	999	-	72	-	-	1,071
대전광역시	1,015	-	18	-	-	1,033
울산광역시	848	-	46	-	-	894
세종특별자치도	268	-	31	-	-	299
경기도	11,007	147	2,817	1,507	829	16,307
강원특별자치도	511	207	130	581	97	1,526
충청북도	637	208	8	359	75	1,287
충청남도	902	262	33	653	68	1,918
전북특별자치도	818	152	37	434	-	1,441
전라남도	737	583	17	463	509	2,309
경상북도	1,285	283	57	629	30	2,284
경상남도	1,739	225	117	1,043	159	3,283
제주특별자치도	830	-	44	-	-	874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나.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년 기준 버스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36대로 중형버스 234대 대형버스 802대로 조사되었음

<표 2-19> 전북특별자치도 버스현황(2023년 기준)

(단위 : 대)

구분	중형버스	대형버스	계
합계	234	802	1,036
전주시	29	419	448
군산시	60	60	120
익산시	-	164	164
정읍시	52	1	53
남원시	34	10	44
김제시	24	19	43
완주군	17	-	17
진안군	4	16	20
무주군	3	8	11
장수군	5	4	9
임실군	2	21	23
순창군	2	13	15
고창군	2	31	33
부안군	-	36	36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2.2 저상버스 현황

가. 전국 저상버스 현황

-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11,073대(보급률 25.8%)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는 10,828대(보급률 30.6%), 농어촌버스는 28대(보급률 1.4%), 마을버스는 217대(보급률3.9%)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내버스가 22.9%, 농어촌버스는 6.6%의 보급률을 나타냄
- <표 2-20> 전국 저상버스 보급현황(2021년 기준)

(단위 : 대, %)

구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계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합계	10,828	30.6	28	1.4	217	3.9	11,073	25.8
서울특별시	4,412	59.7	-	-	50	3.2	4,462	49.7
부산광역시	728	28.9	-	-	-	-	728	23.6
대구광역시	608	37.5	-	-	-	-	608	37.5
인천광역시	580	26.3	-	-	-	-	580	26.1
광주광역시	297	29.7	-	-	-	-	297	27.7
대전광역시	339	33.4	-	-	-	-	339	32.8
울산광역시	103	12.1	-	-	-	-	103	11.5
세종특별자치도	100	37.3	-	-	-	-	100	33.4
경기도	2,112	19.2	6	4.1	161	5.7	2,279	16.3
강원특별자치도	203	39.7	6	2.9	-	-	209	24.6
충청북도	137	21.5	2	1.0	-	-	139	16.3
충청남도	89	9.9	-	-	-	-	89	7.4
전북특별자치도	187	22.9	10	6.6	-	-	197	19.6
전라남도	124	16.8	-	-	-	-	124	9.3
경상북도	222	17.3	-	-	-	-	222	13.7
경상남도	439	25.2	4	1.8	6	5.1	449	21.6
제주특별자치도	148	17.8	-	-	-	-	148	16.9

주 : 저상버스 보급률 = 저상버스 대수 / 버스대수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나.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도입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율은 25.4%로 나타났으며 전주시 35.3% 군산시 47.5%, 익산시 25.0%, 정읍시 5.7%, 부안군 11.1%, 나머지 시·군은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1> 전북특별자치도 버스현황(2023년 기준)

(단위 : 대, %)

구분	버스대수	저상버스	도입률(%)
합계	1,036	263	25.4
전주시	448	158	35.3
군산시	120	57	47.5
익산시	164	41	25.0
정읍시	53	3	5.7
남원시	44	-	-
김제시	43	-	-
완주군	17	-	-
진안군	20	-	-
무주군	11	-	-
장수군	9	-	-
임실군	23	-	-
순창군	15	-	-
고창군	33	-	-
부안군	36	4	11.1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다.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도입유형

-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유형은 CNG가 124대로 가장 많으며, 수소가 95대, 전기 44대순으로 나타났음

<표 2-22> 도내 지역별 저상버스 운영현황

구분		전체대수(저상버스 포함)					저상버스				
		계	디젤	CNG	전기	수소	계	디젤	CNG	전기	수소
전북 소계	시내버스	856	226	491	44	95	263		124	44	95
	농어촌버스	153	153	-	-	-	-	-	-	-	-
	마을버스	27	15	-	12	-	-	-	-	-	-
총 계		1036	394	491	56	95	263	-	124	44	95
전주시	시내버스	434	56	288	-	90	158	-	68	-	90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14	2	-	12	-	-	-	-	-	-
군산시	시내버스	114	1	78	35	0	57	-	22	35	-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6	6	-	-	-	-	-	-	-	-
익산시	시내버스	164	32	125	6	1	41	-	34	6	1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정읍시	시내버스	53	50	-	3	-	3	-	-	3	-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남원시	시내버스	44	44	-	-	-	-	-	-	-	-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김제시	시내버스	43	43	-	-	-	-	-	-	-	-
	농어촌버스	-	-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완주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10	10	-	-	-	-	-	-	-	-
	마을버스	7	7	-	-	-	-	-	-	-	-
진안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20	20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무주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11	11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장수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9	9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임실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23	23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순창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15	15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고창군	시내버스	-	-	-	-	-	-	-	-	-	-
	농어촌버스	33	33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부안군	시내버스	4	-	-	-	4	4	-	-	-	4
	농어촌버스	32	32	-	-	-	-	-	-	-	-
	마을버스	-	-	-	-	-	-	-	-	-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2.3 특별교통수단

가. 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불편을 심하게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목표연도까지 전 지자체의 법정기준 보급대수 84% 달성을 목표로 하고있음
- 기존 법정대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개정전)에 의하여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의하고 있음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써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다른수단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법정운영 대수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체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중복 이용이 가능하면 법정운영 대수 산정을 제외하지 않음
- 2021년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3,639대로 법정대수 4,326대 대비 86.0%의 보급률로 나타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 국토교통부」의 목표치(84.0%)에 도달하였음
- 전국 9개도에서 경기도 및 경상남도가 법정대수 대비 112.7%, 107.3%로 100%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임차(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을 89개 지자체(특별·광역시 : 8개도시, 기초지자체 : 81개 시·군)에서 2021년 기준 총 24,473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체 특별교통수단중 바우처택시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3> 전국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도입현황(2021년 기준)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대수 산정 보행상 중증 장애인 수(인)	법정 기준 대수 (대)	운영 대수 (대)	보급률 (%)	소계 (대)	임차 택시 (대)	바우처 택시 (대)	시각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차량 (대)	기타 (대)
서울특별시	108,655	725	662	85.8	13,041	76	12,807	158	-
부산광역시	47,824	319	206	64.6	4,700	-	4,700	-	-
대구광역시	32,253	216	163	75.5	280	-	280	-	-
인천광역시	38,002	254	169	66.5	300	-	300	-	-
광주광역시	19,187	128	116	90.6	92	92	-	-	-
대전광역시	20,063	134	96	71.6	240	90	150	-	-
울산광역시	13,397	90	76	84.4	72	21	37	11	3
세종시	3,216	22	21	95.5	11	-	-	-	11
경기도	151,686	1,027	1,157	112.7	3,537	63	3,421	39	14
강원 특별자치도	27,727	195	149	76.4	1,784	22	1,736	15	11
충청북도	26,173	180	116	64.4	96	23	55	9	9
충청남도	34,453	236	163	69.1	33	-	20	13	-
전북특별 자치도	34,245	236	192	81.4	60	30	-	26	4
전라남도	35,668	247	179	72.5	115	11	89	15	-
경상북도	45,871	317	214	67.5	112	-	93	13	6
합계	638,420	4,326	3,639		24,473	428	23,688	299	58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도입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도입현황은 2023년 기준 233대로 나타났음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 국토교통부」의 기준목표치는 달성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2024. 1. 1.』이 개정되어 법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부족해진 사항임

<표 2-24>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대수산정 보행상 중증 장애인수(인)	법정 기준 대수 (대)	운행 대수 (대)	보급률 (%)	소계 (대)	임차 택시 (대)	바우처 택시 (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대)	기 타 (대)
합계	34,730	275	233	84.7	48	48	-	-	-
전주시	9,099	61	62	101.6	20	20	-	-	-
군산시	4,593	31	31	100.0	8	8	-	-	-
익산시	5,943	40	40	100.0	6	6	-	-	-
정읍시	2,677	18	18	100.0	4	4	-	-	-
남원시	1,943	19	13	68.4	1	1	-	-	-
김제시	2,381	24	16	66.7	6	6	-	-	-
완주군	2,156	22	14	63.6	-	-	-	-	-
진안군	635	6	4	66.7	-	-	-	-	-
무주군	560	6	4	66.7	2	2	-	-	-
장수군	498	5	3	60.5	1	1	-	-	-
임실군	766	8	5	62.5	-	-	-	-	-
순창군	706	7	5	71.4	-	-	-	-	-
고창군	1,405	14	9	62.3	-	-	-	-	-
부안군	1,368	14	9	62.3	-	-	-	-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2-25> 대체수단의 종류

구분	내용
 <p>임차택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택시”란 시군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함
 <p>바우처택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택시”란 교통약자가 택시에 승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승객의 요금 중 일정 비용을 보조하는 택시를 말함
 <p>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이란 시각장애인의 이동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서비스(은행, 관공서출입등)를 운전기사가 보조해주는 차량을 말함

2.2.4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현황

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현황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인력현황은 2023년기준 총 26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2-26>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센터장	1	1	1	1	1
	팀장	1	1	1	1	2
	상담원	15	22	22	22	23
	계	17	24	24	24	26

주 : 19. 10. 2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시

나.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현황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6,496건에서 2023년 521,39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7>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주시	13,577	115,243	149,803	171,215	187,817
군산시	5,497	50,854	69,642	76,447	89,613
익산시	4,776	32,142	46,322	57,407	73,253
정읍시	3,264	24,760	31,318	32,259	37,485
남원시	1,126	6,744	9,996	12,233	16,174
김제시	2,317	16,824	27,039	34,366	41,974
완주군	1,460	11,072	13,925	15,705	17,666
진안군	266	2,163	2,564	3,286	4,108
무주군	371	3,139	4,164	5,253	7,132
장수군	167	2,318	2,908	3,497	4,549
임실군	557	3,939	4,815	5,309	6,744
순창군	672	6,560	6,504	4,635	6,109
고창군	1,299	7,598	10,656	13,043	13,507
부안군	1,147	10,595	14,498	15,001	15,259
총합계	36,496	293,951	394,154	449,656	521,390

주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내부자료

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3.1 조사개요

-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성격은 광역단체의 시·군 약자 증진계획의 지원계획으로, 각 지자체 교통약자의 기준이 되는 총괄 계획임, 따라서 이동실태조사는 2021년에 시행한 전국 실태조사 자료를 우선 검토하였음
- 또한 각 시·군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 완료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이동실태조사 내용을 분석 검토 하였음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교통수단의 경우 전체 버스의 약 35%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하였으며,
- 버스정류장과 보행환경은 여객터미널 시설 출입구로부터 주변 150m 이내의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하였음
- 기타 수단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등은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2.3.2 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실태

가. 저상버스

1) 전국 도입현황 분석

- 전국에 운영중인 버스는 2021년 기준 총 50,430대이고 이중 저상버스는 11,073대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21.9%로 나타났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1년 기준 총 운행대수 1,441대중 저상버스는 197대로 도입률은 13.6%로 나타났음

<표 2-28>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버스현황(2021년 기준)

(단위 : 대, %)

구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계
전국	전체버스	35,335	2,067	5,592	5,669	1,767	50,430
	저상버스	10,828	28	217	-	-	11,073
	도입률(%)	30.64	0.014	0.039	-	-	21.9%
전북 특별자치도	전체버스	818	152	37	434	-	1,441
	저상버스	187	10	-	-	-	197
	도입률(%)	22.9	6.6	-	-	-	13.6

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전국이 86.0%, 전북특별자치도가 2021년기준 84.7%로 조사됨
<표 2-29>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비교(2021년)

(단위 : 대, %)

구분	법정대수	운영대수	도입률
전국	4,738	4,074	86.0
전북특별자치도	275	233	84.7

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표 2-3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구분	관내요금		관외 요금	심야 요금	운영 시간
	기본 요금	추가 요금			
전주시	2km까지 700원	1km당 100원 (상한액은 시내 버스2배 이하)	-기본료 2km까지 700원 -추가요금 700m당 100원(상한액은 시외버스 2배이하)	할증요금없음	24시간
군산시					24시간
익산시					24시간
정읍시					24시간
남원시					24시간
김제시					24시간
완주군					24시간
진안군					24시간
무주군					24시간
장수군					24시간
임실군					24시간
순창군					24시간
고창군					24시간
부안군					24시간

구분	통행료 부담주체	주차료 부담주체	도외지역 운행범위	관외지역 운행 후 회차여부 (왕복운행)
전주시	이용자	이용자	관내, 관외, 전국	탑승가능(당초 이용자) (1시간 무료, 추가30분당 2,500원)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시·군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교통수단 시·군별 운전원수는 정규직 및 임차운전원을 포함한 총 298명으로 검토되었음

<표 2-31> 시·군별 운행대수 및 운전원수

(2023.12 기준)

구분	차량			운전원		
	차량대수 (합계)	특별 교통수단	임차택시	운전원 (합계)	정규직	임차운전원
합계	289	233	56	298	250	48
전주	87	62	25	92	72	20
완주	14	14	-	11	11	-
군산	41	31	10	39	31	8
익산	45	40	5	46	40	6
정읍	22	18	4	23	19	4
고창	9	9	-	10	10	-
순창	5	5	-	6	6	-
남원	13	13	-	14	13	1
임실	5	5	-	6	6	-
김제	24	16	8	22	16	6
부안	9	9	-	10	10	-
장수	4	3	1	6	5	1
진안	4	4	-	6	6	-
무주	7	4	3	7	5	2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내부자료

2.3.3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 실태조사

가.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 실태조사

- 전국의 시내버스 노선수는 총 9,121개 노선으로 이중 저상버스는 1,68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 운행 비율은 18.5%로 확인됨
- 전북특별자치도 에서는 총 759개 노선으로 확인되며 이중 저상버스 운행노선은 75개로 9.9%로 수준으로 확인됨

<표 2-32> 저상버스 노선 운행 비율 분석

구분	시내버스 노선수	저상버스 노선수	저상버스 운행노선비율(%)	비고	
전국	9,121	1,684	18.5	-	
전북특별 자치도	계	759	75	9.9	-
	전주시	121	12	9.9	-
	군산시	57	57	100.0	-
	익산시	105	4	3.8	-
	정읍시	226	2	0.9	-
	남원시	112	-	-	-
	김제시	138	-	-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2.3.4 편의시설 실태조사

가.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전북특별자치도의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기준적합 80.7%, 미적합 11.8%, 미설치 7.5%로 나타남
- 자동안내 시설 및 전자문자 안내판은 낮은 기준 적합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3>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설치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동안내 시설	방송음성	명확한 음량과 음색	497	455	91.5	-	-	42	8.5
	방송언어	국어와 영어로 방송	497	-	-	455	91.5	42	8.5
	자동안내시설 평균		-	-	45.8	-	45.8	-	8.5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위치	전면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	497	338	68.0	-	-	159	32.0
	문자형태	두터운글씨, 구별하기 쉬운 색상	497	338	68.0	-	-	159	32.0
	문자언어	한글과 영문	497	89	17.9	249	50.1	159	32.0
	전자문자 안내판 평균		-	-	51.3	-	16.7	-	32.0
목적지 표시	설치위치	외부 정면, 후면 및 측면	497	345	69.4	152	30.6	-	-
	소재	강한 햇빛과 야간에도 식별 가능	497	453	91.1	44	8.9	-	-
	목적지 표시 평균		-	-	80.3	-	19.7	-	-
휠체어 승강설비 (승강장)	바닥높이	바닥면적의 35이상 승강구 첫 번째 발판과 동일	91	91	100.0	-	-	-	-
	승강설비	경사판 설치	91	91	100.0	-	-	-	-
	승강구 유효폭	0.8m 이상	91	91	100.0	-	-	-	-
	휠체어 승강설비(저상)평균		-	-	100.0	-	-	-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설치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승강구	승강구 바닥면	미끄럽지 않은 재질	497	497	100.0	-	-	-	-
	승강구 계단	색상과 명도차이로 계단을 쉽게 구분	497	497	100.0	-	-	-	-
	승강구 평균		-	-	100.0	-	-	-	-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	승강구 부근	497	343	69.0	-	-	154	31.0
	비율	전체좌석의 1/3 이상	497	-	-	343	69.0	154	31.0
	안내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안내판 부착	497	343	69.0	-	-	154	-
	정차 스위치	앉은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	343	343	100.0	-	-	-	-
	휠체어 전용공간 (저상)	1.3m×0.75m 이상 확보	91	91	100.0	-	-	-	-
	휠체어 고정설비 (저상)	지지대등 휠체어 고정설비	91	91	100.0	-	-	-	-
	교통약자용 좌석 평균		-	-	73.0	-	11.5	-	15.5
수직 손잡이	설치위치	좌석기준 2열 또는 3열에 하나씩 설치	144	132	91.7	3	2.1	9	6.3
	설치규격	손잡이 지름 30mm	144	135	93.8	-	-	9	6.3
	승강구 수직 손잡이	승강용 수직손잡이 설치	497	497	100.0	-	-	-	-
	수직손잡이 평균		-	-	95.1	-	0.7	-	4.2
장애인 접근기능 표시 (저상)	안내표시	휠체어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 장애인 이용가능 그림표지 부착	91	91	100.0	-	-	-	-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평균			-	-	80.7	-	11.8	-	7.5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나.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전국 9개도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기준적합 62.5%, 미적합 11.1%, 미설치 26.4%로 나타남

1)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 2-34> 전국 9개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개시설	보행 접근로	유효폭	291	242	83.2	47	16.2	2	0.7	
		기울기	291	249	85.6	38	13.1	4	1.4	
		재질 및 마감	291	260	89.3	30	10.3	1	0.3	
		높이차이 제거	291	258	88.7	13	4.5	20	6.9	
		보행접근로 평균	-	-	86.7	-	11.0	-	2.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55	23	41.8	3	5.5	29	52.7	
		설치비율	26	18	69.2	8	30.8	-	-	
		보행안전통로	26	5	19.2	1	3.8	20	76.9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26	24	92.3	2	7.7	-	-	
		바닥마감	26	23	88.5	3	11.5	-	-	
		바닥 및 입식안내 표시	26	18	69.2	8	30.8	-	-	
		바닥면	26	25	96.2	1	3.8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평균	-	-	68.1	-	13.4	-	18.5		
매개시설평균	-	-	77.4	-	12.2	-	10.4			
내부시설	출입구 (문)	통과유효폭	413	370	89.6	43	10.4	-	-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413	380	92.0	-	-	33	8.0	
		출입구 옆 활동공간	413	363	87.9	37	9.0	13	3.1	
		출입구단차	413	390	94.4	15	3.6	8	1.9	
		문형태	미닫이문	5	4	80.0	-	-	1	20.0
			여닫이문	343	230	67.1	74	21.6	39	11.4
			자동문	65	65	100.0	-	0.0	-	-
		손잡이	348	319	91.7	23	6.6	6	1.7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217	1	0.5	5	2.3	211	97.2	
		점형블록	413	207	50.1	49	11.9	157	38.0	
		호출벨	65	-	-	-	-	65	100.0	
출입구(문) 평균	-	-	68.5	-	5.9	-	25.6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경사로	유효폭	42	38	90.5	0	-	4	9.5	
	휴식참	42	35	83.3	6	14.3	1	2.4	
	활동공간	42	25	59.5	13	31.0	4	9.5	
	기울기	42	24	57.1	17	40.5	1	2.4	
	손잡이 높이	42	29	69.0	9	21.4	4	9.5	
	손잡이 굽기	38	29	76.3	9	23.7	-	0.0	
	손잡이와 벽간간격	38	36	94.7	2	5.3	-	0.0	
	손잡이 점자표지판	38	13	34.2	5	13.2	20	52.6	
	수평손잡이	38	5	13.2	10	26.3	23	60.5	
	재질 및 마감	42	30	71.4	11	26.2	1	2.4	
	추락방지턱	42	33	78.6	5	11.9	4	9.5	
	완화매트	24	1	4.2	-	-	23	95.8	
	경사로 평균	-	-	61.0	-	17.8	-	21.2	
내부시설	설치 장소	외부↔대합실	8	5	62.5	3	37.5	-	-
		대합실↔승강장	9	9	100.0	-	-	-	-
	전면활동공간	17	16	94.1	1	5.9	-	-	
	승강장과 승강기 간격	17	17	100.0	-	-	-	-	
	크기	17	16	94.1	1	5.9	-	-	
	출입문 유효폭	17	17	100.0	-	-	-	-	
	조작설비 높이	17	17	100.0	-	-	-	-	
	점자표지판	17	13	76.5	1	5.9	3	17.6	
	가로조작반	17	13	76.5	-	-	4	23.5	
	손잡이높이	17	14	82.4	3	17.6	-	-	
	손잡이굽기	17	13	76.5	4	23.5	-	-	
	손잡이와 벽간간격	17	17	100.0	-	-	-	-	
	내부거울	5	2	40.0	1	20.0	2	40.0	
	안내시설	17	13	76.5	4	23.5	-	-	
	안전장치	17	17	100.0	-	-	-	-	
	점형블록	17	13	76.5	1	5.9	3	17.6	
	출입문형태	17	3	17.6	-	-	14	82.4	
엘리베이터 평균	-	-	80.8	-	8.6	-	10.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	7	6	85.7	1	14.3	-	-	
	유효폭	7	7	100.0	-	-	-	-	
	속도	7	7	100.0	-	-	-	-	
	이동손잡이	7	7	100.0	-	-	-	-	
	수평이동손잡이	7	7	100.0	-	-	-	-	
	수평고정손잡이	7	3	42.9	-	-	4	57.1	
	손잡이점자표시	3	-	-	1	33.3	2	66.7	
	에스컬레이터 평균	-	-	75.5	-	6.8	-	17.7	
내부시설	계단	휴식참	44	26	59.1	12	27.3	6	13.6
		유효폭	44	40	90.9	3	6.8	1	2.3
		디딤판	44	41	93.2	3	6.8	-	-
		철크면	44	39	88.6	5	11.4	-	-
		철크면 기울기	44	36	81.8	8	18.2	-	-
		계단코 길이	44	37	84.1	7	15.9	-	-
		손잡이 높이	44	34	77.3	3	6.8	7	15.9
		손잡이 굵기	37	30	81.1	7	18.9	-	-
		손잡이와 벽간간격	37	36	97.3	1	2.7	-	-
		손잡이 점자표지판	37	19	51.4	5	13.5	13	35.1
		수평손잡이	37	4	10.8	23	62.2	10	27.0
		계단재질	44	36	81.8	7	15.9	1	2.3
		계단코 재질	44	27	61.4	11	25.0	6	13.6
		점형블록	44	28	63.6	4	9.1	12	27.3
		추락방지턱	44	30	68.2	-	-	14	31.8
		계단 평균	-	-	72.7	-	16.0	-	11.3
내부시설 평균	-	-	71.7	-	11.0	-	17.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반 사항	화장실 위치	226	83	36.7	81	35.8	62	27.4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226	141	62.4	23	10.2	62	27.4
		바닥면 높이차이	226	219	96.9	4	1.8	3	1.3
		바닥마감	226	142	62.8	84	37.2	-	-
		점형블록	226	37	16.4	8	3.5	181	80.1
		점자표지판	226	71	31.4	15	6.6	140	61.9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51.1	-	15.9	-	33.0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간막이	429	214	49.9	215	50.1	-	-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429	144	33.6	136	31.7	149	34.7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429	187	43.6	94	21.9	148	34.5
		출입문 형태	429	277	64.6	152	35.4	-	-
		출입문 유효폭	429	273	63.6	156	36.4	-	-
		대변기 형태	429	290	67.6	139	32.4	-	-
		수평손잡이	415	250	60.2	27	6.5	138	33.3
		세정장치, 휴지걸이	429	193	45.0	137	31.9	99	23.1
		사용여부 설비	429	189	44.1	49	11.4	191	44.5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52.5	-	28.6	-	18.9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240	138	57.5	4	1.7	98	40.8
		수직손잡이	240	139	57.9	3	1.3	98	40.8
		장애인 소변기 평균	-	-	57.7	-	1.5	-	40.8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330	144	43.6	9	2.7	177	53.6
		수도꼭지형태	153	153	100.0	-	-	-	-
		수평손잡이	153	138	90.2	-	-	15	9.8
		점자표시	153	11	7.2	-	-	142	92.8
		거울	153	127	83.0	18	11.8	8	5.2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64.8	-	2.9	-	32.3
	위생시설 평균		-	-	58.5	-	12.2	-	31.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안내시설	점자블록	설치장소	217	71	32.7	65	30.0	81	37.3
		규격 및 색상	136	111	81.6	25	18.4	-	-
		설치 방법	136	76	55.9	60	44.1	-	-
		점자블록 평균	-	-	58.7	-	30.8	-	12.4
	안내 및 유도 시설	안내도	217	32	14.7	4	1.8	181	83.4
		유도신호장치	217	18	8.3	1	0.5	198	91.2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11.5	-	1.2	-	87.3
	경보 피난 시설	청각경보장치	217	148	68.2	-	-	69	31.8
		시각경보장치	217	129	59.4	-	-	88	40.6
		경보피난시설 평균	-	-	63.8	-	-	-	36.2
	안내시설 평균		-	-	44.0	-	10.7	-	45.3
	기타시설	장애인 매표소	활동공간	222	86	38.7	3	1.4	133
점자블록			89	24	27.0	-	-	65	73.0
높이			89	77	86.5	12	13.5	-	-
하부공간			89	83	93.3	6	6.7	-	-
장애인 매표소 평균			-	-	61.4	-	5.4	-	33.2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141	114	80.9	17	12.1	10	7.1
		점자블록	141	23	16.3	4	2.8	114	80.9
		조작버튼 설치위치	141	100	70.9	41	29.1	-	-
		점자표시	141	80	56.7	2	1.4	59	41.8
		음료대 분출구 높이	25	11	44.0	-	-	14	56.0
		음료조작기	25	21	84.0	-	-	4	16.0
		자동 발매기 평균	-	-	58.8	-	7.6	-	33.6
개찰구	개폐방법	-	-	-	-	-	-	-	
	유효폭	-	-	-	-	-	-	-	
	점자블록	-	-	-	-	-	-	-	
	개찰구 평균	-	-	-	-	-	-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승강장 (철도/ 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 역사)	바닥기울기	-	-	-	-	-	-	
	바닥마감	-	-	-	-	-	-	
	점자블록	-	-	-	-	-	-	
	차량간격	-	-	-	-	-	-	
	전락방지시설	-	-	-	-	-	-	
	난간	-	-	-	-	-	-	
	차량접근 경고시설	-	-	-	-	-	-	
	휠체어 승강장 안내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승강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승강장	893	251	28.1	16	1.8	62.6	70.1
	바닥기울기	893	859	69.2	15	1.7	19	2.1
	바닥마감	893	620	69.4	273	30.6	-	-
	승강장 평균	-	-	64.6	-	11.3	-	24.1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	-	-	-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	-	-	-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평균	-	-	-	-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 휴게시설 위치	217	23	10.6	-	-	194	89.4
	임산부 휴게시설	23	23	100.0	-	-	-	-
	전면 활동공간	23	13	56.5	8	34.8	2	8.7
	기저귀 교환대 높이	21	18	85.7	3	14.3	-	-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21	17	81.0	4	19.0	-	-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66.8	-	13.6	-	19.6
기타시설 평균	-	-	62.9	-	9.5	-	27.6	
9개 도 평균	-	-	62.5	-	11.1	-	26.4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2-35> 8개도 지역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준 사례수	29	31	15	19	24	39	28	31	
평균	69.9	63.6	67.0	67.2	59.2	54.3	55.8	64.9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91.5	82.8	92.5	95.8	83.1	90.9	57.7	84.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5.7	81.0	87.1	81.0	57.9	77.1	59.3	64.3
	평균	88.6	81.9	89.8	88.4	70.5	84.0	67.5	74.6
내부 시설	출입구(문)	69.8	72.0	73.7	74.4	70.2	65.7	64.7	53.8
	통로	-	-	-	-	-	-	-	-
	경사로	66.7	72.9	59.5	60.4	52.1	62.5	61.1	58.0
	엘리베이터	78.4	87.5	93.8	-	80.0	-	-	-
	에스컬레이터	80.0	-	-	-	66.7	-	83.3	-
	계단	73.7	78.1	74.0	56.7	58.9	-	60.0	75.4
	평균	73.7	77.6	75.2	63.8	65.6	64.1	67.3	62.4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향	65.2	53.2	54.6	56.7	45.8	36.8	47.1	53.8
	대변기	64.7	55.7	61.0	64.6	54.3	31.7	42.5	57.6
	소변기	67.6	61.4	61.1	81.8	62.5	30.8	34.5	71.4
	세면대	64.2	59.9	67.1	67.0	67.8	61.5	62.5	72.7
	평균	65.4	57.6	61.0	67.5	57.6	40.2	46.6	63.9
안내 시설	점자블록	61.4	68.7	68.3	64.0	45.2	33.9	48.8	71.2
	안내 및 유도시설	15.5	6.5	33.3	10.5	8.3	90.0	7.1	12.9
	경보피난시설	81.0	54.8	50.0	78.9	60.4	41.0	64.3	83.9
	평균	52.7	43.3	50.6	51.2	38.0	28.0	40.1	56.0
기타 시설	매표소	67.1	63.5	58.3	58.5	53.7	55.8	63.3	65.4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57.6	45.8	94.4	57.5	58.3	64.0	34.9	75.3
	승강장	83.5	60.1	80.0	70.2	70.2	50.8	57.1	67.0
	임산부 휴게시설	67.7	60.6	0.0	74.2	75.8	51.0	75.5	61.9
	평균	69.0	57.5	58.2	65.1	64.5	55.4	57.7	67.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철도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1년 59.2%로 8개도 중에서 6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2)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전국 9개도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기준적합 81.2%, 미적합 5.5%, 미설치 13.3%로 나타남

<표 2-36> 전국 9개도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개시설	보행 접근로	유효폭	267	258	96.6	5	1.9	4	1.5	
		기울기	267	248	92.9	11	4.1	8	3.0	
		재질 및 마감	267	259	97.0	5	1.9	3	1.1	
		높이차이 제거	267	252	94.4	9	3.4	6	2.2	
		보행접근로 평균	-	-	95.2	-	2.8	-	2.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장소	139	122	87.8	16	11.5	1	0.7	
		설치비율	138	98	71.0	40	29.0	-	-	
		보행안전통로	138	49	35.5	16	11.6	73	52.9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138	127	92.0	11	8.0	-	-	
		바닥마감	138	131	94.9	7	5.1	-	-	
		바닥 및 입식안내 표시	138	86	62.3	50	36.2	2	1.4	
		바닥면	138	135	97.8	3	2.2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평균	-	-	77.3	-	14.8	-	7.9		
	매개시설평균		-	-	86.3	-	8.8	-	4.9	
	내부시설	출입구 (문)	통과유효폭	350	341	97.4	7	2.0	2	0.6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350	346	89.9	-	-	4	1.1	
출입구 옆 활동공간			350	342	97.7	6	1.7	2	0.6	
출입구단차			350	348	99.4	1	0.3	1	0.3	
문형태			미닫이문	45	38	84.4	4	8.9	3	6.7
			여닫이문	217	176	81.1	9	4.1	32	14.7
			자동문	88	88	100.0	-	-	-	-
손잡이			262	248	94.7	7	2.7	7	2.7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194	34	17.5	22	11.3	138	71.1	
점형블록			350	322	92.0	7	2.0	21	6.0	
호출벨			88	3	3.4	-	-	85	96.6	
출입구(문) 평균	-	-	78.8	-	3.0	-	18.2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시설	통로	유효폭	101	101	100.0	-	-	-	-
		바닥단차	101	100	99.0	1	1.0	-	-
		바닥마감	101	94	93.1	7	6.9	-	-
		손잡이 높이	101	46	45.5	2	2.0	53	52.5
		손잡이 굽기	48	46	95.8	2	4.2	-	-
		손잡이와 벽간 간격	48	47	97.9	1	2.1	-	-
		손잡이 점자표지판	48	31	64.6	3	6.3	14	29.2
		벽면 보행장애물	101	95	94.1	-	-	6	5.9
		기둥, 받침대 보행장애물	101	98	97.0	-	-	3	3.0
		보행장애물	101	101	100.0	-	-	-	-
		킥플레이트 설치	101	13	12.9	-	-	88	87.1
		통로모서리	101	51	50.5	-	-	50	49.5
		통로평균	-	-	79.2	-	1.9	-	18.9
경사로	경사로	유효폭	54	52	96.3	-	-	2	3.7
		휴식참	54	38	70.4	6	11.1	10	18.5
		활동공간	54	43	79.6	11	20.4	-	-
		기울기	54	44	81.5	10	18.5	-	-
		손잡이 높이	54	45	83.3	5	9.3	4	7.4
		손잡이 굽기	50	46	92.0	4	8.0	-	-
		손잡이와 벽간간격	50	48	96.0	2	4.0	-	-
		손잡이 점자표지판	50	20	40.0	6	12.0	24	48.0
		수평손잡이	50	1	2.0	31	62.0	18	36.0
		재질 및 마감	54	46	85.2	4	7.4	4	7.4
		추락방지턱	54	46	85.2	4	7.4	4	7.4
		완화매트	45	2	4.4	-	-	43	95.6
		경사로 평균	-	-	68.0	-	13.3	-	18.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시설	설치장소	외부↔대합실	142	128	90.1	14	9.9	-	-	
		대합실↔승강장	216	208	96.3	8	3.7	-	-	
	전면활동공간		358	353	98.6	5	1.4	-	-	
	승강장과 승강기 간격		358	358	100.0	-	-	-	-	
	크기		358	351	98.0	7	2.0	-	-	
	출입문 유효폭		358	354	98.9	4	1.1	-	-	
	조작설비 높이		358	358	100.0	-	-	-	-	
	점자표지판		358	345	96.4	7	2.0	6	1.7	
	가로조작반		358	358	100.0	-	-	-	-	
	손잡이높이		358	358	100.0	-	-	-	-	
	손잡이굵기		358	358	100.0	-	-	-	-	
	손잡이와 벽간간격		358	358	100.0	-	-	-	-	
	내부거울		183	73	39.9	-	-	110	60.1	
	안내시설		358	341	95.3	17	4.7	-	-	
	안전장치		358	341	95.3	-	-	17	4.7	
	점형블록		358	356	99.4	2	0.6	-	-	
	출입문형태		358	326	91.1	-	-	32	8.9	
	엘리베이터 평균		-	-	94.1	-	1.5	-	4.4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		328	223	68.0	105	32.0	-	-
		유효폭		328	316	96.3	12	3.7	-	-
속도		328	326	99.4	2	0.6	-	-		
이동손잡이		328	328	100.0	-	-	-	-		
수평이동손잡이		328	296	90.2	31	9.5	1	0.3		
수평고정손잡이		328	194	59.1	115	35.1	19	5.8		
손잡이점자표시		309	91	59.4	47	15.2	171	55.3		
에스컬레이터 평균		-	-	77.5	-	13.7	-	8.8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시설	계단	휴식참	505	437	86.5	64	12.7	4	0.8
		유효폭	505	491	97.2	14	2.8	-	-
		디딤판	505	504	99.8	1	0.2	-	-
		첼면	505	504	99.8	1	0.2	-	-
		첼면 기울기	505	504	99.8	1	0.2	-	-
		계단코 길이	505	499	99.8	6	1.2	-	-
		손잡이 높이	505	489	96.8	11	2.2	5	1.0
		손잡이 굵기	500	482	96.4	18	3.6	-	-
		손잡이와 벽간간격	500	499	99.8	1	0.2	-	-
		손잡이 점자표지판	500	433	86.6	43	8.6	24	4.8
		수평손잡이	500	99	19.8	349	69.8	52	10.4
		계단재질	505	473	93.7	32	6.3	-	-
		계단코 재질	505	335	66.3	40	7.9	130	25.7
		점형블록	505	495	98.0	7	1.4	3	0.6
		추락방지턱	505	476	94.3	12	2.4	17	3.4
		계단 평균	-	-	88.9	-	8.0	-	3.1
내부시설 평균		-	-	81.1	-	6.9	-	12.0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반 사항	화장실 위치	217	68	31.3	138	63.6	11	5.1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217	178	82.0	27	12.4	12	5.5
		바닥면 높이차이	217	216	99.5	-	-	1	0.5
		바닥마감	217	210	96.8	7	3.2	-	-
		점형블록	217	137	63.1	13	6.0	67	30.9
		점자표지판	217	171	78.8	17	7.8	29	13.4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75.3	-	15.5	-	9.2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405	368	90.9	37	9.1	-	-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405	293	72.3	89	22.0	23	5.7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405	346	85.4	37	9.1	22	5.4
		출입문 형태	405	370	91.4	35	8.6	-	-
출입문 유효폭		405	381	94.1	24	5.9	-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위생시설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 형태	405	385	95.1	20	4.9	-	-	
		수평손잡이	400	364	91.0	13	3.3	23	5.8	
		세정장치, 휴지걸이	405	332	82.0	46	11.4	27	6.7	
		사용여부 설비	405	329	81.2	30	7.4	46	11.4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87.0	-	9.1	-	3.9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216	150	69.4	-	-	66	30.6	
		수직손잡이	216	149	69.0	-	-	67	31.0	
		장애인 소변기 평균	-	-	69.2	-	-	-	30.8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399	355	89.0	5	1.3	39	9.8	
		수도꼭지형태	360	359	99.7	1	0.3	-	-	
		수평손잡이	360	326	90.6	-	-	34	9.4	
		점자표시	360	17	4.7	-	-	343	95.3	
		거울	360	348	96.7	8	2.2	4	1.1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76.1	-	0.8	-	23.1	
	위생시설 평균		-	-	76.9	-	6.3	-	16.8	
	안내시설	점자블록	설치장소	194	171	88.1	16	8.2	7	3.6
			규격 및 색상	187	184	98.4	3	1.6	-	-
			설치 방법	187	169	90.4	18	9.6	-	-
			점자블록 평균	-	-	92.3	-	6.5	-	1.2
안내 및 유도 시설		안내도	194	158	81.4	2	1.0	34	17.5	
		유도신호장치	194	103	53.1	1	0.5	90	46.4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67.3	-	0.8	-	32.0	
경보 피난 시설		청각경보장치	194	147	75.8	-	-	47	24.2	
		시각경보장치	194	136	70.1	-	-	58	29.9	
		경보피난시설 평균	-	-	72.9	-	-	-	27.1	
안내시설 평균		-	-	77.5	-	2.4	-	20.1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기타 시설	장애인 매표소	활동공간	166	125	75.3	2	1.2	39	23.5
		점자블록	127	110	86.6	0	-	17	13.4
		높이	127	112	88.2	15	11.8	-	-
		하부공간	127	120	94.5	7	5.5	-	-
		장애인 매표소 평균	-	-	86.1	-	4.6	-	9.2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133	132	99.2	1	0.8	-	-
		점자블록	133	76	57.1	2	1.5	55	41.4
		조작버튼 설치위치	133	131	98.5	2	1.5	-	-
		점자표시	133	126	94.7	6	4.5	1	0.8
		음료대 분출구 높이	65	65	100.0	-	-	-	-
		음료조작기	65	64	98.5	-	-	1	1.5
		자동 발매기 평균	-	-	91.3	-	1.4	-	7.3
	개찰구	개폐방법	208	201	96.6	-	-	7	3.4
		유효폭	208	207	99.5	1	0.5	-	-
		점자블록	208	165	79.3	1	0.5	42	20.2
		개찰구 평균	-	-	91.8	-	0.3	-	7.9
	승강장 (철도/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 역사)	바닥기울기	618	612	99.0	4	0.6	2	0.3
		바닥마감	618	600	97.1	12	1.9	6	1.0
		점자블록	618	545	88.2	20	3.2	53	8.6
		차량간격	618	580	93.9	-	-	38	6.1
		전락방지시설	618	132	21.4	3	0.5	483	78.2
		난간	618	356	57.6	25	4.0	237	38.3
		차량접근 경고시설	618	602	97.4	-	-	16	2.6
		휠체어 승강장 안내	618	152	24.6	-	-	466	75.4
		승강장 평균	-	-	72.4	-	1.3	-	26.3
승강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승강장	-	-	-	-	-	-	-	
	바닥기울기	-	-	-	-	-	-	-	
	바닥마감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	-	-	-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	-	-	-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평균	-	-	-	-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 휴게시설 위치	194	79	40.7	-	-	-	59.3	
	임산부 휴게시설	79	79	100.0	-	-	-	-	
	전면 활동공간	79	75	94.9	3	3.8	-	1.3	
	기저귀 교환대 높이	78	70	89.7	8	10.3	-	-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78	54	69.2	24	30.8	-	-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78.9	-	9.0	-	12.1	
기타시설 평균		-	-	84.1	-	3.3	-	12.6	
9개 도 평균		-	-	81.2	-	5.5	-	13.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2-37> 8개도 지역별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준 사례수	36	33	19	23	12	26	48	19	
평균	86.9	77.6	79.0	86.1	86.1	75.9	79.4	82.3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87.5	94.6	99.1	100.0	99.1	88.7	99.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7.1	82.1	83.1	77.7	70.6	72.2	79.7	74.3
	평균	88.6	84.8	88.9	88.4	85.3	85.6	84.2	86.7
내부 시설	출입구(문)	81.3	82.2	76.9	78.8	79.0	78.0	76.9	73.5
	통로	82.0	80.2	76.0	81.8	78.3	69.1	84.5	70.8
	경사로	73.7	75.0	67.1	76.7	75.0	55.6	65.7	55.2
	엘리베이터	94.4	98.1	96.5	94.9	92.4	91.8	93.0	91.4
	에스컬레이터	70.8	82.4	91.7	84.1	87.4	74.3	76.5	67.2
	계단	87.0	94.0	91.6	90.7	88.6	86.4	90.2	87.7
	평균	81.5	85.3	83.3	84.5	83.5	75.9	81.2	74.3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78.2	75.0	72.7	72.0	82.1	3.7	72.6	80.7
	대변기	94.6	74.8	83.0	64.4	93.8	90.0	81.3	87.1
	소변기	80.3	71.4	50.0	76.0	91.7	37.0	73.3	78.9
	세면대	80.0	73.6	74.8	75.7	76.8	75.1	76.4	74.4
	평균	83.3	73.7	70.1	79.5	86.1	69.0	75.9	80.3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93.8	74.8	95.6	94.4	83.3	94.5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77.1	55.4	57.9	87.0	79.2	50.0	97.4	73.7
	경보피난시설	89.6	59.3	78.9	87.0	79.2	73.1	64.0	94.7
	평균	88.9	62.8	70.5	89.8	84.3	68.8	75.3	89.5
기타 시설	매표소	90.3	90.4	87.8	90.4	91.7	73.3	85.1	86.7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93.7	88.9	95.8	91.3	100.0	93.8	87.0	88.7
	개찰구	98.6	93.3	86.0	92.9	100.0	100.0	86.4	79.6
	승강장	94.1	65.7	66.1	76.0	75.9	65.5	61.4	68.2
	임산부 휴게시설	84.2	67.9	74.2	91.3	88.3	67.9	83.7	79.8
	평균	92.2	81.2	82.0	88.4	91.2	80.1	80.7	80.6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철도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1년 86.1%로 8개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충청남도과 같이 2번째로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3)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전국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기준적합 88.2%, 미적합 2.2%, 미설치 9.6%로 나타남

<표 2-38> 전국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개 시설	보행 접근로	유효폭	29	29	100.0	-	-	-	-	
		기울기	29	29	100.0	-	-	-	-	
		재질 및 마감	29	29	100.0	-	-	-	-	
		높이차이 제거	29	29	100.0	-	-	-	-	
		보행접근로 평균	-	-	100.0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12	12	100.0	-	-	-	-	
		설치비율	12	11	91.7	1	8.3	-	-	
		보행안전통로	12	8	66.7	-	-	4	33.3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12	12	100.0	-	-	-	-	
		바닥마감	12	12	100.0	-	-	-	-	
		바닥 및 입식안내 표시	12	12	100.0	-	-	-	-	
		바닥면	12	12	100.0	-	-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평균	-	-	94.0	-	1.2	-	4.8	
	매개시설평균	-	-	97.0	-	0.6	-	2.4		
	내부 시설	출입구 (문)	통과유효폭	29	29	100.0	-	-	-	-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29	29	100.0	-	-	-	-	
출입구 옆 활동공간			29	29	100.0	-	-	-	-	
출입구단차			29	29	100.0	-	-	-	-	
문형태			미닫이문	-	-	-	-	-	-	-
			여닫이문	1	1	100.0	-	-	-	-
			자동문	28	28	100.0	-	-	-	-
손잡이			1	1	100.0	-	-	-	-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9	-	-	-	-	9	100.0	
점형블록			29	29	100.0	-	-	-	-	
호출벨			28	2	7.1	-	-	26	92.9	
출입구(문) 평균			-	-	80.7	-	-	-	19.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시설	엘리베이터	외부↔대합실	16	16	100.0	-	-	-	-	
		대합실↔승강장	15	15	100.0	-	-	-	-	
	전면활동공간		31	31	100.0	-	-	-	-	
	승강장과 승강기 간격		31	31	100.0	-	-	-	-	
	크기		31	31	100.0	-	-	-	-	
	출입문 유효폭		31	31	100.0	-	-	-	-	
	조작설비 높이		31	31	100.0	-	-	-	-	
	점자표지판		31	31	100.0	-	-	-	-	
	가로조작반		31	31	100.0	-	-	-	-	
	손잡이높이		31	31	100.0	-	-	-	-	
	손잡이굵기		31	31	100.0	-	-	-	-	
	손잡이와 벽간간격		31	31	100.0	-	-	-	-	
	내부거울		6	5	83.3	-	-	1	6.7	
	안내시설		31	31	100.0	-	-	-	-	
	안전장치		31	31	100.0	-	-	-	-	
	점형블록		31	31	100.0	-	-	-	-	
	출입문형태		31	9	29.0	-	-	22	71.0	
	엘리베이터 평균		-	-	94.8	-	-	-	5.2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		33	31	93.9	2	6.1	-	-
		유효폭		33	33	100.0	-	-	-	-
속도		33	33	100.0	-	-	-	-		
이동손잡이		33	33	100.0	-	-	-	-		
수평이동손잡이		33	33	100.0	-	-	-	-		
수평고정손잡이		33	30	90.9	-	-	3	9.1		
손잡이점자표시		30	26	86.7	-	-	4	13.3		
에스컬레이터 평균		-	-	95.9	-	0.9	-	3.2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시설	계단	휴식참	28	24	85.7	4	14.3	-	-
		유효폭	28	26	92.9	2	7.1	-	-
		디딤판	28	28	100.0	-	-	-	-
		첼면	28	28	100.0	-	-	-	-
		첼면 기울기	28	28	100.0	-	-	-	-
		계단코 길이	28	28	100.0	-	-	-	-
		손잡이 높이	28	27	96.4	-	-	1	3.6
		손잡이 굵기	27	26	96.3	1	3.7	-	-
		손잡이와 벽간간격	27	27	100.0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27	16	59.3	4	14.8	7	25.9
		수평손잡이	27	25	92.6	-	-	2	7.4
		계단재질	28	28	100.0	-	-	-	-
		계단코 재질	28	28	100.0	-	-	-	-
		점형블록	28	27	96.4	-	-	1	3.6
		추락방지턱	28	28	100.0	-	-	-	-
		계단 평균	-	-	94.6	-	2.7	-	2.7
		내부시설 평균		-	-	91.5	-	0.9	-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반 사항	화장실 위치	53	47	88.7	3	5.7	3	5.7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53	46	86.8	4	7.5	3	5.7
		바닥면 높이차이	50	50	100.0	-	-	-	-
		바닥마감	50	50	100.0	-	-	-	-
		점형블록	50	47	94.0	-	-	3	6.0
		점자표지판	50	38	76.0	-	-	12	24.0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90.9	-	2.2	-	6.9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96	96	100.0	-	-	-	-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96	18	18.8	78	81.3	-	-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96	96	100.0	-	-	-	-
		출입문 형태	96	96	100.0	-	-	-	-
출입문 유효폭		96	96	100.0	-	-	-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위생시설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 형태	96	96	100.0	-	-	-	-	
		수평손잡이	96	96	100.0	-	-	-	-	
		세정장치, 휴지걸이	96	96	100.0	-	-	-	-	
		사용여부 설비	96	96	100.0	-	-	-	-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91.0	-	9.0	-	-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51	50	98.0	-	-	1	2.0	
		수직손잡이	51	50	98.0	-	-	1	2.0	
		장애인 소변기 평균	-	-	98.0	-	-	-	2.0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93	93	100.0	-	-	-	-	
		수도꼭지형태	93	93	100.0	-	-	-	-	
		수평손잡이	93	91	97.8	-	-	2	2.2	
		점자표시	93	7	7.5	-	-	86	92.5	
		거울	93	93	100.0	-	-	-	-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81.1	-	-	-	18.9	
	위생시설 평균		-	-	90.2	-	2.8	-	6.9	
	안내시설	점자블록	설치장소	9	9	100.0	-	-	-	-
			규격 및 색상	9	9	100.0	-	-	-	-
			설치 방법	9	9	100.0	-	-	-	-
			점자블록 평균	-	-	100.0	-	-	-	-
안내 및 유도시설		안내도	9	9	100.0	-	-	-	-	
		유도신호장치	9	1	11.1	-	-	8	88.9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55.6	-	-	-	44.4	
경보피난시설		청각경보장치	9	9	100.0	-	-	-	-	
		시각경보장치	9	9	100.0	-	-	-	-	
		경보피난시설 평균	-	-	100.0	-	-	-	-	
안내시설 평균		-	-	85.2	-	-	-	14.8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기 타 시 설	장애인 대표소	활동공간	13	10	76.9	-	-	3	23.1
		점자블록	10	-	-	-	-	10	100.0
		높이	10	5	50.0	5	50.0	-	-
		하부공간	10	5	50.0	5	50.0	-	-
		장애인 대표소 평균	-	-	44.2	-	25.0	-	30.8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11	11	100.0	-	-	-	-
		점자블록	11	-	-	-	-	11	100.0
		조작버튼 설치위치	11	11	100.0	-	-	-	-
		점자표시	11	1	9.1	-	-	10	90.9
		음료대 분출구 높이	46	44	95.7	-	-	2	4.3
		음료조작기	46	46	100.0	-	-	-	-
	자동 발매기 평균	-	-	67.5	-	-	-	32.5	
	개찰구	개폐방법	-	-	-	-	-	-	-
		유효폭	-	-	-	-	-	-	-
		점자블록	-	-	-	-	-	-	-
		개찰구 평균	-	-	-	-	-	-	-
	승강장 (철도/ 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 역사)	바닥기울기	-	-	-	-	-	-	-
		바닥마감	-	-	-	-	-	-	-
		점자블록	-	-	-	-	-	-	-
		차량간격	-	-	-	-	-	-	-
전락방지시설		-	-	-	-	-	-	-	
난간		-	-	-	-	-	-	-	
차량접근 경고시설		-	-	-	-	-	-	-	
휠체어 승강장 안내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승강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승강장	-	-	-	-	-	-	-	
	바닥기울기	-	-	-	-	-	-	-	
	바닥마감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12	11	91.7	-	-	1	8.3	
	여객탑승교 유효폭	27	27	100.0	-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27	27	100.0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평균	-	-	97.2	-	-	-	2.8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 휴게시설 위치	14	14	100.0	-	-	-	-	
	임산부 휴게시설	14	14	100.0	-	-	-	-	
	전면 활동공간	14	14	100.0	-	-	-	-	
	기저귀 교환대 높이	14	14	100.0	-	-	-	-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14	14	100.0	-	-	-	-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100.0	-	-	-	-	
기타시설 평균	-	-	77.2	-	6.3	-	16.5		
9개 도 평균		-	-	88.2	-	2.2	-	9.6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2-39> 공항여객터미널의 공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김포 공항 (국내)	김포 공항 (국제)	김해 공항 (국내)	김해 공항 (국제)	대구 공항	인천 공항 (T1)	인천 공항 (T2)	광주 공항	울산 공항
평균		87.2	86.2	87.0	90.0	91.4	81.8	85.1	82.5	91.1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안전용주차구역	85.7	85.7	85.7	-	85.7	85.7	100.0	85.7	100.0
	평균	92.9	92.9	92.9	100.0	92.9	92.9	100.0	92.9	100.0
내부 시설	출입구(문)	75.0	75.0	75.0	75.0	83.3	75.0	75.0	75.0	75.0
	통로	-	100.0	-	-	-	100.0	91.7	-	-
	경사로	-	-	-	-	-	100.0	-	-	-
	엘리베이터	100.0	96.0	96.7	93.3	93.3	91.7	99.6	93.8	93.8
	에스컬레이터	100.0	100.0	100.0	100.0	97.1	91.1	85.7	85.7	76.2
	계단	100.0	100.0	90.5	100.0	91.1	86.6	93.3	95.0	94.4
	평균	93.8	94.2	90.5	92.1	91.2	90.7	89.1	87.4	84.8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100.0	89.3	66.7	87.9	83.3	87.2	100.0	91.7	71.4
	대변기	88.9	70.2	94.4	95.2	100.0	88.9	88.9	88.9	88.9
	소변기	100.0	100.0	90.0	90.0	87.5	99.5	100.0	85.7	100.0
	세면대	100.0	90.4	80.0	100.0	80.0	83.5	100.0	80.0	80.0
	평균	97.2	87.5	82.8	93.3	87.7	89.8	97.2	86.6	85.1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50.0	50.0	50.0	50.0	100.0	-	-	50.0	100.0
	경보피난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3.3	83.3	83.3	83.3	100.0	66.7	66.7	83.3	100.0
기타 시설	매표소	25.0	25.0	75.0	75.0	75.0	25.0	50.0	-	75.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58.3	66.7	66.7	50.0	66.7	50.0	66.7	50.0	66.7
	승강장(터미널)	-	-	-	-	-	-	66.7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산부 휴게시설	92.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	100.0	100.0
	평균	68.8	72.9	85.4	81.3	85.4	68.8	72.7	62.5	85.4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구분	원주 공항	양양 공항	청주 공항	군산 공항	여수 공항	무안 공항	포항 공항	사천 공항	제주 공항
평균	78.9	90.2	89.0	83.8	87.6	88.5	92.9	85.6	89.5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안전용주차구역	71.4	100.0	95.2	85.7	100.0	100.0	100.0	85.7
	평균	85.7	100.0	97.6	92.9	100.0	100.0	100.0	92.9
내부 시설	출입구(문)	75.0	75.0	75.0	75.0	80.0	75.0	87.5	75.0
	통로	-	-	-	-	-	-	-	-
	경사로	-	-	-	-	-	-	-	-
	엘리베이터	-	93.8	97.9	-	93.3	95.8	96.9	-
	에스컬레이터	-	72.2	100.0	-	92.9	100.0	100.0	-
	계단	-	85.0	96.7	-	80.0	93.3	96.7	-
	평균	75.0	81.5	92.4	75.0	86.5	91.0	95.3	75.0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66.7	100.0	88.9	66.7	83.3	100.0	83.3	88.9
	대변기	88.9	88.9	88.9	92.6	100.0	100.0	88.9	93.3
	소변기	100.	100.0	88.9	100.0	100.0	100.0	100.0	100.0
	세면대	80.0	80.0	77.3	86.7	80.0	80.0	80.0	100.0
	평균	83.9	92.2	86.0	86.5	90.8	95.0	88.1	95.6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안내 및 유도시설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50.0
	경보피난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3.3	83.3	83.3	83.3	83.3	100.0	100.0	83.3
기타 시설	매표소	-	75.0	75.0	25.0	25.0	25.0	25.0	58.3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	100.0	66.7	100.0	83.3	100.0	100.0	63.9
	승강장(터미널)	-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탑승교	100.0	100.0	100.0	100.0	100.0	66.7	100.0	100.0
	임산부 휴게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6.7	93.8	85.4	81.3	77.1	72.9	81.3	81.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공항여객터미널(군산공항)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1년 83.8%로 전국18개 공항여객 터미널중 15위로 확인되었음

4)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전국 9개도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기준적합 80.6%, 미적합 4.2%, 미설치 15.2%로 나타남

<표 2-40> 전국 9개도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개시설	보행 접근로	유효폭	33	32	97.0	1	3.0	-	-	
		기울기	33	32	97.0	1	3.0	-	-	
		재질 및 마감	33	33	100.0	-	-	-	-	
		높이차이 제거	33	30	90.9	1	3.0	2	6.1	
		보행접근로 평균	-	-	96.2	-	2.3	-	1.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19	18	94.7	-	-	1	5.3	
		설치비율	18	17	94.4	1	5.6	-	-	
		보행안전통로	18	10	55.6	1	5.6	7	38.9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18	17	94.4	1	5.6	-	-	
		바닥마감	18	18	100.0	-	-	-	-	
		바닥 및 입식안내 표시	18	13	72.2	5	27.8	-	-	
		바닥면	18	18	100.0	0	-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평균	-	-	87.3	-	6.3	-	6.3	
	매개시설평균	-	-	91.8	-	4.3	-	3.9		
	내부시설	출입구 (문)	통과유효폭	55	55	100.0	-	-	-	-
전면활동공간 유효거리			55	55	100.0	-	-	-	-	
출입구 옆 활동공간			55	55	100.0	-	-	-	-	
출입구단차			55	55	100.0	-	-	-	-	
문형태			미닫이문	-	-	-	-	-	-	-
			여닫이문	29	29	100.0	-	-	-	-
			자동문	26	26	100.0	-	-	-	-
손잡이			29	29	100.0	-	-	-	-	
공중사무실 점자표지판			23	1	4.3	1	4.3	21	91.3	
점형블록			55	49	89.1	-	-	6	10.9	
호출벨			26	5	19.2	-	-	21	80.8	
출입구(문) 평균			-	-	81.3	-	0.4	-	18.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시설	통로	유효폭	3	3	100.0	-	-	-	-
		바닥단차	3	3	100.0	-	-	-	-
		바닥마감	3	3	100.0	-	-	-	-
		손잡이 높이	3	-	-	-	-	-	100.0
		손잡이 굽기	-	-	-	-	-	-	-
		손잡이와 벽간 간격	-	-	-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	-	-	-	-	-	-
		벽면 보행장애물	3	3	100.0	-	-	-	-
		기둥, 받침대 보행장애물	3	3	100.0	-	-	-	-
		보행장애물	3	3	100.0	-	-	-	-
		킥플레이트 설치	3	1	33.3	-	-	2	66.7
		통로모서리	3	1	33.3	-	-	2	66.7
		통로평균	-	-	74.1	-	-	-	25.9
		내부시설	경사로	유효폭	10	9	90.0	-	-
휴식참	10			10	100.0	-	-	-	-
활동공간	10			9	90.0	1	10.0	-	-
기울기	10			10	100.0	-	-	-	-
손잡이 높이	10			9	90.0	1	10.0	-	-
손잡이 굽기	10			10	100.0	-	-	-	-
손잡이와 벽간간격	10			10	100.0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10			5	50.0	-	-	5	50.0
수평손잡이	10			1	10.0	3	30.0	6	60.0
재질 및 마감	10			10	100.0	-	-	-	-
추락방지턱	10			10	100.0	-	-	-	-
완화매트	10			-	-	-	-	10	100.0
경사로 평균	-			-	77.5	-	4.2	-	18.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시설	엘리베이터	외부↔대합실	5	5	100.0	-	-	-	-	
		대합실↔승강장	6	6	100.0	-	-	-	-	
	전면활동공간		11	11	100.0	-	-	-	-	
	승강장과 승강기 간격		11	11	100.0	-	-	-	-	
	크기		11	11	100.0	-	-	-	-	
	출입문 유효폭		11	11	100.0	-	-	-	-	
	조작설비 높이		11	11	100.0	-	-	-	-	
	점자표지판		11	11	100.0	-	-	-	-	
	가로조작반		11	11	100.0	-	-	-	-	
	손잡이높이		11	11	100.0	-	-	-	-	
	손잡이굵기		11	11	100.0	-	-	-	-	
	손잡이와 벽간간격		11	11	100.0	-	-	-	-	
	내부거울		2	2	100.0	-	-	-	-	
	안내시설		11	11	100.0	-	-	-	-	
	안전장치		11	11	100.0	-	-	-	-	
	점형블록		11	11	100.0	-	-	-	-	
	출입문형태		11	7	63.9	-	-	4	36.4	
	엘리베이터 평균		-	-	97.9	-	-	-	2.1	
	에스컬레이터	설치장소		7	3	42.9	4	57.1	-	-
		유효폭		7	7	100.0	-	-	-	-
속도		7	7	100.0	-	-	-	-		
이동손잡이		7	7	100.0	-	-	-	-		
수평이동손잡이		7	7	100.0	-	-	-	-		
수평고정손잡이		7	5	71.4	1	14.3	1	14.3		
손잡이점자표시		6	3	50.0	-	-	3	50.0		
에스컬레이터 평균		-	-	80.6	-	10.2	-	9.2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내부시설	계단	휴식참	22	18	81.8	4	18.2	-	-
		유효폭	22	17	77.3	5	22.7	-	-
		디딤판	22	22	100.0	-	-	-	-
		철크면	22	22	100.0	-	-	-	-
		철크면 기울기	22	22	100.0	-	-	-	-
		계단코 길이	22	19	86.4	3	13.6	-	-
		손잡이 높이	22	19	86.4	1	4.5	2	9.1
		손잡이 굵기	20	20	100.0	-	-	-	-
		손잡이와 벽간간격	20	20	100.0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20	16	80.0	-	-	4	20.0
		수평손잡이	20	3	15.0	9	45.0	8	40.0
		계단재질	22	22	100.0	-	-	-	-
		계단코 재질	22	19	86.4	-	-	3	13.6
		점형블록	22	21	95.5	-	-	1	4.5
		추락방지턱	22	22	100.0	-	-	-	-
		계단 평균	-	-	87.2	-	6.9	-	5.8
		내부시설 평균		-	-	83.1	-	3.6	-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반 사항	화장실 위치	30	27	90.0	3	10.0	-	-
		대변기 남녀구분설치	30	23	76.7	6	20.0	1	3.3
		바닥면 높이차이	30	30	100.0	-	-	-	-
		바닥마감	30	30	100.0	-	-	-	-
		점형블록	30	19	63.3	2	6.7	9	30.0
		점자표지판	30	21	70.0	1	3.3	8	26.7
		장애인 화장실 평균	-	-	83.3	-	6.7	-	10.0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칸막이	53	44	83.0	9	17.0	-	-
		대변기 좌우측 유효폭	53	25	47.2	28	52.8	-	-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53	46	86.8	7	13.2	-	-
출입문 형태		53	53	100.0	-	-	-	-	
출입문 유효폭		53	53	100.0	-	-	-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위생시설	장애인 대변기	대변기 형태	53	53	100.0	-	-	-	-	
		수평손잡이	53	53	100.0	-	-	-	-	
		세정장치, 휴지걸이	53	41	77.4	12	22.6	-	-	
		사용여부 설비	53	46	86.8	2	3.8	5	9.4	
		장애인 대변기 평균	-	-	86.8	-	12.2	-	1.0	
	장애인 소변기	수평손잡이	31	24	77.4	-	-	7	22.6	
		수직손잡이	31	24	77.4	-	-	7	22.6	
		장애인 소변기 평균	-	-	77.4	-	-	-	22.6	
	장애인 세면대	설치높이	51	42	82.4	2	3.9	7	13.7	
		수도꼭지형태	44	44	100.0	-	-	-	-	
		수평손잡이	44	42	95.5	-	-	2	4.5	
		점자표시	44	44	9.1	-	-	40	90.9	
		거울	44	42	95.5	2	4.5	-	-	
		장애인 세면대 평균	-	-	76.5	-	1.7	-	21.8	
	위생시설 평균		-	-	81.0	-	5.1	-	13.9	
	안내시설	점자블록	설치장소	23	16	69.6	3	13.0	4	17.4
			규격 및 색상	19	18	94.7	1	5.3	-	-
			설치 방법	19	18	94.7	1	5.3	-	-
			점자블록 평균	-	-	86.3	-	7.9	-	5.8
		안내 및 유도시설	안내도	23	15	65.2	-	-	8	34.8
유도신호장치			23	1	4.3	-	-	22	95.7	
안내 및 유도시설 평균			-	-	34.8	-	-	-	65.2	
경보피난시설		청각경보장치	23	23	100.0	-	-	-	-	
		시각경보장치	23	22	95.7	-	-	1	4.3	
		경보피난시설 평균	-	-	97.8	-	-	-	22.	
안내시설 평균		-	-	73.0	-	2.6	-	24.4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계속>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기 타 시 설	장애인 매표소	활동공간	23	13	56.5	-	-	10	43.5
		점자블록	13	8	61.5	-	-	5	38.5
		높이	13	7	53.8	3	23.1	3	23.1
		하부공간	13	8	61.5	2	15.4	3	23.1
		장애인 매표소 평균	-	-	58.4	-	9.6	-	32.0
	자동 발매기	활동공간	9	9	100.0	-	-	-	-
		점자블록	9	2	22.2	1	11.1	6	66.7
		조작버튼 설치위치	9	9	100.0	-	-	-	-
		점자표시	9	6	66.7	-	-	3	33.3
		음료대 분출구 높이	18	15	83.3	-	-	3	16.7
		음료조작기	18	18	100.0	-	-	-	-
		자동 발매기 평균	-	-	78.7	-	1.9	-	19.4
	개찰구	개폐방법	-	-	-	-	-	-	-
		유효폭	-	-	-	-	-	-	-
		점자블록	-	-	-	-	-	-	-
		개찰구 평균	-	-	-	-	-	-	-
	승강장 (철도/ 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 역사)	바닥기울기	-	-	-	-	-	-	-
		바닥마감	-	-	-	-	-	-	-
		점자블록	-	-	-	-	-	-	-
		차량간격	-	-	-	-	-	-	-
		전락방지시설	-	-	-	-	-	-	-
		난간	-	-	-	-	-	-	-
		차량접근 경고시설	-	-	-	-	-	-	-
		휠체어 승강장 안내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승강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승강장	-	-	-	-	-	-	-
		바닥기울기	-	-	-	-	-	-	-
		바닥마감	-	-	-	-	-	-	-
		승강장 평균	-	-	-	-	-	-	-
보안 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보안검사장	-	-	-	-	-	-	-	
	여객탑승교 유효폭	-	-	-	-	-	-	-	
	여객탑승교 기울기	-	-	-	-	-	-	-	
	보안검사장 및 여객 탑승교 평균	-	-	-	-	-	-	-	
임산부 휴게 시설	임산부 휴게시설 위치	23	17	73.9	-	-	6	26.1	
	임산부 휴게시설	17	14	82.4	-	-	3	17.6	
	전면 활동공간	17	14	82.4	1	5.9	2	11.8	
	기저귀 교환대 높이	15	14	93.3	1	6.7	-	-	
	기저귀 교환대 하부공간	15	14	93.3	1	6.7	-	-	
	임산부 휴게시설 평균	-	-	85.1	-	3.8	-	11.1	
기타시설 평균		-	-	74.0	-	5.1	-	20.9	
9개 도 평균		-	-	80.6	-	4.2	-	15.2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2-41> 지역별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2	2	1	2	1	2	10	3	2	2
평균	88.6	89.1	81.7	76.8	82.8	87.7	81.0	73.9	68.9	79.1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100.0	100.0	87.5	100.0	100.0	93.8	100.0	100.0
	장애안전용주차구역	100.0	96.4	100.0	92.9	-	85.7	85.7	85.7	78.6
	평균	100.0	98.2	100.0	90.2	100.0	92.9	89.7	92.9	89.3
내부 시설	출입구(문)	90.6	81.3	87.5	75.0	80.0	90.0	81.4	78.2	83.3
	통로	-	-	-	-	-	77.8	66.7	-	-
	경사로	81.8	-	-	-	83.3	-	68.8	83.3	-
	엘리베이터	94.5	94.7	-	-	-	100.0	96.6	-	-
	에스컬레이터	74.6	100.0	-	-	-	85.7	81.0	-	-
	계단	86.7	94.7	-	86.7	-	91.1	84.2	93.3	-
	평균	85.7	92.6	87.5	80.8	81.7	88.9	79.8	85.0	83.3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100.0	70.0	50.0	75.0	66.7	97.2	89.4	72.2	66.7
	대변기	98.6	88.9	100.0	66.7	88.9	96.0	77.8	92.6	88.9
	소변기	100.0	100.0	100.0	100.0	0.0	100.0	75.0	33.3	50.0
	세면대	95.0	90.0	0.0	0.0	80.0	80.0	84.7	76.0	50.0
	평균	98.4	87.2	62.5	60.4	58.9	93.3	81.7	68.5	63.9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9.6	77.0	883.3
	안내 및 유도시설	25.0	75.0	0.0	25.0	50.0	75.0	40.0	0.0	25.0
	경보피난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5.0
	평균	75.0	91.7	66.0	775.0	83.3	91.7	76.5	59.3	61.1
기타 시설	매표소	100.0	87.5	75.0	50.0	100.0	50.0	65.0	58.3	0.0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62.5	50.0	100.0	83.3	-	75.0	88.9	66.7	50.0
	임산부 휴게시설	90.0	90.0	100.0	100.0	80.0	90.0	77.4	66.7	90.0
	평균	84.2	75.8	91.7	77.8	90.0	71.7	77.1	63.9	46.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1년 87.7%로 10개 지역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5)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 2-42> 9개도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222	85	41	65	50	64	81	89	15
평균	37.0	36.6	31.4	34.2	30.5	29.4	41.8	27.8	49.1
턱낮추기	29.7	42.4	43.9	52.3	36.0	20.3	54.3	33.7	46.7
활동공간	65.3	65.1	36.6	60.0	51.0	45.3	64.2	41.6	73.3
동선분리	31.1	43.5	19.5	38.5	64.0	29.7	60.5	31.5	40.0
점형블록	23.4	7.1	12.2	12.3	16.0	7.8	14.8	1.80	20.0
선형블록	24.8	12.5	13.3	20.5	12.0	17.2	21.2	21.6	9.1
안내판부착위치	84.5	87.9	69.2	77.1	72.7	84.2	72.7	60.9	83.3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6.0	12.1	3.8	4.2	6.8	7.9	15.2	4.3	50.0
버스정보 조회 버튼	31.1	22.0	52.4	8.5	3.7	22.7	31.4	10.5	70.0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1년 30.5%로 9개도 중에서 7순위로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표 2-43>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턱낮추기	50	18	36.0	32	64.0	-	-
활동공간	49	25	51.0	16	32.7	8	16.3
동선분리	50	23	46.0	-	-	27	54.0
점형블록	50	8	16.0	-	-	42	84.0
선형블록	25	3	12.0	-	-	22	88.0
안내판부착위치	44	32	72.7	2	4.5	10	22.7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44	3	6.8	14	31.8	27	61.4
버스정보조회 버튼	27	1	3.7	-	-	26	96.3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	-	30.5	-	16.6	-	52.8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중 안내판 부착위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다.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1)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전국 9개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살펴보면 기준적합 69.9%, 미적합 12.2%, 미설치 17.8%로 나타남

<표 2-44> 전국 9개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행 접근로	유효폭	833	691	83.0	102	12.2	40	4.8
	재질 및 마감	833	775	93.0	44	5.3	14	1.7
	뒹개	833	796	95.6	16	1.9	21	2.5
	기울기	833	761	91.4	51	6.1	21	2.5
	높이차이제거	833	725	87.0	68	8.2	40	4.8
	보행안전지대	833	797	95.7	12	1.4	24	2.9
	차도분리	833	742	89.1	61	7.3	30	3.6
	장애물 구역 확보	833	762	91.5	-	-	71	8.5
	가로수 가지높이	833	784	94.1	41	4.9	8	1.0
	보도평균	-	-	91.1	-	5.3	-	3.6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343	227	66.2	45	13.1	71	20.7
	재질 및 생상	343	139	40.5	123	35.9	81	23.6
	차량 진출입부 평균	-	-	53.4	-	24.5	-	22.2
턱 낮추기	경계구간 높이차이	493	437	88.6	46	9.3	10	2.0
	연석경사로	493	447	90.7	36	7.3	10	2.0
	턱낮추기 평균	-	-	89.7	-	8.3	-	2.0
점자블럭	횡단보도 위치안내	493	358	72.6	44	8.9	91	18.5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180	69	38.3	32	17.8	79	43.9
	음향신호기 점형블록	167	30	18.0	5	3.0	132	79.0
	점자블록 평균	-	-	43.0	-	9.9	-	47.1
지하도 및 육교	손잡이 설치방법	22	21	95.5	-	-	1	4.5
	점형블록	22	13	59.1	2	9.1	7	31.8
	손잡이 높이	22	21	95.5	-	-	1	4.5
	손잡이 굽기	21	21	100.0	-	-	-	-
	손잡이와 벽간간격	21	21	100.0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21	4	19.0	5	23.8	12	57.1
	지하도 및 육교 평균	-	-	78.2	-	5.5	-	16.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노상 주차장)	설치비율	19	12	63.2	7	36.8	-	-
	주차공간	19	18	94.7	1	5.3	-	-
	바닥마감	19	14	73.7	5	26.3	-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19	16	84.2	3	15.8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노상주차장) 평균	-	-	78.9	-	21.1	-	-
음향 신호기 및 잔여 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493	155	31.4	29	5.9	309	62.7
	음향신호기 설치위치	167	163	97.6	4	2.4	-	-
	잔여시간 표시기	118	86	72.9	20	16.9	12	10.2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평균	-	-	67.3	-	8.4	-	24.3
자동차 진입 제어용 말뚝 (볼라드)	설치형태	224	171	76.3	53	23.7	-	-
	설치간격	224	195	87.1	29	12.9	-	-
	점형블록	224	24	10.7	18	8.0	182	81.3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평균	-	-	58.0	-	14.9	-	27.1
9개 도 평균		-	-	69.9	-	12.2	-	17.8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의 항목별 기준적합률을 살펴보면, 차량진출입부(22.7%), 점자블럭(23.5%) 항목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45> 전북특별자치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행 접근로	유효폭	54	42	77.8	12	22.2	-	-
	재질 및 마감	54	48	88.9	6	11.1	-	-
	뒹개	54	53	98.1	1	1.9	-	-
	기울기	54	49	90.7	5	9.3	-	-
	높이차이제거	54	39	72.2	15	27.8	-	-
	보행안전지대	54	51	94.4	3	5.6	-	-
	차도분리	54	46	35.2	8	14.8	-	-
	장애물 구역 확보	54	50	92.6	-	-	4	7.4
	가로수 가지높이	54	50	92.6	4	7.4	-	-
	보도평균	-	-	88.1	-	11.1	-	0.8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22	10	45.5	8	36.4	4	18.2
	재질 및 생상	22	-	-	18	81.8	4	18.2
	차량 진출입부 평균	-	-	22.7	-	59.1	-	18.2
턱 낮추기	경계구간 높이차이	36	30	83.3	5	13.9	1	2.8
	연석경사로	36	31	86.1	2	5.6	3	8.3
	턱낮추기 평균	-	-	84.7	-	9.7	-	5.6
점자블럭	횡단보도 위치안내	36	23	63.9	6	16.7	7	19.4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15	1	6.7	7	46.7	7	46.7
	음향신호기 점형블록	18	-	-	-	-	18	100.0
	점자블럭 평균	-	-	23.5	-	21.1	-	55.4
지하도 및 육교	손잡이 설치방법	-	-	-	-	-	-	-
	점형블록	-	-	-	-	-	-	-
	손잡이 높이	-	-	-	-	-	-	-
	손잡이 굽기	-	-	-	-	-	-	-
	손잡이와 벽간간격	-	-	-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	-	-	-	-	-	-
지하도 및 육교 평균	-	-	-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노상 주차장)	설치비율	-	-	-	-	-	-	-
	주차공간	-	-	-	-	-	-	-
	바닥마감	-	-	-	-	-	-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	-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노상주차장) 평균	-	-	-	-	-	-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36	24	66.7	2	5.6	10	27.8
	음향신호기 설치위치	18	18	100.0	-	-	-	-
	잔여시간 표시기	12	7	58.3	3	25.0	2	16.7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평균	-	-	75.0	-	10.2	-	14.8
자동차 진입 제어용 말뚝 (볼라드)	설치형태	16	16	100.0	-	-	-	-
	설치간격	16	15	93.8	1	6.3	-	-
	점형블록	16	-	-	-	-	16	100.0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평균	-	-	64.6	-	2.1	-	33.3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	-	59.8	-	18.9	-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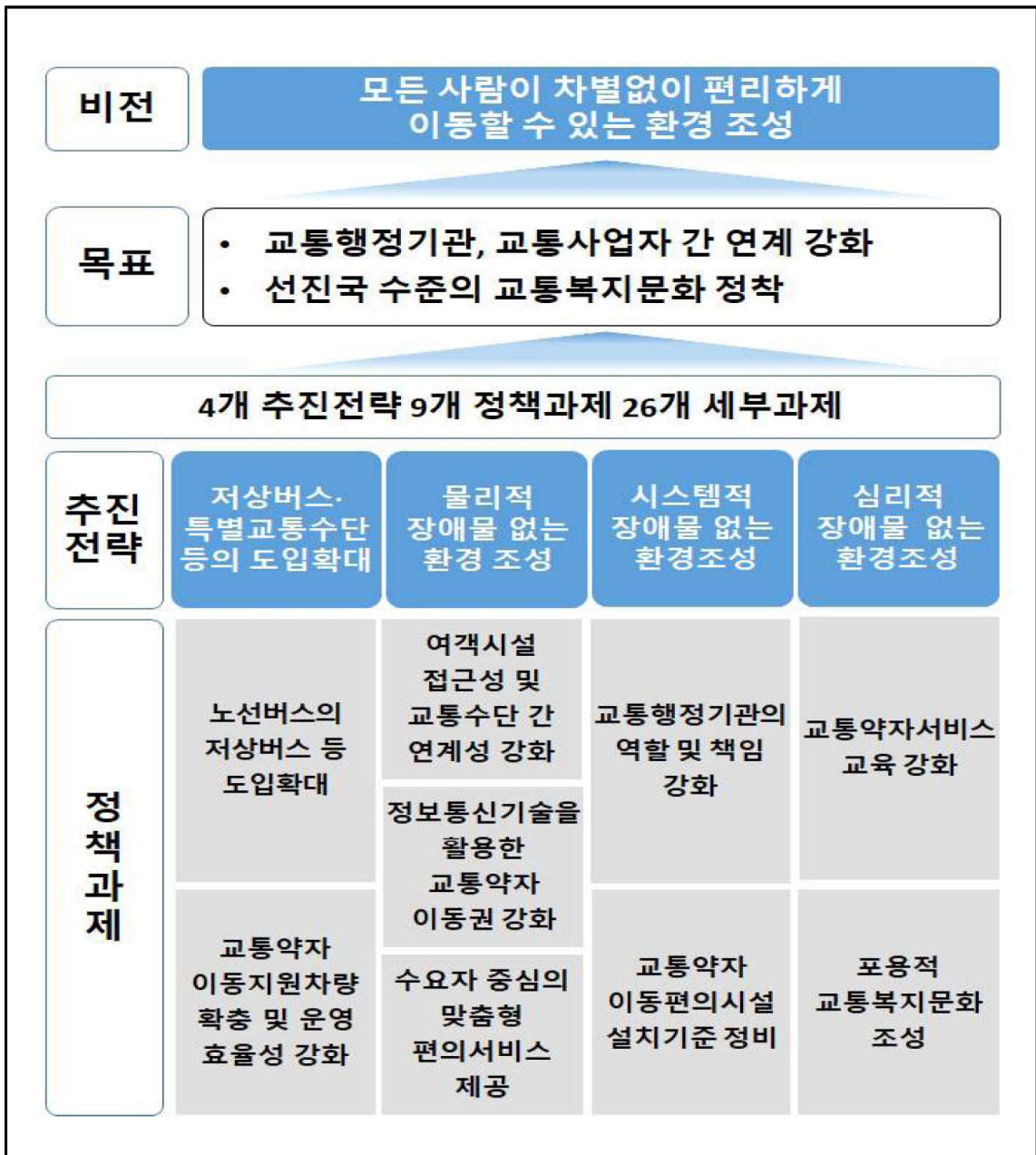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2.4 상위계획 검토

2.4.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 10, 국토교통부)

가. 비전 및 목표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추진



<그림 2-10>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p>I. 저상버스· 특별교통 수단 등의 도입확대</p>	<p>1-1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확대</p>	<p>1-1-1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p> <p>1-1-2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p> <p>1-1-3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의 개발 및 운영</p>
	<p>1-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충 및 운영 효율성 강화</p>	<p>1-2-1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 확대</p> <p>1-2-2 지역 이동지원센터의 지역·수단 간 정보연계 서비스</p> <p>1-2-3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대체수단) 확대</p> <p>1-2-4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p> <p>1-2-5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의료·교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p>
<p>II.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p>	<p>2-1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p>	<p>2-1-1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p> <p>2-1-2 육상-해상 교통수단간 연계 및 환승체계 마련</p> <p>2-1-3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이동편의시설 개선</p> <p>2-1-4 여객선 기준적합 설치율 개선사업</p>
	<p>2-2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p>	<p>2-2-1 교통이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p> <p>2-2-2 여객시설별 교통약자 접근성수준 제공</p> <p>2-2-3 휠체어이용자 이용가능선박안내 기능제공</p>
	<p>2-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p>	<p>2-3-1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p> <p>2-3-2 데이터기반 교통약자 이동취약점 관리체계 구축</p> <p>2-3-3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환경 조성</p> <p>2-3-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최적 배차 유도</p>

<그림 2-1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1



<그림 2-12>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2

나. 부문별 목표 및 정책 추진방향

1)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확대

- 주요 목표(2022년~2026년)
 - 저상버스 도입률 : 시내버스 62%, 농어촌버스 42%, 마을버스 49%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 법정 운영대수의 100%확보

2)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필요성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서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는 42.0%이나, '21년 기준 보급률은 30.6% 수준
 - 기존 도입된 저상버스의 내구연한이 제3차 계획기간(17~21년)에 본격적으로 만료가 시작되어 저상버스의 자연감소분(폐차) 증가
 - 마을 및 농어촌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 매우 저조
 - '21년 마을·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 마을버스 3.9%, 농어촌버스 1.4%
- 주요내용
 - 대상 노선버스에 대하여 자동차 연한 만료 등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도입
 - '26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62% 달성 목표
 - 지역별 목표 : 서울 90%, 광역시 61%, 도지역 41%
 - 농어촌 및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각각 42%, 49% 달성
- 추진계획
 -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관련 법령 정비
 - 대상 노선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시행

3)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 주요내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운영 확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정차하는 여객시설(터미널, 정류장)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개선지원
 - 전국 고속·시외버스 운영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철도 미운영 고속·시외버스 노선 현황조사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우선 도입 노선 검토
 - 지자체/사업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독려 및 확대

4)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의 개발 및 운영

- 주요내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시행
 - 관계 법령의 안전기준 등을 만족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저상 좌석버스 등의 도입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 추진계획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등의 표준모델 개발
 - 저상 좌석버스 시범운영 실시

5)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진
 -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상향 검토(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100명당 1대)
 -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지원
- 추진계획
 - 이동지원센터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 법정 운영대수 조정(상향)을 위한 법령 정비

6) 지역 이동지원센터 지역·수단 간 정보연계 서비스

- 주요내용
 - 각 센터의 이용대상 등록자(보행상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보공유를 통한 이동지원센터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道)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 간 환승·연계 활성화 기반 마련
 - 거주지의 시·군에 등록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별도 추가 등록없이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연계
 - 타 지역(道) 이동 시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 및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으로 고도화
- 추진계획
 - 지역별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DB 구축 및 환승연계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연구(BPR/ISP)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환승시범서비스
 - 타 교통수단(철도, 시외버스 등)과의 환승서비스 시범운영

7)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대체수단 확대

- 주요내용
 -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정 등 운영 효율화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체수단(임차·바우처 택시 등)을 도입 확대
 -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의 운영방법 표준화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정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임차·바우처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 일반 (대형)택시를 대체수단(바우처 택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추진계획
 -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체수단 도입 확대 검토

8)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 다양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공
 - 동일 출발지와 목적지, 또는 노선의 일부를 공유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함께 이용 가능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
 - 수동형 및 전동형 휠체어 외에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및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안전기준, 운영방법, 법정 운행대수 산정방안 마련
- 추진계획
 -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검토
 - 다인승 및 침대형 휠체어 특별교통수단 운영 검토
 - 도시규모 리빙랩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자율주행 및 원격제어를 통한 모빌리티서비스 개발 및 실증운영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휠체어 탑승가능 자율주행차량 실증운영

9)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의료·교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 교통소외지역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의료·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통모델 개발과 통합 관리체계 기술 도입
 - 지자체별 의료·이동 지원사업과 연계(지자체 협업)하여 고령자 교통불편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 해소와 다양한 교통모델 개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플랫폼 운영·배차 서비스로 제공 추진)
 -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ICT, 플랫폼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도입
 - 교통약자 DRT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교통소외지역 의료·교통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 교통소외지역 의료·교통복지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연계

다.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주요 목표(2022년~2026년)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시내버스) 96%, (버스정류장) 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터미널) 73%
 - (철도) 철도차량 99%, 철도역사 90% / 도시(광역)철도차량 98%, 도시(광역)철도역사 93%
 - (항공) 항공기 90%, 공항여객터미널 92%, (해양) 여객선 52%, 여객선터미널 92%
 - (보도) 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1)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 주요내용
 - 재정적 한계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편의시설 정비 추진
 -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도로의 구조·시설 개선 추진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접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접근 이동경로의 보행환경 개선
 -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차량과 보도(정류장) 간 간격을 해소하고,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정비 추진
- 추진계획
 - 저상버스 운행이 부적합한 도로·시설 구조에 대한 개선
 - 버스정류장의 보행접근로 및 시설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2) 육상-해상 교통수단간 연계 및 환승체계 마련

- 주요내용
 - 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여객선과 육상 교통수단을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현황 조사 및 구축방안을 수립
 - 전국의 여객선 터미널 이용객 대상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해수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여객선과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추진계획
 - 여객선 이용자의 육상 교통수단 연계/환승 현황 분석
 - 여객선과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마련
 - 육상-해상 교통수단 간 연계 시범사업 실시

3) 실태조사 결과■ 활용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 주요내용
 - 실태조사 표본 수 확대 및 실태조사 결과 환류 프로세스 마련
 - 표본조사 중인 버스정류장 및 보행환경의 조사를 교통약자의 이동특성, 지역·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확대
 - 교통행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차년도 실태조사시 조치결과 확인
- 추진계획
 - 실태조사 시 버스정류장 및 보행환경 조사 범위 확대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조치 결과 제출(교통행정기관), 실태조사시 조치결과 사항 모니터링

4) 여객선 기준적합 설치율 개선사업

- 주요내용
 - 여객선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 국고 보조항로 운항 여객선에 대해 우선 설치, 일반 항로로 확대
 - 이동편의시설 중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전자문자안내판(22.5%), 교통약자용 좌석(0.8%), 장애인 접근가능표시(2.2%) 시설 설치 강화
- 추진계획
 - 일반항로 운항 여객선 시설개선

5) 교통이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 제공
 -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DB 구축
 - 민간 지도서비스 사업자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정보 활용도 제고
- 추진계획
 - 여객시설(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 내 이동편의시설 정보의 서비스 제공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여객시설 내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
 -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정보 서비스 제공
 - 저상버스 배차정보와 연계한 교통약자 경로서비스 제공

6) 여객시설별 교통약자 접근성수준 평가 및 제공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웹기반 여객시설(환승시설 포함)의 접근성 수준 평가 및 개선필요 여객시설 우선순위 제공
 - 이동편의시설 현황DB 및 이용자 설문조사 정보 등을 분석하여 웹(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기반 개선시급 여객시설 우선순위 제공
 -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정보 활용
- 추진계획
 -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제공방법론 수립
 - 여객시설별 접근성 수준 정보 제공

7) 휠체어 이용자 이용가능 선박안내 기능 제공

- 주요내용
 - 예약시스템(가고싶은섬)에 선박별 휠체어 탑승가능여부 표기(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의 경우, 예매시스템에서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시간대에 표시를 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가능여부를 사전에 파악가능)
 -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개선 계획을 분석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이용가능 선박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추진계획
 -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개선계획 분석
 - 휠체어 탑승가능 선박정보 제공

8)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 주요내용
 -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응답형식이 아닌 교통약자와 동행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등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 교통약자 유형(휠체어이용자, 영유아동반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고려하여 각 여객시설의 접근경로, 여객시설 내 이동 및 교통수단 탑승(좌석착석)까지의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각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및 교통이용편의 서비스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매년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중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모든 대상시설에 대하여 조사 실시
 -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평가지표 개발
 - 분야별(버스, 철도, 항공 등) 현장 조사·평가

9) 데이터기반 교통약자 이동취약점 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교통약자 특성별 철도차량과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집 및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 관리로 이동편의증진 서비스 신뢰성 제고
 - 수단이용 중 발생하는 민원데이터, 안전사고 데이터 등 이용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으로 교통약자 특성별 취약지점 및 시설 도출
 - 도출된 취약지점 및 시설 대응 및 관리 매뉴얼 제작·활용
- 추진계획
 - 교통약자 이용패턴 데이터 수집 및 취약지점·시설 도출
 - 취약지점과 시설을 고려한 가이드북 및 대응매뉴얼 개발

10)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위한 저상버스 최적 배차 유도

- 주요내용
 - 지역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조사 및 최적 배차간격 유도
 - 지역별 요일별 시간대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현황 및 차이 분석
 - 조사결과의 교통행정기관 공유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배차간격 조절 유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증진계획을 통해 저상버스 적정배차 방안 검토)
- 추진계획
 - 이동 실태분석을 통한 교통약자/비교통약자의 이동특성 차이 분석
 - 지역·시간대별 저상버스 배차간격 현황 조사 및 결과 배포

라.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주요 목표(2022년~2026년)
 - 교통행정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 교통수단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1) 교통복지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성 및 평가

-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광역(시·도)-지역(시·군)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 교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사업자 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체계 구축
 -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 개선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 추진계획
 - 교통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마련 및 지역별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 교통복지지표 개발 및 법제화를 통해 평가 시행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실행력 제고

- 주요내용
 - 국가 증진계획을 계획 시작 전년도 상반기에 수립하여 지방 증진계획이 계획연도 이전에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법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시, 교통복지협의체에서 점검 후 제출
- 추진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고시('26년 상반기)

3) 이동편의시설 종류 확대 및 기준 정비

- 주요내용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특성·규모를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세분화 등 정비
 - 국내·외에서 개발·운영 중인 교통약자관련 시설* 중 이동편의시설로 새롭게 포함 가능한 시설 검토
 - 교통약자의 동선을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세부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계획
 - 관계법령과 상이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비
 - 「궤도운송법」에 따른 수단 및 시설 중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범위 및 설치 해야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 교통약자 동선을 고려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 교통수단 세분화 및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4)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정비

- 주요내용
 - BF인증 기준 검토 및 정비를 통해 현장의 혼란 해소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과 BF인증 기준을 비교·검토하고 국제기준과 장애인 등 정책 수혜자를 고려한 BF인증 기준 정비
- 추진계획
 - BF인증 기준 정비

마. 심리적 장애를 없는 환경조성

- 주요 목표(2022년~2026년)
 - 승무원대상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실적관리체계 마련
 -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및 국민 참여형 인식개선 행사 개최

1)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강화

-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승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인식 및 서비스 개선 교육 추진 및 관리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규정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승무원 대상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체험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내용에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 포함 검토
- 추진계획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관련 법령 정비안 마련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 유형별 표준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중교통 관련 내용 포함 검토

2) 교통복지협의체를 통한 교통약자 배려문화 조성

- 주요내용
 - 교통행정기관,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교육 및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교통행정기관은 도시철도 교통약자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체계 구축
 - 교통사업자는 매뉴얼을 활용한 교통약자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 철도운영기관은 자체 매뉴얼 제작 및 전 직원 대상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마련
 - 역·열차 미디어 장치를 활용한 교통약자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시행
 - 고령자를 위한 특화 직무 발굴, 사랑 나눔 기부좌석 운영 등 사회적 사회공헌 활동 강화

2.4.2 상위계획 검토에 따른 교통수단 도입률 및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정리

가. 교통수단 도입률

<표 2-46> 교통수단 도입률

구분	운행수단	2021년(현황)	2026년(계획)	
			전국	도지역
저상버스	시내버스	30.6%	62.0%	41.0%
	농촌버스	1.4%	42.0%	
	마을버스	3.9%	49.0%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86.0%	100.0%	

나.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 2-47>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운행수단	2021년(현황)	2026년(계획)	
			전국	도지역
버스	시내버스	88.0%	96.0%	96.0%
	버스정류장	45.4%	66.0%	73.0%
	버스터미널	65.0%	73.0%	73.0%
보행	보행환경	77.6%	83.0%	73.0%
도시철도	도시철도(차량)	96.0%	98.0%	98.0%
	도시철도(역사)	89.0%	93.0%	93.0%
철도	철도(차량)	98.9%	99.0%	99.0%
	철도(역사)	82.5%	90.0%	90.0%
여객	여객선	37.8%	52.0%	52.0%
	항망	82.2%	92.0%	92.0%
항공	항공기	73.7%	90.0%	90.0%
	공항	86.8%	92.0%	92.0%

- 3.1 전국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
- 3.2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추진실적
- 3.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
- 3.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과
분석

제 3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성과 분석

3.1 전국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

3.1.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 평균 목표 달성률은 교통수단 101.9%, 여객시설 94.2%, 보행환경 95.8%으로 교통수단만 목표치를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수단 : 세부적으로 버스, 도시철도·철도 분야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항공기와 여객선분야는 목표치에 미달하였음
 - 여객시설 : 여객선 터미널분야를 제외한 모든 여객시설이 목표에 미달

<표 3-1> 전국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단위 : %)		
대상시설		목표(전국)	실적('21년)	달성률
교통수단	일반버스	82.0%	88.0%	107.3%
	저상버스	90.0%	95.8%	106.4%
	도시철도	90.0%	96.0%	106.7%
	철도	90.0%	98.9%	109.9%
	항공기	90.0%	73.7%	81.9%
	여객선	39.0%	37.8%	96.9%
	교통수단평균	80.2%	81.7%	101.9%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73.0%	64.0%	87.7%
	도시철도역사	90.0%	89.9%	99.9%
	철도역사	90.0%	82.5%	91.7%
	공항터미널	90.0%	86.8%	96.4%
	여객선터미널	79.0%	82.2%	104.1%
	버스정류장	57.0%	45.4%	79.6%
	여객시설 평균	79.8%	75.1%	94.2%
도로(보행환경)		81.0%	77.6%	95.8%
전체평균		80.1%	78.4%	97.8%

출처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 2022.10)

3.1.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율

-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0.6%로 목표 미달하였으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6.0%로 목표 대비 102.4% 달성하였음

<표 3-2> 전국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구 분		도입률 목표	실적('21년)	달성률	비고
저상버스	전국	42.0	30.6	72.9	목표미달성
	서울	65.0	59.7	91.8	목표미달성
	광역시	45.5	29.1	64.0	목표미달성
	도지역	32.0	19.8	61.9	목표미달성
특별교통수단		84.0	86.0	102.4	목표달성

출처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 2022.10)

3.1.3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 전국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70.2점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표 3-3> 전국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현황

대상시설		목표(전국)	실적('21년)	달성률	
교통수단	버스	일반버스	70점	73.5점	105.0%
		저상버스	70점		
	도시철도		80점	79.5점	99.4%
	철도		80점	80.2점	100.3%
	고속/시외버스		-	72.7점	-
	항공기		80점	76.7점	95.9%
여객선		70점	71.3점	101.9%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70점	71.4점	102.0%
	버스정류장		80점	70.9점	88.6%
	철도역사		80점	78.9점	98.6%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역사		80점	79.3점	99.1%
	공항		80점	76.7점	95.9%
	여객선터미널		80점	68.7점	85.9%
도로(보행환경)		70점	68.2점	97.4%	
전체평균		70점	70.2점	100.3%	

출처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 2022.10)

3.2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추진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전북특별자치도, 2020.03),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1.05),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2.06)를 기초로 추진 실적을 분석하였음

3.2.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가.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 3-4>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차량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 분		기준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497	80.7	11.8	7.5
시내버스	일반	199	77.7	18.7	3.6
	저상	91	85.1	11.3	3.6
계		290	85.4	11.6	3.0
농어촌버스		55	73.9	15.2	11.0
마을버스	일반	-	-	-	-
	저상	-	-	-	-
계		-	-	-	-
고속·시외버스		152	55.0	16.8	28.2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3-5> 전국9개도 평균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구 분	전국9개 도지역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기준적합률	기준미적합	미설치
경기도	91.8	4.8	3.4
강원특별자치도	81.9	11.4	6.7
충청북도	80.0	11.8	8.2
충청남도	78.6	12.3	9.1
전북특별자치도	80.7	11.8	7.5
전라남도	83.9	9.7	6.5
경상북도	78.3	7.7	14.0
경상남도	77.6	10.2	12.1
제주특별자치도	90.1	6.8	3.1
평균	86.6	7.4	6.0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수단 중 버스(일반, 저상)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율은 80.7%로 전국 9개도에서 5번째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률 평균 86.6%대비 5.9% 낮게 나타남
- 버스차량은 내용년수(사용연한) 도래에 따라 연도를 거듭 할수록 신차 비율이 높아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매년 이루어지는 전국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버스차량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표본 선정에 따라 다소 오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표 3-6> 버스차량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구분	시내+농어촌+마을+시외			시내+농어촌버스(마을/시외 제외)		
	20년(①)	21년(②)	비고	20년(③)	21년(④)	비고
			②-①			④-③
평균	91.7	90.0	-1.7	92.8	93.4	+0.6
서울	97.2	97.6	+0.4	97.4	97.8	+0.4
부산	88.7	89.0	+0.3	91.2	91.6	+0.4
대구	94.3	94.9	+0.06	94.3	94.9	+0.6
인천	91.4	93.9	+2.5	91.4	94.0	+2.6
광주	94.0	94.9	+0.9	95.0	95.7	+0.7
대전	95.1	95.9	+0.8	95.1	96.0	+0.9
울산	92.0	94.0	+2.0	93.0	95.2	+2.2
세종특별자치시	84.8	95.6	+0.8	83.9	84.9	+1.0
경기도	93.9	91.8	-2.1	96.2	96.3	+0.1
강원특별자치도	83.7	81.9	-1.8	87.4	88.3	+0.9
충북	77.9	80.0	+2.1	78.2	83.9	+5.7
충남	81.4	78.6	-2.8	82.9	83.4	+0.5
전북특별자치도	82.5	80.7	-1.8	83.3	84.5	+1.2
전남	87.5	83.9	-3.6	88.2	88.2	-
경북	76.5	78.3	+1.8	78.7	81.6	+2.9
경남	80.4	77.6	-2.8	81.8	82.0	+0.2
제주특별자치도	88.3	90.1	+1.8	88.3	90.6	+2.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의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비교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까지의 설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났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마을버스 표본조사로 인한 현상으로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를 제외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여객선 기준적합 설치율

<표 3-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설치기준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동 안내 시설	방송음성	명확한 음량과 음색	5	-	-	-	-	5	100.0
	방송언어	국어와 영어로 방송	-	-	-	-	-	-	-
	자동안내시설 평균		-	-	-	-	-	-	100.0
전자 문자 안내판	설치위치	출입구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	5	-	-	-	-	5	100.0
	문자형태	굵은글씨,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	-	-	-	-	-	-	-
	문자언어	한글과 영어	-	-	-	-	-	-	-
	전자문자 안내판 평균		-	-	-	-	-	-	100.0
목적지 표시	설치위치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위치	5	3	30.0	2	40.0	-	-
	소재	강한 햇빛과 야간에도 식별 가능	5	5	100.0	-	-	-	-
	목적지 표시 평균		-	-	80.0	-	20.0	-	-
휠체어 승강 설비 (승강장)	승강설비	승강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	5	-	-	5	100.0	-	-
	여객 출입구	출입구 1곳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 통과 가능한 경사판 등 설치	5	5	100.0	-	-	-	-
	3천톤 이상 승강설비	승강기 또는 휠체어리프트 1곳 이상 설치	-	-	-	-	-	-	-
	승강기 크기 및 재질	휠체어이용이 충분하고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	-	-	-	-	-	-
	휠체어 승강설비(저상)평균		-	-	50.0	-	50.0	-	-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 좌석	설치비율	휠체어 전용공간이 여객정원 100인당 1곳 이상 설치	5	1	20.0	1	20.0	3	60.0
	설치위치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	2	2	100.0	-	-	-	-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보관함 설치	5	-	-	-	-	5	100.0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고정설비 설치	5	1	20.0	-	-	4	80.0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 좌석 평균		-	-	35.0	-	5.0	-	60.0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위치	휠체어전용좌석과 가까운 위치	5	-	-	2	40.0	3	60.0
	대변기	장애인 대변기 1개 이상	2	2	100.0	-	-	-	-
	출입문 형태	미닫이식	2	-	-	1	50.0	1	50.0
	점자 표지판	출입문 옆에 설치	2	2	100.0	-	-	-	-
	장애인 전용 화장실 평균		-	-	50.0	-	22.5	-	27.5
장애인 접근기능 표시	설치위치	선방의 출입문에 장애인	5	2	40.0	-	-	3	60.0
출입구 통로	승강구 ~좌석	통로 유효폭 0.8m 이상	5	5	100.0	-	-	-	-
	좌석 ~화장실	통로 유효폭 0.8m 이상	5	5	100.0	-	-	-	-
	손잡이	통로의 0.9m 높이에 설치	5	2	40.0	-	-	3	60.0
	손잡이 점자표시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	2	2	100.0	-	-	-	-
	출입구 통로 평균		-	-	85.0	-	-	-	15.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평균		-	-	42.5	-	12.2	-	45.3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3-8> 지방해양수산청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부산	인천	동해	대산	군산	여수	목포	포항	마산	제주
기준사례수	1	19	4	9	5	20	68	4	24	9
평균	37.5	40.5	34.1	39.7	42.5	34.2	40.9	29.2	27.3	47.4
자동안내시설	100.0	45.2	50.0	36.1	-	29.2	23.2	50.0	-	59.7
전자문자안내판	-	43.5	16.7	70.4	-	35.0	34.8	66.7	-	44.4
목적지표시	100.0	41.1	25.0	19.4	80.0	17.5	54.3	-	45.8	77.8
휠체어승강설비	-	73.7	62.5	44.4	50.0	51.3	61.0	50.0	75.0	69.4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좌석	-	3.9	-	11.1	35.0	27.5	34.6	-	4.2	27.8
장애인 전용화장실	50.0	47.8	62.5	58.3	50.0	53.8	48.3	-	29.6	47.2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	15.8	-	22.2	40.0	5.0	16.2	-	4.2	-
출입구통로	50.0	52.6	56.3	55.6	85.0	54.2	54.8	66.7	59.4	52.8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3-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의 항목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구분	20년(①)	21년(②)	비교
			②-①
여객선 평균	34.9	42.5	+7.6
자동안내시설	53.3	-	-53.3
전자문자안내판	22.5	-	-22.5
목적지표시	54.9	80.0	+25.1
휠체어승강설비	66.2	50.0	-16.2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좌석	0.8	35.0	+34.2
장애인 전용화장실	22.8	50.0	+27.2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2.2	40.0	+37.8
출입구통로	56.3	85.0	+28.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수단 중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 적합율은 42.5%로 확인 되었으며, 9개도 21년 평균 대비 4.7%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1)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 3-10> 9개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20년(①)	21년(②)	비고
			②-①
경기도	73.1	59.9	-3.2
강원특별자치도	65.8	63.6	-2.2
충청북도	66.0	67.0	+1.0
충청남도	66.2	67.2	+1.0
전북특별자치도	61.7	59.2	-2.5
전라남도	50.9	54.3	+3.4
경상북도	64.6	55.8	-8.8
경상남도	66.4	64.9	-1.5
제주특별자치도	59.7	59.7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실태조사 결과 20년 기준적합률 61.7%에서 21년 59.2%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 3-11> 철도역사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년(①)	21년(②)	비고
			②-①
철도역사 평균	84.4	82.5	-2.9
서울	92.9	92.8	-0.1
부산	87.7	88.4	+0.7
대구	85.1	85.1	-
광주	83.8	84.1	+0.3
대전	89.6	89.8	+0.2
울산	81.0	89.8	+8.8
세종	82.1	82.5	+0.4
경기	90.1	86.9	-3.2
강원특별자치도	84.1	77.6	-6.5
충북	84.9	79.0	-5.9
충남	87.6	86.1	-1.5
전북특별자치도	86.1	86.1	-
전남	81.4	75.9	-5.5
경북	83.2	79.4	-3.8
경남	83.0	82.3	-0.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철도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0년 86.1%로 2021년과 같으며 전국평균 82.5%보다 +3.6%의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3)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 3-12> 공항여객터미널의 공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년(①)	21년(②)	비고
			②-①
공항여객터미널 평균	84.5	86.8	+2.3
김포공항_국내	81.5	87.2	+5.7
김포공항_국제	83.2	86.2	+3.0
김해공항_국내	86.8	87.0	+0.2
김해공항_국제	89.6	90.0	+0.4
대구공항	91.2	91.4	+0.2
인천공항_T1	79.3	81.8	+2.5
인천공항_T2	81.7	85.1	+3.4
광주공항	82.5	82.5	-
울산공항	91.0	91.1	+0.1
원주공항	78.8	78.9	+0.1
양양공항	89.6	90.2	+0.6
청주공항	89.0	89.0	-
군산공항	83.8	83.8	-
여수공항	87.2	87.6	+0.4
무안공항	88.5	88.5	-
포항공항	90.4	92.9	+2.5
사천공항	85.9	85.6	-0.3
제주공항	88.7	89.5	+0.8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공항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83.8%로 2020년 대비 2021년 또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국 평균 86.8% 보다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표 3-13> 전국 여객선 터미널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특별 자치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례수	2	2	1	2	1	2	10	3	2	2
평균	88.6	89.1	81.7	76.8	82.8	87.7	81.0	73.9	68.9	79.1
매개 (외부) 시설	보행접근로	100.0	100.0	100.0	87.5	100.0	100.0	93.8	100.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0.0	96.4	100.0	92.9	-	85.7	85.7	85.7	78.6
	평균	100.0	98.2	100.0	90.2	100.0	92.9	89.7	92.9	89.3
내부 시설	출입구(문)	90.6	81.3	87.5	75.0	80.0	90.0	81.4	78.2	83.3
	통로	-	-	-	-	-	77.8	66.7	-	-
	경사로	81.8	-	-	-	83.3	-	68.8	83.3	-
	엘리베이터	94.5	94.7	-	-	-	100.0	96.6	-	-
	에스컬레이터	74.6	100.0	-	-	-	85.7	81.0	-	-
	계단	86.7	94.7	-	86.7	-	91.1	84.2	93.3	-
	평균	85.7	92.6	87.5	80.8	81.7	88.9	79.8	85.0	83.3
위생 시설	화장실일반사항	100.0	70.0	50.0	75.0	66.7	97.2	89.4	72.2	66.7
	대변기	98.6	88.9	100.0	66.7	88.9	96.0	77.8	92.6	88.9
	소변기	100.0	100.0	100.0	100.0	-	100.0	75.0	33.3	50.0
	세면대	95.0	90.0	-	-	80.0	80.0	84.7	76.0	50.0
평균	98.4	87.2	62.5	60.4	58.9	93.3	81.7	68.5	63.9	
안내 시설	점자블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9.6	77.8	83.3
	안내 및 유도시설	25.0	75.0	-	25.0	50.0	75.0	40.0	-	25.0
	경보피난시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5.0
	평균	75.0	91.7	66.7	75.0	83.3	91.7	76.5	59.3	61.1
기타 시설	매표소	100.0	87.5	75.0	50.0	100.0	50.0	65.0	58.3	-
	자동발매기 및 음료대	62.5	50.0	100.0	83.8	-	75.0	88.9	66.7	50.0
	임산부 휴게시설	90.0	90.0	100.0	100.0	80.0	90.0	77.4	66.7	90.0
	평균	84.2	75.8	91.7	77.8	90.0	71.7	77.1	63.9	46.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여객선터미널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인천광역시가 89.1%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87.7%로 9개도 대비 3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준적합 설치율중 위생시설(93.3%) 항목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매개(외부)시설(92.9%), 안내시설(91.7%), 내부시설(88.9%), 기타시설(71.7%)순으로 나타났음

<표 3-14> 여객선터미널의 터미널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년(①)	21년(②)	비고
			②-①
여객선 터미널 평균	83.0	82.2	-0.8
무역항 평균	83.0	84.4	+1.4
연안항 평균	-	73.6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5)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2021년 국토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버스정류장은 조사대상 여객 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여객선터미널) 및 환승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중 수직이동시설(엘리베이터) 주변 150m 이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표 3-15> 버스정류장의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년(①)	21년(②)	비고
			②-①
버스정류장 평균	31.9	34.9	+3.0
경기	34.0	37.3	+3.3
강원	24.7	38.4	+13.7
충북	32.0	30.9	-1.1
충남	27.5	33.2	+5.7
전북특별자치도	36.7	30.9	-5.8
전남	26.1	28.9	+2.8
경북	33.8	42.9	+9.1
경남	32.3	27.7	-4.6
제주	39.7	44.3	+4.6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버스정류장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30.9%로 9개도중 6위로 나타났음
-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0년 36.7%에서 2021년 30.9%로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표본에 의한 방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는 9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 설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1) 보행환경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표 3-16> 보행환경의 9개도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특별 자치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240	87	42	67	50	67	84	91	15
평균	75.6	63.6	72.0	65.0	59.8	63.4	69.8	58.7	86.2
보도	94.0	87.4	88.4	94.0	88.1	91.6	89.3	88.9	97.8
차량진출입부	66.1	49.1	85.7	46.9	22.7	62.1	61.1	3.4	-
턱낮추기	90.4	86.3	95.3	99.1	84.7	86.7	94.7	79.7	100.0
점자블록	57.1	34.2	46.9	25.0	23.5	37.0	56.2	40.4	66.7
지하도 및 육교	79.0	75.0	-	75.0	-	58.3	-	100.0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노상주차장)	87.5	-	-	-	-	-	50.0	25.0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	-	-	-	-	60.3	76.4	69.4	100.0
자동차 진입제어 말뚝 (블라드)	63.1	49.3	49.2	54.8	64.6	47.9	61.1	62.7	66.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표 3-17> 보행환경 지역 및 연도별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20년(①)	21년(②)	비고
			②-①
보행환경 평균	68.1	68.2	+0.1
경기	75.6	75.6	-
강원	62.1	63.6	+1.5
충북	71.3	72.0	+0.7
충남	62.1	65.0	+2.9
전북특별자치도	59.8	59.8	-
전남	61.7	63.4	+1.7
경북	69.9	69.8	-0.1
경남	58.3	58.7	+0.4
제주	91.7	86.2	-5.5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2020년 대비 2021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개도 평균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 설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종합

-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버스 80.7%, 여객선 42.5%, 철도역사 86.1%, 여객자동차 터미널 59.2%, 여객선 터미널 82.2%, 공항여객터미널 83.8% 버스정류장 30.9%, 보행환경 59.8%로 나타났다
- 버스,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 터미널은 높은 적합률을 보이고 있으나, 여객선,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정류장, 보행환경 부분에서는 기준 적합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구분	대상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80.7%
	여객선	42.5%
	철도역사	86.1%
	여객자동차터미널	59.2%
	여객선터미널	82.2%
	공항여객터미널	83.8%
	버스정류장	30.9%
	보행환경	59.8%

3.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전북특별자치도, 2020.03), 및 도내 시·군부의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기초로 추진 실적을 분석하였음

3.3.1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추진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19>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구 분		제3차계획 목표	제4차계획 조사치	달성률	
전주시	교통수단	버스	85.0%	85.4%	100.5%
		버스정류장	53.0%	42.6%	80.4%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65.0%	83.3%	128.2%
		철도역사	90.0%	97.1%	107.9%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70.0%	65.5%	93.6%
군산시	교통수단	버스	85.0%	88.2%	103.8%
		여객선	50.0%	95.2%	190.4%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60.0%	81.0%	135.0%
		여객터미널	72.0%	94.0%	130.6%
	여객선터미널	90.0%	27.2%	30.2%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0.0%	63.1%	78.9%	
익산시	교통수단	버스	63.0%	59.7%	94.8%
		버스정류장	63.0%	77.6%	123.2%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63.0%	45.9%	72.9%
		철도역사	63.0%	73.2%	116.2%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63.0%	59.9%	95.1%
정읍시	교통수단	버스	90.0%	59.3%	65.9%
		버스정류장	80.0%	44.6%	55.8%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80.0%	75.0%	93.8%
		철도역사	90.0%	100.0%	111.1%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5.0%	69.1%	81.3%
남원시	교통수단	버스	90.0%	82.0%	91.1%
		버스정류장	53.0%	31.3%	59.1%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64.0%	68.8%	107.5%
		철도역사	90.0%	88.1%	97.9%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6.0%	81.7%	95.0%
김제시	교통수단	버스	60.0%	49.8%	83.0%
		버스정류장	60.0%	34.9%	58.2%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40.0%	45.0%	112.5%
		철도역사	80.0%	82.9%	103.6%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90.0%	64.8%	72.0%

출처 :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 : 1) 완주군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제외하였음(24년 발주예정)

2) 3차계획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시·군은「전북특별자치도제3차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020. 03」의 목표치를 적용하여 달성률을 산출하였음

3) 군산시의 경우 철도역사 및 공항은 3차 계획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4차계획시 추진실적에서 제외하였음

4) 부안군의 여객선의 경우 3차계획목표 및 4차계획조사치가 제시되지 않아 제외 하였으며, 여객터미널의 경우 4차계획 조사 시기에 공사중으로 인하여 추진실적에서 제외하였음

<표 계속>

구 분		제3차계획 목표	제4차계획 조사치	달성률	
무주군	교통수단	버스	90.0%	73.9%	82.1%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80.0%	30.5%	38.1%
		여객터미널	80.0%	59.2%	74.0%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5.0%	59.8%	70.4%
진안군	교통수단	버스	90.0%	73.9%	82.1%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80.0%	30.5%	38.1%
		여객터미널	80.0%	59.2%	74.0%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5.0%	59.8%	70.4%
장수군	교통수단	버스	90.0%	73.9%	82.1%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80.0%	30.5%	38.1%
		여객터미널	80.0%	59.2%	74.0%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5.0%	59.8%	70.4%
임실군	교통수단	버스	60.0%	52.6%	87.7%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60.0%	23.7%	39.5%
		여객터미널	60.0%	61.5%	102.5%
		철도역사	60.0%	78.4%	130.7%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0.0%	53.3%	66.6%
순창군	교통수단	버스	90.0%	63.6%	70.7%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80.0%	39.6%	49.5%
		여객터미널	80.0%	53.4%	66.8%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0.0%	63.6%	79.5%
고창군	교통수단	버스	60.0%	61.1%	101.7%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60.0%	40.3%	67.2%
		여객터미널	60.0%	44.2%	73.7%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70.0%	57.8%	82.6%
부안군	교통수단	버스	90.0%	41.7%	46.3%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80.0%	47.5%	59.4%
		여객터미널	80.0%	66.1%	82.6%
	보행환경	보도,육교,횡단보도	85.0%	87.5%	102.9%

출처 :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주 : 1) 완주군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제외하였음(24년 발주예정)
 2) 3차계획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시·군은 「전북특별자치도제3차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020. 03」의 목표치를 적용하여 달성률을산출하였음
 3) 군산시의 경우 철도역사 및 공항은 3차 계획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4차계획시 추진실적에서 제외하였음
 4) 부안군의 여객선의 경우 3차계획목표 및 4차계획조사치가 제시되지 않아 제외 하였으며, 여객터미널의 경우 4체계획 조사 시기에 공사중으로 인하여 추진실적에서 제외하였음

3.3.2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성과분석

- 교통수단의 경우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제3차 계획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여객시설의 경우 버스정류장, 여객터미널, 철도역사의 모든항목을 달성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객시설 항목 중 버스정류장에 대한 항목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행환경은 부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제3차 계획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조사항목 등 조사 방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시·군의 조사결과들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나타남
- 따라서 향후 5차 시·군의 증진계획 용역 수행시 실태조사 등 조사방법의 통일된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14개 시·군과 사전공유가 필요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조사 기준을 토대로 각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기준적합률 조사시 O, △, X 등 기호대신 10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통일성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음

<표 3-20>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조사 방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	100점 기준 조사표																																																																																																																																																											
<p>■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조제1항 관련></p> <p>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p> <p>1. 교통수단</p> <p>가. 버스</p> <p>1) 자동안내방송시설</p> <p>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p> <p>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p> <p>2) 전자문자안내판</p> <p>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뒷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나) 전자문자안내판은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p> <p>3) 목적지 표시</p> <p>가) 버스의 목적지는 버스 외부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목적지 표시는 밤에도 알아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4) 휠체어 승강설비</p> <p>가)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 공간을 제외한 차량 안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면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나)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차·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 사용자의 주 출입구로 정하고 해당 승강구 유효폭은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p> <p>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p> <p>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5) 교통약자용 좌석</p> <p>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인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표 3-12] 여객자동차터미널 실태 조사 세부 결과 (단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적합</th> <th rowspan="2">미적합</th> <th rowspan="2">미설치</th> </tr> <tr>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대개 시설</td> <td rowspan="5">보통 접근로</td> <td>유효폭</td> <td>50.0</td> <td>0.0</td> <td>50.0</td> </tr> <tr> <td>기둥기</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재질 및 마감</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높이 차이 제거</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평균</td> <td>87.5</td> <td>0.0</td> <td>12.5</td> </tr> <tr> <td rowspan="5">장애인 전용 주차구역</td> <td>설치 비율</td> <td>0.0</td> <td>0.0</td> <td>100.0</td> </tr> <tr> <td>보행 안전 울림</td> <td>0.0</td> <td>0.0</td> <td>100.0</td> </tr> <tr> <td>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td> <td>0.0</td> <td>0.0</td> <td>100.0</td> </tr> <tr> <td>바닥 마감</td> <td>-</td> <td>-</td> <td>-</td> </tr> <tr> <td>바닥 및 임시 안내 표시</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10">내부 시설</td> <td rowspan="5">출입구 (문)</td> <td>바닥면</td> <td>-</td> <td>-</td> <td>-</td> </tr> <tr> <td>평균</td> <td>0.0</td> <td>0.0</td> <td>100.0</td> </tr> <tr> <td>통로 유효폭</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전면 유효 거리</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출입구 양 활동 공간</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 rowspan="5">통로</td> <td>출입구 단차</td> <td>50.0</td> <td>50.0</td> <td>0.0</td> </tr> <tr> <td>문 형태</td> <td>-</td> <td>-</td> <td>-</td> </tr> <tr> <td>미닫이문</td> <td>-</td> <td>-</td> <td>-</td> </tr> <tr> <td>여닫이문</td> <td>0.0</td> <td>0.0</td> <td>100.0</td> </tr> <tr> <td>자동문</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10">보행환경</td> <td rowspan="5">보행장애물</td> <td>손잡이</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광충사무실 징자표지판</td> <td>0.0</td> <td>0.0</td> <td>100.0</td> </tr> <tr> <td>점행방향</td> <td>50.0</td> <td>0.0</td> <td>50.0</td> </tr> <tr> <td>표출물</td> <td>-</td> <td>-</td> <td>-</td> </tr> <tr> <td>평균</td> <td>62.5</td> <td>6.3</td> <td>31.3</td> </tr> <tr> <td rowspan="5">보행장애물</td> <td>유효폭</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바닥단차</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바닥마감</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손잡이 높이</td> <td>50.0</td> <td>0.0</td> <td>50.0</td> </tr> <tr> <td>손잡이 굵기</td> <td>50.0</td> <td>0.0</td> <td>50.0</td> </tr> <tr> <td rowspan="5">보행장애물</td> <td>손잡이와 벽간 간격</td> <td>50.0</td> <td>0.0</td> <td>50.0</td> </tr> <tr> <td>손잡이 징자표지판</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보행장애물·벽면</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보행장애물·기둥·발판대</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r> <td>보행장애물</td> <td>100.0</td> <td>0.0</td> <td>0.0</td> </tr> </tbody> </table>	구분	적합	미적합	미설치	합계	대개 시설	보통 접근로	유효폭	50.0	0.0	50.0	기둥기	100.0	0.0	0.0	재질 및 마감	100.0	0.0	0.0	높이 차이 제거	100.0	0.0	0.0	평균	87.5	0.0	12.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	0.0	0.0	100.0	보행 안전 울림	0.0	0.0	100.0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0.0	0.0	100.0	바닥 마감	-	-	-	바닥 및 임시 안내 표시	-	-	-	내부 시설	출입구 (문)	바닥면	-	-	-	평균	0.0	0.0	100.0	통로 유효폭	100.0	0.0	0.0	전면 유효 거리	100.0	0.0	0.0	출입구 양 활동 공간	100.0	0.0	0.0	통로	출입구 단차	50.0	50.0	0.0	문 형태	-	-	-	미닫이문	-	-	-	여닫이문	0.0	0.0	100.0	자동문	-	-	-	보행환경	보행장애물	손잡이	100.0	0.0	0.0	광충사무실 징자표지판	0.0	0.0	100.0	점행방향	50.0	0.0	50.0	표출물	-	-	-	평균	62.5	6.3	31.3	보행장애물	유효폭	100.0	0.0	0.0	바닥단차	100.0	0.0	0.0	바닥마감	100.0	0.0	0.0	손잡이 높이	50.0	0.0	50.0	손잡이 굵기	50.0	0.0	50.0	보행장애물	손잡이와 벽간 간격	50.0	0.0	50.0	손잡이 징자표지판	100.0	0.0	0.0	보행장애물·벽면	100.0	0.0	0.0	보행장애물·기둥·발판대	100.0	0.0	0.0	보행장애물	100.0	0.0	0.0
구분	적합					미적합			미설치																																																																																																																																																			
		합계																																																																																																																																																										
대개 시설	보통 접근로	유효폭	50.0	0.0	50.0																																																																																																																																																							
		기둥기	100.0	0.0	0.0																																																																																																																																																							
		재질 및 마감	100.0	0.0	0.0																																																																																																																																																							
		높이 차이 제거	100.0	0.0	0.0																																																																																																																																																							
		평균	87.5	0.0	12.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	0.0	0.0	100.0																																																																																																																																																							
		보행 안전 울림	0.0	0.0	100.0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0.0	0.0	100.0																																																																																																																																																							
		바닥 마감	-	-	-																																																																																																																																																							
		바닥 및 임시 안내 표시	-	-	-																																																																																																																																																							
내부 시설	출입구 (문)	바닥면	-	-	-																																																																																																																																																							
		평균	0.0	0.0	100.0																																																																																																																																																							
		통로 유효폭	100.0	0.0	0.0																																																																																																																																																							
		전면 유효 거리	100.0	0.0	0.0																																																																																																																																																							
		출입구 양 활동 공간	100.0	0.0	0.0																																																																																																																																																							
	통로	출입구 단차	50.0	50.0	0.0																																																																																																																																																							
		문 형태	-	-	-																																																																																																																																																							
		미닫이문	-	-	-																																																																																																																																																							
		여닫이문	0.0	0.0	100.0																																																																																																																																																							
		자동문	-	-	-																																																																																																																																																							
보행환경	보행장애물	손잡이	100.0	0.0	0.0																																																																																																																																																							
		광충사무실 징자표지판	0.0	0.0	100.0																																																																																																																																																							
		점행방향	50.0	0.0	50.0																																																																																																																																																							
		표출물	-	-	-																																																																																																																																																							
		평균	62.5	6.3	31.3																																																																																																																																																							
	보행장애물	유효폭	100.0	0.0	0.0																																																																																																																																																							
		바닥단차	100.0	0.0	0.0																																																																																																																																																							
		바닥마감	100.0	0.0	0.0																																																																																																																																																							
		손잡이 높이	50.0	0.0	50.0																																																																																																																																																							
		손잡이 굵기	50.0	0.0	50.0																																																																																																																																																							
보행장애물	손잡이와 벽간 간격	50.0	0.0	50.0																																																																																																																																																								
	손잡이 징자표지판	100.0	0.0	0.0																																																																																																																																																								
	보행장애물·벽면	100.0	0.0	0.0																																																																																																																																																								
	보행장애물·기둥·발판대	100.0	0.0	0.0																																																																																																																																																								
	보행장애물	100.0	0.0	0.0																																																																																																																																																								

3.4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과 분석

3.4.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달성률 전체 평균은 제3차 계획 국토부 기준 80.3%,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계획기준은 73.2%로 설정하였음
- 조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 평균은 69.3%로 계획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대상시설		제3차계획 '21년 목표		실적 ('21년)	달성률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수단	일반버스	79.0	79.0	80.7	102.2	102.2
	여객선	50.0	39.0	42.5	85.0	109.0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73.0	72.0	59.2	81.1	82.2
	도시철도역사	90.0	90.0	86.1	95.7	95.7
	공항터미널	90.0	90.0	83.8	93.1	93.1
	여객선터미널	79.0	79.0	87.7	111.0	111.0
	버스정류장	57.0	51.0	30.5	53.5	59.8
도로(보행환경)		81.0	81.0	59.8	73.8	73.8
전체평균		80.3	73.2	69.3	86.3	94.7

출처 : 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연구(국토부, 2016. 12),
 2)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전북특별자치도, 2020. 3)
 3)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4.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19.6%로 목표 미달이며 달성률은 43.2%로 나타났음
-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84.7%로 전북특별자치도 목표대비 미달하였으나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2>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대상시설	제3차계획 '21년 목표		실적 ('21년)	달성률	
	국토부	전북특별 자치도		국토부	전북특별 자치도
저상버스 보급률	32.0	45.4	19.6	61.3	43.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4.0	100.0	84.7	100.8	84.7

출처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연구(국토부, 2016. 12),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전북특별자치도, 2020. 3)

<표 3-23> 도지역 대비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대상시설	전북특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외 도지역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저상버스 보급률	19.6	15.5	16.3	24.6	16.3	7.4	9.3	13.7	21.8	16.9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4.7	80.1	112.7	76.4	64.4	69.1	72.5	67.5	107.3	97.1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낮은 달성률을 보이나, 도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있음
- 특별교통수단은 84.7%로 9개도 평균과 같은수치를 보이나, 이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수치하락으로 확인됨

3.4.3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가. 전국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표 3-24> 전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및 기준적합 설치율

구 분		이용자 만족도	기준적합 설치율	비고	
교통수단	버스	고속/시외버스	72.7	65.4	-
		시내버스	73.5	94.3	-
	도시철도	79.0	96.0	-	
	철도차량	80.2	98.9	-	
	항공기	76.7	73.7	-	
	여객선	71.3	37.8	-	
	교통수단 평균	74.6	79.3	-	
여객시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71.4	64.0	-	
	버스정류장	70.9	45.4	-	
	도시철도역사	77.6	89.9	-	
	철도역사	78.9	82.5	-	
	공항여객터미널	76.7	86.8	-	
	여객선터미널	68.7	82.2	-	
	여객시설 평균	72.6	75.1	-	
보행환경		68.2	77.6	-	
전체평균		70.6	77.3	-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과 비교하면, 보행환경의 경우 기준 적합 설치율(77.6%)의 경우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였으며, 이용자 만족도(68.2점) 역시 보통~약간좋음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 기준적합 설치율과 이용자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나.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 전국 종합만족도(70.6점) 보다는 다소 낮은 67.3점으로 나타났으며 철도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기준적합 설치율의 고저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는 적어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3-25> 전북특별자치도 기준적합 설치율 대비 이용자 만족도

구 분		이용자 만족도	기준적합 설치율	비고
교통수단	고속/시외버스	67.3	80.7	-
	도시철도	77.2	93.1	-
	여객선	70.5	42.5	-
여객시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64.6	59.2	-
	버스정류장	71.0	30.5	-
	철도역사	61.5	95.7	-
	공항터미널	64.9	83.8	-
	여객선터미널	64.9	30.5	-
보행환경		67.3	59.8	-
전체평균		67.3	69.3	-

출처 : 1)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2)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성과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제3차 계획 목표에서 국가계획 대비 높은 만족도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동편의시설 모든 부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시민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6>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성과 분석

구 분	3체계획 목표		실적	달성률
	국가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수단(평균)	70.0	82.5	71.6	74.7%
여객시설(평균)	75.0	85.0	65.4	76.9%
보행환경(평균)	70.0	80.0	59.8	74.8%
전체평균	71.7	83.1	62.3	67.6%

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만족도 평가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 센터 평균은 395.4점으로 400점 만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4개 센터 중 평균보다 낮은 센터는 총 7개로 나타났음

<표 3-2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만족도 평가(2023년)

구분	2023년 월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주 이동지원센터	395.1	395.7	398.1	394.8	394.8	394.3	391.7	391.3	389.4	387.7	390.5	392.7	393.0
군산 이동지원센터	394.7	398.6	395.7	396.4	396.4	398.6	389.7	391.4	392.2	395.6	393.8	392.8	394.7
익산 이동지원센터	397.1	397.6	395.6	396.9	396.9	396.0	390.8	396.7	392.8	388.8	390.7	393.0	394.4
정읍 이동지원센터	392.3	400.0	398.2	398.1	398.1	389.0	392.3	389.1	394.3	393.6	387.3	397.3	394.1
남원 이동지원센터	397.3	398.2	392.7	398.2	398.2	397.3	398.2	398.2	394.5	395.7	388.6	398.6	396.3
김제 이동지원센터	396.8	397.3	399.1	398.6	398.6	400.0	394.5	394.5	394.5	397.1	390.5	396.2	396.5
완주 이동지원센터	400.0	400.0	394.5	398.2	398.2	395.5	396.4	400.0	389.1	396.4	394.5	396.4	396.6
진안 이동지원센터	400.0	400.0	400.0	400.0	400.0	390.0	398.3	398.3	400.0	400.0	400.0	396.7	398.6
무주 이동지원센터	400.0	396.7	390.0	395.0	395.0	398.3	396.7	400.0	397.1	394.3	388.6	385.7	394.8
장수 이동지원센터	400.0	397.5	400.0	396.7	396.7	400.0	390.0	377.5	393.3	396.7	390.0	400.0	394.9
임실 이동지원센터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396.7	400.0	396.7	396.7	399.2
순창 이동지원센터	400.0	397.5	400.0	400.0	400.0	400.0	398.3	400.0	386.7	393.3	400.0	393.3	397.4
고창 이동지원센터	398.9	398.9	400.0	400.0	400.0	400.0	395.6	395.6	391.1	394.0	400.0	397.8	397.7
부안 이동지원센터	400.0	391.1	398.9	396.7	396.7	400.0	392.2	390.0	390.7	400.0	386.0	388.0	394.2
전 센터 평균	396.2	397.3	397.2	397.2	396.7	396.0	394.6	394.5	393.0	395.2	392.7	394.7	395.4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내부자료(2023)

마.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만족도 평가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기준 매우만족 89.8%, 만족 7.6%, 보통 2.2%, 불만족 0.4%로 나타났음

<표 3-28>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만족도 평가(2023년)

(단위 : 건, %)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합계
전화 연결시간	702	85	11	2	800
상담 친절여부	705	78	15	2	800
차량이용 안내 및 배차안내	723	43	28	6	800
의견 경청	743	37	16	4	800
합계	2,873	243	70	14	3,200
비율	89.8	7.6	2.2	0.4	100.0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내부자료(2023)

제 4 장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4.1 관련법령 검토

4.2 계획의 비전과 목표

4.3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4.4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4.5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4.6 연구 개발 및 제도개선

제 4 장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4.1 관련법령 검토

4.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가. 도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 도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 법정계획으로 수립(5년 단위)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방안
- 공고 및 공람
 - 일간신문과 도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안 공고
 -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표 4-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관련 규정

구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4.1.2 시·군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가. 시·군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 보행환경 실태
-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자원 조달 방안

나.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행정 절차

- 시·군에서 기본계획 수립 → 도에 기본계획 제출 → 내용 검토 → 도지사가 시군 기본계획 확정 → 시·군은 기본계획을 공표

<표 4-2>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내용 및 확정 절차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자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1.3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조와 재질에 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표 4-3>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hr/> <p>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4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가. 차량 법정 대수

-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함
- '24년 1월부터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됨
- 현재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24년 100명당 1대

<표 4-4>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대수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나. 이동지원센터 설치

- 시군 이동지원센터
 - 시·군단위 이동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도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
 -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표 4-5>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대수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지원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 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배차 시스템 운영비
- 시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비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표 4-6> 이동지원센터 설치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표 4-7>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4.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가. 인증의 정의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표 4-8>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대수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나.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시설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표 4-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시설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 인증의 신청과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표 4-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시설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도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2 계획의 비전과 목표

4.2.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년 기준 교통약자는 총 725,836명으로 집계되며 전체인구 1,754,757명 중 3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북특별자치도내 교통약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약자는 고령자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나타남

<표 4-1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북특별 자치도 인구 ¹⁾	교통약자		장애인 ²⁾	고령자 ³⁾	임산부 ⁴⁾	어린이 ⁵⁾	영유아 동반자 ⁶⁾
		소계	구성비					
2019년	1,818,917	627,483	34.5%	60,759	370,676	8,703	115,293	72,052
2020년	1,804,104	629,356	34.9%	57,277	386,203	7,947	112,033	65,896
2021년	1,786,855	629,518	35.2%	55,626	397,619	7,296	109,808	59,169
2022년	1,769,607	631,820	35.7%	53,896	410,619	6,912	106,694	53,699
2023년	1,754,757	725,836	36.0	52,149	423,128	6,478	101,408	49,227

주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 12

주2)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중 0~12세와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제외, 2023. 12

주3)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만65세 이상인구현황 2023. 12

주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0세 인구, 2023. 12

주5)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만6세~12세 미만 인구현황, (어린이정의 : 만13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 2023. 12

주6)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영유아 정의 :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영유아 보육법」제2조 1항)으로 대체, 2023. 12

출처 : 전국 인구통계(kosis.kr) 2023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2023년 기준)

4.2.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장래예측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장래예측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장래 인구는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 수요전망을 통해 적절한 시설 및 자원투입이 반영되어야 함

<표 4-1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전망

(단위 : 명, %)

구 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교통약자	
		소계	구성비
2022년	1,769,607	631,820	35.7
2023년	1,754,757	632,390	36.0
2024년	1,740,017	639,105	36.7
2025년	1,725,401	646,790	37.5
2026년	1,710,908	655,428	38.3
연평균 증가율	-0.84	+0.92	-

주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 12, 및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3,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약자별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 후 장래 교통약자를 예측하였음

<표 4-13> 전북특별자치도 장래 교통약자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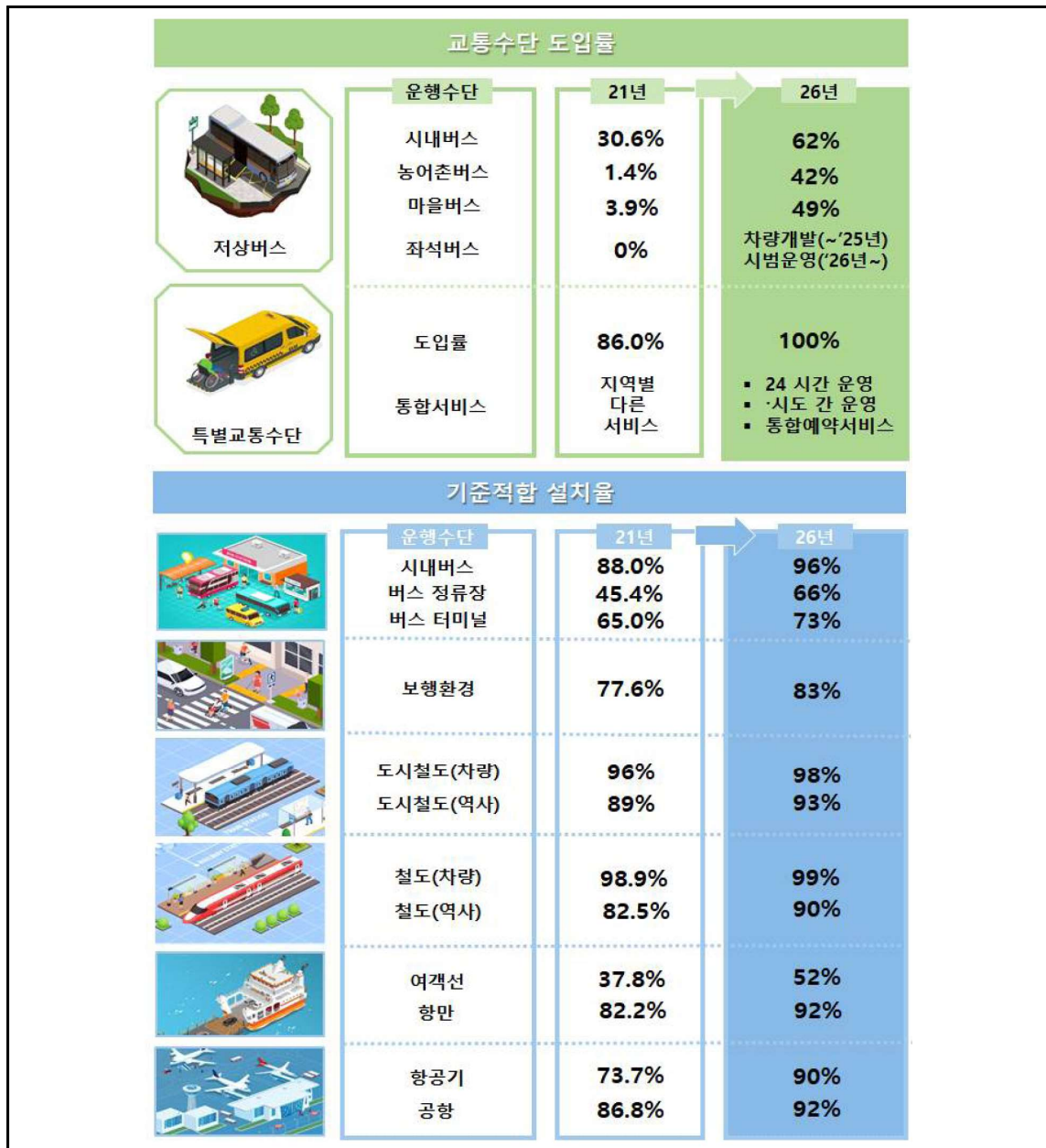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합계
2022년	53,896	410,619	6,912	106,694	53,699	631,820
2023년	52,149	423,128	6,478	101,408	49,227	632,390
2024년	50,475	437,760	5,994	99,786	45,090	639,105
2025년	48,855	452,898	5,546	98,190	41,301	646,790
2026년	47,287	468,560	5,131	96,620	37,830	655,428
연평균 증가율	-3.22	3.36	-7.18	-2.45	-8.38	+0.92

주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 12, 및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3,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약자별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 후 장래 교통약자를 예측하였음

4.2.3 기본방향

- 제4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수립하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여 지역 간 균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음



<그림 4-1>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

가.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

- 대상 노선버스에 대하여 자동차 연한 만료 등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의무 도입(「교통약자법」개정 `22.1.18)
- `26년까지 시내버스(저상버스) 도입률 62% 달성 목표
- 지역별 목표 : 서울 90%, 광역시 61%, 도지역 41%
- 농어촌 및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각각 42%, 49% 달성

나.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확대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진
- 비도시 지역의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 상향 검토(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100명당 1대)
-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지원

다. 지역 이동지원센터 지역·수단간 정보연계 서비스

- 각 센터의 이용대상 등록자(보행상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보공유를 통한 이동지원센터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24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道)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 간 환승·연계 활성화 기반 마련(~25년)
- 거주지의 시·군에 등록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별도 추가 등록없이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등록정보 연계
- 타 지역(道) 이동 시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 및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으로 고도화(~26년)

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대체수단 확대

-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정 등 운영 효율화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체수단(임차·바우처 택시 등)을 도입 확대
-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의 운영방법 표준화
-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정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임차·바우처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 일반 (대형)택시를 대체수단(바우처 택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마.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제고

- (시내버스) 96%, (버스정류장) 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터미널) 73%
- (철도) 철도차량 99%, 철도역사 90% / 도시(광역)철도차량 98%, 도시(광역)철도역사 93%
- (항공) 항공기 90%, 공항여객터미널 92%, (해양) 여객선 52%, 여객선터미널 92%
- (보도) 특별·광역시 94%, 도지역 73%

바.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강화

- 운수종사자 및 일반인 대상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인식 및 서비스 개선 교육 추진 및 관리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규정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승무원 대상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체험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내용에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 포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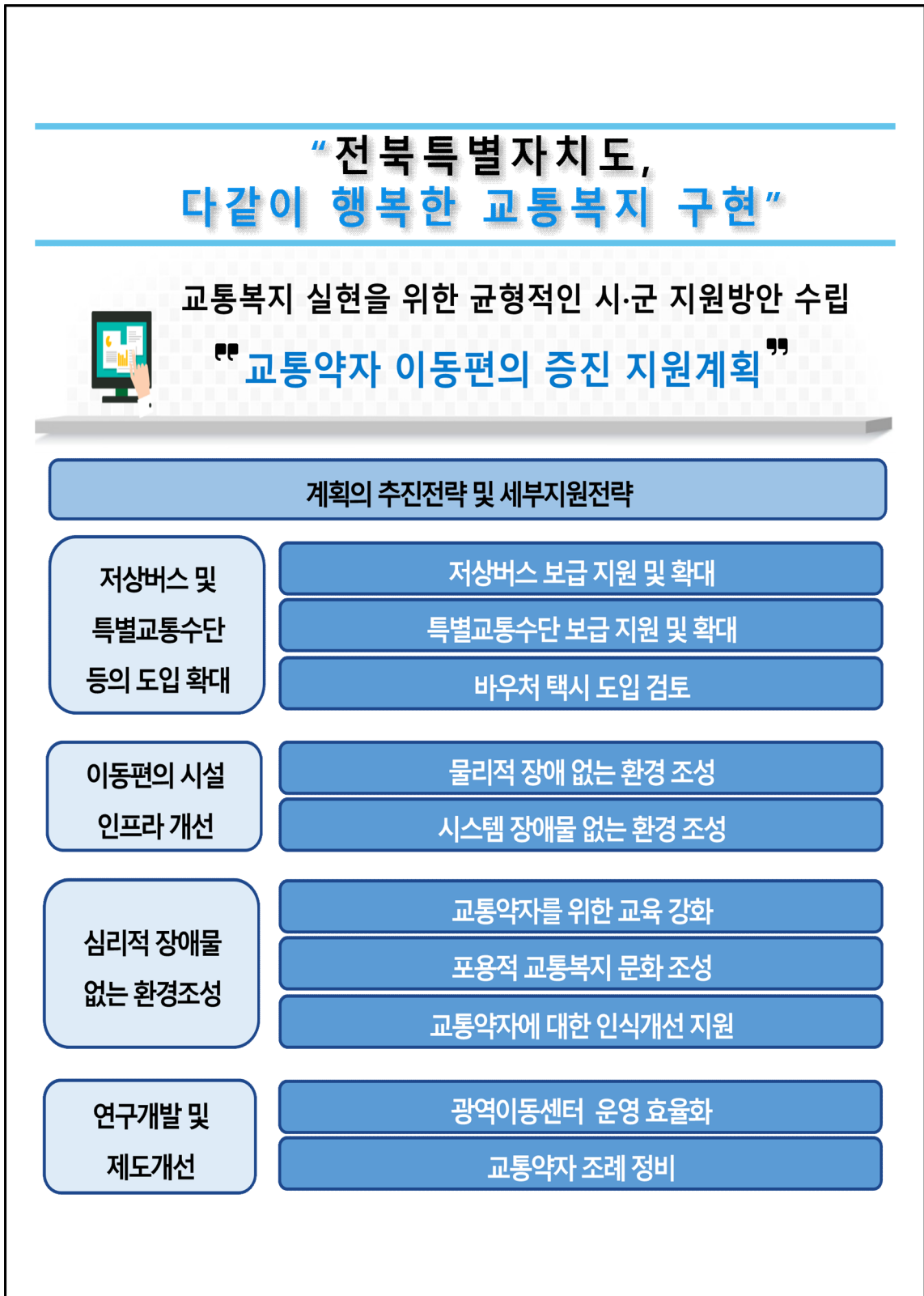
4.2.4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성격

-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도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성목표를 결정하는 중기 전략계획이자 광역계획임
- 정책방향 및 추진시점 등에 있어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및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야함
- 시·군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와 시군간 균형적 지원을 통하여 시군계획의 실천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상위계획이자 지원계획임

4.2.5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정합성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
- 시·군계획과의 연계성
 - 시·군단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며, 지역 간 균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
- 시·군계획에서의 지침성
 - 시·군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써 이에 대한 방향성 제시
-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표 기간에 맞는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작성해야 하며, 각 과제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 목표기간, 예상 투자비용, 추진주체 및 자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자료의 신뢰성
 - 정확한 자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료출처와 분석과정 기재

4.2.6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그림 4-2>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4.3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4.3.1 저상버스 도입 확대

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계획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저상버스 현황

<표 4-1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저상버스 현황

구분		저상버스 도입률	전체대수 (저상버스 포함)	저상버스
전북 특별 자치도	시내버스	30.7%	856	263
	마을버스	-	27	-
	농어촌버스	-	153	-
합 계		25.4%	1036	263
전주시	시내버스	36.4%	434	158
	마을버스	-	14	-
	농어촌버스	-	-	-
군산시	시내버스	50.0%	114	57
	마을버스	-	6	-
	농어촌버스	-	-	-
익산시	시내버스	25.0%	164	41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	-
정읍시	시내버스	5.7%	53	3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	-
남원시	시내버스	-	44	-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	-
김제시	시내버스	-	43	-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	-

<표 계속>

구분		저상버스 도입률	전체대수 (저상버스 포함)	저상버스
완주군	시내버스	-	-	-
	마을버스	-	7	-
	농어촌버스	-	10	-
진안군	시내버스	-	-	-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20	-
무주군	시내버스	-	-	-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11	-
장수군	시내버스	-	-	-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9	-
임실군	시내버스	-	-	-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23	-
순창군	시내버스	-	-	-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15	-
고창군	시내버스	-	-	-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33	-
부안군	시내버스	100.0%	4	4
	마을버스	-	-	-
	농어촌버스	-	32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도입 필요성 및 추진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시내버스는 856대, 마을버스 27대, 농어촌버스 153대 보유중이며 이중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263대, 마을버스 0대, 농어촌버스 0대로 합계 전체버스 1,036대 중 저상버스 263대 보유중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 제4차 국가계획 도입률 대비 각각 시내버스는 88대가 부족하고, 마을버스는 14대, 농어촌버스는 65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5>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현행 대비 국가계획 비교

구분	현황	제4차 국가계획		부족분			
		대수	도입률	대수	도입률		
전북특별 자치도	시내버스	263	30.7%	351	41.0%	88	10.3%
	마을버스	-	-	14	49.0%	14	49.0%
	농어촌버스	-	-	65	42.0%	65	35.5%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4-16>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제4차 국가계획 충족 연간 대수

(단위 : 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전북특별 자치도	시내버스	-	-	120	138	63	321
	마을버스	-	-	-	7	7	14
	농어촌버스	-	-	9	28	30	67
	총계	-	-	129	173	100	402

<표 4-17> 전북특별자치도 목표연도 저상버스 비율

(단위 : 대)

구분	전체 운행버스	저상버스	저상버스 비율	
전북특별 자치도	시내버스	856	584	68.2%
	마을버스	27	14	51.9%
	농어촌버스	153	67	43.8%
	총계	1,036	665	64.2%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4년 129대, 2025년 173대, 2026년 100대 가량의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2026년 시내버스 68.2%, 마을버스 51.9%, 농어촌버스 43.8%로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비율 64.2%로 계획하였음
- 또한, 2022년 1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버스차량의 대폐차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차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인구 감소추세 및 개인 이동차량의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의 감소세에 따라 본 계획에서 버스 차량의 증가율은 고려하지 않았음

나. 저상버스 이용활성화 방안

1) 저상버스 이용 실태 조사 문제점

- 저상버스 이용 실태조사 문제점 관련 설문조사 사례 결과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일반, 저상버스 구분 안됨이 27.6%, 저상버스가 없음이 26.0%, 배차시간과다가 19.0% 순으로 확인되었음

<표 4-18> 저상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설문조사(전국)

구 분	일반, 저상 구분 안됨	저상버스가 없음	배차시간 과다	장애 없음	좌석 부족
설문조사	27.6%	26.0%	19.0%	17.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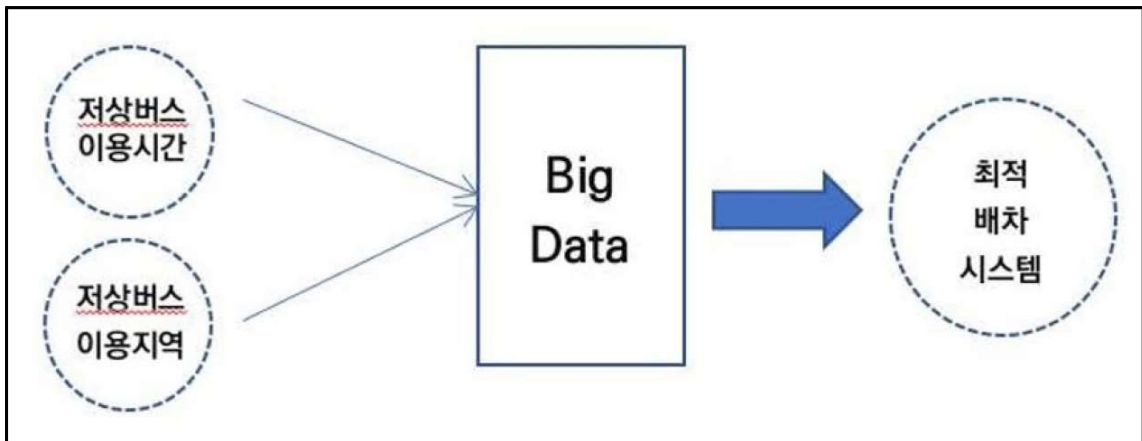
<표 4-19> 배차간격 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구분	저상버스	배차간격(토요일)		
		현재	목표	증감
시지역	259	42.3분	30.0분	-12.3분
군지역	4	-	-	미산정

- 저상버스 배차간격 분석 결과 전국 32.6분, 전북특별자치도 42.3분으로 1.29배나 긴 것으로 조사됨(토요일)
-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2026년 까지 30분 이내로 단축목표 설정

2)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

- 현재 저상버스 이용체계를 빅데이터를 통한 저상버스 이용자 분포분석에 따른 최적 배차 시스템 개발 도입(국토부 개발사업)
- 다수 이용 노선(지역)에 우선 배차시스템 도입



<그림 4-3> 최적 배차 시스템 개념

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

1) 필요성

- 중앙정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과제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통한 장애인 지원 부분 명시
- 장애인들의 단체 이동 제한 및 여행 등 여가생활 지원 필요
- 장애인 단체의 다중 이용 가능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대형버스 형태 특별교통수단 요구(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기존 저상버스는 구조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에게 낮은 차체 및 긴 곡선 반경으로 인한 문제점 외 휠체어 장애인 탑승 방법에 문제점이 있음

<표 4-20> 저상버스 구조 비교

구분	차량 탑승방법	최저 지상고	최소회전반경	장애인탑승방법
일반버스	버스 승강장에서 2단계 오른후 탑승	25.0cm (25.5cm)	8.8cm (8.9cm)	-
준 저상버스	버스 승강장에서 1단계 오른후 탑승	25.0cm (22.5cm)	8.8cm (8.9cm)	장애인 슬로프 이용
저상버스	버스 승강장에서 바로 탑승	19.0cm (16.0cm)	10.2cm (8.9cm)	리프트 이용

주 : 준 저상버스 및 저상버스는 대우차량 기준이며,()는 현대 차량임

- 아울러 저상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필요하며 기존 버스에 설치되는 주요한 승강 설비는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판으로 최소 폭원이 80cm 이상의 출입문에 시설을 설비해야함

<표 4-21> 휠체어 승강설비

구분	시설기준
설치폭원	· 휠체어사용자의 탑승이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승강구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0.8m 이므로, 출입문이 열렸을 때 승강구의 유효폭이 8미터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
바닥면 재질	· 승강구의 바닥은 탑승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타라매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시를 고려하여 적절한 마찰력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승강구 색상	· 승강구의 계단코는 계단의 바택색과 그 색상과 명도치를 달리하여 시력에 문제가 있는 교통약자가 버스를 승·하차 할 때 계단임을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출처 :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보도 및 교통수단·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

2) 문제점

- 시외버스는 육상 교통수단 중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노력이 거의 없던 교통수단이며 현재 시외버스가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가 없어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고속 및 시외버스 회사에 조속히 촉구를 원하는 내용임
-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좌석형이 대부분이고 장애인 콜택시는 시외운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임
- 휠체어를 접거나 눕혀서 짐칸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휠체어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전동휠체어의 경우 그 크기로 인해 대다수 적재가 불가함
- 또한 고속주행, 휴게소 이용시간 문제, 급정거, 급가속 문제등이 있으며, 급정거, 급가속 문제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던 습관이었고 많은 버스회사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나 휴게소, 속도문제는 버스의 경쟁력 문제와 직결되어 해결이 어려움, 기존 고속 및 시외버스의 소요시간 증가와 경쟁력 하락 또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3) 도입 방안

- 장애인 여행 및 단체 이동을 돕기 위한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정책방향과 타지역 도입 확대사례, 장애인들의 요구 고려가 필요하며 조기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운행 중인 고상 시외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의 개조 및 여객터미널 내부 및 차량 승강장까지의 휠체어 접근로 개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이외의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을 위주로 공모사업 대상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 및 운수업체가 협력하여 시외버스 교통약자 탑승 개선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및 국비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필요

<표 4-22> 전북특별자치도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방안

구분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방안
사업규모	차량	· 1대(47인승 개조)
	인력	· 2명(운전원1명, 사업 운영관리 1명)
이용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등록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 단체 · 장애인 시설
운영방식		· 위탁운영
소요비용(백만원)		· 차량 구입비 : 260(백만원) · 운영비 : 10(백만원)/년
관련사업		· 관련조례 제정 · 탑승시설 정비(터미널 등) · 관광지 무장애시설, 보행로 정비 · 관련 시설 정비(점자, 쉼터, 화장실 등)

주 : 소요비용은 타 지자체 휠체어 탑승 버스도입사례 및 전라남도 지원계획 참조



<그림 4-4>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 사례 (국내 및 해외)

4.3.2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가.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추진계획

<표 4-23>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급률 세부 현황

(단위 : 명, 대)

구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산정 장애인 수 (보행상 중증 장애인)	법정기준 대수	운행대수	보급률
합계	699,198	4,777	4,115	86.1
서울	108,655	725	622	85.8
부산	47,824	319	206	64.6
대구	32,253	216	163	75.5
인천	38,002	254	169	66.5
광주	19,187	128	116	90.6
대전	20,063	134	96	71.6
울산	13,397	90	76	84.4
세종	3,216	22	21	95.5
경기	151,686	1,027	1,157	112.7
강원	27,727	195	149	76.4
충북	26,173	180	116	64.4
충남	34,453	236	163	69.1
전북특별 자치도	34,730	275	233	84.7
전남	35,668	247	179	72.5
경북	45,871	317	214	67.5
경남	50,211	344	369	107.3
제주	10,082	68	66	97.1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전라북도 내부자료

-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에서는 2021년 목표연도까지 전 지자체의 법정기준 보급대수 84.0% 달성을 목표로 하였음
- 전국 평균 보급률은 86.1%로 목표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1년 기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제4차 국가계획에 의해 2024년부터 기존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배정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율이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의 경우 100명당 1대로 바뀌어 현행법상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4.7%로 확인되어 국가계획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10만명 이하의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대체수단 도입 세부현황
(단위 : 대, %)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법정대수 산정 보행상 중증 장애인 수	법정기준	법정기준 대수	현재 운영대수	보급률	임차택시
전북 소계	34,730	-	275	233	84.7	48
전주시	9,099	150명당 1대	61	62	101.6	20
군산시	4,593		31	31	100.0	8
익산시	5,943		40	40	100.0	6
정읍시	2,677		18	18	100.0	4
남원시	1,943		19	13	68.4	1
김제시	2,381	100명당 1대	24	16	66.7	6
완주군	2,156		22	14	63.6	-
진안군	635		6	4	66.7	-
무주군	560		6	4	66.7	2
장수군	498		5	3	60.5	1
임실군	766		8	5	62.5	-
순창군	706		7	5	71.4	-
고창군	1,405		14	9	62.3	-
부안군	1,368		14	9	62.3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024. 01. 19」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구 10만명 이하인 도시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하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부족분은 다음과 같음

<표 4-2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부족분

(단위 : 대, %)

구분	법정대수 산정 보행상 중증 장애인 수	법정기준	법정기준 대수	현재 운영대수	보급률	부족분
전북특별 자치도 소계	34,730	-	275	233	84.7	42대
전주시	9,099	150명당 1대	61	62	101.6	-
군산시	4,593		31	31	100.0	-
익산시	5,943		40	40	100.0	-
정읍시	2,677		18	18	100.0	-
남원시	1,943		19	13	68.4	6
김제시	2,381	100명당 1대	24	16	66.7	8
완주군	2,156		22	14	63.6	8
진안군	635		6	4	66.7	2
무주군	560		6	4	66.7	2
장수군	498		5	3	60.5	2
임실군	766		8	5	62.5	3
순창군	706		7	5	71.4	2
고창군	1,405		14	9	62.3	5
부안군	1,368		14	9	62.3	5

- 법개정으로 인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제4차 계획기간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표 4-26>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계획(2022~2026)

(단위 : 명,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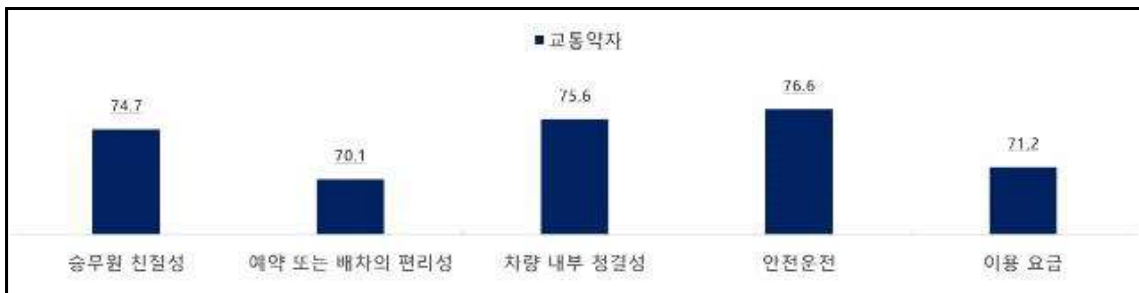
구분	특별교통수단				제4차 계획기간 추가도입						합계	
	법정 대수 산정 장애인	법정 기준 대수	운행 대수	보급률 (%)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소계	대수	보급률 (%)
전북 소계	34,730	275	233	84.7	-	-	24	29	24	77	310	112.7
전주시	9,099	61	62	101.6	-	-	5	2	-	7	69	113.1
군산시	4,593	31	31	100.0	-	-	2	-	2	4	35	112.9
익산시	5,943	40	40	100.0	-	-	1	-	3	4	44	110.0
정읍시	2,677	18	18	100.0	-	-	-	-	2	2	20	111.1
남원시	1,943	19	13	68.4	-	-	6	-	2	8	21	110.5
김제시	2,381	24	16	66.7	-	-	1	7	3	11	27	112.5
완주군	2,156	22	14	63.6	-	-	-	8	3	11	25	113.6
진안군	635	6	4	66.7	-	-	-	2	1	3	7	116.7
무주군	560	6	4	66.7	-	-	2	-	1	3	7	116.7
장수군	498	5	3	60.5	-	-	1	1	1	3	6	120.0
임실군	766	8	5	62.5	-	-	2	1	1	4	9	112.5
순창군	706	7	5	71.4	-	-	1	1	1	3	8	114.3
고창군	1,405	14	9	62.3	-	-	-	5	2	7	16	114.3
부안군	1,368	14	9	62.3	-	-	3	2	2	7	16	114.3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4.3.3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필요성

가. 필요성

- 도내 특별교통수단 233대(2022년 기준)는 모두 휠체어 탑승 차량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예약 또는 배차의 편의성”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5> 전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해마다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효율성이 악화 되고있으며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정 등 운영 효율화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체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비교

<표 4-27>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비교

구분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전용계약형	비전용계약형	
통제권	이동지원센터	사업자	사업자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일정비율의 택시요금을 바우처로 보조
장점	배차·운영이 안정적임	대상에 상관없이 영업가능 운영비 감소	일반운영택시 활용가능 운영비 감소 효과 큼
단점	일반인대상 영영불가	장애인 배차를 선호하지 않음	편법이용하는 비장애인 가능성 존재
운영사례	수원시, 전북특별자치도 (8개 시·군)	용인시, 화성시, 의정부시 등	서울시, 고양시, 전라남도 등

다. 추진방안

- 임차택시는 이용자 관점에서 요금부담 및 이용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시·군의 비용투자에 따라 확장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운행보조금 지급 방식의 바우처 택시 도입은 운영기관의 공급확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판단됨
- 전북특별자치도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추진(25년 40대 도입)

<표 4-28>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추진방안

구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바우처택시 도입 및 운영비	국비	-	-	-	-	-	-
	도비	-	-	운영계획 수립	785	785	1,570
	시군비	-	-	-	785	785	1,570
	합계	-	-	-	1,570	1,570	3,140

-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는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배정
-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배정시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안내 필요

라. 도입효과

- 대체수단 도입에 의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분산
- 특별교통수단 만족도 제고 및 이동권 증대

4.4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4.4.1 물리적 장애 없는 환경 조성

- 교통약자의 관점에 맞는 교통서비스 환경조성과 밀리적 이동장벽의 해소를 목표로 개선방안 제시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 방안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방안
 -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개선 방안

<표 4-29>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수단 및 시설		실적('21년)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교통수단	시내버스	80.7%	96.0%
	도시(광역)철도	93.1%	98.0%
	여객선	42.5%	52.0%
교통수단 평균		72.1%	84.0%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59.2%	73.0%
	철도역사	86.1%	93.0%
	공행여객터미널	83.8%	92.0%
	여객선터미널	82.2%	92.0%
	버스정류장	30.9%	73.0%
여객시설 평균		75.7%	87.5%
도로(보행환경)		59.8%	73.0%

출처 : 「제4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된 이동편의 시설 목표치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가. 보행환경 개선

1) 전북특별자치도 보행환경 현황

<표 4-30> 전북특별자치도 보행환경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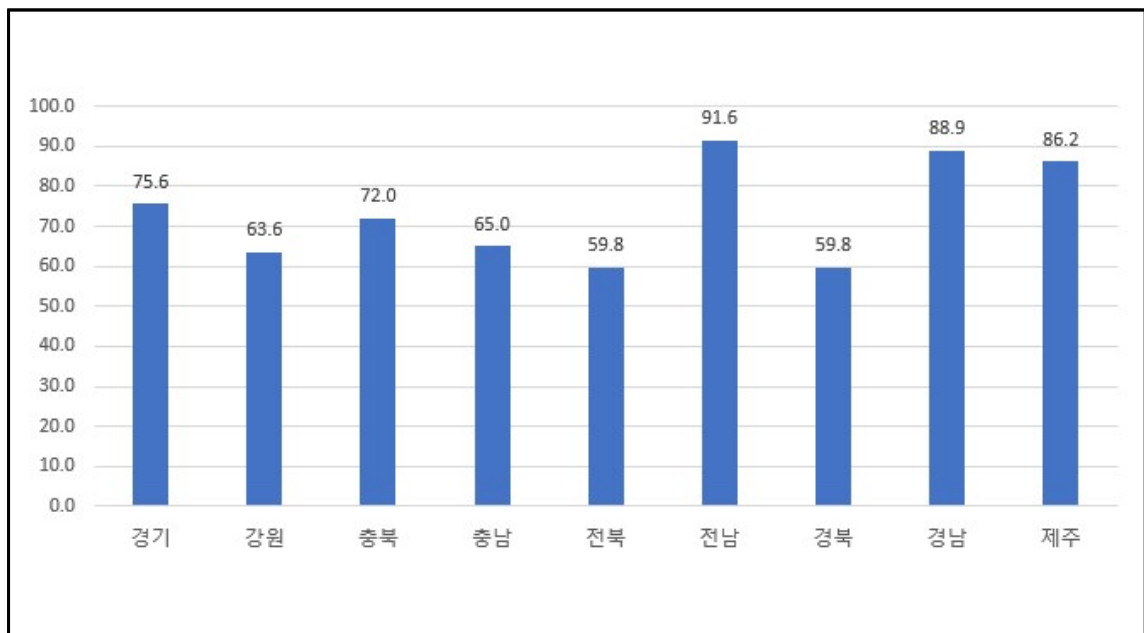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적합		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도	유효폭	54	42	77.8	12	22.2	-	-
	재질 및 마감	54	48	88.9	6	11.1	-	-
	덧개	54	53	98.1	1	1.9	-	-
	기울기		49	90.7	5	9.3	-	-
	높이차이 제거	54	39	72.2	15	27.8	-	-
	보행안전지대	54	51	94.4	3	5.6	-	-
	차도분리	54	46	85.2	8	14.8	-	-
	장애물 구역 확보	54	50	92.6	-	-	4	7.4
	가로수 가지 높이	54	50	92.6	4	7.4	-	-
보도평균	-	-	88.1	-	11.1	-	0.8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22	10	45.5	8	36.4	4	18.2
	재질 및 색상	22	-	-	18	81.8	4	18.2
	차량 진출입부 평균	-	-	22.7	-	59.1	-	18.2
턱낮추기	경계구간 높이차이	36	30	83.3	5	13.9	1	2.8
	연석경사로	36	31	86.1	2	5.6	3	8.3
	턱낮추기 평균	-	-	84.7	-	9.7	-	5.6
전자블록	횡단보도 위치안내	36	23	63.9	6	16.7	7	19.4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15	1	6.7	7	46.7	7	46.7
	음향신호기 전형블록	18	-	-	-	-	18	100
	전자블록 평균	-	-	23.5	-	21.1	-	55.4
지하도 및 육교	손잡이 설치방법	-	-	-	-	-	-	-
	점형블록	-	-	-	-	-	-	-
	손잡이 높이	-	-	-	-	-	-	-
	손잡이 굵기	-	-	-	-	-	-	-
	손잡이와 벽간간격	-	-	-	-	-	-	-
	손잡이 점자표지판	-	-	-	-	-	-	-
	지하도 및 육교 평균	-	-	-	-	-	-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노상주차장)	설치비율	-	-	-	-	-	-	-
	주차공간	-	-	-	-	-	-	-
	바닥마감	-	-	-	-	-	-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	-	-	-	-	-
	장애인 전용주차 평균	-	-	-	-	-	-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신호기 표시기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36	24	66.7	2	5.6	10	27.8
	음향신호기 설치위치	18	18	100	-	-	-	-
	잔여시간 표시기	12	7	58.3	3	25.0	2	16.7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평균	-	-	75.0	-	10.2	-	14.8
자동차 진입 제어용말뚝 (볼라드)	설치형태	16	16	100	-	-	-	-
	설치간격	16	15	93.8	1	6.3	-	-
	점형블록	16	-	-	-	-	16	100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평균	-	-	64.6	-	2.1	-	33.3
전라북도평균	-	-	59.8	-	18.9	-	21.3	

<표 4-31> 보행환경의 지역(도)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준 사례수	267	97	47	67	54	69	107	110	15
평균	75.6	63.6	72.0	65.0	59.8	91.6	59.8	88.9	86.2
보도	94.0	87.4	88.4	94.0	88.1	62.1	59.3	3.4	97.8
차량 진출입부	66.1	49.1	85.7	46.9	22.7	86.7	61.1	79.7	-
턱낮추기	90.4	86.3	65.3	99.1	84.7	37.0	94.7	40.4	100.0
점자블록	57.1	34.2	49.9	25.0	23.5	58.3	56.2	100.0	66.7
지하교 및 육교	79.2	75.0	-	75.0	-	-	-	100.0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노상주차장)	87.5	-	-	-	-	60.3	50.0	25.0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67.1	64.0	66.5	60.2	75.0	47.9	76.4	69.4	100.0
차량진입 제어말뚝 (볼라드)	63.1	49.3	49.2	54.8	64.6	63.4	61.1	62.7	66.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그림 4-6> 보행환경의 지역(도)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2) 전북특별자치도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행환경 이동편의 설치율은 59.8%로 전국 9도에서 8순위를 기록하여 보행환경 이동편의 시설의 개선을 통해 설치율을 제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차량 진출입부, 턱 낮추기, 점자블록에서 낮은 설치율을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 및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등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갈 수 있는 턱이 있는 보도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통약자에 적합한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함
- 현재 보도에서는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단차가 큰 보도 폭이 넓어 바퀴가 빠지는 배수로의 및 보도 내 불법적치물 등의 환경이 있는 실정이며, 지속적 개선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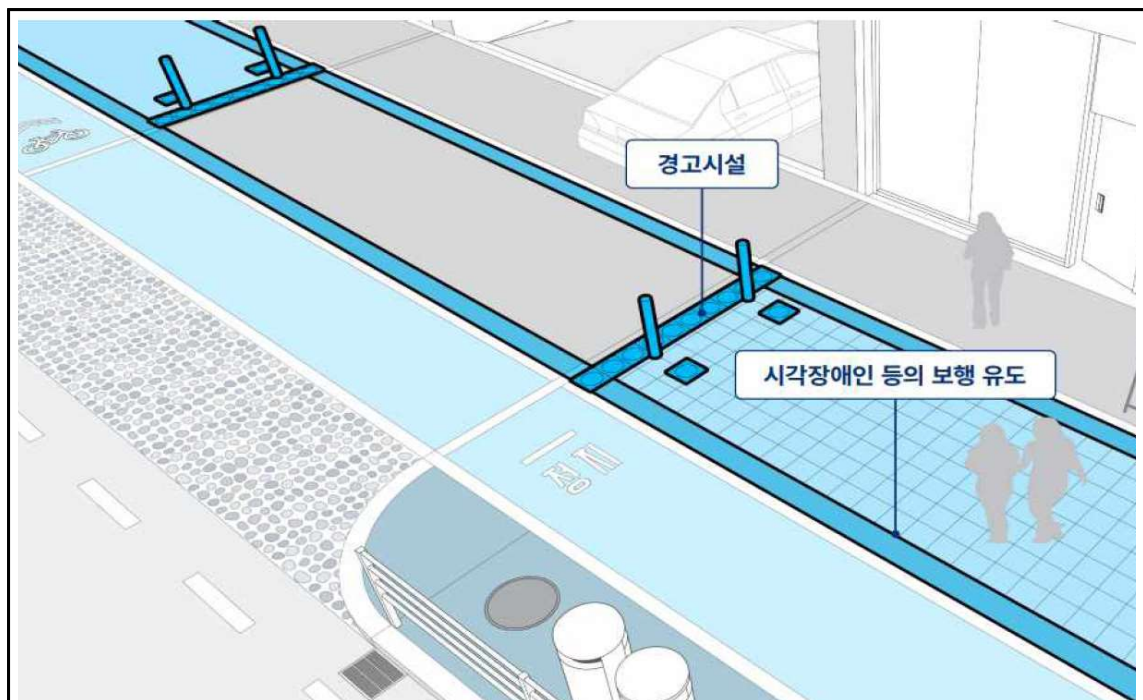


<그림 4-7> 전라북도 보행환경 문제점(사례)

나. 세부추진계획

1) 차량 진출입부 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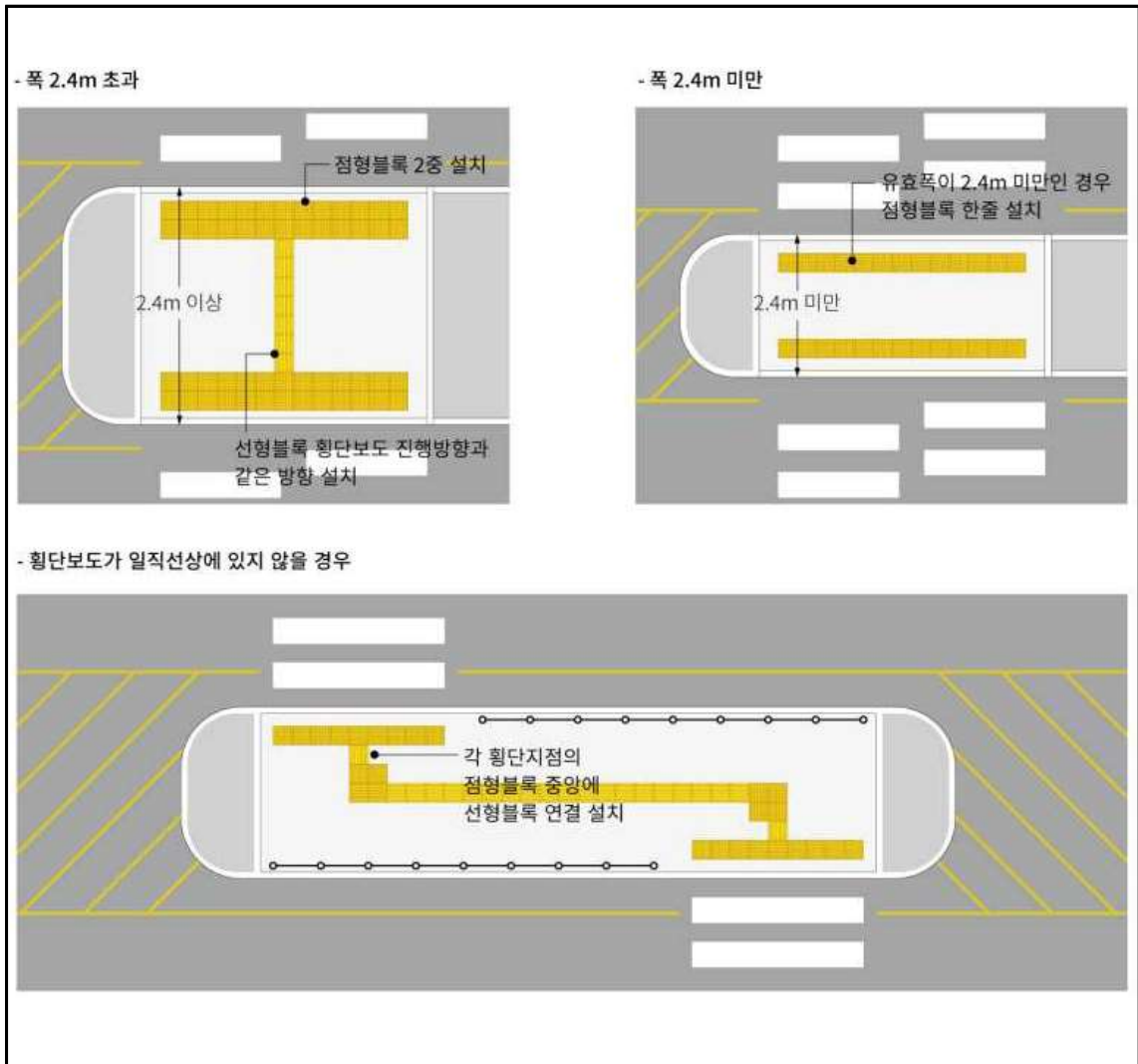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량 진출입부는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개선이 가장시급한 부분으로 확인됨
- 차로의 횡단 구역,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되는 보도 상의 차량 진출입 구역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고 보행자의 차로 횡단 구역에서는 차로의 수,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 하여야함
- 보행안전공간과 차량진출입구 경계의 전후에는 재질, 색상 등을 달리하여 주의·경고 표시를 하며, 보도는 단절 없이 연속되도록 계획
- 차로에서 차량진입구역 방향으로 단차 발생 시에는 시설물 구역 또는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경사 처리하여야 하며, 보행안전공간의 횡단 경사는 1/5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차량진출입구 경계에는 시각장애인 및 인지 능력이 낮은 보행자를 고려하여 주의·경고 표시 시설을 설치하며, 차량진출입구 전후에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
- 차량 진출입 구역은 바닥 재료·마감을 주변과 달리하여 차량 진입 구역임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2대의 동시 진출입 등 차량 진출입 구간이길게 형성되어 보행안전공간의 연속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횡단보도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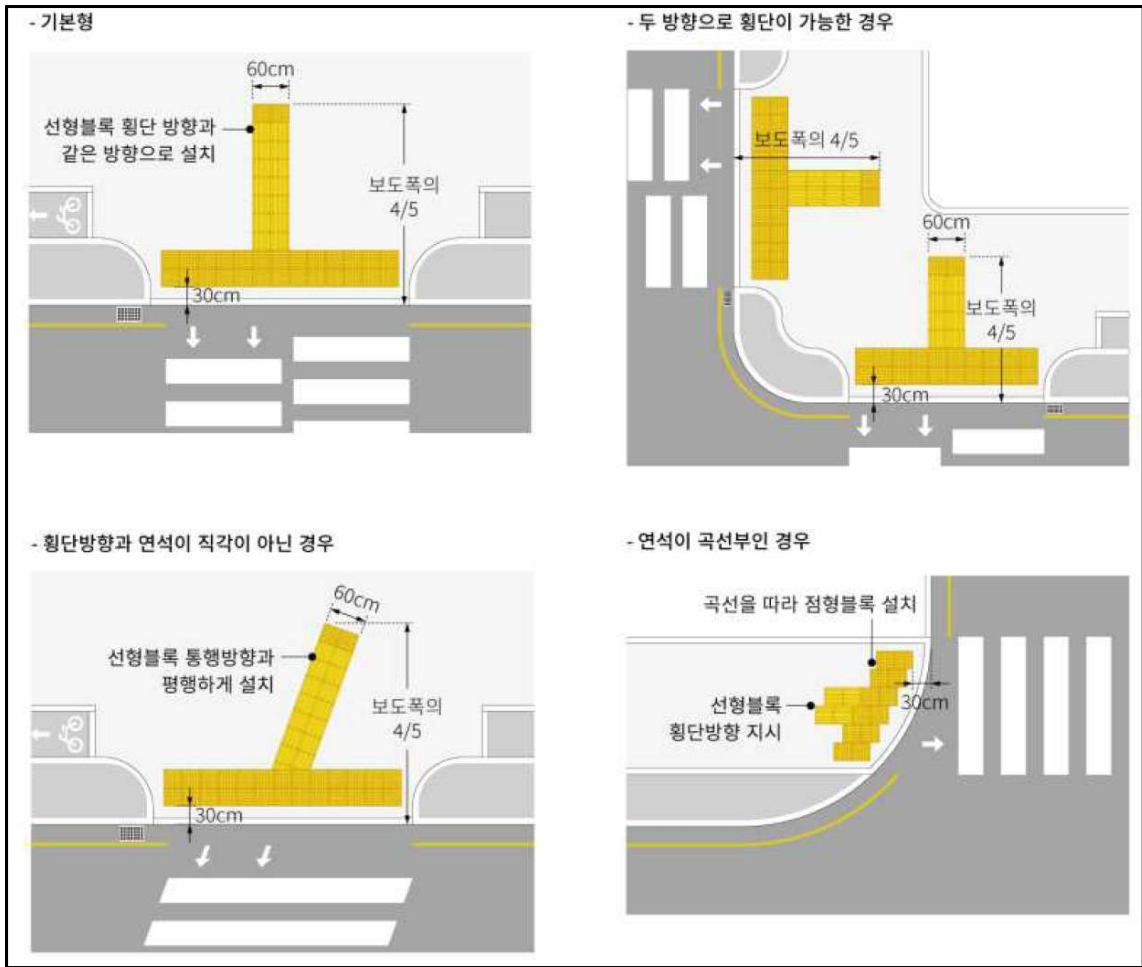
<그림 4-8> 차량 진출입로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2) 횡단보도 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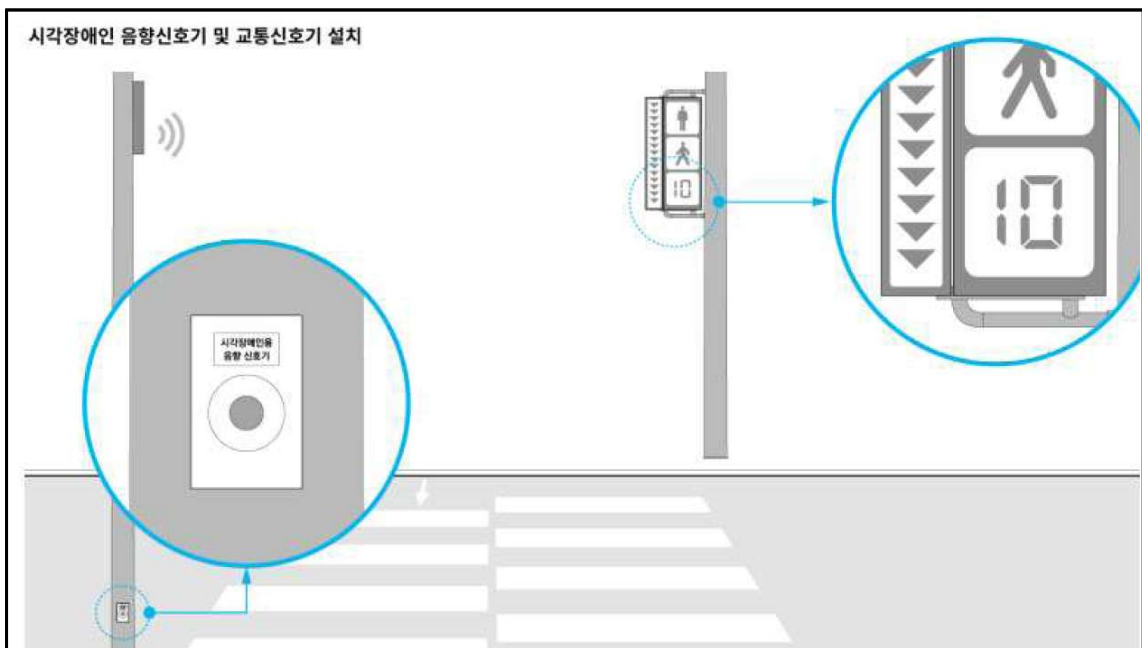
- 차량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의 경계 등에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과 횡단 대기를 위한 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 및 안내시설
 -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의 경계에 횡단보도의 폭만큼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 및 안내시설(점자블록 등)을 설치
 - 기존 보도 상에 선형 유도블록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 내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
 - 교통신호기 설치 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음향 신호기와 기호 또는 숫자로 잔여 횡단 시간이 표시되는 보행자용 교통 신호기를 설치
 -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보행자 조작 신호기 등의 조작 버튼 전면 0.3m에 점자블록을 설치



<그림 4-9> 보행섬 점자블록 설치유형



<그림 4-10> 횡단보도 점형/선형 블록 설치(예)



<그림 4-11> 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1) 필요성

-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등 노인·장애인시설, 경로당, 양로원 등 보호시설의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운영하는 생활보호구역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라 함

2) 추진계획

- 어린이, 노인에 비해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은 매우 낮은 편이며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이용으로 이동권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시·군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대상시설 파악 후 특성에 맞도록 지정 또는 신청
- 상대적으로 지정률이 낮은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시범사업으로 구역 지정 후 효과 분석 및 지정 확대
-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시설을 강화하고 고령자 보행사고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일정개수 이상 시설개선 사업 추진, 교육 및 단속 시행
 - 보행횡단 시설 시인성 개선, 보행자 자동감지 통합시스템 운영 및 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추진 등
 - 고령자 교통사고 교육 추진,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구간 단속 강화, 노인 전용 교통안전 체험관 조성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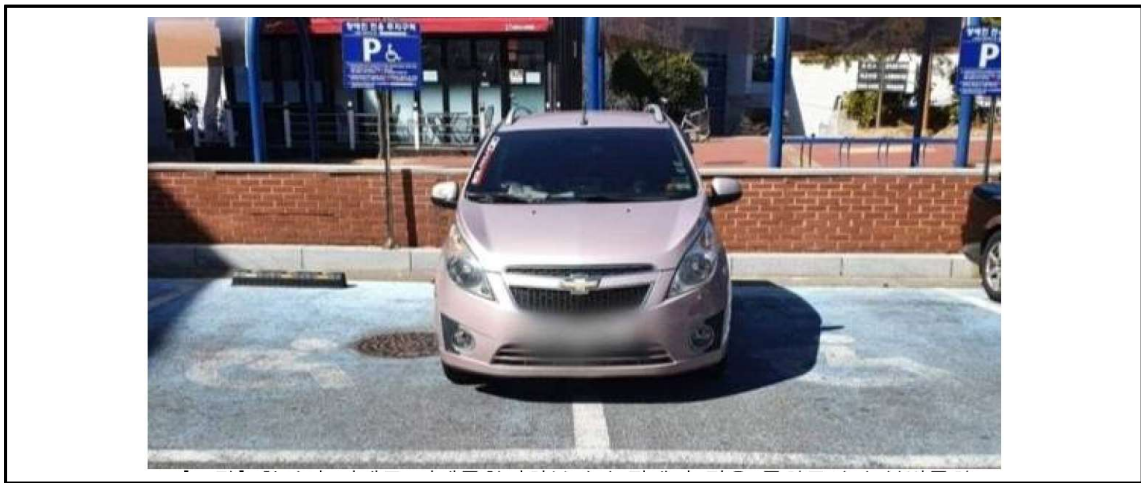


<그림 4-12>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예시)

라.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개선(승용차 주차구역)

1) 필요성

-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승용차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려고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는 냈지만 옆 칸과 너무 붙어 있어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는 곳도 있고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이용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음
- 일부 승용차 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우고 일반차량을 주차 하게 하는 등의 관리가 부실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주차장 이용시 애로가 많음



<그림 4-1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예시

2) 추진방안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 사물인터넷 기술과 행정정보망을 연계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경우 경고음으로 계도하는 방식 등 국내외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개선사업 추진



<그림 4-14> 압구정 ICT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

마. 이동편의 시설 개선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

가) 전북특별자치도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률은 버스 96.0%, 여객선 52.0%로 설정하였음

- 자동안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 낮은 기준적합 설치율을 보이는 항목들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선 사업 추진

<표 4-32>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 결과

(단위 : %)

점검항목	기준적합	미적합	미설치
자동안내시설	45.8	45.8	8.5
전자문자안내판	51.3	16.7	32.0
목적지표시	80.3	19.7	-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100.0	-	-
승강구	100.0	-	-
교통약자용좌석	73.0	11.5	15.5
수직손잡이	95.1	0.7	4.2
장애접근가능표시(저상)	100.0	-	-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평균	80.7	11.8	7.5

<표 4-33>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 결과

(단위 : %)

점검항목	기준적합	미적합	미설치
자동안내시설	-	-	100.0
전자문자안내판	-	-	100.0
목적지표시	80.0	20.0	-
휠체어 승강설비	50.0	50.0	-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35.0	5.0	60.0
장애인 전용 화장실	50.0	22.5	27.5
장애인 접근기능 표시	40.0	-	60.0
출입구 통로	85.0	-	15.0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선 평균	42.5	12.2	45.3

나) 세부추진계획

① 전자안내판 확충에 대한 관련 규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자동안내방송시설
 -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 전자문자안내판
 -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안내판 개선방안

-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자문자안내판은 버스 탑승객이 어떤 위치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버스의 중간문부근 또는 전면 윗부분에 설치하여야함
- 기호와 문자는 식별이 멀리서도 인식할수 있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과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표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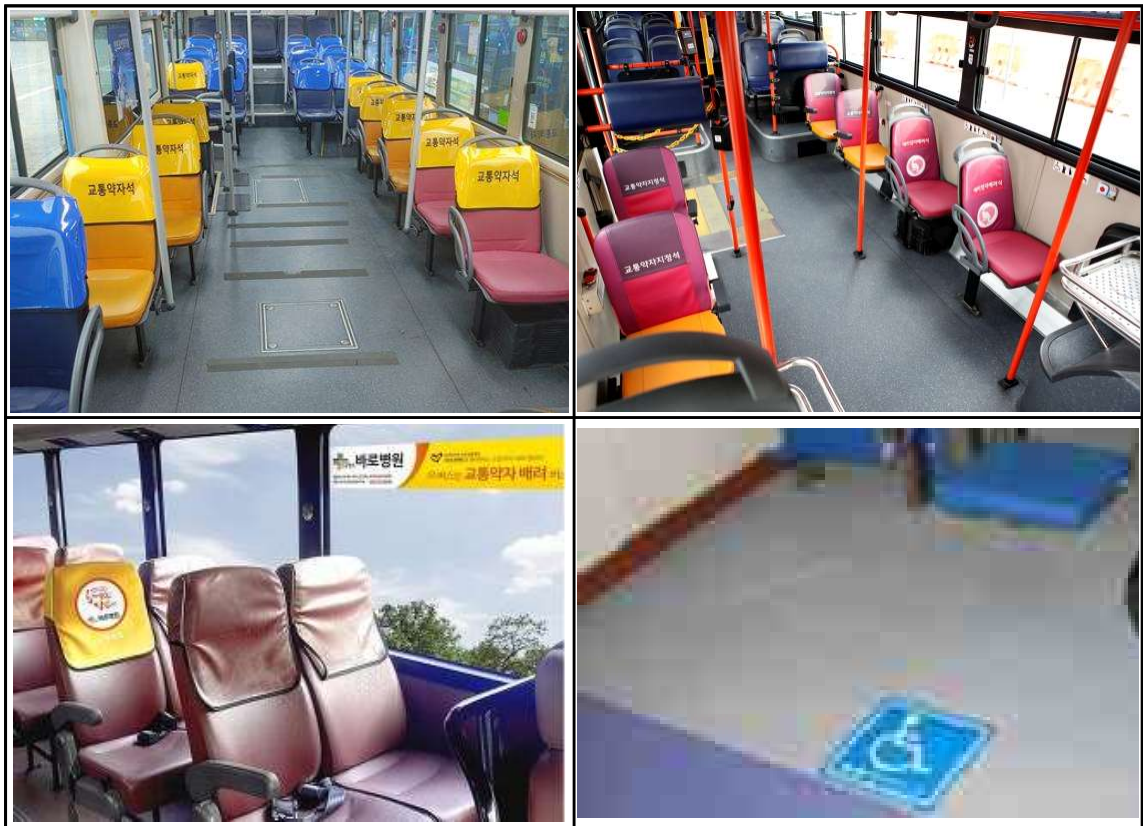
<그림 4-15> 전자안내판 개선 사례

③ 교통약자 좌석 확충에 대한 관련 규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정차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 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통약자 좌석 개선방안

-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만든 좌석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따라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지정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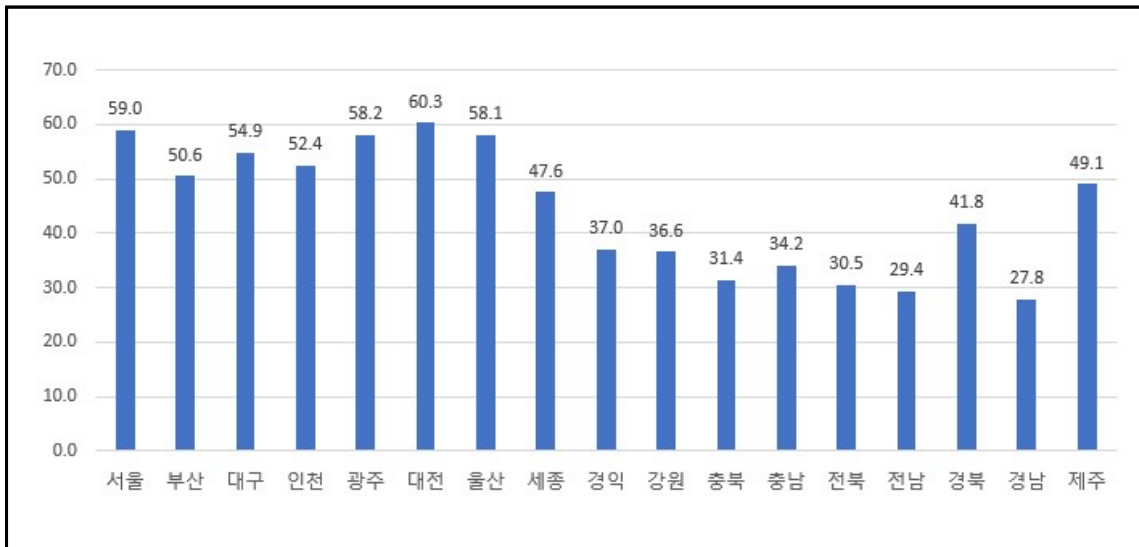


<그림 4-16> 교통약자 좌석 개선 사례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

가) 필요성

- 2021년 전국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30.5%로 나타났음
-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에 비해 9개도의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0% 미만으로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4-17>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전국 시도 설치율 비교

-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항목 중에서 동선분리, 점형블록, 선형블록,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4> 버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 결과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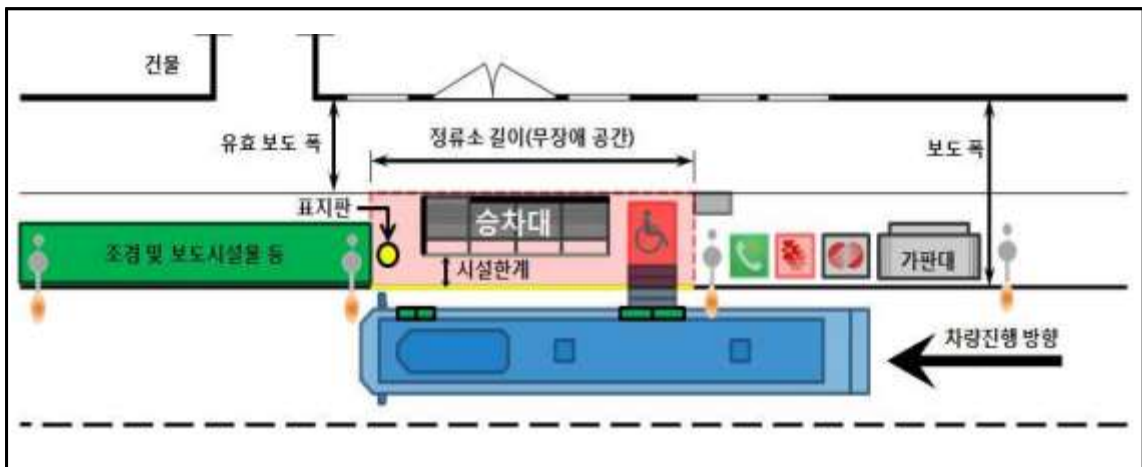
구분	기준 사례수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턱 낮추기	50	18	36.0	32	64.0	-	-
활동공간	49	25	51.0	16	32.7	8	16.3
동선분리	50	23	46.0	-	-	27	54.0
점형블록	50	8	16.0	-	-	42	84.0
선형블록	25	3	12.0	-	-	22	88.0
안내판부착위치	44	32	72.7	2	4.5	10	22.7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44	3	6.8	14	31.8	27	61.4
버스정보조회 버튼	27	1	3.7	-	-	26	96.3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	-	30.5	-	16.6	-	52.8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나) 세부추진계획

①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표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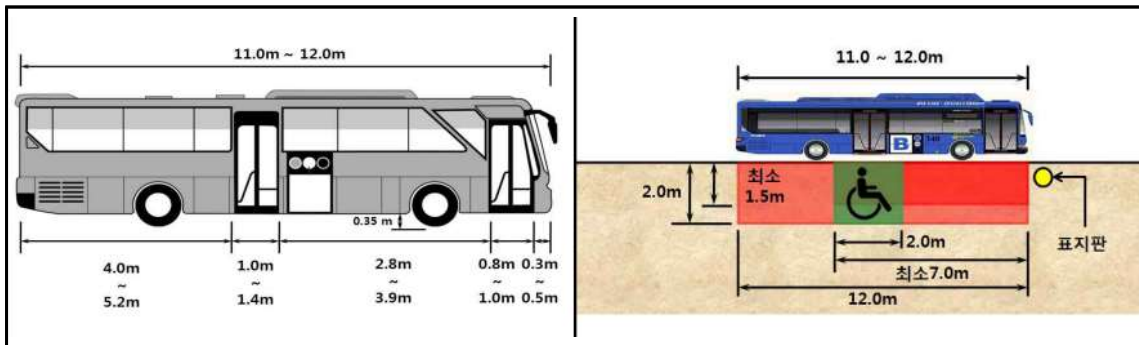
- 설치대상
 - 정류소 설계시 차량의 특성 및 이용승객을 고려하여야 하며, 무장애정류소의 기준 및 설계대상은 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로 하고 있음
 - 이동보조기구,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한 필요공간은 0.22m(L) × 0.76m(W) 이상으로 하며, 1.5m이상의 회전반경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높이는 보도의 시설 한계 높이 2.5m를 적용하고 있음
- 무장애 정류소의 개념
 - 시내버스정류소는 일반적으로 차로부분에서 올라간 보도부분 이며, 보도상의 버스정류소 주변은 누구라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즉, 무장애정류소는 정류소 접근에서부터 저상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특히 승하차) 버스이용 환경 및 정류소 여건이 조성된 정류소를 의미하고 있음



<그림 4-18> 무장애 버스정류장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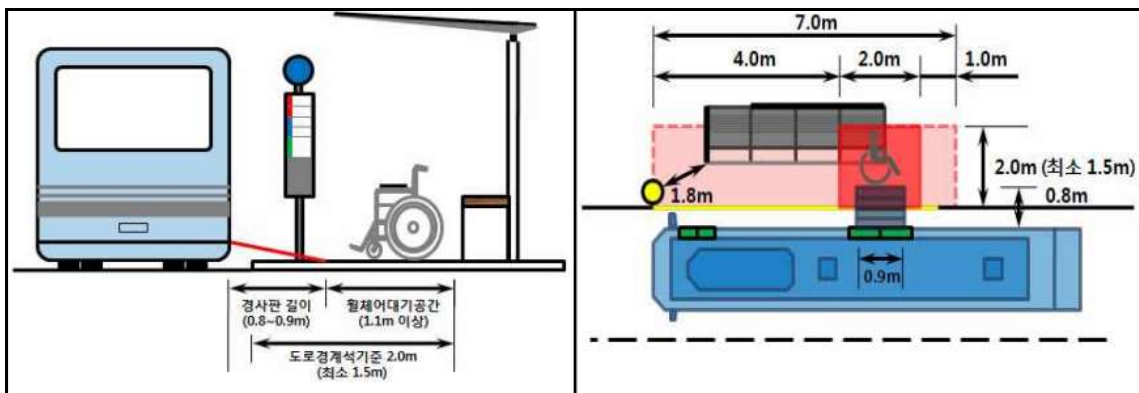
- 무장애버스정류장 설치 기준
 - 일반인 대기공간과 장애인(휠체어) 대기공간을 구분하도록 함
 - 휠체어이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교차되지 않도록 함
 - 고령자 및 일시적 교통약자, 신체장애인을 함께 고려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 환경을 조성해야함
 - 장애인의 승하차 및 이동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운전기사가 도로경계석 가까이 정차 할 수 있도록 정류소 여건을 조성 해야함

- 시내버스는 교통약자(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가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도로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정차하여야 한다
- 승강장
 - 무장애정류소 승강장은 휠체어이용자의 대기공간 및 시내버스 재원,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2.0m(W)×12.0m(L)(최소1.5m×7.0m) 무장애 영역을 포함하는 규모 이상의 승강장을 조성한다
 - 특히 최소무장애영역(1.5m×7.0m) 내에는 정류소부대시설(표지판 및 승차대 등)을 포함,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무장애영역 내에 휠체어이용자의 대기, 저상버스의 경사판 이용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2.0m×2.0m)을 포함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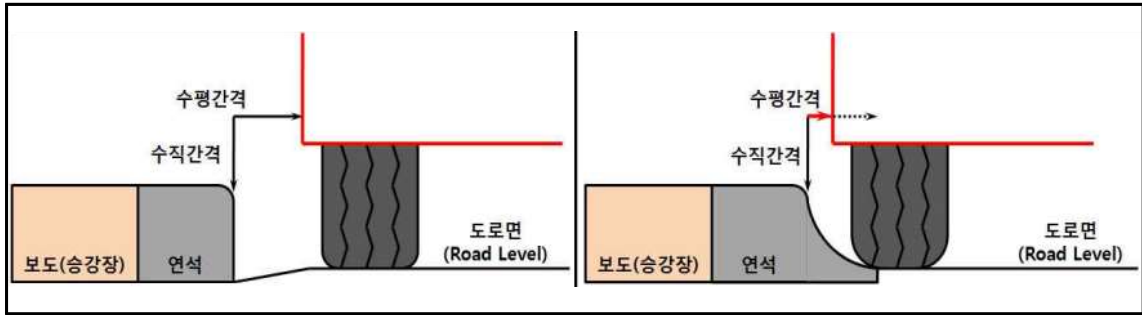
<그림 4-19> 무장애 버스정류장 승강장 길이

- 휠체어승강장-대기장소
 - 교통약자(휠체어이용자)의 저상버스 경사판 이용편의를 위해, 경사판길이, 휠체어대기공간, 차량정차위치 등을 고려, 도로경계석을 기준으로 2.0m(W)×2.0m(L) (최소1.5m×1.5m)의 휠체어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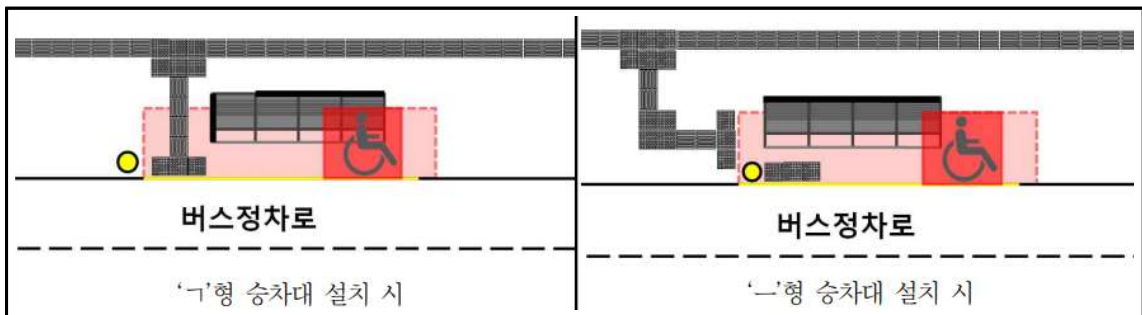
<그림 4-20> 휠체어승강장(대기장소)

- 도로경계석
 - 현재 도로경계석은 도로면과 직각으로 설치되어있으므로 운전자가 차량 손상 등에 대한 우려로 승강장과의 정차간격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무장애정류소의 승강장부 도로경계석은 경사형 및 오목형 등으로 설치하여 차량의 수평 간격과 승강장에 의한 승·하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그림 4-21> 승강장과 차량간격 최소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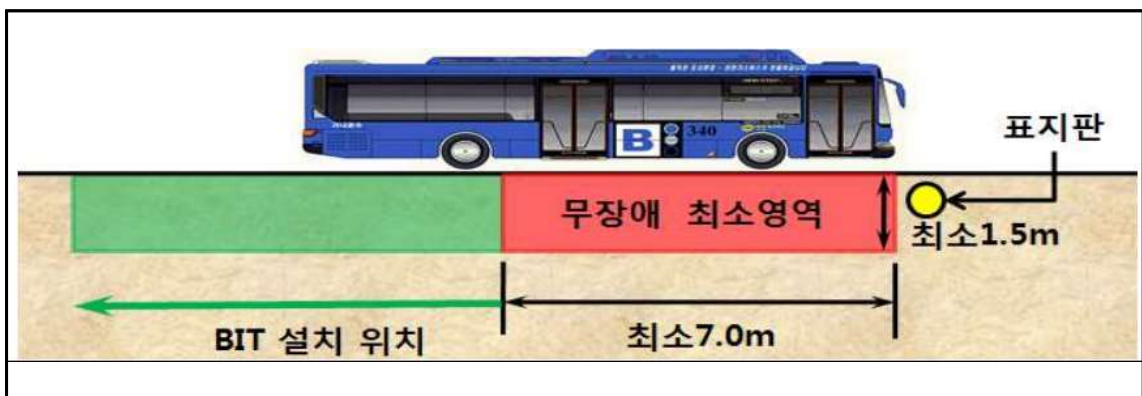
- 점자블럭
 - 시각장애인이 이동편의를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을 병설하고, 보도폭이 협소할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음
 - 정류소는 휠체어의 회전, 진출입 등이 가능 해야하며,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간 동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분리하여야 함
 - 승강장과 차도가 연접하는 전면에는 점형블록 도로경계선으로부터 0.3m 전면과 선형블록이 교차·시작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 경계부에 대한 인지가 양호하도록 해야함
 - 유도방향에 따라 선형블록은 연속,평행하게 설치하며, 버스승강장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설치하여야함



<그림 4-22> 버스승강장 점자블럭 설치

○ 버스안내단말기

-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유형은 현장을 고려하여 독립형, 표지판일체형, 승차대일체형으로 설치하며, 정보표출화면의 단/양면형은 정류소혼잡도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정류소 접근 시민 및 교통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면형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해야함
- 버스정보안내단말기(독립형)의 설치위치는 무장애최소영역(W1.5m×L7.0m) 외부, 버스진행 방향 뒤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하도록 해야함



<그림 4-23> 독립형 버스안내단말기(BIT)설치위치

○ 장애인대기알림시설

-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교통약자(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음성안내시스템을 제공(2015년 시범추진)



<그림 4-2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3)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가) 전북특별자치도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여객터미널 기준 적합률 목표는 자동차 터미널 73.0%, 철도역사 90.0%, 공항여객터미널 92.0% 여객선 터미널 92.0%로 설정하였음
- 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 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터미널 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표 4-35> 전북특별자치도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단위 : 건, %)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율
자동차 터미널	59.2
철도역사	86.1
공항여객 터미널(군산공항)	83.8
여객선터미널	87.7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① 안내 및 유도시설 설치기준

-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일반안내도에 점자를 적어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시각·음색·음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하며, 특수 신호장치를 가지고있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하면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를 여객시설의 출입구 안내표시 및 종합안내도 등에 표기해야 하며, 외부 출입구 및 여객시설 주변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음

②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 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 시설 준비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탑승하고 터미널 내의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국토부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 중인 휠체어 버스 및 승강용 휠체어 슬로프를 이용하기 쉽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터미널내에서 매표소·화장실·대기소 등 승강장·휴게시설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교통약자에게 여객터미널 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음성(전자)안내판 설치



<그림 4-25>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사례

4.4.2 시스템적 장애를 없는 환경조성

가. 교통복지협의회 구성

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복지협의회 구성(안)

① 필요성

- 교통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교통수단 사업자, 여객시설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나, 협력체계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교통복지정책 추진 저해
- 협력체계 부재로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사업사에서 서비스의 중복제공 또는 공백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 문제 발생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보도, 도시철도등 담당 부서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정책 시행 일관성 확보 필요

② 추진방안

-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역(시·군)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 교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통약자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
- 기준 적합성 심사, 교통사업자 교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이행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체계 구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 국가·지방 증진계획의 적기 수립 및 정합성 확보,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 기준적합심사
 -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 면허·허가시 이동편의시설 설치 적합여부 심사
- 교통사업자 교육
 -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함
-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 개선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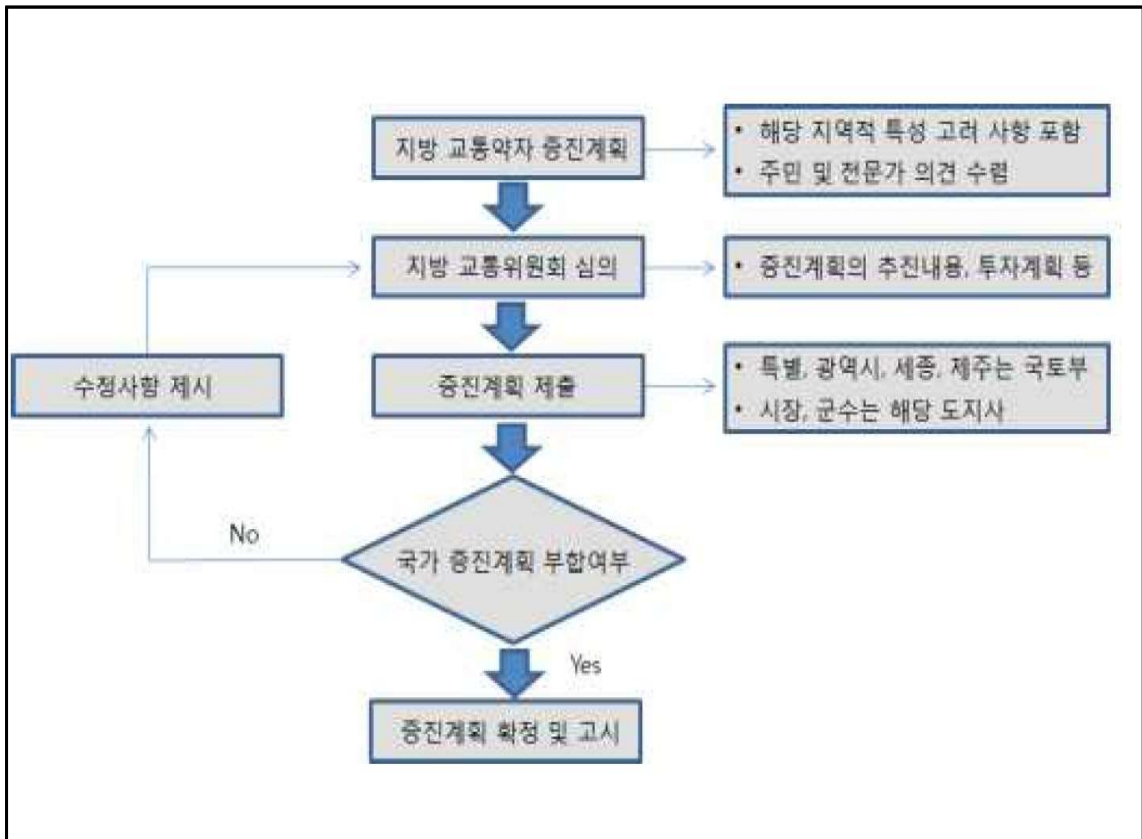


<그림 4-26> 교통복지협의회 구성 예시

2)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실행 제고

①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및 도내 지자체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계획의 목표 달성과 전라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니터링 필요



<그림 4-27> 지방 교통약자 증진계획 수립 절차

나. 무장애 교통복지 문화 조성

1)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인증제도 도입

① 필요성

- 우리나라의 2007년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들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이동권과 관련된 편의성을 보장하는 생활환경의 정비와 조성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기초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작성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인증제도를 통해 교통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시설의 이용이나, 편의시설의 접근 및 이동에 불편함 없게 환경의 조성을 계획부터 검증 및 등급을 부여하여 환경과 타 타 시설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심사기준 및 인증지표 등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작성 및 운영되고 있어, 인증제도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동의 연속성 확보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이에 따른, 본 제도가 활성화 및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교통약자들에 대한 제도와 환경이 선진화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일본의 사례조사를 내용을 제시하고, 해외사례조사와 국내 시범인증 결과에 대하여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

2) 교통약자 BF인증 선진사례

① 보도 및 횡단시설

- 장애물 구역, 보행안전구역
 -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1.5~2.0m로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자가 교차시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보행안전구역내에 기울기와 단차도 거의 없는데, 독일은 시가지에는 구릉지와 산지가 거의 없어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져 있음
 - 특히, 일본과 독일은 각 보도의 색상과 제질을 달리하여 장애인들이 도로의 성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고, 횡단시설까지 유도블록이 연결되어 있음



<그림 4-28> 각 국가의 보행로

○ 보행지원시설 및 유도방식

- 보행지원시설 및 유도방식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시 인식성을 높이고,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 등임
- 독일과 일본은 보행자 이동의 인식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 유도블록에 대해서 보도와 다른 색을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며, 보행자 바닥재질은 독일과 일본의 모두 다양하게 사용하였지만, 모두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행로 유도블록은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보행로 유도블록이 연속선상에서 단절될 수 있는 배수로, 맨홀 등이 설치될 경우, 배수로 및 맨홀의 덮개는 보도의 재질 혹은 유도블록과 동일한 재질로 설치하였음
- 공중전화와 같은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는 독일의 경우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개념으로 별도로 사회적 약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게 장애인 전용 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림 4-29> 각 국가의 안내시설

- 횡단시설
 - 4차선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보행섬은 2.5m~3m의 폭으로 단차를 제거하여 설치하여, 교통약자등 사람이 이동하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보행섬은 가드레일(차량 진입 억제용)을 설치하여 안전을 고려하였음
 - 독일에는 보행을 위한 신호, 자전거를 위한 신호, 차량을 위한 신호가 같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를 위한 신호조작기와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함께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수동식 신호조작기는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여 키가 작은 어린이도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신체장애인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신호조작기는 과거에는 진동신호기를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신호조작기는 균일한 음(音)으로 안내하는 추세임 또한, 독일의 경우 교통신호기를 대기공간 중심에 설치하는데, 이는 양쪽방향에서 접근하는 횡단보도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임



<그림 4-30> 각 국가의 횡단시설

② 내부시설 및 매개시설

- 내부시설 및 매개시설은 여객시설, 공원, 건축물 인증에서 검토하는 항목으로, 주 접근로, 주출입구(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통로, 계단, 복도, 경사로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시설의 평가기준 및 설치여부에 따른설치 조건을 평가함
- 주출입구
 - 진입로 및 주출입구는 일반적으로 단차 및 경사가 없어야 하며, 경고블록과 유도블록으로 동선을 유도하고 출입구를 경고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독일의 경우 평지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선과 유도블록이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 역시 주출입구에 대한 안내선이 설치되어있음
-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안내블록 색상이 보행로와 구분이 되지만, 대비가 크지 않아 인식성이 떨어지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노란색 유도블록을 주로 설치함



<그림 4-31> 각 국가의 매개시설 접근로([1][2]일본), [3][4]독일, [5][6]한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모든 나라에서 장애인 주차장은 이동동선을 줄이기 위해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주차면과 주차면 사이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해 주차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주차장의 관리 및 장애인전용 주차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으로 진입시 사이렌이 울려 다른 차량이 장애인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주차장의 표시는 LED 입식 방법을 설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승강기

- 최근 승강기가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서 생산되므로, 건축물의 물리적 환경이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 독일과 일본의 승강기는 대부분 승강기의 전면 공간은 휠체어 활동공간(1.5m×1.5m)을 크게 확보하고 있으며 출입문이 매우 넓고, 승강기의 도착 여부를 문자 및 음성으로 안내하고,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승강기의 진행방향을 문자 및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며, 조작버튼은 어린이용(0.9m 높이에 설치), 성인용(1.5m 높이에 설치)에 설치하고, 승강기 모든 손잡이를 차갑지 않은 재질을 사용, 기존 승강기 사용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 안내원을 부를 수 있는 호출버튼을 설치되어 있음

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BF인증 현황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교통약자법, 장애인등편의법과는 별도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임산부,어린이,노인) 등과 일시적 장애를 가진 누구나가 지역,개별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 지 않도록 관리,시공,설계,계획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 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와 「장애인등편의법」제 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등 개별시설(공공건축물, 공원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과 지역 인증 등은 의무화되지 않고, 아직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관리 운영하는 개별시설 중 건축물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음

<표 4-36> 전국 8개도 BF인증 현황

(단위 : 개)

구분	인증시설물	순위
경기도	886	1
강원도	335	5
충청북도	214	8
충청남도	325	6
전북특별자치도	259	7
전라남도	500	2
경상북도	479	3
경상남도	463	4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표 4-37>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

(단위 : 개)

구분	인증시설물	비고
전주시	39	최우수 : 1개소, 우수 : 38개소
군산시	23	우수 : 23개소
익산시	20	우수 : 20개소
정읍시	29	우수 : 29개소
남원시	11	일반 : 1개소, 우수 : 10개소
김제시	10	우수 : 10개소
완주군	17	일반 : 3개소, 우수 : 14개소
진안군	4	우수 : 4개소
무주군	3	우수 : 4개소
장수군	18	최우수 : 1개소, 우수 : 17개소
임실군	12	우수 : 12개소
순창군	16	우수 : 16개소
고창군	26	일반 : 1개소, 우수 : 25개소
부안군	29	우수 : 29개소
합계	259	일반 : 5개소, 우수 : 252개소, 최우수 : 2개소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전북특별자치도 BF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8개도에서 7순위로 확인되어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전주시가 BF인증시설물이 39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BF인증 활성화가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BF인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이동편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에 의무대상시설을 넓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 필요

4) 교통약자 이용 시설에 인증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

①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의거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2항에 따른 심사 전문 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표 4-38> 이동지원센터 설치

구 분	내 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① 공원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2종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공장, 14. 자동차관련시설 15. 교정시설, 16. 방송통신시설, 17. 장례식장 ③ 공동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④. 통신시설 1. 공중전화, 2. 우체통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항(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장애인참여 BF 인증 사례



<그림 4-32> 장애인이 참여한 BF인증 사례

5) 교통약자의 도서지역 간 이동을 위한 선진 사례

① 도서지역 교통약자 콜택시 및 이동 보조차량 도입의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불편해소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통약자가 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함

② 도서지역 교통약자 콜택시 도입의 사례

- 현재 전라남도 도서지역 콜택시가 운영중이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 및 가족 등 동승 2인뿐 아니라 남면지역 방문자 중 이용요건을 갖춘 사람도 이용할수 있음



<그림 4-33> 전라남도 도서지역 교통약자 콜택시

③ 교통약자 이동 보조차량 도입 사례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도서지역에 교통약자 이동 보조차량을 기부하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활용되고 있음



<그림 4-34> 인천 중구 소무의도 교통약자 이동 보조차량

4.5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4.5.1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관리 강화

가. 필요성

-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비행기나 철도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택시와 버스는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안내정보 부족,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
-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은 55.1%인데 반해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9.5%에 불과했으며 장애인의 버스와 택시 이용을 위한 인프라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택시, 버스 운전자도 지원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및 운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안전성 증진에 대한 운전자의 교육강화가 필요하며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가 많이 이용하는 시내·시외버스 운수종사자들까지의 교육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교육)」에서 서비스 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북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의 교육을 위한 교육메뉴얼은 전무한 실정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증진, 차내 안정성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 매뉴얼 제작 및 배포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나. 세부 추진계획

1) 교육 메뉴얼 제작 및 보급

-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메뉴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용을 제작하여 14개 시·군에 전달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발행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배포 및 설명을 추진함
- 특별교통수단 및 시내/시외버스 운전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강화 방안을 수립한 후 14개 시·군 전체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메뉴얼 작성 및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 교육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이동편의시설의 유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
-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림 4-35> 전북특별자치도 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4.5.2 광역이동지원콜센터 상담원들의 인식개선 교육

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정기적인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있음
- 하지만 현재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만 교육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대상을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들까지 추가하여 주기적인 교통약자의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교통약자 인격존중과 서비스 개선 교육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13조의2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추진방향

- 교통약자를 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및 차량 승차시 배려를 위한 서비스 교육 강화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사용법 실습교육 추진
- 특별교통수단 승차자 편의 제공을 위한 주말(토요일)교육 실시

교육현황

- 교육대상 : 도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 2024년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수요자는 2024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 계획인원 : 4기 / 494명(저상버스 : 261명, 특별교통수단 : 233명)
- 교육시간 : 1일 / 4시간
- 교육내용 : 교통약자 인격존중 및 이동권 보장 교육,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사용법 실습, 도로교통관계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응급처치 실습 등
- 일정별 교육계획

기수	교육일정	계획인원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비고
	합계	494	261	233	
1기	3. 9.(토)	123	65	58	
2기	4. 6.(토)	123	65	58	
3기	9. 7.(토)	124	65	59	
4기	10. 26.(토)	124	65	59	

<그림 4-3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교육 계획

4.5.3 포용적 교통복지 문화 조성

가. 전북도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및 배려문화 조성

1) 필요성

-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
- 지역 내 외출 시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52.4%였으나, 휠체어 이용자 중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10.9%로 큰 차이(국토부, 2022)
- 많은 휠체어 이용자들(27%)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응답(국토부, 2022)
- 제4차 국가계획의 추진계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 복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필요

2) 추진방안

- 대중교통 종사자들과 전북도민이 교통약자를 돕고 이해하는 문화 조성
- 도민들이 참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전 시행
 - 아이디어, 사진, 슬로건, 포스터, 웹툰, UCC 등 공모전 시행으로 시민참여 유도
- 교통수단별(선박, 항공기, 철도, 버스등) 교통약자가 겪을 수 있는 경험 및 어려움 등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자료(리플렛, 포스터, 영상 등) 보급 및 제작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전광판, 언론(TV·신문), SNS(Youtube 등), 옥외광고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자료 배포
- 교통복지협의회를 통해 교통행정기관,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교육 및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체계 구축
 -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사업자는 매뉴얼을 활용한 교통약자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통약자 이해 및 고객응대에 관한 교육 등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집합,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 승강장 및 여객터미널 등 미디어 장치를 활용한 교통약자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시행

행복한 동행 스토리텔링 공모전

2023. 05. 22. (월) ~
07. 10. (월) (50일간)

- 참가자격**
 서울교통공사 이용고객 누구나
- 공모주제**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감동 에피소드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 응모방법**
 공사 홈페이지 접수, 1인당 1편 (1,200자 이내 작성)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참조
 *응모양식 다운로드 후 첨부(응모양식 변경 불가)
 *마감일 24:00까지 접수한 게시물로 공모기간 중 1회만 접수 가능
- 시상규모**
 총 11편, 총 상금 220만원 (※상금에는 제세공과금 포함)

구분	수상작수(편)	상금	비고
최우수상	1	220만원	상장 및 부상
우수상	2	50만원	
장려상	3	30만원	
기적	5	20만원	
		10만원	
- 응모시유의사항**
 해당시 심사 제외, 수상 후라도 수상 취소 및 상금반환
 *응모 양식에 맞지 않는 작품
 *타 공모전 당선작 및 방송이나 출판(인터넷 등)된 적이 있는 작품
 *응모작이 타인의 콘텐츠를 도용 표절하거나 허위사실로 편양된 경우 및
 응모자 인격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저작권, 소유권 등 기타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 또는 저작권자의 책임으로 귀속
- 결과발표**
 2023년 8월 7일(예정)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발표 후 작품 사용 동의서 필수 제출
 ※ 작품 사용 동의서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되며 관련 세부내용은 결과 발표 후 공지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기타사항**
 *수상하지 않은 작품 및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결과 발표 후 모두 폐기
 *최종 수상작은 광고된 상금 및 부상 등을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하고
 수상자에 대한 저작권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상작물 홍보 및
 권익적 목적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문의 02-6311-9403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그림 4-37> 서울교통공사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예시

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권장

1) 필요성

- 고령자는 일반운전자에 비하여 인지반응, 시각 능력 등 신체능력이 떨어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느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진반납을 추진하고있음
-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문화상품권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고령자 대상으로 신체능력 테스트 및 운전능력을 검사하여 자발적으로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운전능력이 없는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2) 추진방안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고령운전자(70세 이상)가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홍보를 하여 자진 반납을 유도하하는 방안을 추진함
-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테스트 지원) 고령운전자(70세 이상)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지원해 주고 연 1회 테스트 추진시 소정의 사례금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게 자진 반납을 유도
- 본 사업은 “고유, 관리, 협력” 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테스트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은 시·군 지자체에서 추진



<그림 4-38>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테스트

4.6 연구 개발 및 제도개선

4.6.1 이동지원센터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국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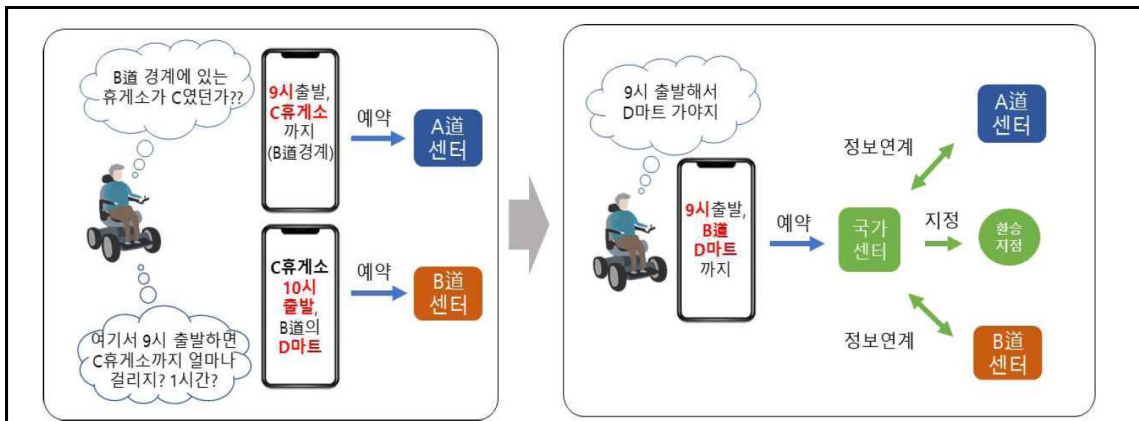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도(道)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간 환승·연계 활성화 기반 마련
- 타 지역 도(道) 이동 시 타지역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 및 타 교통 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 고도화

<표 4-39> 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2024년	· 각 센터의 등록자의 정보공유를 통한 이동지원센터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2025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환승 시범 서비스 시행
~2026년	· 타 교통수단(철도, 시외버스 등)과의 환승 서비스 시범운영



<그림 4-39>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연계에 따른 이용편의성 개선



<그림 4-40> 광역이동지원센터 간 정보연계를 통한 환승편의성 개선

4.6.2 타 지자체 광역이동센터 운영현황

가. 광역지자체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평균적으로 콜센터 예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 예약, 인터넷 예약, 모바일 예약 등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음
- 광역이동지원센터는 9개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위탁 운영은 크게 공기업(공사, 공단), 운수사업자(시내버스, 택시 등), 단체(이동지원센터, 장애인협회 등)로 구분됨

<표 4-40> 9개 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구분	위탁기관	접수수단				운영인력(인)	
		전화	문자	홈페이지	어플		
광역센터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연계 시스템만 운영				-
	강원도	(주)케이티아이에스	○	○	○	○	2
	충청북도	(주)에세텔	○	X	○	○	14
	충청남도	(주)케이티아이에스	○	○	X	○	22
	전북특별자치도	(주)케이티아이에스	○	X	○	○	26
	전라남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	X	○	23
	경상북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	○	X	18
	경상남도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	○	X	○	31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	○	○	95	

출처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 (국토교통부, 2022.06) 및 내부자료

1)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2013년 관제시스템 구축 이후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운영되고 있음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해오던 특별교통수단에 광역기반의 이용자·차량의 연계 서비스를 추가 서비스를 강화하여 차량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콜센터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음
-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기준 약 32만여 건의 운행실적이 있으며 이용실적에 대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8.92%이며, 정선군, 태백시 등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임 반면, 속초시와 양양군의 이용실적은 감소추세에 있음

<표 4-41> 강원도 이동지원센터 이용실적

시·군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합계	269,759	345,677	320,021	8.92
춘천시	44,431	59,939	53,458	9.69
원주시	91,756	111,169	92,846	0.59
강릉시	55,035	69,378	71,152	13.70
동해시	13,169	17,002	16,588	12.23
태백시	995	2,732	3,536	88.51
속초시	16,410	16,936	15,726	-2.11
삼척시	4,428	10,296	9,479	46.31
홍천군	12,748	16,208	15,190	9.16
횡성군	10,541	11,323	11,129	2.75
영월군	4,352	5,704	5,637	13.81
평창군	2,036	1,787	2,738	15.97
정성군	1,198	5,487	5,070	105.72
철원군	1,814	3,451	3,726	43.32
화천군	1,192	1,694	1,622	16.65
양구군	1,312	2,843	2,924	49.29
인제군	1,006	1,467	1,400	17.97
고성군	2,494	3,420	2,839	6.69
양양군	4,543	4,739	3,960	-6.64
기타	299	102	1,001	82.97

<표 4-42>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관내요금		관외요금		대기료
기본	초과	기본	초과	
1,100원/4km	100원/km	1,100원/4km	100원/km	1시간 초과시 2,000원/30분

<표 4-43>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특이사항

시·군	관외 이용요금 특이사항	대기료 특이사항
춘천시	편도 이용시 편도요금 징수	개인용무 : 2시간 병원용무 : 3시간
원주시	편도 이용시 편도요금 징수	개인용무 : 1시간 병원용무 : 3시간
강릉시	-	병원용무 : 4시간
동해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
태백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
속초시	한도 규정 없음	-
삼척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타지역 출발시 왕복요금(동해시 제외)	-
홍천군	한도 규정 없음	3시간 제한
횡성군	원주, 홍천(홍천읍, 동면)에서 호출 시 운임료 +1,500원	-
영월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타지역 출발 시 왕복요금	-
평창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타지역 출발 시 왕복요금	-
정선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강원도 내 타지역 호출 시 편도요금 (통행료는 왕복료 부담)	-
철원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초과금지	-
화천군	택시요금의 50% 초과금지 타지역 호출 시 편도요금	-
양구군	택시요금의 50% 초과금지	-
인제군	-	-
고성군	한도 규정 없음	-
양양군	한도 규정 없음	-

- 강원도 18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는 공통적으로 병원 이용시 강원도내 전역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18개 시·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외 지역의 이동에는 제한이 있음
- 강원도 17개 시·군에서는 강원도 전지역을 개인용무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횡성군과 같이 개인용무 목적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 외에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의 개인 이용이 가능하나 횡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강원도 지역 내에서의 이동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2)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201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시·군별로 운영되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제한이 있었던 시스템을 보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을 통합한 이동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한 번의 접수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출발지·목적지를 지도상에서 선택하고 자주 이용하는 지점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이 향상됨
- 운영형태 : 국토교통부의 자료에는 자체운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어 민간위탁으로 추정됨
-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음
-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자체 예산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하였고, '경기도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자체 예산을 민간이전의 형태로 직접 지출함
- 경기도 31개 시·군의 이용요금은 각기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4-44>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시·군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수원시	1,250원	-	5km당 100원
성남시	1,500원	5km당 100원	-
의정부시	10km까지 1,000원	1km당 100원	광역운행 기본요금 1,0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
안양시	1,200원	1km당 100원	경기도 내 100원/km
부천시	2km까지 1,000원	1km당 200원	2km까지 1,000원 추가 1km당 300원
광명시	1,250원	-	1km당 100원
평택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동두천시	1,000원	-	1km당 100원
안산시	1,200원	-	10km까지 1,200원, 이후 5km당 100원
고양시	1,300원	5km당 100원	-
과천시	무료	무료	무료
구리시	10km까지 1,200원	1km당 200원	-
남양주시	10km이내 1,500원	5km당 100원	30km 이내 2,900원 (추가요금 : 100원/5km)
오산시	1,300원	-	1km당 100원
시흥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군포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의왕시	1,200원	-	5km당 100원
하남시	10km 1,500원	5km당 100원	-
용인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파주시	1,250원	-	5km당 100원
이천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안성시	10km까지 1,300원	3km당 100원	3km당 120원
김포시	1,000원	-	서울/인천/경기도 : 5km당 100원
화성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광주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양주시	10km까지 1,200원	5km당 100원	-
포천시	10km까지 1,250원	5km당 100원	1km당 150원
여주시	10km까지 1,300원	3km당 100원	할증 20%
연천군	10km까지 1,000원	km당 200원	km당 200원
가평군	10km까지 1,3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양평군	10km까지 1,500원	5km당 100원	관내와 동일

3)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전라남도는 관제시스템을 구축(2016년)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 서비스를 실시함
- 전라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상 문제였던 전라남도내 시·군간 운행제한 및 요금의 해결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으로 해결을 시도함
- 2018년 기준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운영형태 : 위탁운영(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민간위탁금)의 형태로 2015년부터 총 19억 5천만원이 투입됨
- 전라남도의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관내이용금액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거리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관외 이용금액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를 적용하여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음

<표 4-45>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시·군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목포시	600원(2km까지)	36원(146m당)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여수시	700원(2km까지)	26원(146m당)	
순천시	660원(2km까지)	100원(146m당)	
나주시	900원(2km까지)	36원(146m당)	
광영시	700원(2km까지)	36원(146m당)	
담양군	1,500원(2km까지)	55원(146m당)	
곡성군	700원(2km까지)	32원(146m당)	
고흥군	1,500원(2km까지)	70원(146m당)	
화순군	1,500원(2km까지)	55원(146m당)	
장흥군	1,050원(2km까지)	49원(146m당)	
해남군	1,500원(2km까지)	36원(146m당)	
무안군	1,400원(2km까지)	64원(146m당)	
함평군	1,750원(2km까지)	48원(146m당)	
진도군	1,500원(2km까지)	36원(146m당)	
장성군	1,000원(2km까지)	30원(146m당)	

4.6.3 광역이동센터 운영의 효율화 방안

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후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

<표 4-46> 광역이동지원센터 주요 사업내용

<p>2019년~ 202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 및 콜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규정 통합, 고객관리 배차 통합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연2회 심의위원회 시행을 통해 안전 수립 및 서비스 개선반영 논의 · 임차택시 도입으로 배차 운행 확대 시행 · 운전자 포상제도 도입(상위40%)
<p>202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친절서비스 교육 시행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 · 운전자 만족도 시행을 통해 운전원 포상에 반영 및 불친절 사례교육 및 하위10% 개선 교육 시행
<p>202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담사 서비스평가 시행 ·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 공간 확장 공사진행 -> 이용자와 이용건 증가에 따라 상담사 2명 추가 채용)
<p>202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인격존중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교통문화 연수원 교육 참여 및 사내 전문강사를 통한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이수 ->시군 이동지원센터별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수동배차->AI인공지능을 반영 자동배차) · 휠체어 우선배차 반영 · 전북특별자치도 변경으로 인한 광역센터 내외부 리모델링 시행

나.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운영비 현황

<표 4-47>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운영비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센터장	1	1	1	1	1
	팀장	1	1	1	1	2
	상담원	15	22	22	22	23
	계	17	24	24	24	26
운영비		2,100	11,960	13,091	16,417	17,140
운행대수		124	173	190	234	278

주1) : 19. 10. 2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시
 주2) : 운영비단위(만원)

2)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콜수

<표 4-48>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콜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주시	13,577	115,243	149,803	171,215	187,817
군산시	5,497	50,854	69,642	76,447	89,613
익산시	4,776	32,142	46,322	57,407	73,253
정읍시	3,264	24,760	31,318	32,259	37,485
남원시	1,126	6,744	9,996	12,233	16,174
김제시	2,317	16,824	27,039	34,366	41,974
완주군	1,460	11,072	13,925	15,705	17,666
진안군	266	2,163	2,564	3,286	4,108
무주군	371	3,139	4,164	5,253	7,132
장수군	167	2,318	2,908	3,497	4,549
임실군	557	3,939	4,815	5,309	6,744
순창군	672	6,560	6,504	4,635	6,109
고창군	1,299	7,598	10,656	13,043	13,507
부안군	1,147	10,595	14,498	15,001	15,259
총합계	36,496	293,951	394,154	449,656	521,390

3)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각 연도별 실적

<표 4-49> 광역이동지원센터 각 연도별 실적

구분(2021년~2023년)	연도	접수건수	성공건수	성공률	평균대기시간	
					접수-배차	배차-승차
전주	2021년	159,996	149,803	94%	00:11:36	00:15:37
	2022년	186,119	171,215	92%	00:18:39	00:17:45
	2023년	208,791	187,817	90%	00:19:35	00:17:43
군산	2021년	74,272	69,642	94%	00:09:59	00:13:32
	2022년	81,421	76,447	94%	00:12:13	00:15:54
	2023년	97,135	89,613	92%	00:12:56	00:14:54
익산	2021년	49,151	46,322	94%	00:13:45	00:15:41
	2022년	61,789	57,407	93%	00:18:50	00:17:02
	2023년	77,527	73,253	94%	00:09:21	00:14:49
정읍	2021년	33,136	31,318	95%	00:10:48	00:15:03
	2022년	34,595	32,259	93%	00:15:13	00:16:56
	2023년	39,680	37,485	94%	00:09:57	00:14:42
남원	2021년	10,584	9,996	94%	00:10:52	00:15:14
	2022년	12,910	12,233	95%	00:11:19	00:16:09
	2023년	17,003	16,174	95%	00:06:48	00:13:47
김제	2021년	28,902	27,039	94%	00:08:00	00:13:22
	2022년	36,639	34,366	94%	00:09:20	00:15:07
	2023년	44,475	41,974	94%	00:05:59	00:13:54
완주	2021년	16,326	13,925	85%	00:19:19	00:16:25
	2022년	19,013	15,705	83%	00:24:16	00:19:00
	2023년	21,003	17,666	84%	00:23:39	00:17:41
진안	2021년	2,700	2,564	95%	00:16:22	00:13:22
	2022년	3,512	3,286	94%	00:27:42	00:15:22
	2023년	4,400	4,108	93%	00:17:43	00:13:01
무주	2021년	4,476	4,164	93%	00:11:55	00:13:11
	2022년	5,589	5,253	94%	00:13:42	00:14:39
	2023년	7,513	7,132	95%	00:11:13	00:14:58
장수	2021년	3,140	2,908	93%	00:12:51	00:12:44
	2022년	3,745	3,497	93%	00:11:39	00:13:55
	2023년	4,950	4,549	92%	00:11:40	00:14:53
임실	2021년	5,275	4,815	91%	00:02:31	00:15:23
	2022년	5,613	5,309	95%	00:04:26	00:16:43
	2023년	7,023	6,744	96%	00:01:17	00:11:58
순창	2021년	6,965	6,504	93%	00:15:11	00:12:26
	2022년	4,894	4,635	95%	00:12:58	00:15:41
	2023년	6,514	6,109	94%	00:10:56	00:13:53
고창	2021년	11,447	10,656	93%	00:18:06	00:14:55
	2022년	14,357	13,043	91%	00:21:09	00:16:45
	2023년	14,830	13,507	91%	00:20:24	00:15:08
부안	2021년	15,550	14,498	93%	00:10:45	00:13:28
	2022년	16,013	15,001	94%	00:13:34	00:15:17
	2023년	16,341	15,259	93%	00:06:46	00:13:25

주 : 2021년부터 시스템업데이트를 통해 취소건이 확인가능해져 2021년부터 실적 파악이 가능해짐

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운행대수 & 운전원수

<표 4-50> 시·군별 운행대수 및 운전원수

구분	차량			운전원		
	차량대수 (합계)	차량 특별 교통수단	임차택시	운전원 (합계)	정규직	임차운전원
합계	289	233	56	298	250	48
전주	87	62	25	92	72	20
완주	14	14	0	11	11	0
군산	41	31	10	39	31	8
익산	45	40	5	46	40	6
정읍	22	18	4	23	19	4
고창	9	9	0	10	10	0
순창	5	5	0	6	6	0
남원	13	13	0	14	13	1
임실	5	5	0	6	6	0
김제	24	16	8	22	16	6
부안	9	9	0	10	10	0
장수	4	3	1	6	5	1
진안	4	4	0	6	6	0
무주	7	4	3	7	5	2

5)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및 관외 이용건수

<표 4-51> 관내 및 관외 이용건수

구분	관내	관외	계
2020	258,556	35,395	293,951
2021	356,074	38,080	394,154
2022	409,102	40,554	449,656
2023	470,584	50,806	521,390

6) 전북특별자치도 장애 유형별 이용현황

<표 4-5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 유형별 이용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체	103,014	131,973	151,369	179,934
뇌병변	66,484	87,880	97,283	115,742
시각	30,956	39,256	45,584	50,927
청각	1,356	2,040	3,047	3,409
언어	1,081	1,334	1,936	2,121
안면	20	17	30	73
신장	47,838	65,252	75,557	87,096
심장	320	498	888	819
간	11	13	-	4
호흡기	373	536	553	757
장루요루	53	138	71	61
간질	1,076	776	714	793
지적	16,593	24,425	26,035	26,349
정신	5,297	7,724	6,623	7,120
자폐성	1,550	2,259	2,193	2,603
임산부	-	25	25	223
노인	16,342	26,993	35,728	41,607
일시회체어	1,587	3,015	2,020	1,752
합계	293,951	394,154	449,656	521,390

7)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근무 현황

<표 4-53> 특별교통수단 차량근무 현황

구분	시간대별																																																																																																																																																																																																																																																																																																																																																																																																																																																																																																																																																																																																																																						
	00 ~ 05	05 ~ 06	06 ~ 07	07 ~ 08	08 ~ 09	09 ~ 10	10 ~ 11	11 ~ 12	12 ~ 13	13 ~ 14	14 ~ 15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20 ~ 21	21 ~ 22	22 ~ 23	23 ~ 24																																																																																																																																																																																																																																																																																																																																																																																																																																																																																																																																																																																																																			
	전주	평일	2	8	12	29	54	67	68	68	68	67	69	69	67	52	34	34	10	12	9	7		주말	2	4	7	17	20	23	23	23	23	25	25	23	23	20	14	14	4	6	4	4	군산	평일	1	1	4	11	23	23	28	28	28	35	36	36	28	13	12	8	8	8	1	1		주말	1	1	1	7	11	11	13	13	13	16	16	16	9	5	5	3	3	3	1	1	익산	평일	2	2	2	15	15	28	35	35	35	35	37	37	31	22	18	7	3	4	5	4		주말	2	2	2	3	3	5	5	5	5	7	7	7	4	4	2	2	2	2	2	2	정읍	평일	1	1	1	2	16	16	16	16	16	19	19	19	17	3	3	3	3	3	1	1		주말	1	1	1	2	3	3	3	3	3	4	4	4	2	1	1	1	1	1	1	1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주말	2	4	7	17	20	23	23	23	23	25	25	23	23	20	14	14	4	6	4	4	군산	평일	1	1	4	11	23	23	28	28	28	35	36	36	28	13	12	8	8	8	1	1		주말	1	1	1	7	11	11	13	13	13	16	16	16	9	5	5	3	3	3	1	1	익산	평일	2	2	2	15	15	28	35	35	35	35	37	37	31	22	18	7	3	4	5	4		주말	2	2	2	3	3	5	5	5	5	7	7	7	4	4	2	2	2	2	2	2	정읍	평일	1	1	1	2	16	16	16	16	16	19	19	19	17	3	3	3	3	3	1	1		주말	1	1	1	2	3	3	3	3	3	4	4	4	2	1	1	1	1	1	1	1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군산	평일	1	1	4	11	23	23	28	28	28	35	36	36	28	13	12	8	8	8	1	1		주말	1	1	1	7	11	11	13	13	13	16	16	16	9	5	5	3	3	3	1	1	익산	평일	2	2	2	15	15	28	35	35	35	35	37	37	31	22	18	7	3	4	5	4		주말	2	2	2	3	3	5	5	5	5	7	7	7	4	4	2	2	2	2	2	2	정읍	평일	1	1	1	2	16	16	16	16	16	19	19	19	17	3	3	3	3	3	1	1		주말	1	1	1	2	3	3	3	3	3	4	4	4	2	1	1	1	1	1	1	1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7	11	11	13	13	13	16	16	16	9	5	5	3	3	3	1	1	익산	평일	2	2	2	15	15	28	35	35	35	35	37	37	31	22	18	7	3	4	5	4		주말	2	2	2	3	3	5	5	5	5	7	7	7	4	4	2	2	2	2	2	2	정읍	평일	1	1	1	2	16	16	16	16	16	19	19	19	17	3	3	3	3	3	1	1		주말	1	1	1	2	3	3	3	3	3	4	4	4	2	1	1	1	1	1	1	1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익산	평일	2	2	2	15	15	28	35	35	35	35	37	37	31	22	18	7	3	4	5	4		주말	2	2	2	3	3	5	5	5	5	7	7	7	4	4	2	2	2	2	2	2	정읍	평일	1	1	1	2	16	16	16	16	16	19	19	19	17	3	3	3	3	3	1	1		주말	1	1	1	2	3	3	3	3	3	4	4	4	2	1	1	1	1	1	1	1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2	2	2	3	3	5	5	5	5	7	7	7	4	4	2	2	2	2	2	2	정읍	평일	1	1	1	2	16	16	16	16	16	19	19	19	17	3	3	3	3	3	1	1		주말	1	1	1	2	3	3	3	3	3	4	4	4	2	1	1	1	1	1	1	1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정읍	평일	1	1	1	2	16	16	16	16	16	19	19	19	17	3	3	3	3	3	1	1		주말	1	1	1	2	3	3	3	3	3	4	4	4	2	1	1	1	1	1	1	1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2	3	3	3	3	3	4	4	4	2	1	1	1	1	1	1	1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남원	평일	2	2	2	2	10	10	10	10	10	12	12	12	12	7	2	2	2	2	4	2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1	2	2	2	2	2	3	3	3	3	3	1	1	1	1	2	1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김제	평일	1	1	4	7	18	18	18	18	20	20	20	20	14	7	7	3	3	2	2	2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1	4	4	4	4	4	4	4	5	4	2	2	2	1	1	1	1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완주	평일	1	1	1	2	9	9	10	10	10	12	12	12	10	3	3	2	2	2	1	1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1	1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진안	평일	1	1	1	1	4	4	4	4	4	4	4	4	4	1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무주	평일	1	1	1	3	4	5	5	5	5	6	6	6	5	4	3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장수	평일	1	1	1	2	4	4	4	4	4	4	4	4	4	3	2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임실	평일	1	1	1	1	4	4	4	4	4	3	4	4	4	4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순창	평일	1	1	1	2	3	4	4	4	4	5	5	5	3	2	1	1	1	1	1	1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고창	평일	1	1	1	3	6	7	7	7	8	8	8	7	5	3	1	1	1	1	1	1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부안	평일	0	1	1	2	5	8	8	8	8	8	8	7	7	5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주말	0	0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0	0	0																																																																																																																																																																																																																																																																																																																																																																																																																																																																																																																																																																																																																		

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전북특별자치도에 교통약자 증가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인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 효율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담원 인력의 증원이 필요함
- 제4차 국가계획에서 지역이동지원센터의 지역·수단간 정보연계를 통해 타 광역 지자체에 별도의 이용자 등록 없이 타 지역에서의 이동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센터를 계획, 각 도 광역지원센터 간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구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력의 증원이 필요

2) 개선방안

<표 4-54> 4차 계획간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운행대수 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원	센터장	1	1	1	1	1
	팀장	2	2	2	2	2
	상담원	23	23	23	25	27
	계	26	26	26	28	30
운행대수		207	233	257	286	310
1인당대수		8.0	9.0	9.8	10.2	10.3

주 : 바우처 택시 도입 유무에 따라 변동예정

- 특별교통수단의 증차에 따라 현재의 운행대수 당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인원 비율에 따른 지원 및 바우처택시 사업을 진행할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당한 업무 부하가 예상됨에 따른 증원, 향후 바우처 택시의 증차에 따른 인력의 증원이 고려되어야 함

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계획

1) 문제점

- 전북특별자치도에 교통약자 증가 및 특별교통수단의 평균대기시간이 길어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확충이 필요

<표 4-55> 타 지자체 운전원 비율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서울	634	743	1.17
부산	228	228	1.00
대구	163	177	1.08
인천	215	215	1.00
광주	116	134	1.15
대전	96	121	1.26
울산	76	90	1.18
세종시	21	21	1.00
경기도	1,178	1,296	1.10
강원도	215	268	1.24
충청북도	168	159	0.94
충청남도	250	256	1.02
전라남도	201	258	1.28
경상북도	242	242	1.00
경상남도	290	461	1.18
제주도	68	84	1.23
평균	-	-	1.11

주 : 1) 2022년 기준 타지자체 운전원 비율
 2) 경기도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 시·군별 인력확보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을 200% 확보하게 되어있음

<표 4-56>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전북특별자치도	233	250	1.07

주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 지원센터 내부자료

2) 개선방안

<표 4-57>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계획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전북특별자치도	310(▲77)	465(▲215)	1.50

주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 지원센터 내부자료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대수 77대 및 운전원 215명을 확충하여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수를 1.5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확충할 계획임

4.6.4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지원패스카드


- 전북특별자치도내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G-PASS 사업」 및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카드사업을 벤치마킹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패스카드 방안 제시

<표 4-58> 전북특별자치도 우대용 교통카드 방안 제시

발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00세 이상 ·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 전북특별자치도 내 버스이용 무료 · 장애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감면 혜택 및 버스이용 무료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단순선불카드




<그림 4-41> 카드종류 예시




남원시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안내

- 이 카드는 남원시 시내버스 무임이용 기능이 포함된 충전식 선불카드입니다.
 - 무료 이용 범위 : 남원시 시내버스
 - 타지역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은 카드에 금액 충전 후 사용
- 이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대여가 불가하며, 위반 시 무상교통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실, 도난, 파손 시 재발급은 발급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재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 카드 분실, 도난 시 충전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교통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및 약관은 캐시비 홈페이지 및 '로카M 충전소'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4-42> 이용안내 예시

4.6.5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 수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활동지원 급여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 개인예산제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24~'25)
 - 업무지원 시스템 기획(BPR/ISP)·구축('25~'26)
 - 전국 확산 추진(~'26)



<그림 4-43>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계획(안)

<표 4-59>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델별 비교

구분	모델1(급여 유연화)	모델2(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급여	· 활동지원 급여 최대 10% 내에서 공공·민간서비스 구매 이용	· 활동지원 급여 최대 20% 내에서 필요서비스 이용(제공인력 선택)
지급방식	· 급여 일정액(최대 10%)는 바우처 사업간 연계 방식으로 지급 - 시스템 구축 시까지(~'26) 한시적으로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 나머지 급여(최소 90%)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 바우처로 지급	·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바우처로 지급
이용범위	·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 - 모의적용 연구,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 활동지원사 자격이 보유한 특수자격자 또는 지인
추진체계 (장정안)	· 신청·접수(참여자-지자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국민연금공단 지원) → 개인별지원계획 합의 또는(필요시)이의신청·조정(참여자-시군구)→지원계획에 따라 급여 집행(참여자) → 정산(국민연금공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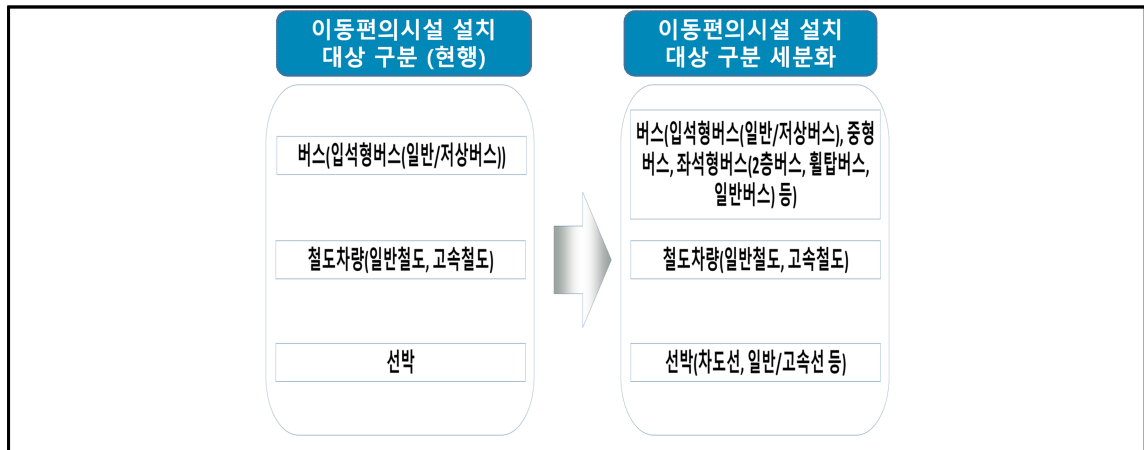
출처 :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4.6.6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지원 및 조례 제정 확립

가.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특성, 규모를 고려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의 세분화 등 정비 필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의 조례 제정 필요

나. 추진방안



<그림 4-44> 설치기준 정비 지원 방향

<표 4-60>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조례 현황

구분	교통약자 관련 조례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및 안전교육 지원조례(2015.1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2019.09.30)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2.11.9)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19.11.1)
익산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23.04.14)
정읍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21.06.11)
남원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19.12.11)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1.09.17)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0.07.02)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0.12.31)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19.10.28)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23.10.02)
장수군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조례(21.07.01)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지원조례(19.10.15)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조례(19.08.01)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23.04.28)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23.01.20)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19.09.25)

다. 조례 정비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을 지원하여 조례 확립 제시

2) 표준 조례안

- 표준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 취지, 운영 필요성을 고려 다음과 같이 내용 통일
 - 목적 : 조례의 목적 통일
 - 정의 : 용어정의로 법 준용
 - 적용범위 : 해당 시·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권 적용 범위
 - 단체장 책무 : 단체장의 책무와 의무 사항 연기
 - 위원회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에 대한 사항 운영기준 수당
 -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의무조항 및 내용 등
 - 연차별 계획 : 5년단위 계획의 연도별 계획
 - 실태조사 : 관련법 제9조 2항의 규정과 단체장 조사의무
 - 저상버스 : 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이동지원센터 : 이동지원센터 및 운영과 수탁자 등에 관한사항
 - 기타 지도, 감독 등 : 기타 지도감독 의무사항 등 시·군 특성에 맞는 내용

제 5 장

예산 및 투자계획

5.1 소요사업비 산정의 전제

5.2 부문별 소요사업비 검토

5.3 연차별 투자계획

5.4 투자재원 분담방안

제 5 장 예산 및 투자계획

5.1 소요사업비 산정의 전제

5.1.1 소요사업비 산정

- 소요사업비 산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전북특별자치도, 2020.03)」 및 국가 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2022.10)」을 기초로 함
-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존 도입 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 제6항에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비용처럼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비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존 특별교통수단 도입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도비와 시·군비는 각 시·군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을 기준으로 도비지원 비율을 차등 설정(30~50%)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운행 및 관리권자인 해당 시·군에서 전액 부담

5.2 부문별 소요사업비 검토

5.2.1 교통수단

가. 저상버스 확충 및 운영비

<표 5-1> 저상버스 확충 및 운영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계획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4,547	8,244	16,263	23,022	14,390	66,466
전북 특별 자치도	국비	1,773	3,542	7,254	10,458	6,044	29,071
	도비	1,187	2,119	3,880	5,578	3,407	16,171
	시군비	1,587	2,583	5,129	6,986	4,939	21,224

나.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운영비

<표 5-2>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운영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계획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12,996	17,461	18,512	19,034	18,602	86,505
전북 특별 자치도	국비	4,759	6,590	8,004	8,219	8,004	35,576
	도비	368	384	518	626	518	2,414
	시군비	7,869	10,487	9,890	10,189	10,080	48,515

다. 바우처 택시도입 및 운영비

<표 5-3> 바우처 택시도입 및 운영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계획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	-	-	1,570	1,570	3,140
전북 특별 자치도	국비	-	-	-	-	-	-
	도비	-	-	-	785	785	1,570
	시군비	-	-	-	785	785	1,570

라.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 및 운영비

<표 5-4>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 및 운영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계획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	-	-	270	10	280
전북 특별 자치도	국비	-	-	-	-	-	-
	도비	-	-	-	270	10	280
	시군비	-	-	-	-	-	-

5.2.2 여객시설

가.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표 5-5>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도입대수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292	457	457	489	523	2,218	
전북 특별 자치도	국비	-	-	-	-	-	
	도비	128	200	137	147	157	769
	시군비	164	257	320	342	366	1,449

나.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

<표 5-6>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도입대수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315	315	315	410	533	1,888	
전북 특별 자치도	국비	-	-	-	-	-	
	도비	95	95	95	124	161	570
	시군비	220	220	220	286	372	1,318

5.2.3 보행환경

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등)

<표 5-7>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등)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도입대수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5,063	7,864	11,343	12,137	12,986	49,393	
전북 특별 자치도	국비	400	-	-	-	400	
	도비	1,800	3,709	5,560	5,949	6,365	23,383
	시군비	2,863	4,155	5,783	6,188	6,621	25,610

나. 도로·보행 이동편의시설 개선

<표 5-8> 도로·보행 이동편의시설 개선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도입대수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1,900	2,219	1,081	2,185	2,187	9,572	
전북 특별 자치도	국비	-	-	-	-	-	
	도비	600	650	324	650	650	2,874
	시군비	1,300	1,569	757	1,535	1,537	6,698

5.2.4 기타사업

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표 5-9>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계획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1,974	2,048	2,252	2,363	2,481	11,118	
전북특별 자치도	국비	1,974	2,048	852	871	915	6,660
	도비	-	-	1,400	1,492	1,566	4,458
	시군비	-	-	-	-	-	-

주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 사업비용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음

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권장

<표 5-10>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권장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계획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350	700	540	600	647	2,837	
전북특별 자치도	국비	-	81	81	90	100	352
	도비	105	129	81	90	100	505
	시군비	245	490	378	420	447	1,980

다.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및 매뉴얼 배포

<표 5-11>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및 매뉴얼 배포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계획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	-	-	5	-	5	
전북특별 자치도	국비	-	-	-	-	-	
	도비	-	-	-	5	-	5
	시군비	-	-	-	-	-	-

라. 포용적 복지문화 조성

<표 5-12> 포용적 복지문화 조성 사업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계획					총 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 사업비	-	-	-	100	100	200	
전북특별 자치도	국비	-	-	-	-	-	
	도비	-	-	-	100	100	200
	시군비	-	-	-	-	-	-

5.3 연차별 투자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2022~2026) 기간 연차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총 사업비 : 233,622백만원
 - 교통수단 : 156,391백만원(저상버스 확충,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 여객시설 : 4,106백만원(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 등)
 - 보행환경 : 58,965백만원(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도로·보행 이동편의시설 개선 등)
 - 기타 : 14,160백만원(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표 5-1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	세부추진과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	합계	국비	8,906	12,261	16,191	19,638	15,063	72,059
		도비	4,283	7,286	11,995	15,816	13,819	53,199
		시·군비	14,248	19,761	22,477	26,731	25,147	108,364
		합계	27,437	39,308	50,763	62,185	54,029	233,622
교통수단	소계	국비	6,532	10,132	15,258	18,677	14,048	64,647
		도비	1,555	2,503	4,398	7,259	4,720	20,435
		시·군비	9,456	13,070	15,019	17,960	15,804	71,309
		합계	17,543	25,705	34,775	43,896	34,572	156,391
	저상버스 확충	국비	1,773	3,542	7,254	10,458	6,044	29,071
		도비	1,187	2,119	3,880	5,578	3,407	16,171
		시·군비	1,587	2,583	5,129	6,986	4,939	21,224
		합계	4,547	8,244	16,263	23,022	14,390	66,466
	특별교통수단 확충	국비	4,759	6,590	8,004	8,219	8,004	35,576
		도비	368	384	518	626	518	2,414
		시·군비	7,869	10,487	9,890	10,189	10,080	48,515
		합계	12,996	17,461	18,512	19,034	18,602	86,505
	바우처택시 도입	국비	-	-	-	-	-	-
		도비	-	-	-	785	785	1,570
		시·군비	-	-	-	785	785	1,570
		합계	-	-	-	1,570	1,570	3,140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	국비	-	-	-	-	-	-	
	도비	-	-	-	270	10	280	
	시·군비	-	-	-	-	-	-	
	합계	-	-	-	270	10	280	

<표 5-1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	세부추진과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여객 시설	소계	국비	-	-	-	-	-	-
		도비	223	295	232	271	318	1,339
		시·군비	384	477	540	628	738	2,767
		합계	607	772	772	899	1,056	4,106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정비	국비	-	-	-	-	-	-
		도비	128	200	137	147	157	769
		시·군비	164	257	320	342	366	1,449
		합계	292	457	457	489	523	2,218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	국비	-	-	-	-	-	-
		도비	95	95	95	124	161	570
		시·군비	220	220	220	286	372	1,318
		합계	315	315	315	410	533	1,888
보행 환경	소계	국비	400	-	-	-	-	400
		도비	2,400	4,359	5,884	6,599	7,015	26,257
		시·군비	4,163	5,724	6,540	7,723	8,158	32,308
		합계	6,963	10,083	12,424	14,322	15,173	58,965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등)	국비	400	-	-	-	-	400
		도비	1,800	3,709	5,560	5,949	6,365	23,383
		시·군비	2,863	4,155	5,783	6,188	6,621	25,610
		합계	5,063	7,864	11,343	12,137	12,986	49,393
	도로·보행 이동편의시설 개선	국비	-	-	-	-	-	-
		도비	600	650	324	650	650	2,874
		시·군비	1,300	1,569	757	1,535	1,537	6,698
		합계	1,900	2,219	1,081	2,185	2,187	9,572
기타	소계	국비	1,974	2,129	933	961	1,015	7,012
		도비	105	129	1,481	1,687	1,766	5,168
		시·군비	245	490	378	420	447	1,980
		합계	2,324	2,748	2,792	3,068	3,228	14,160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1,974	2,048	852	871	915	6,660
		도비	-	-	1,400	1,492	1,566	4,458
		시·군비	-	-	-	-	-	-
		합계	1,974	2,048	2,252	2,363	2,481	11,118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권장	국비	-	81	81	90	100	352
		도비	105	129	81	90	100	505
		시·군비	245	490	378	420	447	1,980
		합계	350	700	540	600	647	2,837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및 매뉴얼 배포	국비	-	-	-	-	-	-
		도비	-	-	-	5	-	5
		시·군비	-	-	-	-	-	-
		합계	-	-	-	5	-	5
포용적 복지문화 조성	국비	-	-	-	-	-	-	
	도비	-	-	-	100	100	200	
	시·군비	-	-	-	-	-	-	
	합계	-	-	-	100	100	200	

5.4 투자재원 분담방안

5.4.1 도비 및 시·군비 분담 관련 규정

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경비 분담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2024. 2. 17)
 - 목적(제1조) :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제2조) :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제1항), 시·도지사는 사업 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음(제2항)
 - 별표상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으므로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 : 별표상 시·군 구분이 없으며, 특별한 몇몇 항목에 있어서 도비지원이 100%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50% 지원이며, 30%와 70% 지원항목도 일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목적(제1조) :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대상사업(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지출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재정자립도에 의한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
 -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 중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현황(2023년)
 - 재정자립도 20% 이상 : 전주시(1)
 - 재정자립도 15% 이상 :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3)
 - 재정자립도 10% 이상 : 김제시(1)
 - 재정자립도 10% 미만 :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9)

<표 5-1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재정 자립도 현황

구분	자립도(%)	순위
전주시	23.9	1
군산시	15.9	3
익산시	15.3	4
정읍시	9.6	6
남원시	8.6	8
김제시	10.1	5
완주군	16.3	2
진안군	7.0	13
무주군	7.2	12
장수군	7.0	13
임실군	7.7	11
순창군	8.1	9
고창군	7.9	10
부안군	8.8	7

자료 : 재정자립도 현황(kosis.kr) 2023년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재정자립도(2023년)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 재정자립도 20% 이상 지역 : 도비 30%, 시·군비 70%
 - 재정자립도 10~15% 이상 지역 : 도비 40%, 시·군비 60%
 - 재정자립도 10% 미만 지역 : 도비 50%, 시·군비 50%

다.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시·군 구분에 의한 방법)

- 군지역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령인구 비율 등 여건이 유사하므로 군지역과 시지역 등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도비분담 비율을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구분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 6개 시지역 : 도비 40%, 시비40%
 - 8개 군지역 : 도비 50%, 군비50%

라.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균등지원 방법)

- 군지역의 여건이 열악하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비교적 적은 반면, 시지역은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등 여건이 우수하나 저상버스 및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비교적 많아 재정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시·군별 구분없이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안

마.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 비교

<표 5-16> 투자재원 도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 비교

방안	형평성	균형발전	제4차 증진계획 목표실현가능성	종합점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5	3	2	10
시·군 차등지원	5	3	3	11
균등지원방안	3	4	5	12

주 : 각 방안별 5점만점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6.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6.2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6.3 최종보고회 자료

6.4 최종보고회 의견 및 조치내용

제 6 장 부록

6.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6.1.1 설문조사지

1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사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의 귀중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 34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월

조사주체 :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시행자 : (유)이룸엔지니어링

본 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 조사기관 : (유)이룸엔지니어링(070-4773-4857)

2 응답자 기본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19세 이하 ② 20세~29세 ③ 30세~39세 ④ 40세~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64세 ⑦ 65세 이상
4.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청각장애 ④ 기타()
5. 거주지	_____시 _____읍·면·동

<그림 6-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1

3 일반사항 설문

1. 귀하는 일주일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 ① 매일 외출함 ② 5~6회 ③ 3~4회 ④ 1~2회 ⑤ 거의 없음

2. 귀하는 주로 외출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06~08시 ② 08~10시 ③ 10~12시 ④ 12~14시
 ⑤ 16~18시 ⑥ 18~20시 ⑦ 20~22시 ⑧ 22~24시

3. 귀하가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걸어서 ② 휠체어 ③ 자가용 ④ 버스
 ⑤ 택시 ⑥ 장애인 콜택시 ⑦ 기타(_____)

4. 귀하가 주된 외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직업 또는 업무 ② 복지관, 경로당 ③ 병원, 보건소 ④ 학원, 학교
 ⑤ 종교 ⑥ 친구, 친척 ⑦ 운동 ⑧ 기타(_____)

5. 귀하가 외출시 주된 목적지 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 시간이 어느정도입니까?

- ① 10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1시간 이내 ④ 1시간 이상

6. 귀하가 외출시 주된 목적지 까지 교통수단 평균 이용 시간이 어느정도입니까?

- ① 10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1시간 이내 ④ 1시간 이상

7. 걷거나 차량, 버스, 철도, 등을 이용할 때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어느정도라고 여기십니까?

- ①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②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가끔 신체적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
 ③ 이동하는데 불편하면 가끔 도움이 필요함
 ④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함

8. 귀하가 외출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② 장애인 콜택시 배차(시간) 대기
 ③ 보행로 불법적치물, 쓰레기 등 보도폭 협소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
 ④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⑤ 기타 (_____)

<그림 6-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2

5 여객시설만족도에 관한 설문

5.1 지역 내 버스정류장의 이용 및 시설환경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불만족 ⑥이용안함
불만족 이유 (중복 선택 가능)	① 버스정류장 주변도로[보행접근로(인도), 연석(인도와 차도와의 높이차)] ② 안내시설[안내판, 버스정류장, 주변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③ 편의시설[대기공간, 의자 등]의 부재 및 불량 ④ 안내정보 없음[버스도착 정보 등] ⑤ 기타()

5.2 지역 내 버스(고속,시외)터미널의 이용 및 시설환경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불만족 ⑥이용안함
불만족 이유 (중복 선택 가능)	① 버스정류장 주변도로보행접근로(인도)의 혼잡등 ② 화장실[소변기,대변기,세면대 등]의 청결정도 ③ 안내시설[안내판,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④ 탑승관련 시설[매표소, 개찰구 등]의 위치 및 이용편의성 ⑤ 기타()

5.3 지역 내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불만족 ⑥이용안함
불만족 이유 (중복 선택 가능)	① 여객선 탑승시 승하차에대한 불편 ② 여객선 내 안내시설[안내판,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③ 여객선 내 화장실[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등]의 청결정도 ④ 여객터미널 내 안내시설[안내판,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⑤ 여객터미널 내 화장실[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등]의 청결정도 ⑥ 탑승관련 시설[매표소, 개찰구 등]의 위치 및 이용편의성 ⑦ 기타()

<그림 6-4>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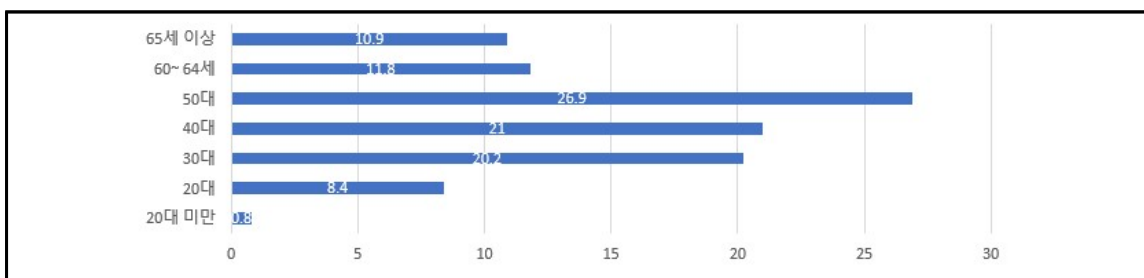
6.1.2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응답자 연령

- 설문조사 결과 교통약자 연령별 비율은 20대미만 0.8%, 20대 8.4%, 30대 20.2%, 40대 21.0%, 50대 26.9%, 60~64세 11.8% 65세 이상이 10.9%로 조사되었음

<표 6-1> 설문응답자 연령

항목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합계
빈도수(명)	1	10	24	25	32	14	13	119
분포비(%)	0.8	8.4	20.2	21.0	26.9	11.8	1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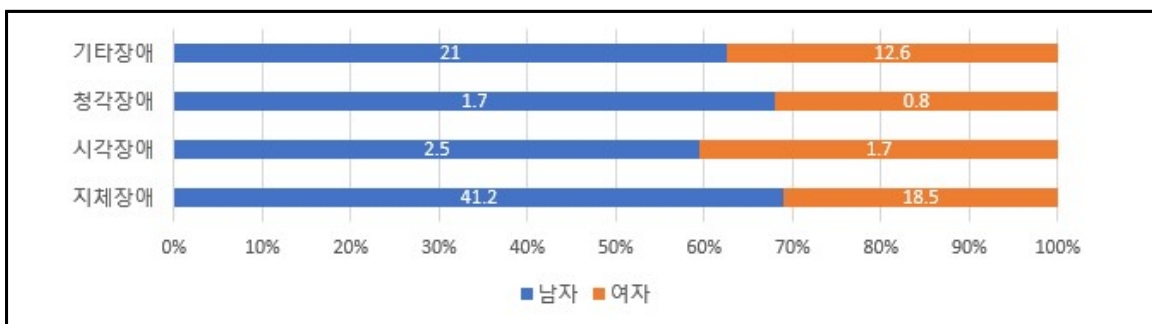


나. 설문응답자 성별

- 설문조사 결과 교통약자 성별비율은 남자가66.4%, 여자가 33.6%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6-2> 설문응답자 성별

항 목		남자	여자	합계
빈도수(명)	지체장애	49	22	71
	시각장애	3	2	5
	청각장애	2	1	3
	기타장애	25	15	40
	소 계	79	40	119
분포비(%)	지체장애	41.2	18.5	59.7
	시각장애	2.5	1.7	4.2
	청각장애	1.7	0.8	2.5
	기타장애	21.0	12.6	33.6
	소 계	66.4	3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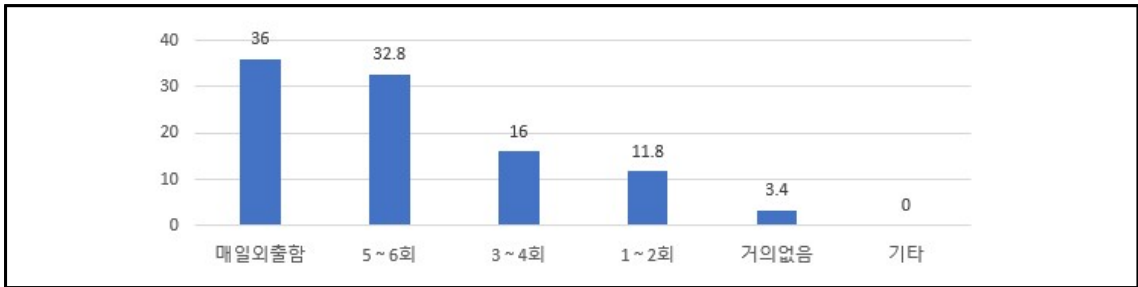
다. 외출 빈도

질문1 · 귀하는 일주일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 조사결과 교통약자 일주일 외출 빈도는 매번외출이 43명(36.0%)로 가장 많고, 5~6회 39명(32.8%), 3~4회 19명(16.0%)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3> 설문응답자 연령

이용시간	매일외출함	5 ~ 6회	3 ~ 4회	1 ~ 2회	거의없음	기타	합계
응답자 수	43	39	19	14	4	-	119
비율(%)	36.0	32.8	16.0	11.8	3.4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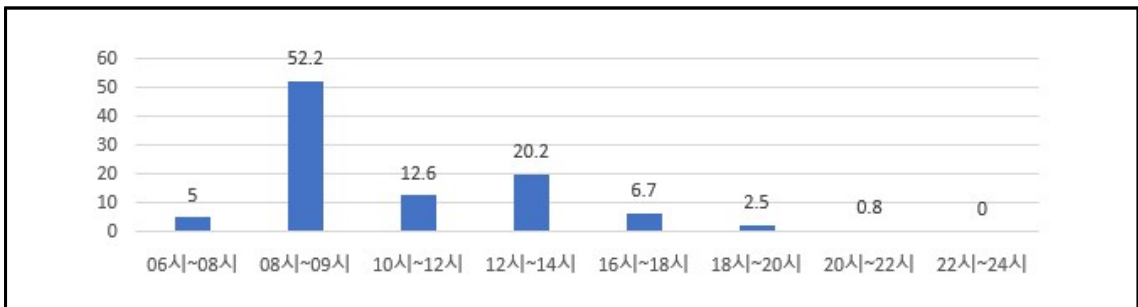
라. 외출 시간

질문2 · 귀하는 주로 외출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설문조사결과 교통약자 외출 시간대는 08시~9시가 62명(52.2%)으로 가장 많고, 12시~14시 24명(20.2%), 10시~12시 15명(12.6%)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4> 교통약자 외출 시간대

이용시간	06시 ~08시	08시 ~09시	10시 ~12시	12시 ~14시	16시 ~18시	18시 ~20시	20시 ~22시	22시 ~24시	합계
응답자 수	6	62	15	24	8	3	1	-	119
비율(%)	5.0	52.2	12.6	20.2	6.7	2.5	0.8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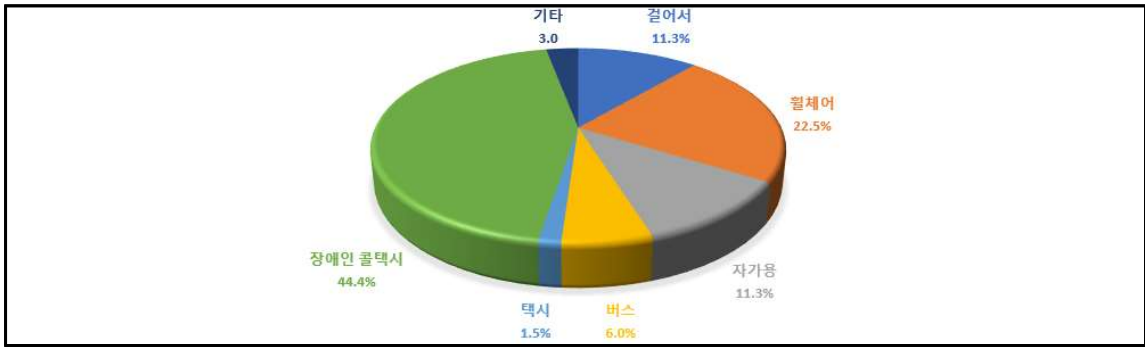
마. 주 이용 교통수단

질문3 ·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가능)

- 설문조사결과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가 59건(44.4%)으로 가장 많고, 휠체어 30건(22.5%), 걸어서 15건(11.3%), 자가용 15건(11.3%)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5> 교통약자 이용교통수단 (복수응답)

이용수단	걸어서	휠체어	자가용	버스	택시	장애인콜택시	기타	합계
응답수	15	30	15	8	2	59	4	133
비율(%)	11.3	22.5	11.3	6.0	1.5	44.4	3.0	100.0



바. 외출 목적

질문4 · 귀하의 주된 외출 목적은 무엇입니까?

- 설문조사결과 교통약자 주 외출목적은 직업,업무가 51건(42.8%)으로 가장 많고, 복지관,경로당이 25건(21.0%), 병원,보건소 20건(16.8%)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6> 교통약자 외출 목적 (복수응답)

이용목적	직업, 업무	복지관, 경로당	병원, 보건소	학원, 학교	종교	친구, 친척	운동	기타	합계
응답수	51	25	20	-	4	7	8	4	119
비율(%)	42.8	21.0	16.8	-	3.4	5.9	6.7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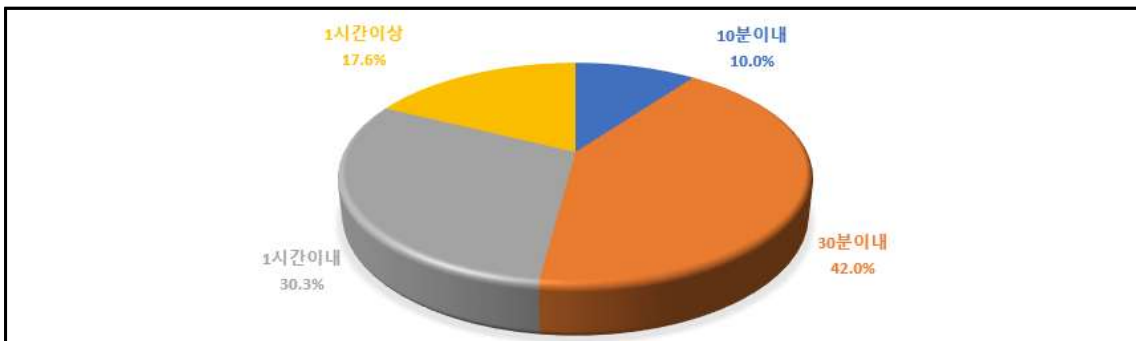
사. 평균 대기시간

질문5 · 귀하가 외출시 주된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대기 시간은 어느정도입니까?

- 설문조사결과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은 30분이내가 50명(42.0%)으로 가장 많고, 1시간이내 36명(30.3%), 1시간이상 21명(17.6%), 10분이내 12명(10.0%)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7> 교통약자 외출시 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이용시간	10분이내	30분이내	1시간이내	1시간이상	합계
응답자 수	12	50	36	21	119
비율(%)	10.0	42.0	30.3	1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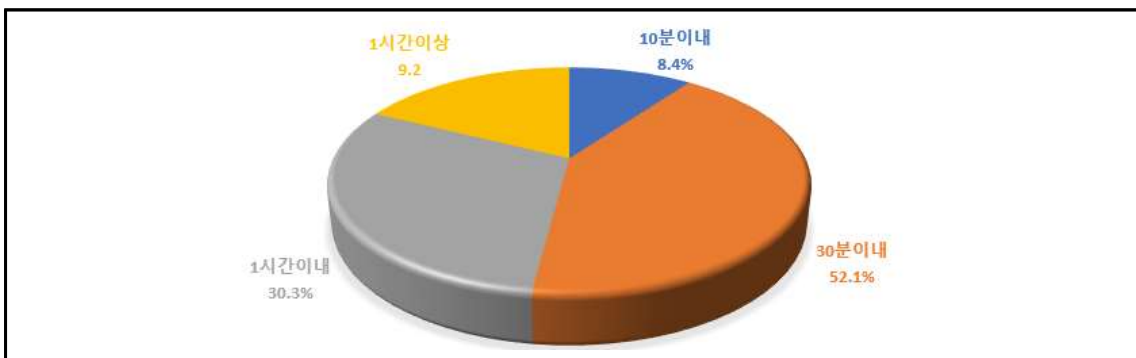
아. 평균 이용시간

질문6 · 귀하가 외출시 주된 목적지까지 교통수단 평균 이용시간은 어느정도입니까?

- 설문조사결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시간은 30분이내가 62명(52.1%)으로 가장 많고, 1시간이내 36명(30.3%), 1시간이상 11명(9.2%), 10분이내 10명(8.4%)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8> 교통약자 일주일 외출 빈도

이용시간	10분이내	30분이내	1시간이내	1시간이상	합계
응답자 수	10	62	36	11	119
비율(%)	8.4	52.1	30.3	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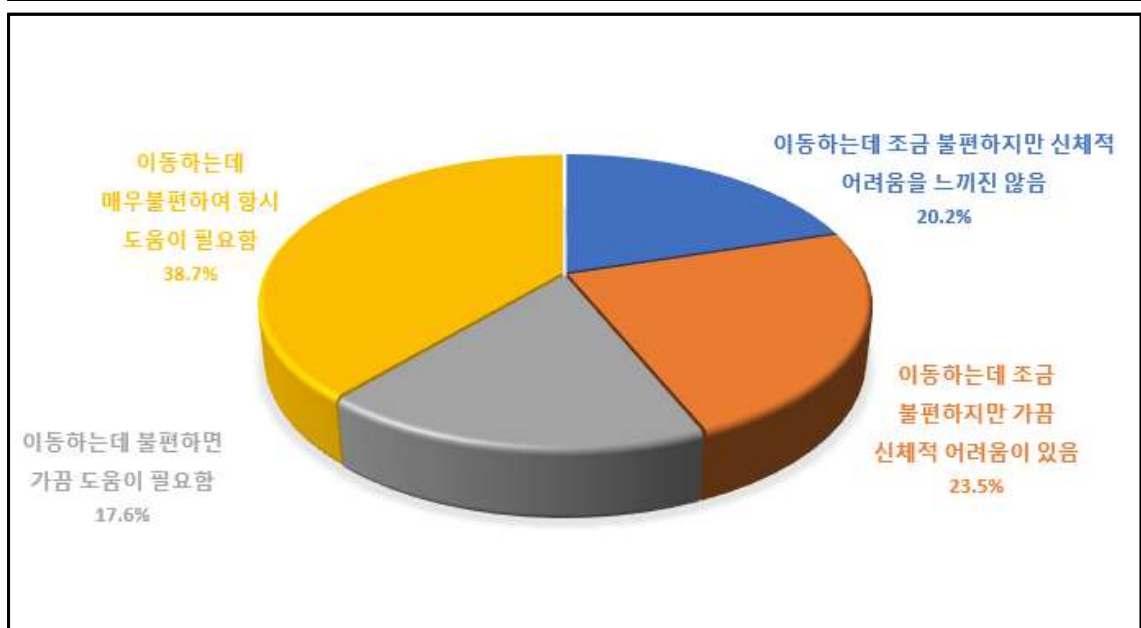
자. 신체적 어려움

질문7 · 걸거나 차량, 버스, 철도, 등을 이용할 때 신체적 어려움은 어느정도입니까?

- 설문조사결과 교통수단 이용시 응답자 대부분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6-9> 교통수단 이용시 신체적 어려움

질문 항목	응답자수	비율(%)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진 않음	24	20.2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가끔 신체적 어려움이 있음	28	23.5
이동하는데 불편하면 가끔 도움이 필요함	21	17.6
이동하는데 매우불편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함	46	38.7
합 계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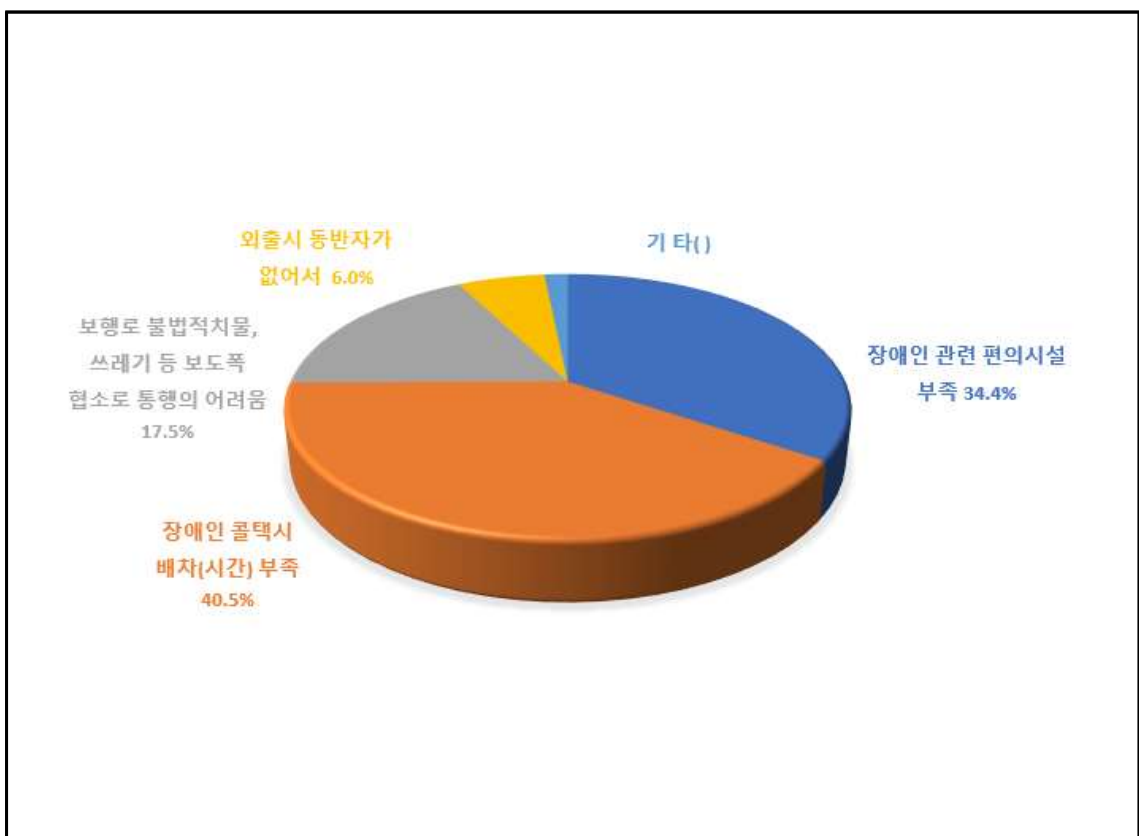
차. 외출시 불편함

질문8 · 귀하가 외출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가능)

- 설문조사결과 장애인 콜택시 배차 부족 74명(40.5%),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63(34.4%), 보행로 불법적치물, 보도폭 협소로 통행 어려움 32명(17.5%)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10> 외출시 가장 큰 불편사항

질문 항목	응답자수	비율(%)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63	34.4
장애인 콜택시 배차(시간) 부족	74	40.5
보행로 불법적치물, 쓰레기 등 보도폭 협소로 통행의 어려움	32	17.5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11	6.0
기 타()	3	1.6
합 계	1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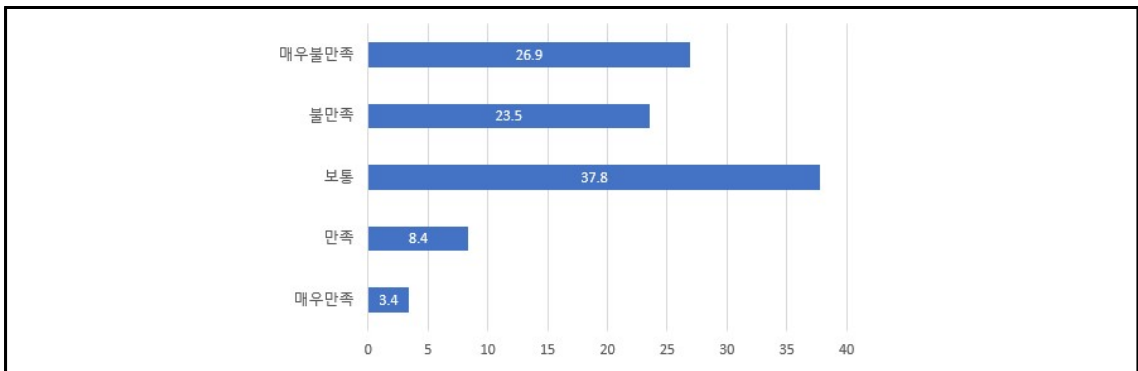
카. 보도(인도) 만족도

질문9 · 보도(인도)를 이용할 때 만족하십니까?

- 저상버스 차량 이용시 만족에 대해서는 보통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이 23.5%, 매우불만족이 26.9%, 만족이 8.4%, 매우만족이 3.4%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고령자의 경우 저상버스차량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6-11> 보도(인도) 만족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응답자 수	4	10	45	28	32	119
비율(%)	3.4	8.4	37.8	23.5	2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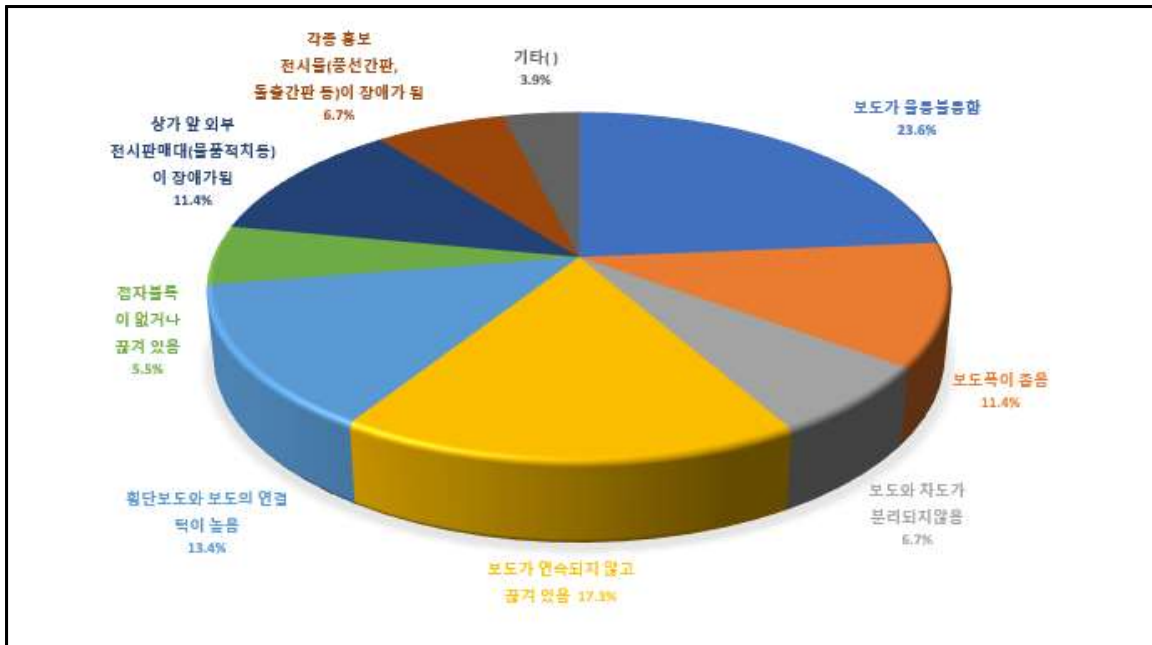
타. 보도(인도) 이용시 불편사항

질문10 · 보도(인도) 이용시 불편사항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 보도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보도가 울퉁불퉁하다는 응답이 2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보도가 연속되지 않고 끊겨있다가 17.3%, 횡단보도와 보도의 연결 턱이 높음 13.4%, 보도폭이 좁음 11.4%, 상가 앞 외부 전시판매대(물품적치 등)이 장애가 됨, 11.4%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음 6.7%, 각종 홍보 전시물(풍선간판, 돌출간판 등)이 장애가 됨 6.7%, 점자블록이 없거나 끊겨져 있음 5.5%, 기타 3.9% 순으로 나타났음

<표 6-12> 보도 이용시 불편사항

항목	응답자수	비율(%)
보도가 울퉁불퉁함	60	23.6
보도폭이 좁음	29	11.4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않음	17	6.7
보도가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음	44	17.3
횡단보도와 보도의 연결 턱이 높음	34	13.4
점자블록이 없거나 끊겨 있음	14	5.5
상가 앞 외부 전시판매대(물품적치등)이 장애가 됨	29	11.4
각종 홍보 전시물(풍선간판, 돌출간판 등)이 장애가 됨	17	6.7
기타()	10	3.9
합 계	2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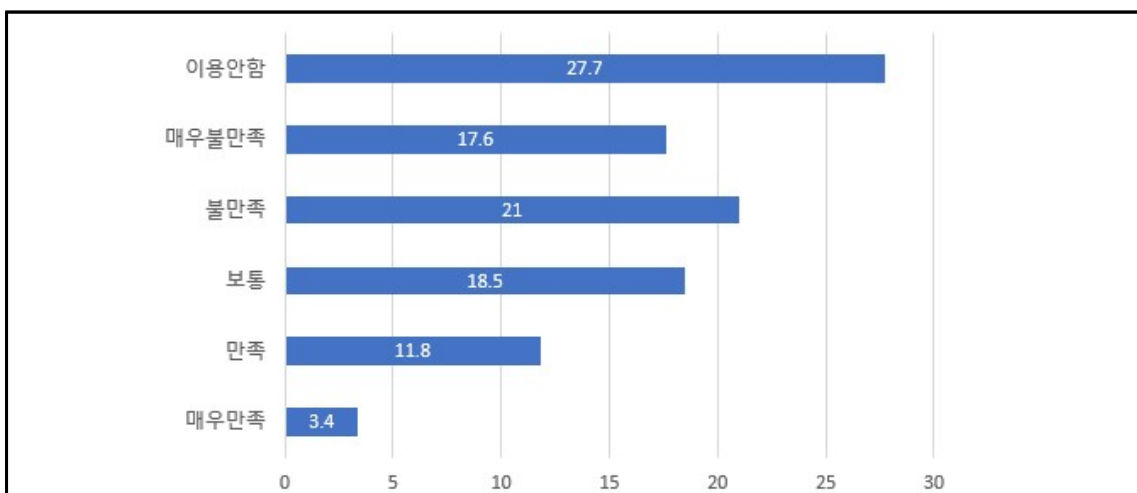
파. 보도(인도) 이용시 불편사항

질문11 . 육교를 이용할 때 만족하십니까?

- 육교 이용시 만족도는 이용안함 27.7%, 불만족이 21.0%, 보통 18.5%, 매우불만족 17.6% 만족 11.8%, 매우만족 3.4% 순으로 나타났음
- 육교의 경우 이용안하는 경우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6-13> 육교 만족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용안함	합계
응답자 수	4	14	22	25	21	33	119
비율(%)	3.4	11.8	18.5	21.0	17.6	2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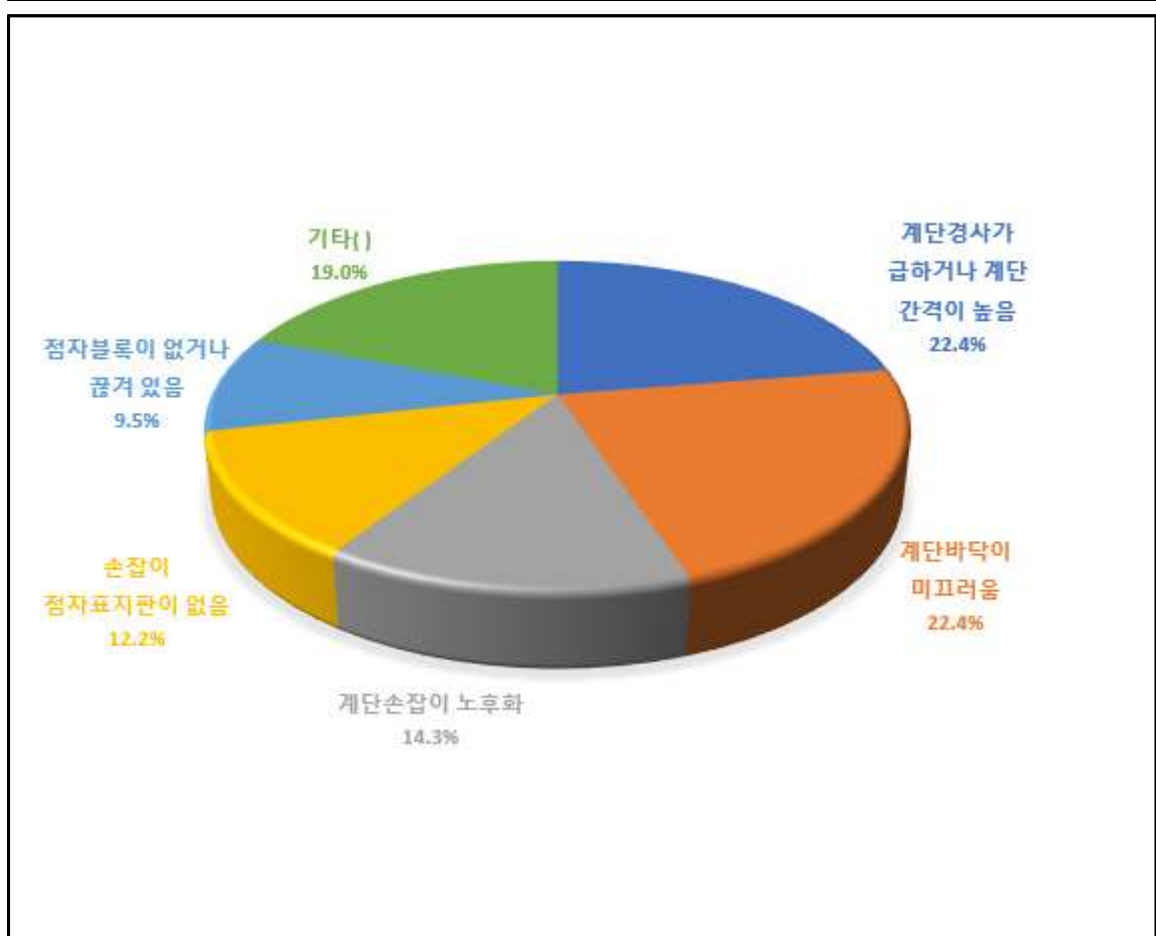
하. 육교 이용시 불편사항

질문12 · 육교 이용시 불편사항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 육교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계단경사 급하거나 계단 간격이 높음 22.4%, 계단바닥이 미끄러움 22.4%, 기타 19.0%, 계단손잡이의 노후화 14.3%, 손잡이 점자표지판이 없음 12.2%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 육교 이용시 불편사항

항목	응답자수	비율(%)
계단경사가 급하거나 계단 간격이 높음	33	22.4
계단바닥이 미끄러움	33	22.4
계단손잡이 노후화	21	14.3
손잡이 점자표지판이 없음	18	12.2
점자블록이 없거나 끊겨 있음	14	9.5
기타()	28	19.0
합 계	1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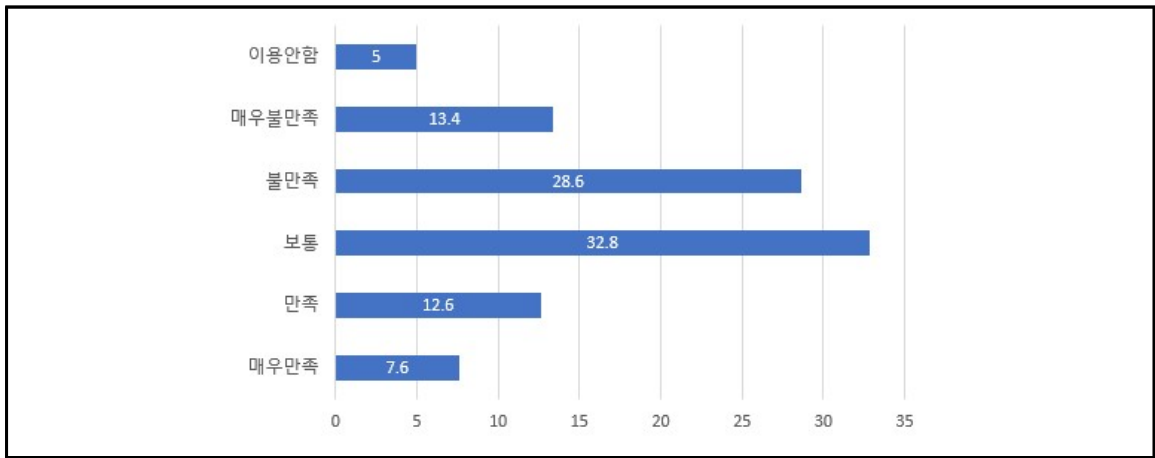
거. 횡단보도 만족도

질문13 ·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만족하십니까?

- 횡단보도 이용시 만족에 대해서는 보통이 32.8%, 불만족이 28.6%, 매우 불만족 13.4%, 만족 12.6%, 매우만족 7.6%, 이용안함 5.0% 순으로 나타났음

<표 6-14> 횡단보도 만족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용안함	합계
응답자 수	9	15	39	34	16	6	119
비율(%)	7.6	12.6	32.8	28.6	13.4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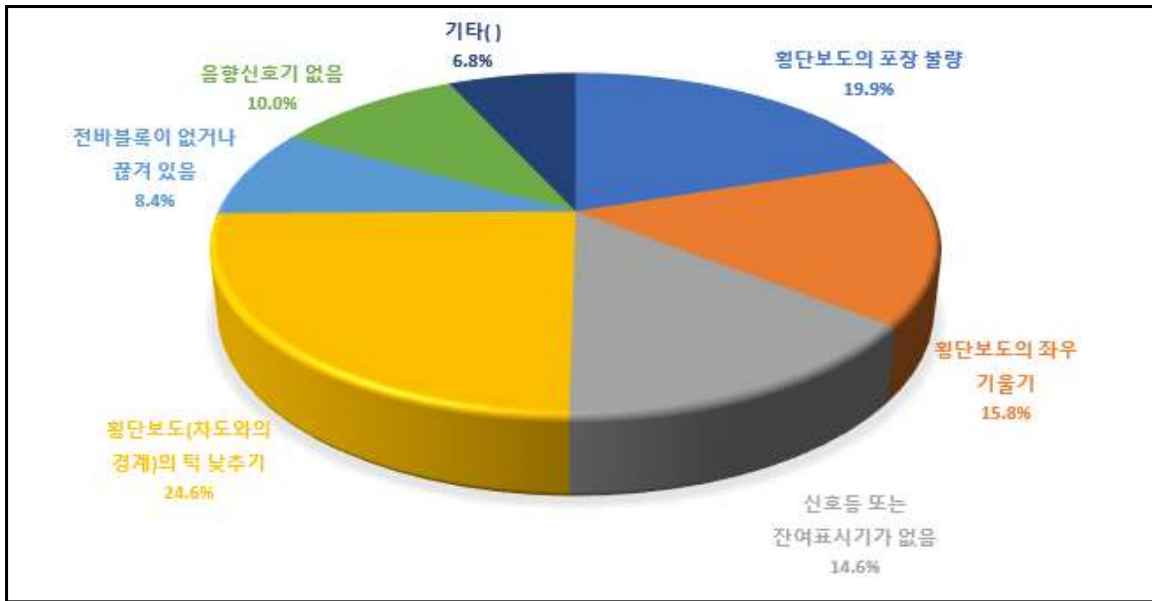
너. 횡단보도 이용시 불편사항

질문14 · 횡단보도 이용시 불편사항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 횡단보도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횡단보도(차도와의 경계)의 턱 낮추기 26.4%, 횡단보도의 포장 불량 21.3%, 횡단보도의 좌우 기울기 16.9%, 신호등 또는 잔여표시기가 없음 15.7%, 음향신호기 없음 10.7%, 점자블록이 없거나 끊겨 있음 9.0%, 기타 7.3% 순으로 나타났음

<표 6-15> 횡단보도 이용시 불편사항

항목	응답자수	비율(%)
횡단보도의 포장 불량	38	21.3
횡단보도의 좌우 기울기	30	16.9
신호등 또는 잔여표시기가 없음	28	15.7
횡단보도(차도와의 경계)의 턱 낮추기	47	26.4
전바블록이 없거나 끊겨 있음	16	9.0
음향신호기 없음	19	10.7
기타()	13	7.3
합 계	1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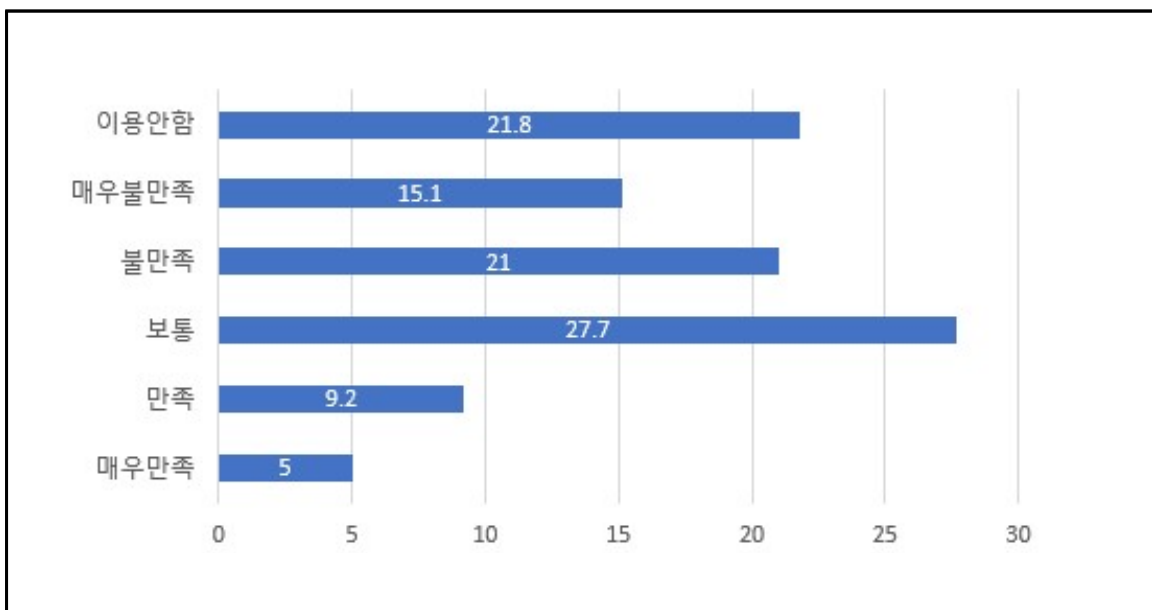
더. 버스정류장 만족도

질문15 ·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때 만족하십니까?

- 버스정류장 이용시 만족에 대해서는 보통 27.7%, 이용안함 21.8%, 불만족 21.0%, 매우불만족 15.1%, 만족 9.2%, 매우만족 5.0% 순으로 나타났음

<표 6-16> 버스정류장 만족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용안함	합계
응답자 수	6	11	33	25	18	26	119
비율(%)	5.0	9.2	27.7	21.0	15.1	2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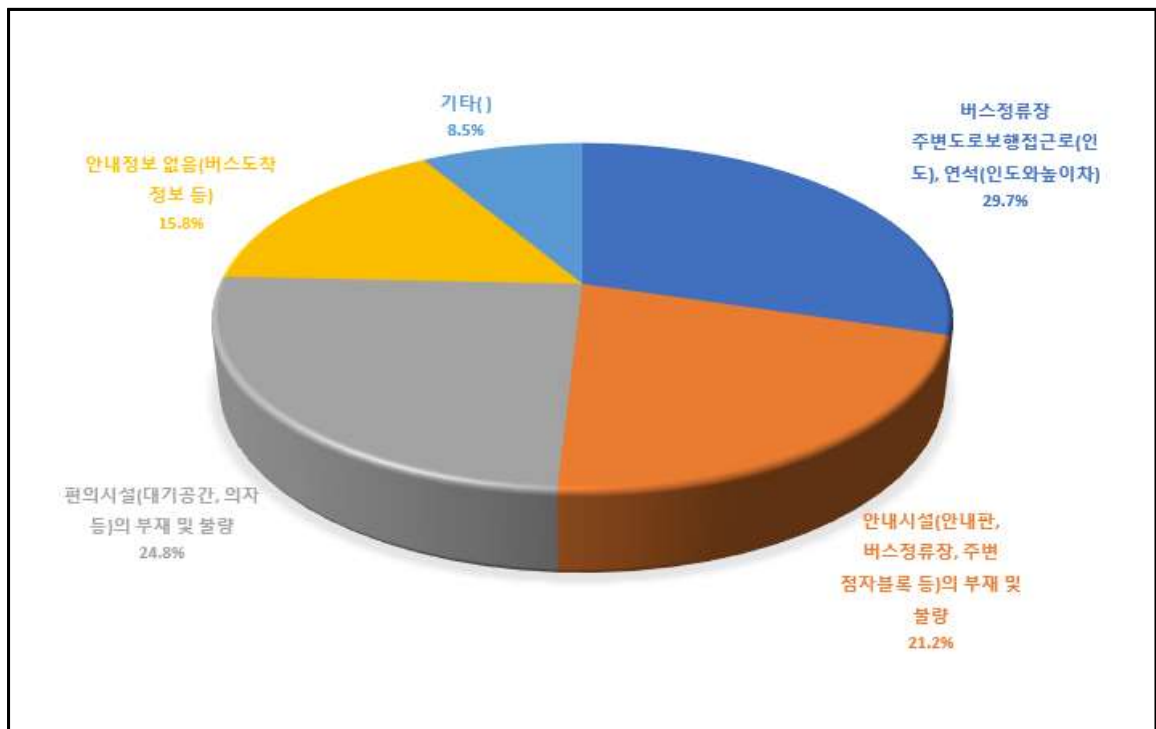
러. 버스정류장 불편사항

질문16 · 버스정류장 이용시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버스정류장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버스정류장 주변도로 보행접근로(인도, 연석(인도와와의 높이차) 29.7%, 편의시설(대기공간, 의자 등)의 부재 및 불량 24.8%, 안내시설(안내판, 버스정류장 주변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21.2%, 안내정보 없음(버스도착 정보 등) 15.8%, 기타 8.5% 순으로 나타났음

<표 6-17> 버스정류장 이용시 불편사항

항목	응답자수	비율(%)
버스정류장 주변도로보행접근로(인도, 연석(인도와와의 높이차)	49	29.7
안내시설(안내판, 버스정류장, 주변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35	21.2
편의시설(대기공간, 의자 등)의 부재 및 불량	41	24.8
안내정보 없음(버스도착 정보 등)	26	15.8
기타()	14	8.5
합 계	1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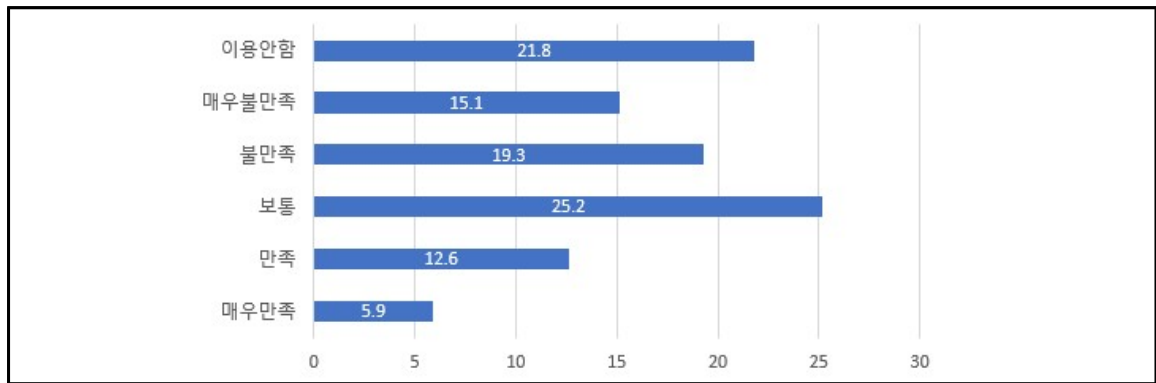
머.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만족도

질문17 ·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할 때 만족하십니까?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용시 만족에 대해서는 보통 25.2%, 이용안함 21.8%, 불만족 19.3%, 매우불만족 15.1%, 만족 12.6%, 매우만족 5.9%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고령자의 경우 저상버스차량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6-18>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만족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용안함	합계
응답자 수	7	15	30	23	18	26	119
비율(%)	5.9	12.6	25.2	19.3	15.1	2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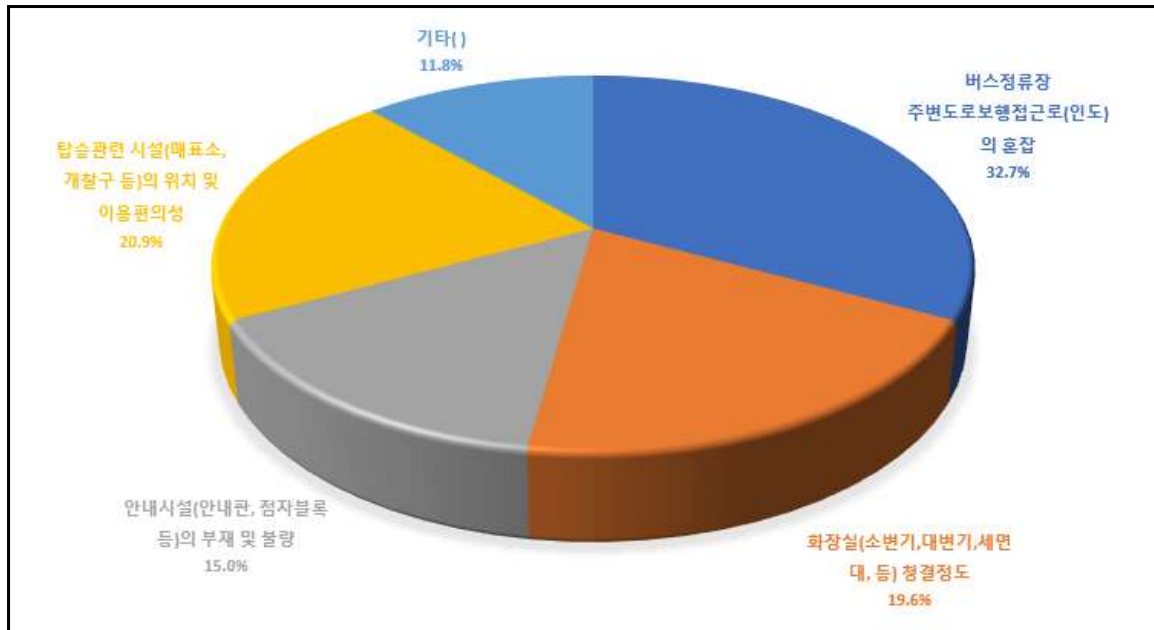
버.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불편사항

질문18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용시 불편사항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버스정류장 주변도로 보행접근로(인도)의 혼잡 32.7%, 탑승관련 시설(매표소, 개찰구 등)의 위치 및 이용편의성 20.9%, 화장실(소변기,대변기,세면대 등) 청결정도 19.6%, 안내시설(안내판,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15.0%, 기타 11.8% 순으로 나타났음

<표 6-19>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용시 불편사항

항목	응답자수	비율(%)
버스정류장 주변도로보행접근로(인도)의 혼잡	50	32.7
화장실(소변기,대변기,세면대, 등) 청결정도	30	19.6
안내시설(안내판,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23	15.0
탑승관련 시설(매표소, 개찰구 등)의 위치 및 이용편의성	32	20.9
기타()	18	11.8
합 계	1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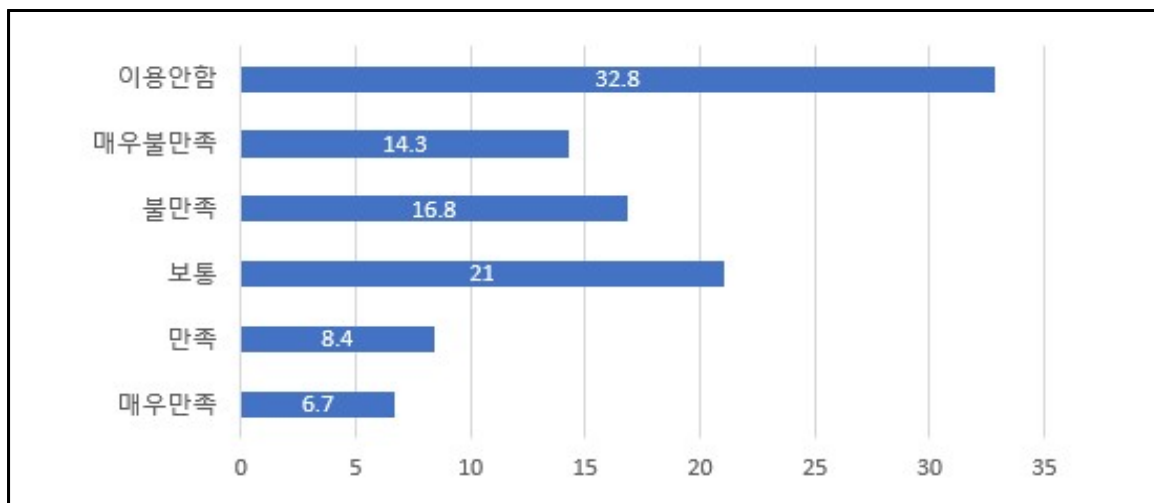
서. 여객터미널 만족도

질문19 .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할 때 만족하십니까?

- 여객선터미널 이용시 만족에 대해서는 이용안함 32.8%, 보통 21.0%, 불만족 16.8%, 매우불만족 14.3%, 만족 8.4%, 매우만족 6.7% 순으로 나타났음

<표 6-20> 여객터미널 이용 만족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용안함	합계
응답자 수	8	10	25	20	17	39	119
비율(%)	6.7	8.4	21.0	16.8	14.3	3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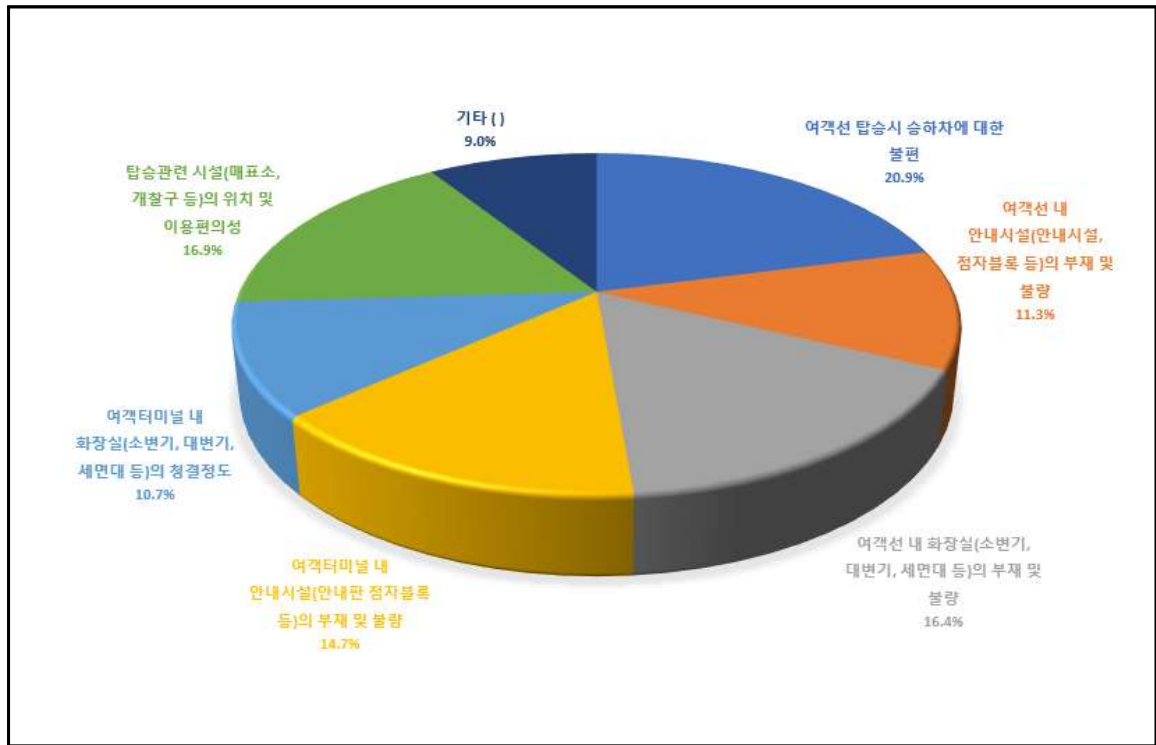
어. 여객터미널 불편사항

질문20 · 여객선터미널 이용시 불편사항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수응답)

- 여객선터미널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여객선 탑승시 승하차에 대한 불편 20.9%, 탑승관련 시설(매표소, 개찰구 등)의 위치 및 이용편의성 16.9%, 여객선 내 화장실(소변기,대변기,세면대 등)의 부재 및 불량 16.4%, 여객터미널 내 안내시설(안내판,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14.7%, 여객선 내 안내시설(안내시설,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11.3%, 여객터미널 내 화장실(소변기,대변기,세면대 등)의 청결정도 10.7%, 기타 9.0% 순으로 나타났음

<표 6-21> 여객선 터미널 이용시 불편사항

항목	응답자수	비율(%)
여객선 탑승시 승하차에 대한 불편	37	20.9
여객선 내 안내시설(안내시설,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20	11.3
여객선 내 화장실(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등)의 부재 및 불량	29	16.4
여객터미널 내 안내시설(안내판 점자블록 등)의 부재 및 불량	26	14.7
여객터미널 내 화장실(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등)의 청결정도	19	10.7
탑승관련 시설(매표소, 개찰구 등)의 위치 및 이용편의성	30	16.9
기타 ()	16	9.0
합 계	1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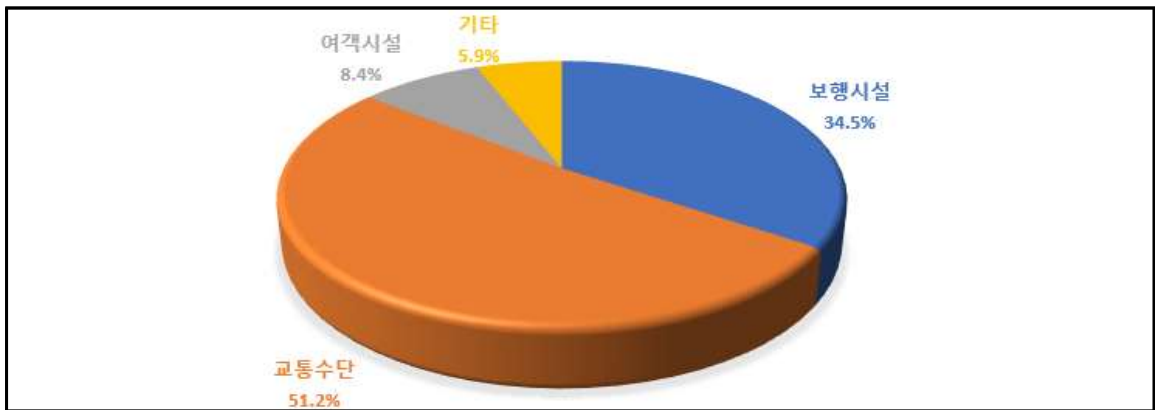
저. 종합평가에 대한 설문

질문21 · 이동수단중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사항으로는 교통수단 51.3%, 보행시설 34.5%, 여객시설 8.4%, 기타 5.9%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22>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

구분	보행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기타	합계
응답자 수	41	61	10	7	119
비율(%)	34.5	51.3	8.4	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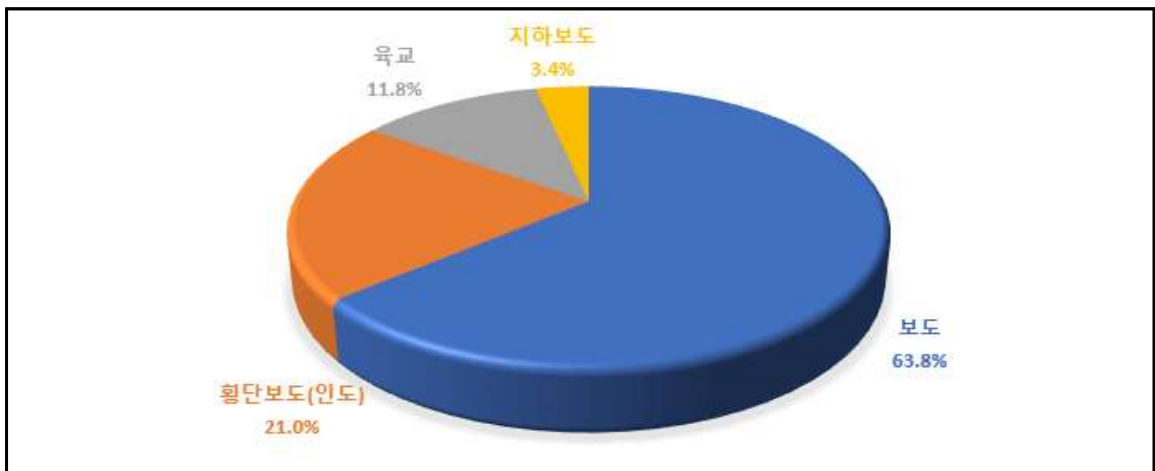


질문22 · 개선이 가장 시급한 보행시설은 무엇입니까?

- 가장 개선이 시급한 보행시설로는 보도 63.9%, 횡단보도(인도) 21.0%, 육교 11.8%, 지하보도 3.4% 순으로 나타났음

<표 6-23> 개선이 시급한 보행시설

구분	보도	횡단보도(인도)	육교	지하보도	합계
응답자 수	76	25	14	4	119
비율(%)	63.9	21.0	11.8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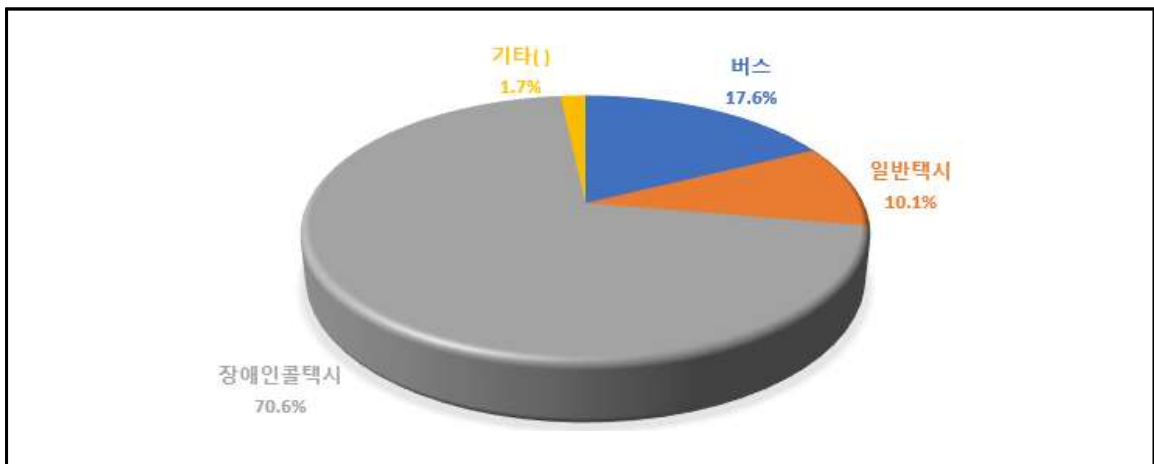


질문23 · 개선이 가장 시급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가장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으로는 장애인콜택시 70.6%, 버스 17.6%, 일반택시 10.1%, 기타 1.7%, 순으로 나타났음

<표 6-24>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

구분	버스	일반택시	장애인콜택시	기타()	합계
응답자 수	21	12	84	2	119
비율(%)	17.6	10.1	70.6	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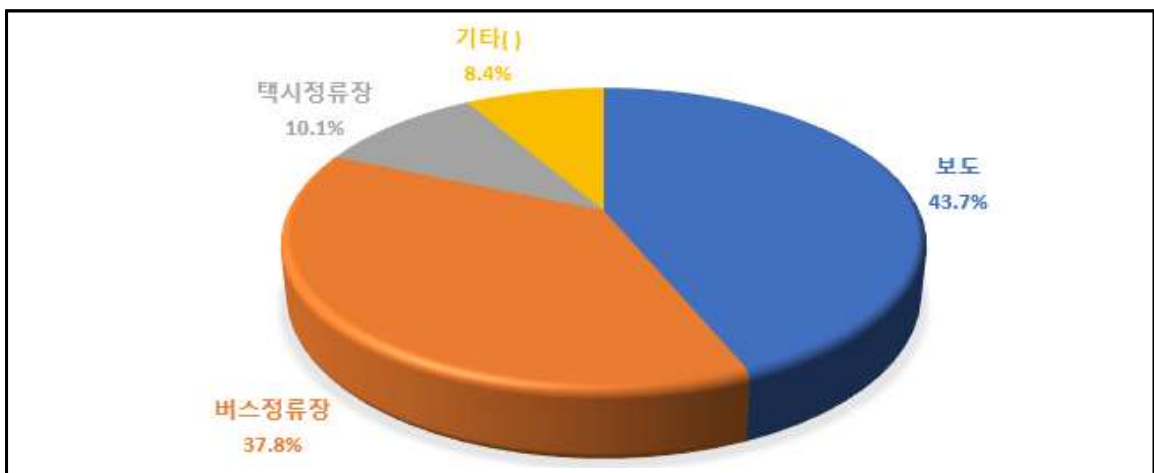


질문24 · 개선이 가장 시급한 교통시설은 무엇입니까?

- 개선이 시급한 교통시설로는 보도 43.7%, 버스정류장 37.8%, 택시정류장 10.1%, 기타 8.4% 순으로 나타났음

<표 6-25> 개선이 시급한 교통시설

구분	보도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기타()	합계
응답자 수	52	45	12	10	119
비율(%)	43.7	37.8	10.1	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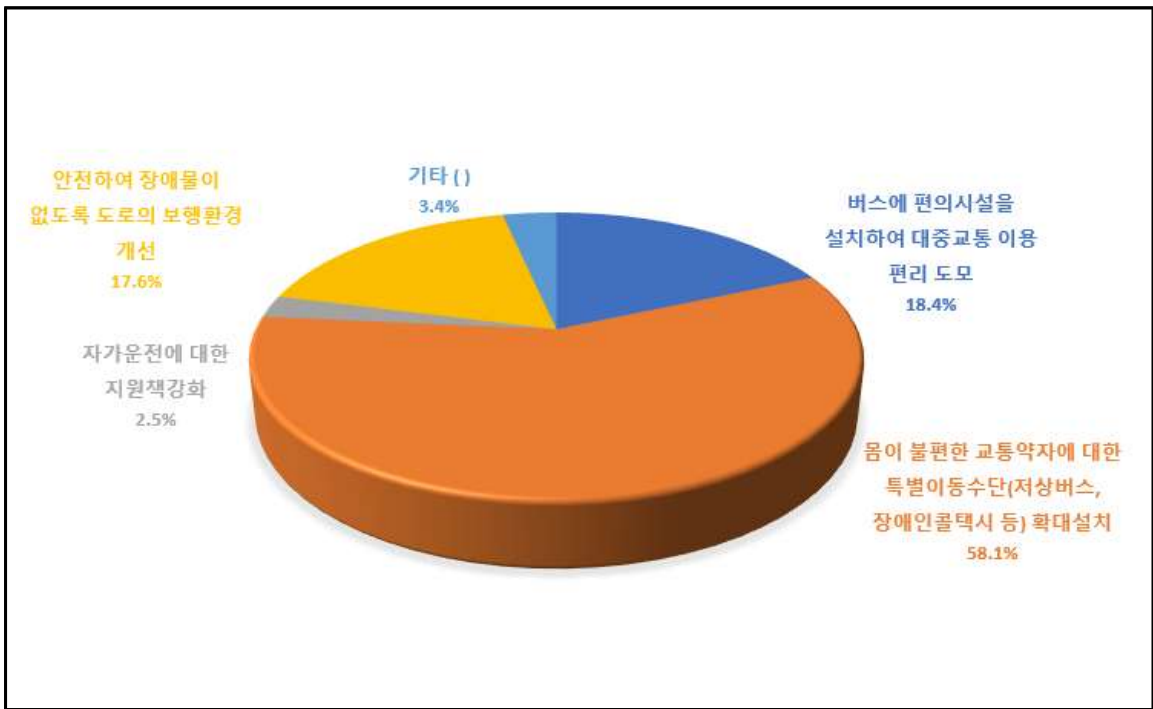


질문25 ·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교통약자 추진정책으로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이동수단(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확대설치 58.0%, 버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 18.4%, 안전하여 장애물 없도록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17.6%, 기타 3.4%, 자가운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2.5% 순으로 나타났음

<표 6-26> 교통약자 추진정책

항목	응답자수	비율(%)
버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	22	18.4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이동수단(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확대설치	69	58.0
자가운전에 대한 지원책강화	3	2.5
안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21	17.6
기타 ()	4	3.4
합 계	119	100.0



6.2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2019. 3.



☐ 목 차 ☐

[요약]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1
1.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3
가. 운전자 자격 관리	3
① 운전자 현장배치 전 기본 자격 확인	3
② 운행 전 운전자 승무준비 상태 점검	5
나. 운전자 교육 활동 지원	6
① 탑승자 응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교육 실시	6
② 차량 운용에 필요한 업무요령 교육 실시	7
다. 운전자 보호 관리	7
라. 기존 운행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	8
2. 운전자 준수사항	10
가. 차량 운용 시 안전관리	10
① 탑승객 승차 시	10
② 차량 주행 시	13
③ 탑승객 하차 시	14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	15
① ‘급’이 붙는 운전 지양	15
② 안전한 속도와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	15
③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16
④ 운전자 의무 및 준수사항	16
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숙지	20
① 경미한 접촉 사고	20
② 사상자 발생 사고	21
# 별첨 1~3. 대상자별 준수사항 [각 1p]	22

[요약]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차내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행관리자와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운행 지침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안전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현장민원* 증가에 대한 대응 및 사전 예방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저하, 운전자-이용자 마찰 등 민원 발생

-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개별 지자체에 따라 현장 매뉴얼이 서로 상이하거나, 안전운행 지침이 부재한 경우 존재

- ☞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고, 특별교통수단 안전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작성 방향

-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운전자 자격 관리(소양 및 기본자격), 운행 준비 상태 점검, 운전자 교육 실시 및 근로여건 개선 등

- (운전자 준수사항) '승차-주행시-하차' 단계별 준수사항,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 등 안전운행을 위한 지침

*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1페이지로 요약된 준수사항 제시 (별첨 1~3)

□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 (운전자 자격관리) 기본자격 및 운행 준비 상태 점검
 - 운전자 채용·배치 시 결격사유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등 확인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종사자 대상 법정 필수 자격시험
 - 교통안전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을 통한 차량·운전자 관리, 운행 상태 점검 및 확인
 - *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등
- (운전자 교육 및 보호 관리) 교육활동 실시 및 근로여건 개선 등
 - 정기·비정기 단위 운전자 대상 서비스 및 업무요령 교육 실시
 - 운전자의 과로 예방을 위하여 근로여건 및 적정 휴식시간 보장
 - 이용자와의 마찰 예방 등 운전자 보호 조치 이행, 이용자 준수 사항 차내 게시 등
- (기존 운행차량* 안전성 확보) 차량 보강 개조 또는 감속운행 권고
 - * 신설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 '19.2.8)」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운행 중 차량

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운용시 안전관리) '승차 - 주행 시 - 하차' 단계별 준수사항
 - (승차) 올바른 탑승설비 및 안전장치 운용, 장치 체결상태 확인 등
 - (주행) 급출발/급제동 지양, 주행속도·차간거리 준수 등
 - (하차) 안전한 장소 정차, 차량 주변 사각지대 주의 등
- (안전 운전 지침) 이용자 보호, 긴급 상황 대응 등 제시
 - 음주·과로 운행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차량 운행 의무사항
 - 눈·빗길, 교차로 통행 방법, 기타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등

1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가. 운전자 자격 관리

① 운전자 현장배치 전 기본 자격 확인

□ 운전자 자격사항 점검

○ 운행관리자는 운전자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 관련 교통법규 숙지 여부

* 자동차운전면허, 택시운전면허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OO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면허경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 기타 장애인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성 및 기본 소양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 및 운전자 수검 여부 점검(필요시)

○ 운전자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전자 채용 및 현장 배치 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검 여부 점검 가능

* 운전 중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 생리적인 특성 등을 검사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운수사업법*에 근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과정으로 별도 의뢰를 통해 실시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운전적성 정밀검사 구분 및 대상자 》	
구분	대상자
 <신규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u> 또는 <u>화물자동차운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u>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자. 다만, 화물취업자는 무사고이면 유효함
 <특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u>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u> - <u>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u>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동차 <u>65세 이상 고령운전자</u>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 운전자 기본 소양 및 자격 관리

- 운행관리자는 장애인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의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전문교육훈련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사이버 교육 등(사회복지와 인권, 장애와 인권, 서비스 이용권 보장 교육 등)
- 양질의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의 기본 소양과 자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② 운행 전 운전자 준비 상태 점검

□ 운전자 상태 확인 및 조치

- 운행관리자는 전일 운행일지를 검토하고, 음주측정기를 통해 숙취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며, 예약배차 등 당일 운행업무와 관련된 질의 등을 시행
- 안전운전 방법, 탑승자를 대하는 자세 등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기초(약식)교육 실시
- 운전자 운행 부적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운행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당일 운행 제한 또는 휴식을 유도

□ 안전운전 교통안전관리 전담인력 지정(필요시)

- 센터 규모 및 안전관리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인력*(교통안전담당자 등)을 지정 가능

*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에 근거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감독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나. 운전자 교육 활동 지원

구분		교육활동
필수 서비스 교육	정기교육	- 운전자 기초 준수사항 - 탑승자에 대한 서비스 자세 -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비정기교육	- 특별교통수단 사고 및 운행 관련 이슈사항 알림
업무요령 교육	정기교육	- 차량 관리 요령 - 차례 장치 운용 및 관리 요령

① 탑승자 응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교육

(정기) 운전자 기초 준수사항

-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탑승자 응대 등과 관련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7대 준수사항(별첨2)’ 교육

(정기) 탑승자에 대한 서비스 자세

- 교통약자를 대하는 운전자의 자세와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탑승자의 장애유형·성별·개인특성별 대응 요령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또는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정기)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 특별교통수단 차량고장, 단말 및 안전장치 파손(기능불가),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운전자로서 대처해야하는 방안과

절차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또는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비정기) 특별교통수단 사고 및 운행 관련 이슈사항 알림

-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회적 이슈사항이 발생하거나, 센터 자체 운영 관련 특이사항(사고사례, 주요 민원사항, 운영방법 개선 등)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하에 비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② 차량 운용에 필요한 업무요령 교육

□ (정기) 차량 관리 요령

- 일반적 차량정비 상식과 운행 중 차량 이상감지(핸들떨림, 냄새, 경고등 발생 등) 시 응급조치 요령, 계절별 차량관리 방안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또는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정기) 차내 장치 운용 및 관리 요령

- 리프트·슬로프 등 휠체어 승강설비로부터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구속장치, 탑승객 손잡이까지 차내 모든 안전장치를 대상으로 올바른 운용 방법과 주의사항, 관리 절차 등을 운행관리자 주관 또는 제작사측 협조(필요시) 하에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대상 정기/상시 교육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운전자 보호 관리

- 적정 휴식 보장 및 근로여건 개선
 - 운행관리자는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운전자에게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
 - 양질의 운행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운전자의 업무적 고충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현장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
- 운전자 보호책 강구
 - 운전자가 탑승자 또는 동승자 등 제3자로부터 비인격적, 비신사적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
 - 특별교통수단 운행 관련하여 운전자와 이용자간 마찰이 발생하거나, 혹은 운전자가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보호와 올바른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을 마련
- 탑승자 준수사항 게시 및 알림
 - 휠체어 고정장치 및 구속장치 체결, 전동스쿠터 탑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탑승자와 운전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마찰을 예방
 -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탑승자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장치 체결 관련 운전자의 도움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고지
 - 운행관리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탑승객이 소지할 수 있는 화물을 사전에 고지
 -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여 운용중인 택시운송약관 내 화물 규정을 준용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별도 적재함(트렁크)이 없기에 소지할 수 있는 화물의 크기, 부피 등은 별도 규정

라. 기존 운행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 조치

-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공포 (19.7.1 이후부터 시장·군수가 신규로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적용)
 - *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
 - ** 국토교통부령 제592호, 2019. 2. 8, 일부개정,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기준」
- 신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차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치(감속 운행, 차량 개조 등) 이행 필요
- 특별교통수단 차량 감속 운행
 - 적정 주행속도 준수 및 차간거리 확보를 위한 운전자 교육 필요
 - 특별교통수단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주행속도 50km/h 제한, 차간거리* 25m 이상 확보 필요
 - * 차량이 50km/h 속도로 주행 중 급정거 시, 통상 약 2.24초 후 정지하게 되며, 이때 차량 이동거리(제동거리)는 약 21m로 차간거리 25m 이상 확보 시 충돌 사고 예방이 가능

[참 조]

- 운전자 상황 인지 및 브레이크 작동 시 까지 소요시간(인지반응 시간) : 0.8초
- 브레이크 작동 후 정지 시까지 소요시간(제동시간) : 1.44초*
 - * 주행속도 50km/h(13.9m/s) ÷ 평균 감속도 9.6m/s² 기준
- ◇ 운전자 '인지-반응-정지'시 까지 소요시간 2.24초

□ 특별교통수단 차량 보강 개조(Rework) 권장

- 특별교통수단 내 휠체어 고정장치 위치 개선 및 안전띠(3점식) 추가 등 차량 보강 개조

《 기존 특별교통수단 차량 보강 개조 비용 (예시) 》

구분	위치개선	안전띠	계
신형 카니발	90만원	140만원	230만원
스타렉스	120만원	180만원	300만원
올뉴쏘울	100만원		100만원

주) 위 차량 보강 개조(Rework) 비용은 개략적 예시 비용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제작 업체마다 다를 수 있음

2 운전자 준수사항

가. 차량 운용 시 안전관리

① 탑승객 승차 시

□ 차량 정차 시 준수사항

-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설비의 작동반경 및 탑승객의 위치를 고려하여 안전한 공간에 차량을 정차
- 탑승객이 보호자(동승자)와 동행할 경우, 운전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탑승 위치를 지정한 후 차량을 정차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설비》

□ 승차 준비 시 준수사항

- 운전자는 승강설비의 작동이 완료되었음을 반드시 확인
 - * 승강설비가 수동식 슬로프인 경우, 슬로프와 지면이 만나는 부위에 유격이나 슬로프의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
- 장치 운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조작장치 오작동에 주의
- 휠체어 탑승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장치를 주의하여 운용

□ 승차 시 준수사항

- 휠체어 승강설비를 활용하여 휠체어 탑승객을 안전하게 탑승
 - * 탑승객의 보호자(또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동승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승차

- 승강설비에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체결한 후 작동하여야 하며 설비 작동 중 안전장치를 강제로 개방하지 않도록 주의



《승강설비 내 안전장치》

- 안전장치 체결 및 확인
 - 차량 내 휠체어 고정장치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휠체어가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

- 휠체어 자체 고정장치(핸드 브레이크 등)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동
- 탑승객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띠(구속장치)를 반드시 체결



《탑승객 안전띠》

- 휠체어 고정장치는 반드시 휠체어의 프레임과 차내 지정된 위치에 체결하여야 하며, 휠체어 바퀴, 차내 임시 거치부에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



《휠체어 고정장치의 잘못된 사용 (사례)》

□ 출발 전, 탑승객 승차상태 및 주변 확인

- 차량 출발 전, 안전벨트와 휠체어 고정장치 등 안전장치 일체에 대한 체결상태를 한번 더 확인
- 휠체어 탑승객에게 불편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출발을 고지
- 휠체어 탑승객 승차 공간 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나 탑승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을 정리
- 특히, 탑승객이 소지한 물건(화물)의 경우, 탑승객 승차공간에 놓아서는 안되며, 일반 승객용 좌석이나 바닥 등에 보관하고, 가능한 안전벨트로 고정하여 사고 등 긴급상황 시 2차사고를 예방

[참조] 탑승객 승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고 유형

- 승차 시 부주의로 보조장치 밖으로 휠체어가 추락하는 사고
- 안전장치를 체결하지 않아, 출발 시 휠체어가 밀려 격벽에 부딪히는 사고
- 문을 닫지 않은 채 급출발하면서 휠체어가 문밖으로 떨어진 사고

② 차량 주행 시

□ 출발/정차 시

- 급출발, 급제동 시 차내 탑승객 상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운전은 지양

□ 차량 주행 시

-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안전속도 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권고속도를 준수하며, 무리한 끼어들기 등의 난폭운전 지양
- 급정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에 안전거리를 여유있게 확보(시속 50km/h 기준, 최소 25m 이상)하는 운전습관

□ 차량 회전/과속방지턱 통과 시

- 차량 회전 시, 탑승객과 휠체어의 무게중심이 크게 흔들려 휠체어 전도 등 발생 가능
- 차량 회전 시 충분한 감속을 선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 과속방지턱은 탑승객에게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으며, 휠체어가 크게 흔들림에 따라 안전바나 격벽에 머리 또는 가슴을 강하게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속하여 통과

□ 차량 주행 중 상시 준수사항

- 차내 안전바가 있을 경우, 운행중에는 탑승자가 안전바를 잡고 있도록 고지하고, 운행 중 수시로 확인
- 휠체어 또는 탑승객 안전장치가 풀리거나, 탑승객이 불안정한 상태 인지를 항시 체크
- 차량 운행 중, 전화나 문자 등 운전과 관련 없는 기기의 사용은 긴급상황이 아니면 절대 금지

[참조] 차량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고 유형

- 급출발, 급제동, 방지턱 앞 과속 등으로 인한 탑승객 부상
-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안전고리 미체결에 따른 휠체어 전도사고
- 신호대기 정차 중 앞차 후미추돌사고(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

③ 탑승객 하차 시

하차 준비

- 휠체어 하차를 위한 승강설비 작동 반경과 하차 후 휠체어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안전한 곳에 정차
- 탑승객이 보호자(동승자)와 동행할 경우, 운전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안전한 하차 위치를 지정한 후 차량을 정차
- 하차문 개방 후에 탑승객 안전띠와 휠체어 브레이크, 차내 고정 장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하차 시 휠체어 바퀴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정리하여 수납
- 운전자는 탑승객 하차를 위한 승강설비의 작동이 완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 * 승강설비가 수동식 슬로프인 경우, 슬로프와 지면이 만나는 부위에 유격이나 슬로프의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

하차 시 준수사항

- 운전자는 승강설비를 활용하여 탑승객을 차량에서 안전하게 하차
 - * 탑승객의 보호자(또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동승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차
- 승강설비에서 진출 시, 탈착 가능한 보호대는 반드시 고정
- 운전자는 탑승객이 하차 후, 최종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 있도록 보행로까지 이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기서, '보행로'란 보도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이면)도로 등을 의미
- 하차 후 출발 시 준수사항
 - 차량에서 내린 탑승객이 차량주변 사각지대에 들어올 수 있으며, 옷이나 가방 등이 문에 끼일 수도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차량 주변을 주의 깊게 확인
 -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호자(동승자)를 통해 확인하며, 밖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운전석 창문을 열고 출발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

① '급'이 붙는 운전 지양

- 급출발, 급정차, 급가감속, 급핸들조작 등 '급'이 붙는 운전은 탑승객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증가
- 교통사고 원인 중 급출발, 급제동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

② 안전한 속도와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

-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차량으로서 무엇보다도 안전운행이 최우선
- 운행 중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바뀔 때 자연스러운 가·감속으로 탑승객의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
- 앞차와는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여 돌발 상황 시 앞차가 급정차 하더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제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며 안전운전

- 차간 안전거리 확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끼어들기로 인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바람직한 제동방법 : 충분한 차간거리를 두고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브레이크 등을 2~3회 점멸시켜 후속차량에게 신호를 보낸 후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 위치에 정차

③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마주 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 뒤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
-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
- 기타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의 내리막길, 도로가 구부러진 곳

④ 운전자 의무 및 준수사항

□ 운전자의 의무

구분	내용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 -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상태의 기준은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상태를 뜻하며,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되어 소주 반잔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함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Eco-Driving)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휴대용기기 사용 금지	- 운전 중에는 운전 외 다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고, 전화 및 문자 등 운전과 관련 없는 기기의 사용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 금지하여야 함
차량 점검	- 운행 중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의 정비·점검을 성실하게 하고, 특이사항은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운행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안전 운전 요령

구분	내용
<p>빗길에서의 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 줄이기 - 차간 거리 확보하기(차간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 - 낮에도 전조등 켜기 - 엔진브레이크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오면 브레이크라이닝과 드럼에 물기가 들어가 제동 거리가 길어지며, 급제동 시 타이어 잠김 현상으로 차가 스핀 할 염려가 있고, 수막현상이 일어나 급제동 대신 여러번 조금씩 나누어 밟아주는 펌핑 브레이크나 엔진브레이크를 사용 - 마모된 타이어 교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막현상으로 제동 시 미끄러지기 쉬움, 마모된 타이어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 이내로 높임 - 물웅덩이에서 속도 낮추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경우, 물이 최대한 적게 튀기도록 속도를 줄이고, 저단기어를 사용해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요령이며,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통과한 후에는 두번 정도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평상시 와이퍼 관리하기 - 배터리 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올 때에는 평소에 비해 에어컨이나 전조등·와이퍼 등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므로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 침수 등 위험예상지역에는 주·정차 하지 않기
<p>눈길에서의 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운전(방어운전) - 급제동 금지와 엔진 브레이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길에서의 급제동은 차량의 조향력을 잃기 쉬워 급제동을 삼가고, 가급적 감속 시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통해 서서히 멈추어 추돌사고 예방 :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미리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상태를 확인하고 주위차량에도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음 - 스노우 체인 및 스노우 타이어 사용 - 핸들 등의 과조작(급차선 변경·급가속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는 급차선 변경은 평소 마른 노면에서의 운전조건보다 어려움이 많아 매우 위험한 상황 유발 - 주간 전조등 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내리는 날에는 낮에도 맑은 날에 비해 어둡기 때문에 주간에도 전조등을 사용하여 방어운전

<p>교차로에서의 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통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그리고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 회전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됨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이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자동차 등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에 양보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 양보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양보 :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양보 - 더욱 안전한 교차로 통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 : 교차로에 진입 직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가야 함 : 신호기를 설치한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신호가 잘 보이는 위치로 진입하고 대형차 바로 뒤에서는 신호를 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
------------------	--

□ 그 밖의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

구분	내용
운전 중 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운행 중 일시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한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거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차마통행 방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운전자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 시 소음 발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차량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내버려두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 안내 영상 : 운전을 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속지

① 경미한 접촉 사고

-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보존을 위해 스프레이로 노면 흔적을 표시하고, 신속히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2차 추돌사고를 예방
- 이때, 탑승객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전달하고, 시간이 지체되어 탑승객이 환승 이동을 원할 경우에는, 신속히 이동지원센터(☎ 00-0000-0000)에 연락하여 환승 차량을 호출
- 만일, 탑승객이 시각·청각 복합장애인인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아, 불안감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사고처리에 앞서, 현재 상황과 이후 사고처리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탑승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선 조치
- 사고 차량의 지속 운행 여부 판단 및 사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담당 이동지원센터(☎ 00-0000-0000)와 가입보험사(☎ 0000-0000)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 진행

② 사상자 발생 사고

인명사고 발생 즉시 신고 후 구호 활동 실시

-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한 경우,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신속히 이동지원센터(☎ 00-0000-0000)와 가까운 경찰서에 사실을 알려 조치
- * 인명 사고 발생 시, 신고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나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탑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이동지원센터(☎ 00-0000-0000)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하며, 탑승객의 이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운전자만으로 사상자 구호가 힘들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

교통사고 부상자 응급조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히 응급구호기관(119) 연락 ● 응급처치 전 반드시 환자 허락이 필요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동의할 거라고 가정된 상태로 처치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는다.
-------------------------------------	--

□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 확보

- 운전자는 사고 위치를 표시하고 현장을 촬영
-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차후 사고처리에 도움
- * 증거 부족 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음

□ 2차 추돌사고 예방 활동

-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
-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

별첨 1 운행관리자 준수사항(1p)**특별교통수단 운행관리자 준수사항**

1.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과 질 높은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운전자 현장 배치 시, 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격요건을 검증한다.
3. 운전자 준수사항, 서비스 자세,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등 운전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4. 차량 안전관리, 차내 단말/안전장치 활용,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요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운전자의 과로/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6. 운전자가 탑승자 또는 제3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7. 특별교통수단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한 탑승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별첨 2 운전자 준수사항(1p)**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준수사항**

1. 운행 전 차량과 각종 장치의 작동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자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3. 탑승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강 및 안전장치(휠체어 고정/탑승객 구속) 작동 방법을 숙지한다.
4. 승하차 방법을 탑승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안전하고 편안히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고지하고, 출발 전 안전띠 착용 여부와 차량문 닫힘 여부를 확인한다.
6. 차량 내 흡연, 음주, 금지약물 복용 등을 아니하며,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한다.
7. 지정된 탑승객 이외의 자를 승차시키거나, 부당한 요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별첨 3 이용자 준수사항(1p)**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준수사항**

1. 탑승자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운전자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휠체어는 차량 내 격벽 충돌, 전복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고정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3. 탑승자는 차량 운행 중 휠체어로부터 이탈, 충돌상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속장치(안전띠)를 체결해야 한다.
4. 탑승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오물 투기, 흡연 등을 금하고, 차량 내부를 청결히 유지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심부름 등의 부담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휠체어석에 격납, 이용자는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한다.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준수사항

3. 탑승자는 차량 운행 중 휠체어로부터 이탈, 충돌상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속장치(안전띠)를 체결해야 한다.

3. 탑승자는 차량 운행 중 휠체어로부터 이탈, 충돌상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속장치(안전띠)를 체결해야 한다.

단,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승차하는 때에는 별도의 구속장치(안전띠 등)를 체결할 수 있다.

6.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휠체어석에 격납, 이용자는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한다.

6. [1안]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휠체어석에 격납, 이용자는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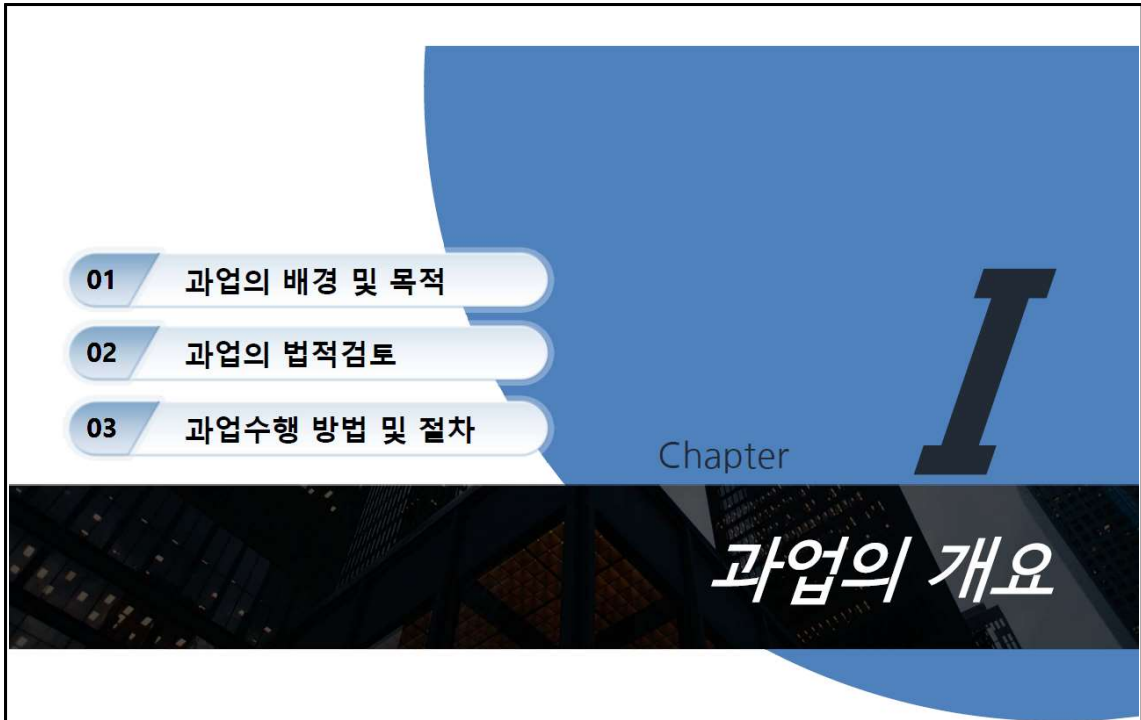
단,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착석하기 현저히 곤란한 이용자는 전동스쿠터에 착석할 수 있다.

[2안] <삭제>

6.3 최종보고회 자료



<p>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p> <h1>Contents</h1> 	<p>I Chapter 과업의 개요</p>
	<p>II Chapter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p>
	<p>III Chapter 시·군 이동편의시설 추진성과 분석</p>
	<p>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p>
	<p>V Chapter 예산 및 투자계획</p>



I
Chapter

과업의 개요

0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배경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등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임
-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을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및 지원방향을 제시
-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3차 지원계획의 시간적 범위	제4차 지원계획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9년 ~ 2023년(5년)	• 계획기간 : 2022년 ~ 2026년(5년)
• 제4차 지원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4년 ~ 2028년이나 국가계획과 시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	

공간적 범위

새로운전북 특별한기회

4

I
Chapter

과업의 개요

02. 과업의 법적검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 2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 2024. 2. 17.][법률 제1874호, 2023. 8. 16., 일부개정] >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I
Chapter

과업의 개요

02. 과업의 법적검토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물리적 장애 없는 환경조성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확대

광역이동센터 운영 효율화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균형적 지원에 관한 연차별 투자계획

바우처 택시 도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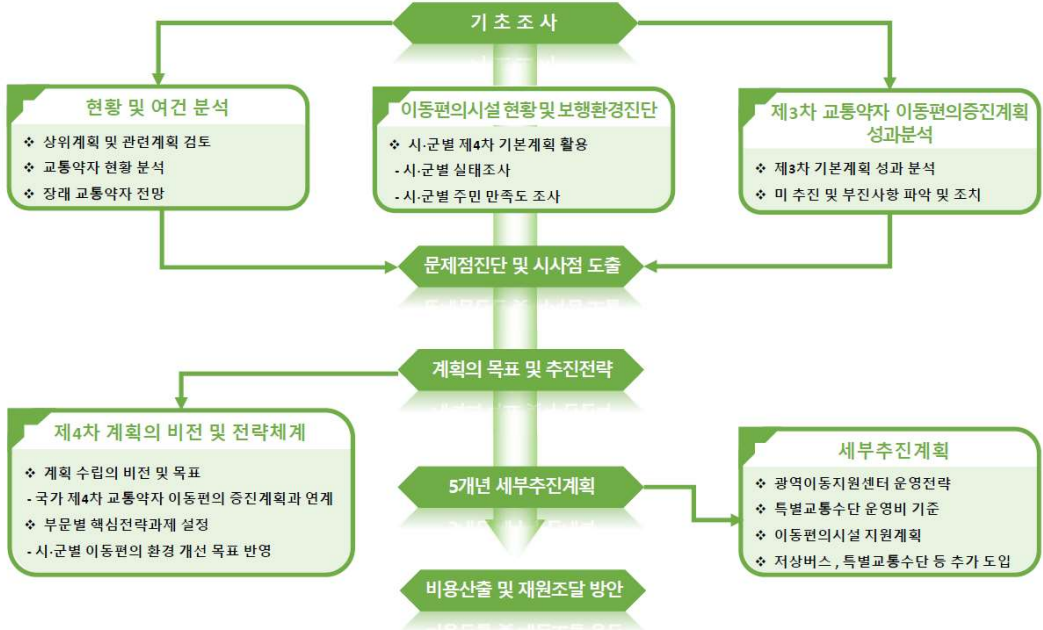
6

I
Chapter

과업의 개요



03.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

            graph TD
            A[기초조사] --> B[현황 및 여건 분석]
            A --> C[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보행환경진단]
            A --> D[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성과분석]
            B --> E[문제점진단 및 시사점 도출]
            C --> E
            D --> E
            E --> F[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F --> G[제4차 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
            F --> H[5개년 세부추진계획]
            F --> I[세부추진계획]
            H --> J[비용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I --> J
            
```

- 0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 0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수단 현황
- 0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04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현황
- 05 상위계획 검토

Chapter **II**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II Chapter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0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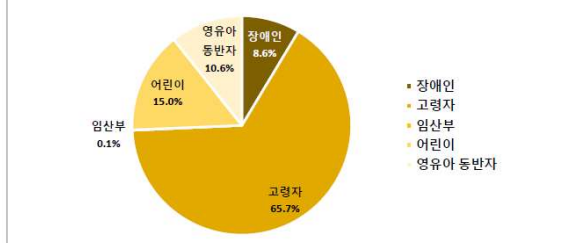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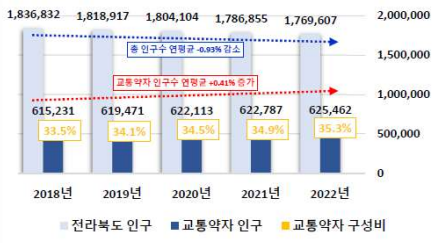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인구는 다소 증가하고 있음
-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35.3%이며 이 중 고령자가 교통약자 인구의 6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및 교통약자 추이

구분	총 인구(인)	교통약자(인)	연평균증가율(%)
2018년	1,836,832	615,231	전라북도 인구 감소율 -0.93%
2019년	1,818,917	619,471	
2020년	1,804,104	622,113	교통약자 인구 증가율 +0.41%
2021년	1,786,855	622,787	
2022년	1,769,607	625,46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2022년)

구분	인구수(인)	총인구 대비 비율(%)	교통약자 비율(%)
총 인구 수	1,769,607	100.0	-
일반인	1,144,145	64.7	-
교통약자	625,462	35.3	100.0
장애인	53,896	3.0	8.6
고령자	410,619	23.2	65.7
어린이	93,794	5.3	15.0
임산부	554	0.1	0.1
영유아 동반자	66,599	3.7	10.6



9

II Chapter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0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는 전주시, 군산시 및 익산시 등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는 인구가 밀집한 시·군 외 지역의 교통약자 비율이 비교적 더 높음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2022년)

구분	인구 수(인)	교통약자											
		인구 수(인)	비율(%)	장애인(중복제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전주시	651,495	192,445	29.5%	16,214	8.43%	107,357	55.79%	28,766	14.95%	39,899	20.73%	209	0.11%
군산시	262,467	88,634	33.8%	7,630	8.61%	54,997	62.05%	10,562	11.92%	15,359	17.33%	86	0.10%
익산시	273,697	92,475	33.8%	8,728	9.44%	60,045	64.93%	9,548	10.32%	14,054	15.20%	100	0.11%
정읍시	105,081	43,116	41.0%	3,850	8.93%	31,356	72.72%	3,180	7.38%	4,703	10.91%	27	0.06%
남원시	77,948	32,682	41.9%	2,889	8.84%	23,691	72.49%	2,603	7.96%	3,478	10.64%	21	0.06%
김제시	81,455	36,026	44.2%	3,104	8.62%	27,495	76.32%	2,268	6.30%	3,136	8.70%	23	0.06%
완주군	92,422	35,093	38.0%	3,375	9.62%	22,950	65.40%	3,673	10.47%	5,063	14.43%	32	0.09%
진안군	24,550	11,651	47.5%	949	8.15%	9,260	79.48%	655	5.62%	785	6.74%	2	0.02%
무주군	23,489	10,734	45.7%	887	8.26%	8,393	78.19%	550	5.12%	899	8.38%	5	0.05%
장수군	21,336	10,006	46.9%	762	7.62%	7,852	78.47%	556	5.56%	831	8.31%	5	0.05%
임실군	26,508	12,957	48.9%	1,018	7.86%	10,270	79.26%	853	6.58%	803	6.20%	13	0.10%
순창군	26,727	12,267	45.9%	905	7.38%	9,647	78.64%	756	6.16%	956	7.79%	3	0.02%
고창군	52,338	24,540	46.9%	1,847	7.53%	19,364	78.91%	1,359	5.54%	1,958	7.98%	12	0.05%
부안군	50,094	22,836	45.6%	1,738	7.61%	17,942	78.57%	1,270	5.56%	1,870	8.19%	16	0.07%
합계	1,769,607	625,462	35.3%	53,896	8.62%	410,619	65.65%	66,599	10.65%	93,794	15.00%	554	0.09%

10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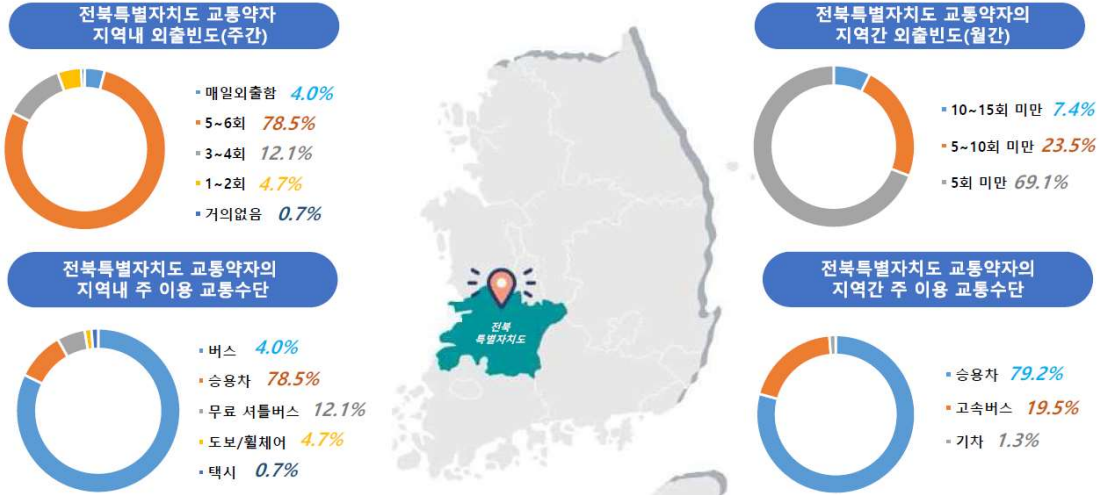
Chapter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0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실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내 외출빈도는 5~6회, 주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으며, 지역간 외출빈도는 5회 미만, 주 이용 교통수단 또한 승용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 전북특별자치도 이동실태 분석 p149

11

II

Chapter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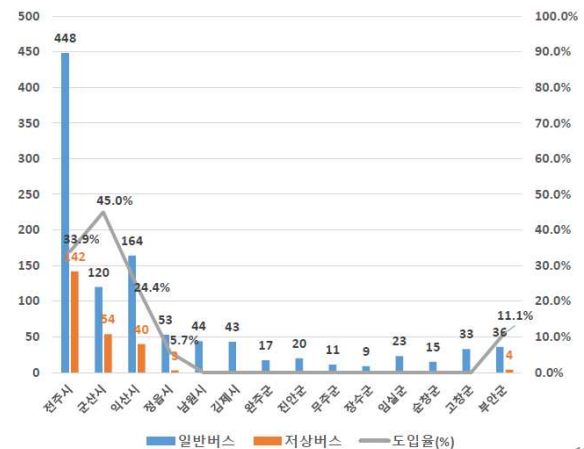
02. 교통약자 교통수단 현황

저상버스 도입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평균 23.5%로 시·군별 도입율은 군산시 45.0%, 전주시 33.9%, 익산시 24.4%, 부안군 11.1%, 정읍시 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군은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도입 현황(2023년)

구분	일반버스	저상버스	도입율
전주시	448	142	33.9%
군산시	120	54	45.0%
익산시	164	40	24.4%
정읍시	53	3	5.7%
남원시	44	-	-
김제시	43	-	-
완주군	17	-	-
진안군	20	-	-
무주군	11	-	-
장수군	9	-	-
임실군	23	-	-
순창군	15	-	-
고창군	33	-	-
부안군	36	4	11.1%
합계	1,036	243	23.5%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12

II

Chapter

02. 교통약자 교통수단 현황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도입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도입현황은 233대로, 임차택시 48대로 나타났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024. 1. 1.」이 개정되어 법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부족해진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율은 84.7% 나타났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2023년)

구분	법정대수 산정 장애인수 (보행상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법정 기준	법정 기준 대수	운영 대수	보급률	소계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합계	34,730	-	275	233	84.7	48	48	-	-	
전주시	9,099	150명 당 1대	61	62	101.6	20	20	-	-	
군산시	4,593		31	31	100.0	8	8	-	-	
익산시	5,943		40	40	100.0	6	6	-	-	
정읍시	2,677		18	18	100.0	4	4	-	-	
남원시	1,943	100명 당 1대	19	13	68.4	1	1	-	-	
김제시	2,381		24	16	66.7	6	6	-	-	
완주군	2,156		22	14	63.6	-	-	-	-	
진안군	635		6	4	66.7	-	-	-	-	
무주군	560	100명 당 1대	6	4	66.7	2	2	-	-	
장수군	498		5	3	60.5	1	1	-	-	
임실군	766		8	5	62.5	-	-	-	-	
순창군	706		7	5	71.4	-	-	-	-	
고창군	1,405	14	9	9	62.3	-	-	-	-	
부안군	1,368		14	9	62.3	-	-	-	-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대체수단 종류



• "임차택시"란 시군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함



• "바우처 택시"란 교통약자가 택시에 승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승객의 요금 중 일정 비용을 보조하는 택시를 말함



•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이란 시각장애인의 이동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서비스(은행, 관공서 출입 등)를 운전기사가 보조해주는 차량을 말함

13

II

Chapter

0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인력현황은 2019년 17명에서 2023년 총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접수 콜수 또한, 2019년 36,496건에서 2023년 521,39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센터장	1명	1명	1명	1명
	팀장	1명	1명	1명	2명
	상담원	15명	22명	22명	22명
계	17명	24명	24명	24명	26명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콜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주시	13,577	115,243	149,803	171,215	187,817
군산시	5,497	50,854	69,642	76,447	89,613
익산시	4,776	32,142	46,322	57,407	73,253
정읍시	3,264	24,760	31,318	32,259	37,485
남원시	1,126	6,744	9,996	12,233	16,174
김제시	2,317	16,824	27,039	34,366	41,974
완주군	1,460	11,072	13,925	15,705	17,666
진안군	266	2,163	2,564	3,286	4,108
무주군	371	3,139	4,164	5,253	7,132
장수군	167	2,318	2,908	3,497	4,549
임실군	557	3,939	4,815	5,309	6,744
순창군	672	6,560	6,504	4,635	6,109
고창군	1,299	7,598	10,656	13,043	13,507
부안군	1,147	10,595	14,498	15,001	15,259
합계	36,496	293,951	394,154	449,656	521,390

14

II

Chapter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04.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현황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버스 기준적합 80.7%, 여객터미널 기준적합 59.2%
철도역사 기준적합 86.1%, 공항 기준적합 83.8%로 나타났음

☑ 버스 기준적합 현황

대상시설	기준적합
자동안내시설	45.8%
전자문자 안내판	51.3%
목적지 표시	80.3%
휠체어 승강설비	100.0%
승강구	100.0%
교통약자용 좌석	73.0%
수직손잡이	95.1%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100.0%
평균	80.7%

☑ 여객터미널 기준적합 현황

대상시설	기준적합
매개(외부)시설	70.5%
내부시설	65.6%
위생시설	57.6%
안내시설	38.0%
기타시설	64.5%
평균	59.2%

☑ 철도역사 기준적합 현황

대상시설	기준적합
매개(외부)시설	85.3%
내부시설	83.5%
위생시설	86.1%
안내시설	84.3%
기타시설	91.2%
평균	86.1%

☑ 공항 기준적합 현황

대상시설	기준적합
매개(외부)시설	92.9%
내부시설	75.0%
위생시설	86.5%
안내시설	83.3%
기타시설	81.3%
평균	83.8%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II

Chapter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04.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현황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30.5%, 보행환경 기준적합 59.8%로 나타났음

☑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현황

대상시설	기준적합
턱낮추기	36.0%
활동공간	51.0%
동선분리	46.0%
점형블록	16.0%
선형블록	12.0%
안내판부착위치	72.7%
안내판점자 및 음성안내	6.8%
버스정보조회 버튼	3.7%
평균	30.5%

☑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현황

대상시설	기준적합
접근보행로	88.1%
차량진출입부	22.7%
턱 낮추기	84.7%
점자블럭	235%
지하도 및 육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노상주차장)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75.0%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64.6%
평균	59.8%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II

Chapter

05. 상위계획 검토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 10, 국토교통부)

-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있는 환경 조성' 을 비전으로 설정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추진전략, 9개의 정책과제, 26개의 세부과제를 추진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및 이동편의시설의 목표치를 설정함

비전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간 연계 강화 •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문화 정착 			
4개 추진전략 9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추진 전략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확대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정책 과제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 도입확대	여객시설 접근성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교통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강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충 및 운영 효율성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구분	운영수단	2021년(현황)	2026년(계획)	
			전국	도지역
저상버스	시내버스	30.6%	62.0%	41.0%
	농촌버스	1.4%	42.0%	
	마을버스	3.9%	49.0%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86.0%	100.0%	

구분	운영수단	2021년(현황)	2026년(계획)	
			전국	도지역
버스	시내버스	88.0%	96.0%	96.0%
	버스정류장	45.4%	66.0%	73.0%
	버스터미널	65.0%	73.0%	73.0%
보행	보행환경	77.6%	83.0%	73.0%
도시철도	도시철도(차량)	96.0%	98.0%	98.0%
	도시철도(역사)	89.0%	93.0%	93.0%
철도	철도(차량)	98.9%	99.0%	99.0%
	철도(역사)	82.5%	90.0%	90.0%
여객	여객선	37.8%	52.0%	52.0%
	항공기	82.2%	92.0%	92.0%
항공	항공기	73.7%	90.0%	90.0%
	공항	86.8%	92.0%	92.0%

18

01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실적

02 시·군별 추진실적

03 성과분석

Chapter

III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성과 분석

III

Chapter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01.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실적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버스 80.7%, 여객선 42.5%, 철도역사 86.1%, 여객자동차 터미널 59.2%, 여객선 터미널 82.2%, 공항여객터미널 83.8% 버스정류장 30.9% 보행환경 59.8%로 나타났음
- 버스,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 터미널은 높은 적합률을 보이고 있으나, 여객선,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정류장, 보행환경 부분에서는 낮은 기준 적합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구분	대상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80.7
	여객선	42.5
	철도역사	86.1
	여객자동차터미널	59.2
	여객선터미널	82.2
	공항여객터미널	83.8
	버스정류장	30.9
보행환경	59.8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20

III

Chapter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02. 시·군별 추진실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책의 추진실적 분석은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서 제시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목표치가 실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 「제4차 전라북도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교통수단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수단 부문의 추진실적은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제3차 계획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3차계획 목표	제4차계획 조사치	달성율
전주시	버스	85.0%	85.4%	100.5%
	버스	85.0%	88.2%	103.8%
군산시	여객선	50.0%	95.2%	190.4%
	여객선	63.0%	59.7%	94.8%
익산시	버스	90.0%	59.3%	65.9%
정읍시		90.0%	82.0%	91.1%
남원시		60.0%	49.8%	83.0%
김제시		90.0%	73.9%	82.1%
진안군		90.0%	73.9%	82.1%
무주군		90.0%	73.9%	82.1%
장수군		60.0%	52.6%	87.7%
임실군		90.0%	63.6%	70.7%
순창군		60.0%	61.1%	101.8%
고창군		90.0%	41.7%	46.3%
부안군	버스	90.0%	41.7%	46.3%

자료 :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주: 1) 완주군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제외 하였음(24년 발주예정)
- 2) 3차계획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시·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020. 03.」의 목표치를 적용하여 달성률을 산출하였음
- 3) 부안군의 여객선의 경우 3차계획 목표 및 4차계획 조사치가 제시되지 않아 제외하였음

21

III

Chapter

02. 시·군별 추진실적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여객시설

·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객시설 부문의 시·군별 추진실적은 버스정류장, 여객터미널, 철도역사의 모든 항목을 달성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객시설 항목 중 버스정류장에 대한 항목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구분	3차계획 목표	제4차계획 조사치	달성율	구분	3차계획 목표	제4차계획 조사치	달성율	
전주시	버스정류장	53.0%	42.6%	80.4%	진안군	버스정류장	80.0%	30.5%	38.1%
	여객터미널	65.0%	83.3%	128.2%		여객터미널	80.0%	59.2%	74.0%
	철도역사	90.0%	89.1%	99.0%	장수군	버스정류장	80.0%	30.5%	38.1%
군산시	버스정류장	60.0%	81.0%	135.0%		여객터미널	80.0%	59.2%	74.0%
	여객터미널	72.0%	94.0%	130.6%	임실군	버스정류장	60.0%	23.7%	39.5%
	여객터미널	90.0%	27.2%	30.2%		여객터미널	60.0%	61.5%	102.5%
철도역사	63.0%	77.6%	123.2%	철도역사		60.0%	78.4%	130.7%	
익산시	여객터미널	63.0%	45.9%	72.9%	순창군	버스정류장	80.0%	39.6%	49.5%
	철도역사	63.0%	73.2%	116.2%		여객터미널	80.0%	53.4%	66.8%
	버스정류장	80.0%	44.6%	55.8%	고창군	버스정류장	60.0%	40.3%	67.2%
정읍시	여객터미널	80.0%	75.0%	93.8%		여객터미널	60.0%	44.2%	73.7%
	철도역사	90.0%	100.0%	111.1%	부안군	버스정류장	80.0%	47.5%	59.4%
	버스정류장	53.0%	31.3%	59.1%		여객터미널	80.0%	66.1%	82.6%
남원시	여객터미널	64.0%	68.8%	107.5%	김제시	버스정류장	60.0%	34.9%	58.2%
	철도역사	90.0%	88.1%	97.8%		여객터미널	40.0%	45.0%	112.5%
	버스정류장	60.0%	45.0%	75.0%	철도역사	80.0%	82.9%	103.6%	
김제시	버스정류장	80.0%	30.5%	38.1%	무주군	버스정류장	80.0%	30.5%	38.1%
	여객터미널	80.0%	59.2%	74.0%		여객터미널	80.0%	59.2%	74.0%
	철도역사	80.0%	30.5%	38.1%					

자료 :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 : 1) 완주군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제외 하였음(24년 발주예정)
 2) 3차계획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시·군은「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020. 03.」의 목표치를 적용하여 달성률을 산출하였음
 3) 군산시의 경우 철도역사 및 공항은 3차 계획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4차계획시 추진실적에서 제외하였음
 4) 부안군 여객터미널의 경우 4차계획 조사 시기에 공사중으로 인하여 추진실적 예시 제외하였음

22

III

Chapter

02. 시·군별 추진실적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보행환경

· 전북특별자치도 보행환경 부문의 추진실적은 부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제3차 계획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구분	3차계획 목표	제4차계획 조사치	달성율
전주시	보행환경	70.0%	65.5%	93.6%
군산시		80.0%	63.1%	78.9%
익산시		63.0%	59.9%	95.1%
정읍시		85.0%	69.1%	81.3%
남원시		86.0%	81.7%	95.0%
김제시		90.0%	64.8%	72.0%
무주군		85.0%	59.8%	70.4%
진안군		85.0%	59.8%	70.4%
장수군		85.0%	59.8%	70.4%
임실군		80.0%	53.3%	66.6%
순창군		80.0%	63.6%	79.5%
고창군		70.0%	57.8%	82.6%
부안군		85.0%	87.5%	102.9%

자료 :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 : 1) 완주군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제외 하였음(24년 발주예정)
 2) 3차계획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시·군은「전북특별자치도 제3차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020. 03.」의 목표치를 적용하여 달성률을 산출하였음

23

III

Chapter

03. 성과분석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성과분석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적은 교통수단은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객시설은 여객선 터미널만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도로(보행환경)은 설정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종합

대상시설	3차계획 목표		실적(21년)	달성률	
	국가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국가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수단	일반버스	79.0%	79.0%	80.7%	102.2%
	여객선	50.0%	39.0%	42.5%	85.0%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73.0%	72.0%	59.2%	81.1%
	도시철도역사	90.0%	90.0%	86.1%	95.7%
	공항터미널	90.0%	90.0%	83.8%	93.1%
	여객선터미널	79.0%	79.0%	87.7%	111.0%
	버스정류장	57.0%	51.0%	30.5%	53.5%
	도로(보행환경)	81.0%	81.0%	59.8%	73.8%
	전체평균	80.3%	73.2%	69.3%	86.3%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24

III

Chapter

03. 성과분석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전북특별자치도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19.6%, 달성률은 43.2%로 목표 미달로 나타남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달성률은 84.7%로 목표대비 미달이나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인한 것으로 확인됨
 ·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낮은 달성률을 보이나 도 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9개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나, 이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수치하락으로 확인됨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대상시설	제3차계획 '21년 목표		실적 (21년) (C)	달성률		대상 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의 도지역								
	국가계획 (A)	전북특별자치도 (B)		국가계획 (C/A)	전북특별자치도 (C/B)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저상버스 보급률	32.0%	45.4%	19.6%	61.3%	43.2%	19.6%	15.5%	16.3%	24.6%	16.3%	7.4%	9.3%	13.7%	21.8%	16.9%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4.0%	100.0%	84.7%	100.8%	84.7%	84.7%	80.1%	112.7%	76.4%	64.4%	68.1%	72.5%	67.5%	107.3%	97.1%

자료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연구(국토부, 2016. 12),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전북특별자치도, 2020. 3)

25

III

Chapter

03. 성과분석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전북특별자치도 만족도

•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제3차 계획 목표에서 국가계획 대비 높은 만족도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동편의시설 모든 부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시민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대상시설	3차계획 목표		실적	달성률
	국가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수단(평균)	70.0	82.5	61.6	74.7%
여객시설(평균)	75.0	85.0	65.4	76.9%
보행환경(평균)	70.0	80.0	59.8	74.8%
전체평균	71.7	83.1	62.3	67.6%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01 계획의 비전과 목표

02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04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05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Chapter

IV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1.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장래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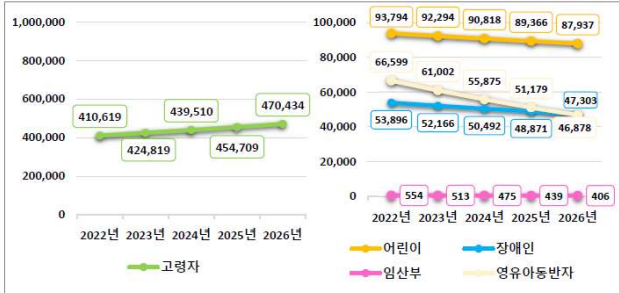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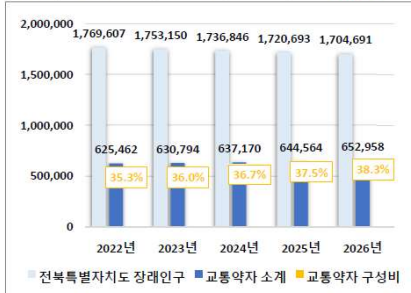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장래 인구는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
- 교통약자 중 고령자는 증가,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는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및 교통약자 전망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장래인구(인)	장래 교통약자		연평균 증가율(%)
		인구(인)	비율(%)	
2022년	1,769,607	625,462	35.3	전북특별자치도 장래인구 감소율 -0.93% 교통약자 장래인구 증가율 +1.08%
2023년	1,753,150	630,794	36.0	
2024년	1,736,846	637,170	36.7	
2025년	1,720,693	644,564	37.5	
2026년	1,704,691	652,958	38.3	

장래 교통약자 예측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53,896	52,166	50,492	48,871	47,303	-3.21%
고령자	410,619	424,819	439,510	454,709	470,434	+3.46%
임산부	554	513	475	439	406	-7.48%
어린이	93,794	92,294	90,818	89,366	87,937	-1.60%
영유아동반자	66,599	61,002	55,875	51,179	46,878	-8.40%
합계	625,462	630,794	637,170	644,564	652,958	+1.08%



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약자별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 후 장래 교통약자를 예측하였음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1. 계획의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 10, 국토교통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립
- 시·군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1. 계획의 비전과 목표

지원계획의 성격

· 시·군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와 시·군 간 균형적 지원을 통하여 시·군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위계획의 지원계획임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30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1. 계획의 비전과 목표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다같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균형적인 시·군 지원방안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지원전략

<p>세부계획 및 전략설정</p>	<p>이동편의 시설 인프라 개선</p>	<p>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p>	<p>연구개발 및 제도개선</p>
<p>저상버스 보급확대 지원</p>	<p>물리적 장애없는 환경조성</p>	<p>교통약자 캠페인 추진지원</p>	<p>광역이동센터 운영 효율화</p>
<p>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확대</p>	<p>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p>	<p>교통약자를 위한 교육강화</p>	<p>교통약자 조례 정비</p>
<p>바우처 택시 도입 검토</p>		<p>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p>	

31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2.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저상버스 도입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현황

구분	전체 운행버스	저상버스	저상버스비율
시내버스	843대	252대	29.8%
마을버스	46대	-	-
농어촌버스	147대	4대	2.7%
총 계	1,036대	256대	24.7%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4. 01 기준)

국가 도입 목표치 대비 부족분

구분	도입 목표		부족분	
	대수	비율	대수	비율
시내버스	346대	41.0%	94대	11.2%
마을버스	23대	49.0%	23대	50.0%
농어촌버스	62대	42.0%	58대	39.3%

자료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

- 4차 국가계획 기준 시내버스는 94대, 마을버스는 23대, 농어촌버스는 58대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제4차 국가계획 충족 연차별 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시내버스	-	-	120대	138대	63대	321대
마을버스	-	-	-	11대	12대	23대
농어촌버스	-	-	9대	24대	25대	58대
총 계	-	-	129대	173대	100대	402대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4년 129대, 2025년 173대, 2026년 100대 가량의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 할 계획임
- 2026년에는 저상버스 비율이 시내버스 68.0%, 마을버스 50.0%, 농어촌버스 42.1%로 전북특별자치도 저상버스 비율 63.5%로 계획하였음

전북특별자치도 목표연도 저상버스 비율

구분	전체 운행버스	저상버스	저상버스비율
시내버스	843대	573대	68.0%
마을버스	46대	23대	50.0%
농어촌버스	147대	62대	42.1%
총 계	1,036대	658대	63.5%

주 : 인구 감소 추세 및 개인 자동차량의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자의 감소세에 따라 본 계획에서 버스 차량의 증가율은 고려하지 않음

32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2.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

- 저상버스 배차간격 분석 결과, 전국 32.6분, 전북특별자치도 42.3분으로 1.29배나 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저상버스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목표를 설정

저상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설문조사

구분	일반, 저상 구분 안됨	저상버스 없음	배차시간 과다	장애없음	좌석부족
설문조사	27.6%	26.0%	19.0%	17.3%	10.3%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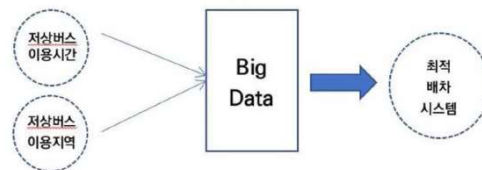
최적 배차 시스템 도입

- 현재 저상버스 이용체계를 빅데이터를 통한 저상버스 이용자 분포분석에 따른 최적 배차 시스템 개발 도입 (국토부개발사업)
- 다수 이용노선에 우선 배차시스템 도입

배차간격 조정을 통한 이용 활성화

구분	저상버스	배차간격		
		현재	목표(2026년)	증감
전북특별자치도	243대	42.3분	30.0분	-12.3분

최적 배차 시스템 개념도



33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2.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

필요성

- 중앙정부의 추진과제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통한 장애인 지원 부분 명시
- 장애인들의 단체 이동 및 여행 등 여가생활 지원 필요
- 장애인 단체의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대형버스 형태 특별교통 수단 요구

도입방안

- 현재 운행중인 시외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의 개조
- 여객터미널 내부 차량 승강장까지의 휠체어 접근로 개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이외의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을 위주로 공모사업 대상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 및 운수업체가 협력하여 시외버스 교통약자 탑승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 국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 추진

구분		도입방안
사업 규모	차량	• 1대(47인승 개조)
	인력	• 2명(운전원1명, 사업운영관리1명)
이용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등록 장애인 및 가족
운영방식		•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
소요비용(백만원)		• 차량 구입비 26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년
관련사업		• 관련조례 제정 • 탑승시설정비(터미널 등) • 관광지 무자영시설, 보행로 정비 • 관련시설 정비(점자,선타,화장실 등)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도입 사례(국내 및 해외)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2.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현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5.] [법률 제637호, 2019. 7. 5., 일부개정]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235호, 2024. 1. 19., 일부개정]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이라 한다)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구분	인구수	보행상 정도가 심한장애(A)	법정기준 현황	법정대수 현황	특별교통수단 현황	도입율 현황 (2023년)
전주시	651,495	9,099	150명당 1대	61대	62대	101.6%
군산시	262,467	4,593		31대	31대	100.0%
익산시	273,697	5,943		40대	40대	100.0%
정읍시	105,081	2,677		18대	18대	100.0%
남원시	77,948	1,943		13대	13대	100.0%
김제시	81,455	2,381		16대	16대	100.0%
완주군	92,422	2,156		14대	14대	100.0%
진안군	24,550	635		4대	4대	100.0%
무주군	23,489	560		4대	4대	100.0%
장수군	21,336	498		3대	3대	100.0%
임실군	26,508	766		5대	5대	100.0%
순창군	26,727	706		5대	5대	100.0%
고창군	52,338	1,405		9대	9대	100.0%
부안군	50,094	1,368	9대	9대	100.0%	
합계	1,769,607	34,730	-	232대	233대	100.4%

구분	인구수	보행상 정도가 심한장애(A)	법정기준 개정 후	법정대수 개정 후	특별교통수단 현황	도입율 개정 후
전주시	651,495	9,099	150명당 1대	61대	62대	101.6%
군산시	262,467	4,593		31대	31대	100.0%
익산시	273,697	5,943		40대	40대	100.0%
정읍시	105,081	2,677		18대	18대	100.0%
남원시	77,948	1,943		19대	13대	68.4%
김제시	81,455	2,381		24대	16대	66.7%
완주군	92,422	2,156		22대	14대	63.6%
진안군	24,550	635		6대	4대	66.7%
무주군	23,489	560		6대	4대	66.7%
장수군	21,336	498		5대	3대	60.5%
임실군	26,508	766		8대	5대	62.5%
순창군	26,727	706		7대	5대	71.4%
고창군	52,338	1,405		14대	9대	62.3%
부안군	50,094	1,368	14대	9대	62.3%	
합계	1,769,607	34,730	-	275대	233대	84.7%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2.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는 233대이며, 2024년 「교통약자법」 개정 후 법정기준대수 대비 42대가 부족한 상황으로 확인됨
-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설정하여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77대를 확충, 총310대 도입률 112.7%로 설정하였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연차별 계획

구분	특별교통수단 현황	법정대수	법정대비 부족대수	확충계획					특별교통수단 누적대수	도입 비율 (2026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주시	62대	61대	+1대	-	-	5대	2대	-	69대	113.1%
군산시	31대	31대	-	-	-	2대	-	2대	33대	112.9%
익산시	40대	40대	-	-	-	1대	-	3대	41대	110.0%
정읍시	18대	18대	-	-	-	-	-	2대	18대	111.1%
남원시	13대	19대	-6대	-	-	6대	-	2대	19대	110.5%
김제시	16대	24대	-8대	-	-	1대	7대	3대	24대	112.5%
원주군	14대	22대	-8대	-	-	-	8대	3대	22대	113.6%
진안군	4대	6대	-2대	-	-	-	2대	1대	6대	116.7%
무주군	4대	6대	-2대	-	-	2대	-	1대	6대	116.7%
장수군	3대	5대	-2대	-	-	1대	1대	1대	5대	120.0%
임실군	5대	8대	-3대	-	-	2대	1대	1대	8대	112.5%
순창군	5대	7대	-2대	-	-	1대	1대	1대	7대	114.3%
고창군	9대	14대	-5대	-	-	-	5대	2대	14대	114.3%
부안군	9대	14대	-5대	-	-	3대	2대	2대	14대	114.3%
합계	233대	275대	42대	-	-	24대	29대	24대	310대	112.7%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및 시·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6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2.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문제점 및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해마다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됨
-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정 등 운영 효율화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도입) 필요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비교

구분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전용계약형	비전용계약형	
통제권	이동지원센터	사업자	사업자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택시요금의 일정비율 바우처로 보조
장점	안정적인 배차·운영	일반인대상 영업가능 운영비 절감	일반택시 활용, 운영비 절감효과 큼
단점	일반인대상 영업불가	장애인 배차 비선호	비장애인 편법이용 가능성 존재
운영사례	수원시, 전북특별자치도(8개 시·군)등	용인시, 화성시, 의정부시 등	서울시, 고양시, 전라남도 등

- 지자체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를 분산 처리 하여야 함

37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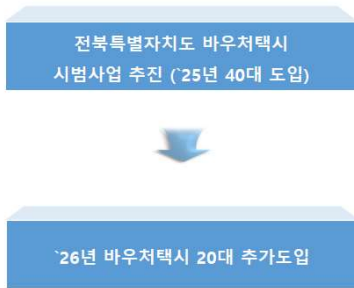


02. 세부계획 및 전략설정

전북특별자치도 바우처택시 도입

- 이용자 관점에서 임차택시(전용계약형)는 이용 안전성 및 요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나, 시·군의 비용부담에 따라 확장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운행보조금 지급 방식의 바우처 택시 도입은 운영기관의 비용 절감 및 공급 확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됨
- '25년 전북특별자치도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추진(40대 도입), '26년 바우처택시 확대도입(20대)

추진계획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 계획

추진방안

-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는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배정
-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배정 시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안내

도입효과

- 대체수단 도입에 의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분산
- 특별교통수단 만족도 제고 및 이동권 증대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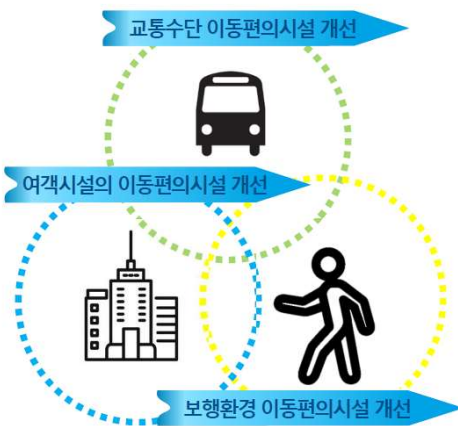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약자의 관점에 맞는 교통서비스 환경조성과 물리적 이동장벽의 해소를 목표로 개선방안 제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지원계획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수단 및 시설		실적 ('21년)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교통수단	시내버스	80.7%	96.0%
	도시(광역)철도	93.1%	98.0%
	여객선	42.5%	52.0%
교통수단 평균		72.1%	84.0%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1.0%	73.0%
	철도역사	86.1%	93.0%
	공항여객터미널	83.8%	92.0%
	여객선터미널	87.7%	92.0%
	버스정류장	30.5%	73.0%
여객시설 평균		75.7%	87.5%
도로(보행환경)		59.8%	73.0%

주 : 「제4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된 이동편의 시설 목표치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39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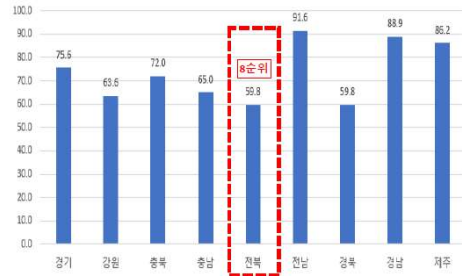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개선

-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행환경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은 59.8%로 전국 9개 도에서 8순위를 기록하여 보행환경 이동편의 시설의 개선을 통해 설치율을 제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점자블록에서 낮은 설치율을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휠체어 이용자,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 및 유모차 이용자 등의 경우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함**

보행환경의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도	94.0	87.4	88.4	94.0	88.1	62.1	59.3	3.4	97.8
차량진출입부	66.1	49.1	85.7	46.9	22.7	86.7	61.1	79.7	-
턱낮추기	90.4	86.3	65.3	99.1	84.7	37.0	94.7	40.4	100.0
점자블록	57.1	34.2	49.9	25.0	23.5	58.3	56.2	100.0	66.7
지하교 및 육교	79.2	75.0	-	75.0	-	-	-	100.0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노상주차장)	87.5	-	-	-	-	60.3	50.0	25.0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67.1	64.0	66.5	60.2	75.0	47.9	76.4	69.4	100.0
차량진입 제어 팔록 (블라드)	63.1	49.3	49.2	54.8	64.6	63.4	61.1	62.7	66.7
평균	75.6	63.6	72.0	65.0	59.8	91.6	59.8	88.9	86.2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40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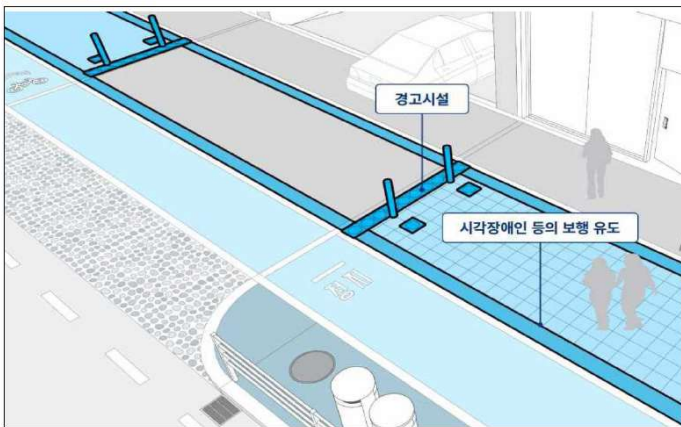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보행환경 세부추진계획

차량 진출입부 환경개선 기준 정립

- 전북특별자치도 차량 진출입부는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확인됨



< 차량 진출입로 적용지침(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

- 보행안전공간과 차량진출입구 경계의 전후에는 재질, 색상 등을 달리하여 주의·경고 표시를 하며, 보도는 단절없이 연속 되도록 계획 하여야 함
- 차량진출입구 경계에는 시각장애인 및 인지능력이 낮은 보행자를 고려하여 주의·경고표시 시설을 설치하며, 차량진출입구 전후에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 하는 시설을 설치

41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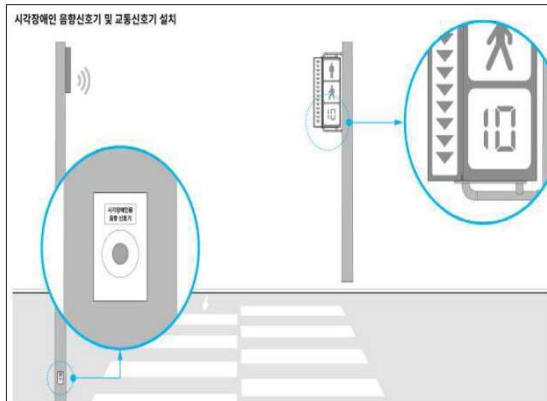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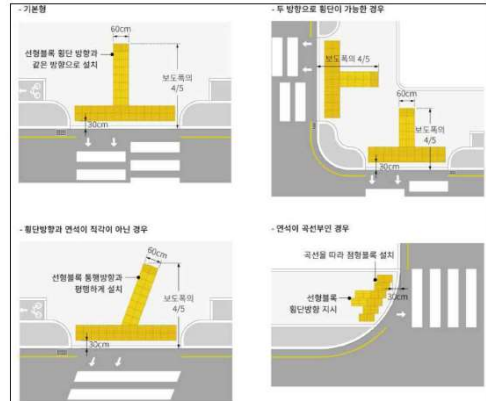
보행환경 세부추진계획

☑ 횡단보도 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 설치

-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의 경계 등에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과 횡단 대기를 위한 경로 및 안전시설을 설치



< 점자블록 및 음향신호기 적용지점(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



< 횡단보도 점형/선형 블록 설치(예시) >

42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보행환경 세부추진계획

☑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장애인주차구역 관리개선(승용차 주차구역)

- 어린이, 노인에 비해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은 매우 낮은 편이며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이용으로 이동권 제약에 많은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시·군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대상시설 파악 후 특성에 맞도록 지정 또는 신청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 사물인터넷 기술과 행정정보망을 연계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경우 경고음으로 계도하는 방식 (국내외 자료 벤치마킹하여 개선사업 추진)



<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예시) >



< 압구정 ICT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 >

43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이동편의시설 개선

-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률은 버스 96.0%, 여객선 52.0%로 설정
- 자동안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 낮은 기준적합 설치율을 보이는 항목들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선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점검항목	기준적합	미적합	미설치
자동안내시설	45.8	45.8	8.5
전자문자안내판	51.3	16.7	32.0
목적지표시	80.3	19.7	-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100.0	-	-
승강구	100.0	-	-
교통약자용 좌석	73.0	11.5	15.5
수직손잡이	95.1	0.7	4.2
장애인접근가능표시(저상)	100.0	-	-
버스 평균	80.7	11.8	7.5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점검항목	기준적합	미적합	미설치
자동안내시설	-	-	100.0
전자문자안내판	-	-	100.0
목적지표시	80.0	20.0	-
휠체어 승강설비	50.0	50.0	-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35.0	5.0	60.0
장애인 전용 화장실	50.0	22.5	27.5
장애인 접근기능 표시	40.0	-	60.0
출입구 통로	85.0	-	15.0
여객선 평균	42.5	12.2	45.3

44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세부추진계획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 전자문자안내판은 장애인 버스 탑승객이 어떤 위치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버스 전면 뒷부분 또는 중간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자와 기호는 멀리서도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체로 표기
- 교통약자좌석은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자 등을 위한 전용 좌석이며 전 좌석의 1/3을 지정 필요



< 전자안내판 개선 사례 >

< 교통약자 좌석 개선 사례 >

45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개선

-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 적합률 목표는 73.0%로 설정
- 버스정보조회 버튼,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 등 교통약자의 유도시설과 이용정보 편의 제공에서 매우 낮은 적합률을 보여 개선이 시급하며,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통하여 개선방안 수립필요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결과

구분	설치기준	적합	미적합	미설치
턱 낮추기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 15cm이하	36.0	64.0	0.0
활동공간	0.8m이상 확보 및 1.8mX1.8m 이상 회전공간 확보	51.0	32.7	16.3
동선분리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이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분리	46.0	0.0	54.0
점형블록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16.0	0.0	84.0
선형블록	점형블록과 함께 선형블록 설치	12.0	0.0	88.0
안내판부착위치	안내판을 바닥에서 1.5m안팎 설치	72.7	4.5	22.7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	안내판에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 제공	6.8	31.8	61.4
버스정보조회 버튼	바닥면으로부터 1.2m이내 설치	3.7	0.0	96.3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30.5	16.6	52.8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IV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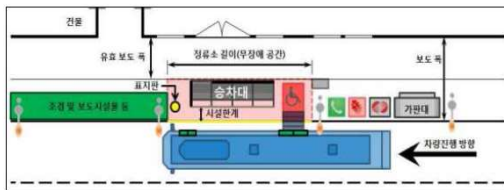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기준(표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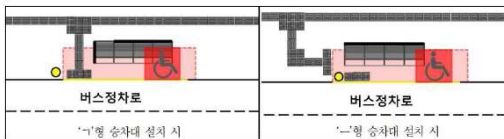
- 무장애정류장은 정류장 접근에서부터 버스승하차, 특히 저상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소 여건 및 버스이용현황이 조성된 정류소를 의미하고 있음



< 무장애 버스정류장 개념도 >



< 버스안내단말기(BIT)설치 위치 >



< 버스승강장 점자블록 위치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여객터미널 기준 적합률 목표는 자동차 터미널 73.0%, 철도역사 90.0%, 공항여객터미널 92.0%, 여객선 터미널 92.0%로 설정
- 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 시설 정비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탑승하고 터미널 내의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및 개선방안

구분	기준적합 설치율
자동차터미널	59.2
철도역사	86.1
공항여객터미널 (군산공항)	83.8
여객선터미널	87.7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터미널내 대기소,화장실,매표소 등 휴게시설 및 승강장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및 전자(음성)안내판 설치필요



<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사례 >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

48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 교통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통수단 사업자, 여객시설 사업자 등 다양하나, 협력체계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통복지정책 추진 저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공공과 민간, 수혜자 그룹 간의 상시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49

IV

Chapter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교통협의체 구성

-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역(시·군)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 교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사업자 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체계 구축

☞ 교통협의체 구성 예시



50

IV

Chapter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무장애 교통복지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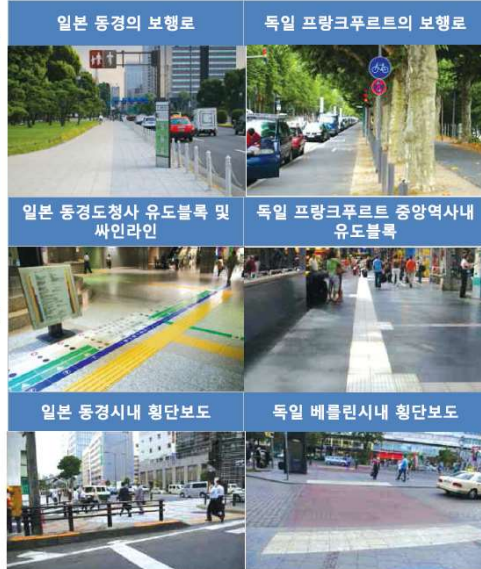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BF인증 현황 및 개선방안

- 무장애 인증제도(BF인증)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대한 환경 및 제도가 선진화 되있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시범 인증과 해외사례조사 결과에 대한시사점 도출
- 전북특별자치도 BF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8개도 7순위로 확인되어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 BF인증 활성화가 필요함
- BF인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의무대상 시설을 넓히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

구분	인증시설물	순위
경기도	886	1
강원도	335	5
충청북도	214	8
충청남도	325	6
전북특별자치도	259	7
전라남도	500	2
경상북도	479	3
경상남도	463	4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교통약자 BF인증 선진사례



51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04.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관리 강화



-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관리강화
-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 교통약자협의체를 통한 배려문화 조성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권장

교통약자 관련 교육

- 시내버스(저상) 및 여객시설
- 저상버스작동법, 배차방법
 - 교통약자 이동행태
 - 버스정차문화 버스운행방법 등
 - 이동편의시설 설치, 유지관리법 등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작동법
 - 운행방법, 운전문화
 - 교통약자행태 등

인식 개선 방안

<p>UCC 공모전</p> <p>2021년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p>	<p>교통약자 포스터</p>
<p>언론사 캠페인방송</p> <p>보통여자를 위한 배려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p>	<p>시민 참여 캠페인</p> <p>경사로 제보 함께하는 일상 캠페인</p>

교통약자 인식제고의 효과

-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대한 편견 개편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증대
 - 대중교통 불평등 해소
 - 캠페인 참여 등으로 조성된 기부금, 수익금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기금 조성 가능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04.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권장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고령운전자(70세 이상)가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를 지원하여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를 추진
-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테스트 지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연 1회 테스트 추진시 교통비 및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여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게 자진 반납을 유도함

추진방안

-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테스트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은 시·군 지자체에서 추진



IV

Chapter

05.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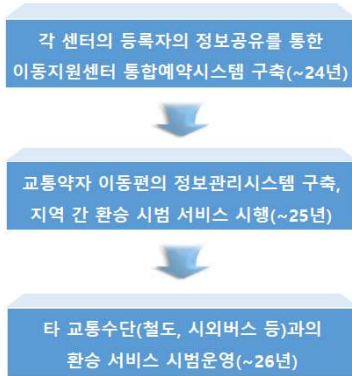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이동지원센터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국가계획)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道)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간 환승·연계 활성화 기반 마련
- 타 지역 도(道) 이동 시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 및 타 교통 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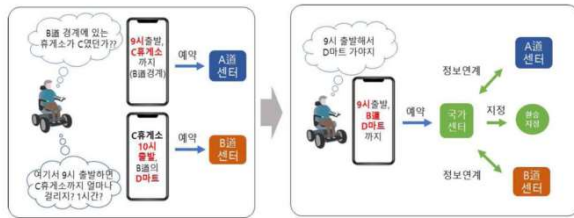


자료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2022.09., 국토교통부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연계에 따른 이용편의성 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간 정보연계를 통한 환승편의성 개선



54

IV

Chapter

05.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광역이동센터 운영의 효율화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증가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인한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량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지원센터간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상담원 인력의 증원필요**

4차 계획간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및 운행대수 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원	센터장	1	1	1	1	1
	팀장	2	2	2	2	2
	상담원	23	23	23	25	27
	계	26	26	26	28	30
운행대수	207	219	233	245	258	
1인당대수	8.0	8.4	8.9	8.8	8.6	

자료 : 바우처 택시 도입 유무에 따라 변동예정

- 특별교통수단의 증가에 따라 현재의 운행대수 당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인원 비율에 따른 지원 및 바우처택시 사업을 진행할 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당한 업무 부하가 예상됨에 따른 증원, 향후 바우처 택시의 증가에 따른 인력의 증원이 고려되어야 함

55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5.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확충계획

타 지자체 운전원 비율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서울	634	743	1.17
부산	228	228	1.00
대구	163	177	1.08
인천	215	215	1.00
광주	116	134	1.15
대전	96	121	1.26
울산	76	90	1.18
세종시	21	21	1.00
경기도	1,178	1,296	1.10
강원도	215	268	1.24
충청북도	168	159	0.94
충청남도	250	256	1.02
전라남도	201	258	1.28
경상북도	242	242	1.00
경상남도	390	461	1.18
제주도	68	84	1.23
평균	-	-	1.11

주 : 경기도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 사·군별 인력확보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을 200%를 확보하게 되어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전북특별자치도	229	254	1.10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내부자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계획(2026년)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전북특별자치도	310(▲81)	465(▲211)	1.50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수 비교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특별교통수단대비 운전원 비율이 9위, 전국 8개도 중에는 5위로 확인되었음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비율 평균은 1.10명으로 전국 운전원 평균(1.11명) 비율과 비슷한 수치임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대수 53대 및 운전원 211명을 확충하여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수를 1.5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확충할 계획임

56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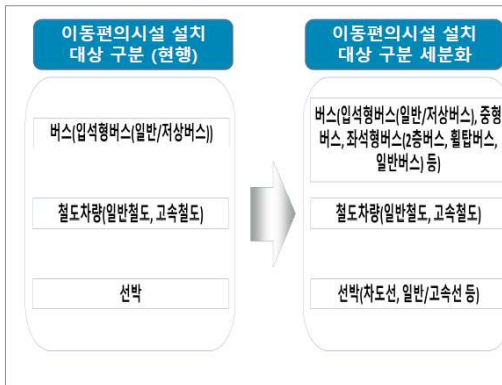
05.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지원 및 조례 제정 확립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특성, 규모를 고려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 세분화 등 정비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등을 지원하여 조례 제정 필요
-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보급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조례 제정 필요

설치기준 정비 지원



조례 제정 확립

구분	교통약자 조례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조례(2021.1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2023.12.26)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2.11.9)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23.12.15)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23.12.29)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23.12.26)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23.12.18)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3.12.19)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3.12.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3.12.28)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23.12.28)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23.12.13)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23.12.01)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권 지원조례(19.10.15)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24.04.24)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3.12.15)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4.03.12)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3.12.15)


주 : *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읍·면

57

IV

Chapter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5.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조례 정비방안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재정되지 않은 시군을 지원하여 조례 확립 제시

☑ 표준 조례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목적</div>	→	조례의 목적 통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위원회 설치</div>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에 대한 사항 운영기준 수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저상버스</div>	→	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정의</div>	→	용어정의로 법 준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div>	→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의무조항 및 내용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특별 교통수단</div>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적용범위</div>	→	해당 시군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권 적용범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연차별 계획</div>	→	5년단위 계획의 연도별 계획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이동 지원센터</div>	→	이동지원센터 및 운영과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단체장 책무</div>	→	단체장의 책무와 의무사항 연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실태조사</div>	→	관련법 제9조 2항의 규정과 단체장 조사의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기타, 지도 감독 등</div>	→	기타 지도감독 의무사항 등 시군 특성에 맞는 내용

58

01

연차별 투자계획

V

Chapter

연차별 투자계획

V Chapter

연차별 투자계획



01.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제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2022~2026) 기간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 총 사업비 : 233,037백만원, (2,330.37억원)
- 교통수단 : 156,052백만원, (1,560.52억원) / (저상버스 확충,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 여객시설 : 3,860백만원, (38.60억원) /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 등)
- 보행환경 : 58,965백만원, (589.65억원) /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도로·보행 이동편의시설 개선 등)
- 기타 : 14,160백만원, (141.60억원) / (광역이동지센터 운영, 교통약자 교육(홍보) 및 캠페인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사업비	국비	8,906	12,261	16,191	19,638	15,063	72,059
	도비	4,283	7,286	11,995	15,794	13,767	53,125
	시군비	14,248	19,761	21,277	26,680	25,887	107,853
	합계	27,437	39,308	49,463	62,112	54,717	233,037

60

V Chapter

연차별 투자계획



01.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세부내용(교통수단)

(단위 : 백만원)

분야	세부추진 과제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교통수단	소계	국비	6,532	10,132	15,258	18,677	14,048	64,647
		도비	1,555	2,503	4,398	7,259	4,720	20,435
		시·군비	9,456	13,070	13,819	17,960	16,665	70,970
		합계	17,543	25,705	33,475	43,896	35,433	156,052
	저상버스 확충 및 운영비	국비	1,773	3,542	7,254	10,458	6,044	29,071
		도비	1,187	2,119	3,880	5,578	3,407	16,171
		시·군비	1,587	2,583	5,129	6,986	4,939	21,224
		합계	4,547	8,244	16,263	23,022	14,390	66,466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운영비	국비	4,759	6,590	8,004	8,219	8,004	35,576
		도비	368	384	518	626	518	2,414
		시·군비	7,869	10,487	8,690	10,189	10,941	48,176
		합계	12,996	17,461	17,212	19,034	19,463	86,166
	바우처 택시 도입 및 운영비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785	785	1,570
		시·군비	0	0	0	785	785	1,570
		합계	0	0	0	1,570	1,570	3,140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 및 운영비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270	10	280
		시·군비	0	0	0	0	0	0
		합계	0	0	0	270	10	280

61

V
Chapter

연차별 투자계획

01.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세부내용(여객시설)

(단위 : 백만원)

분야	세부추진 과제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여객시설	소계	국비	-	-	-	-	-	-
		도비	223	295	232	249	266	1,265
		시·군비	384	477	540	577	617	2,595
		합계	607	772	772	826	883	3,860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정비	국비	-	-	-	-	-	-
		도비	128	200	137	147	157	769
		시·군비	164	257	320	342	366	1,449
		합계	292	457	457	489	523	2,218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	국비	-	-	-	-	-	-
		도비	95	95	95	102	109	496
		시·군비	220	220	220	235	251	1,146
		합계	315	315	315	337	360	1,642

62

V
Chapter

연차별 투자계획

01.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세부내용(보행환경)

(단위 : 백만원)

분야	세부추진 과제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보행환경	소계	국비	400	-	-	-	-	400
		도비	2,400	4,359	5,884	6,599	7,015	26,257
		시·군비	4,163	5,724	6,540	7,723	8,158	32,308
		합계	6,963	10,083	12,424	14,322	15,173	58,965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국비	400	-	-	-	-	400
		도비	1,800	3,709	5,560	5,949	6,365	23,383
		시·군비	2,863	4,155	5,783	6,188	6,621	25,610
		합계	5,063	7,864	11,343	12,137	12,986	49,393
	도로·보행 이동편의 시설 개선	국비	-	-	-	-	-	-
		도비	600	650	324	650	650	2,874
		시·군비	1,300	1,569	757	1,535	1,537	6,698
		합계	1,900	2,219	1,081	2,185	2,187	9,572

63

V
Chapter

01.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세부내용(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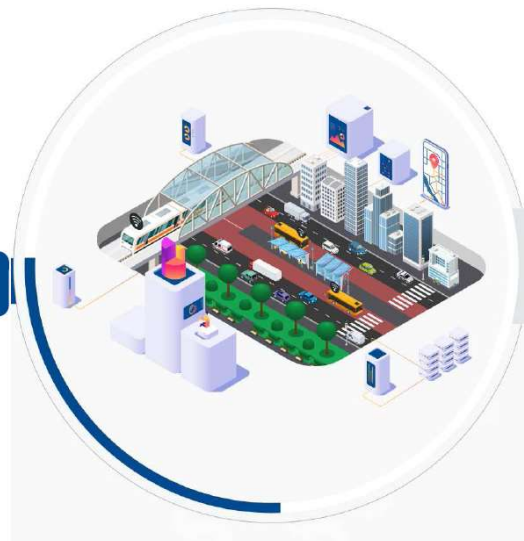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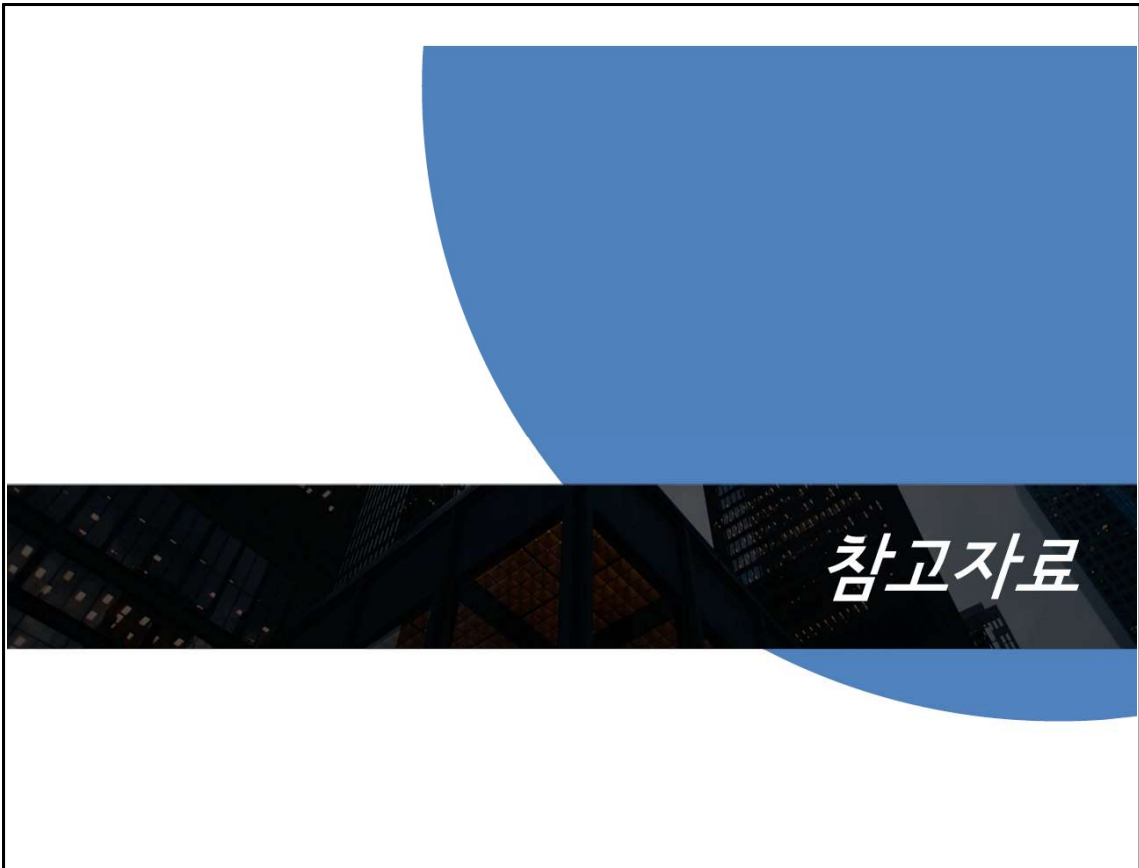
분야	세부추진 과제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기타	소계	국비	1,974	2,129	933	961	1,015	7,012
		도비	105	129	1,481	1,687	1,766	5,168
		시·군비	245	490	378	420	447	1,980
		합계	2,324	2,748	2,792	3,068	3,228	14,160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1,974	2,048	852	871	915	6,660
		도비	-	-	1,400	1,492	1,566	4,458
		시·군비	-	-	-	-	-	-
		합계	1,974	2,048	2,252	2,363	2,481	11,118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권장 사업	국비	-	81	81	90	100	352
		도비	105	129	81	90	100	505
		시·군비	245	490	378	420	447	1,980
		합계	350	700	540	600	647	2,837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국비	-	-	-	-	-	-
		도비	-	-	-	5	-	5
		시·군비	-	-	-	-	-	-
	포용적 복지문화 조성	국비	-	-	-	-	-	-
		도비	-	-	-	100	100	200
		시·군비	-	-	-	-	-	-
합계		-	-	-	100	100	200	

64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감사합니다





VI

참고자료

01.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도입기준(가이드라인)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에 대한 법적검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7.][법률 제1236호, 2024. 1. 19., 일부개정] >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수 있다.
1.	해당 노선에 설치된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 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노선에 도로의 중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도로의 시설·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인정 절차”

STEP1

저상버스 도입 예외 신청

▪ 버스운송사업자 → 교통행정기관

➤

STEP2

검토(교통행정기관)

▪ 교통약자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현장조사

➤

STEP3

결과통보

▪ 교통행정기관 → 버스운송사업자

67

VI

참고자료

0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8개도 대비 BF인증이 7순위로 확인되었으며, 전라북도내 BF인증순위는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등 순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개별시설물에 대한 BF인증 활성화가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구분	인증시설물	상세
전주시	39개소	최우수 : 1개소, 우수 : 38개소
군산시	23개소	우수 : 23개소
익산시	20개소	우수 : 20개소
정읍시	29개소	우수 : 29개소
남원시	11개소	일반 : 1개소, 우수 : 10개소
김제시	10개소	우수 : 10개소
완주군	17개소	일반 : 3개소, 우수 : 14개소
진안군	4개소	우수 : 4개소
무주군	3개소	우수 : 4개소
장수군	18개소	최우수 : 1개소, 우수 : 17개소
임실군	12개소	우수 : 12개소
순창군	16개소	우수 : 16개소
고창군	26개소	일반 : 1개소, 우수:25개소
부안군	29개소	우수 : 29개소
합계	259개소	일반 : 5개소, 우수 : 252개소, 최우수 : 2개소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타 지자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구분	인증시설물	순위
경기도	886개소	1
강원도	335개소	5
충청북도	214개소	8
충청남도	325개소	6
전북특별자치도	259개소	7
전라남도	500개소	2
경상북도	479개소	3
경상남도	463개소	4

-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고령자, 장애인, 임신부 및 어린이 뿐 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 일시적 사회적 약자 등이 지역 및 개별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접근·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것과 이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68

VI

참고자료

03. 투자재원 분담방안

참고자료



투자재원 대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

가. 투자재원 대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재정자립도에 의한 방법)

- 지방비중 대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나. 투자재원 대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시군 구분에 의한 방법)

- 군지역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령인구 비율 등 여건이 유사하므로 군지역과 시지역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비분담 비율을 구분

다. 투자재원 대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균등지원 방법)

- 군지역의 여건이 열악하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비교적 적은 반면, 시지역은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등 여건이 우수 하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비교적 많아 재정부담이 큰점을 고려하여 시군별 구분없이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재정 자립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립도(%)	순위
전주시	23.9	1
군산시	15.9	3
익산시	15.3	4
정읍시	9.6	6
남원시	8.6	8
김제시	10.1	5
완주군	16.3	2
진안군	7.0	13
무주군	7.2	12
장수군	7.0	13
임실군	7.7	11
순창군	8.1	9
고창군	7.9	10
부안군	8.8	7

자료 : 재정자립도 현황(kosis.kr) 2023년

투자재원 대비 및 시군비 분담방안 비교 (단위 : 백만원)

방안	형평성	균형발전	제4차 증진계획 목표실현가능성	종합점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5	3	2	10
시·군 차등지원	5	3	3	11
균등지원방안	3	4	5	12

69

6.4 최종보고회 의견 내용

최종보고 의견		반영 여부	조치내용	비고
권용석 교수	•버스정류장 기준적합률 목표치 대비 예산 부족	반영	•전북특별자치도의 버스정류장 기준적합률 목표치는 30.9%→73.0%로 높은 성장률 대비 관련 예산이 낮아 금번 보완사업차별 투자계획 예산을 소폭 증액하였으며 추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가확보 하겠음	p144, p203, p206
	•저상버스 이용 시간 및 배차간격 조정을 위한 저상버스 증차 필요	반영	•저상버스 이용 시간 및 배차간격 조정을 위한 연차별 저상버스 도입계획(2024년 129대, 2025년 173대, 2026년 100대 총 402대 추가도입)을 제시하였음	p133, p13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성실하게 투자하고 이행하는 시·군의 인센티브 방안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수립하지 않은 시·군의 페널티 방안	기 반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촉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모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p196, p197
최원규 교수	•교통약자 지원계획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시	반영	•'경기도 G-PASS카드' 및 '남원시 어르신카드' 등을 벤치마킹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유의 통합 교통약자 전용 지원패스카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p194
	•교통약자들의 이동상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지원계획 필요	기 반영	•교통약자들을 위한 주차시설(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2026년 제도화할 계획으로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음	p152, p195
	•협의체 구성시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가장 많은 교통문제에 관심을 갖는 노인(고령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성 필요	추후 반영	•향후, 협의체 구성시에는 노인(고령자)조직이나 노인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겠음	-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비 예산이 적다고 판단됨	추후 반영	•교통약자 관련 사업 진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비 예산을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음	-
•보행신호 연장시스템 도입 필요	-	•보행신호 연장시스템은 IT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서지역 간 이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반영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서지역 교통약자 콜택시' 및 '이동 보조차량'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부서와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겠음	p173	

최종보고 의견		반영부	조치내용	비고
장태연 교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기 반영	•교통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부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교통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국가계획 반영사항으로 전국 이동지원센터 통합예약시스템 구축(~24년), 교통약자의 지역 간 환승 시범 서비스 운영(~25년),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서비스 시범운영(~26년)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였음	p127, p163~p164, p180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보행환경 진단에서 국토교통부 내용으로만 나와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조사한 자료 제시 필요	미 반영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관련 실태조사내용이 상이하여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않았음 •다만,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성과분석을 위한 통일된 배점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하였음	p108
	•제4차 지원계획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접수콜수에 대한 수요 예측	반영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하루 평균 접수 콜수는 약 1,720건, 시간당 약 95건이며, 금번 제4차 지원계획시 특별교통수단 대수(229대→310대, ▲81대) 및 운전원수(254명→465명, ▲211명)를 추가 확충하여 접수콜수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음	p141, p192, p193
	•특별교통수단의 확충계획,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특별교통수단 대수 등 보고서 내용이 상이 함	반영	•특별교통수단 확충계획 및 차량 대수 등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p141, p192, p193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확인 필요	반영	•특별교통수단 확충계획 및 차량 대수 등 반영하여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정하였음	p141, p202~p206
최창현 대표	•교통약자시설물 중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통약자들이 참여한 이행 모니터링 필요	반영	•교통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BF인증 및 검사시 교통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법적근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인증기관의 심사 전문인력 선정 근거와 장애인참여 BF 인증사례를 제시하였음	p171, p172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콜택시 만족도 조사 정확도 확인 필요	반영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는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자료를 반영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운전자 만족도 평가 및 상담원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를 추가 반영하였음	p111~p114

	최종보고 의견	반영 여부	조치내용	비고
최창현 대표	•농아인에게 필요한 버스안내시설 문제	기 반영	•버스 및 버스정류장에 자동안내방송시설 및 전자문자안내판 등 개선 사례를 제시하였음	p154
	•버스 정류장 턱낮춤 관련 개선 필요	기 반영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기준을 제시 하였음	p157~p160
	•특별교통수단 민원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필요	기 반영	•금번 제4차 지원계획시 특별교통수단 대수(229대→310대, ▲81대) 및 운전원 수(254명→465명, ▲211명)를 추가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교육 매뉴얼 제작 및 교육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p141, p192~p193, p174~p176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에 대한 운전원 증가 대안 외 방안 필요	기 반영	•바우처택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비휠체어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줄이고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제시하였음	p142~p143
	•안전한 보행로관련 이면도로 등 세부적 개선 방안 필요	미 반영	•보행로 관련 선진 해외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면도로 등의 보행로 관련해서는 시·군별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행안전기본계획」 등에서 개선 및 제시되는 사항임	p165~p168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시행 문제(권리침해 부분)	기 반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인센티브(지원금 등)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도록 하겠음	p179
	•바우처 택시 도입대수 증차 필요	기 반영	•2026년까지 바우처택시를 60대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향후, 성과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증차될 수 있도록 하겠음	p142~p143
	•장애인 자차 지원금 지원 방안	반영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2026년 제도화할 계획으로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음	p19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교통약자 증진계획 수정보완요구	추후 반영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내용에 따라 시·군별 증진계획에 추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완요청 하겠음	-

최종보고 의견		반영 여부	조치내용	비고
정해선 대표	•군단위에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방안	추후 반영	•군 단위에 수소 및 전기충전소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향후, 저상버스 도입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여객선 전동휠체어 탑승방안	추후 반영	•여객선 등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물리적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제4차 지원계획시 기준적합 설치율을 42.5%→52.0%로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전동휠체어 탑승과 관련해서는 여객선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음	p144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관련 해결방안 제시	기 반영	•교통약자들을 위한 주차시설(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 시스템) 등을 제시하였음	p152
김영민 위원	•광역지원콜센터 상담원 인식개선 교육 필요	반영	•광역지원콜센터 상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제시하였음	p174~p176
	•군산공항 등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필요	기 반영	•여객터미널의 상세한 개선 방안은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수록되어 있음	p161~162
	•전동휠체어 지원 예산 필요	-	•전동휠체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시·군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인도 및 횡단보도 보행로 개선 필요	기 반영	•안전한 보행로 관련(차량 진출입구 설치기준), 보행로 관련 해외 선진사례 등을 제시하였음	p147, p148, p165~p168
양은주 위원	•저상버스 도입률 100% 달성 계획 필요	기 반영	•기존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률은 점차 증가하여 100%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4차 계획기간(2022~2026) 동안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제시하였음	p133
	•바우처 택시 증차 필요	기 반영	•2026년까지 바우처택시를 60대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향후, 성과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증차될 수 있도록 하겠음	p142~p143

최종보고 의견		반영 여부	조치내용	비고
양은주 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및 인식개선 교육 필요	반영	•장애인콜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제시하였음	p174~p176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비율 2.5명으로 상향 고려, 운전원 운행시간 조정 고려 필요	기 반영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비율은 1.1명으로 2026년까지 211명을 충원하여 비율을 1.5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운전원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보임 •또한, 운전원은 주간/야간을 구분하여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p193
유승건 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전원 충원계획 필요	기 반영	•금번 제4차 지원계획시 특별교통수단 대수(229대→310대, ▲81대) 및 운전원 수(254명→465명, ▲211명)를 추가 확충한 계획을 제시하였음	p141, p193
	•시외(저상)버스 도입 필요	기 반영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계획을 제시하였음	p135~p137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나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나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